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목 차

제1절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개요

I.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이해

관련부서 : 전부서

1.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Compliance Program)	18
1.1 의미	18
1.2 이해당사자	18
1.3 CP란?	18
1.4 CP 필요성	18
1.4.1 경쟁력과 공정거래 능력을 강화	
1.4.2 범위반에 따른 손실 사전 예방	
1.4.3 대내외 신인도를 제고	
1.4.4 법 위반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2. 용어 정의	19
3. CP 8대 구성요소	19
3.1 CP 기준과 절차 마련 및 시행	19
3.2 최고경영진의 자율준수 의지 및 지원	19
3.3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19
3.4 자율준수편람의 제작·활용	20
3.5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자율준수교육 실시	20
3.6 사전모니터링 시스템	20
3.7 제재 및 인센티브 시스템	20
3.8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와 개선	20
4. CP의 법제화	20
4.1 CP의 확산을 위한 개정 공정거래법의 시행	20
4.2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및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 운영고시의 제정	21

제2절 공정거래 관련 업무시 유의사항

1. 하도급관련 불공정거래행위 관련부서 : 현장, 공사, 외주구매, 실행예산

1. 하도급법의 적용대상 및 위반시 제재.....	24
1.1 하도급법의 목적 및 입법취지.....	24
1.2 하도급법의 구조.....	25
1.3 관련 규정.....	26
1.4 적용 범위.....	27
1.4.1 법적용 대상 사업자	
1.4.2 법적용 대상 거래	
1.4.3 거래종료일의 의미	
1.5 위반시 제재.....	35
1.5.1 하도급 사건처리절차	
1.5.2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분쟁조정	
1.5.3 하도급 위반 제재 유형	
2. 업무단계별 법 위반 유형 및 업무시 유의사항.....	44
2.1 계약체결단계시 하도급법상의 규제내용.....	45
2.1.1 서면교부 및 서류보존의무(하도급법 제3조)	
2.1.2 부당한 특약 설정 금지(하도급법 제3조의4)	
2.1.3 건설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의무(하도급법 제13조의2)	
2.1.4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금지(하도급법 제4조)	
2.1.5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의 체결(납품단가연동제, 하도급법 제3조 제2항 제3호)	
2.2 계약이행단계시 하도급법상의 규제내용.....	74
2.2.1 부당한 위탁(발주)취소 및 수령 거부 금지(하도급법 제8조)	
2.2.2 부당반품의 금지(하도급법 제10조)	
2.2.3 검사 및 검사 결과 통보 의무(하도급법 제9조)	
2.2.4 하도급 대금 감액 행위 금지(하도급법 제11조)	
2.2.5 기술자료제공요구 및 유용행위금지(하도급법 제12조의3)	
2.2.6. 부당한 경영간섭(전속거래 강요행위 금지 및 경영정보 요구) 금지(하도급법 제18조)	
2.2.7 보복조치의 금지(하도급법 제19조)	

목 차

2.3 대금지급단계의 하도급법상 규제내용.....	113
2.3.1 하도급 대금 지급 의무(하도급법 제13조)	
2.3.2 선급금 지급 의무(하도급법 제6조)	
2.3.3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 대금의 조정의무(하도급법 제16조)	
2.3.4 물품구매대금등의 부당결제청구 금지(하도급법 제 12조)	
2.3.5 경제적 이익의 부당한 요구 금지(하도급법 제12조의2)	
2.3.6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 대금의 조정(하도급법 제16조의2)	
3. 하도급 거래단계별 체크리스트	133

II. 경쟁업체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관련부서 : 사업팀, 영업팀, 마케팅

1. 공동행위(담합)의 개요	142
1.1 의미.....	142
1.2 규제 현황.....	143
1.3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의 요건	143
1.3.1 사업자간 공동행위에 대한 합의의 존재	
1.3.2 '경쟁제한성'이 존재	
2. 합의추정제도.....	144
3.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의 유형.....	145
3.1 가격을 결정·유지·변경하는 행위.....	145
3.1.1 판단기준	
3.1.2 관련 사례	
3.2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	147
3.2.1 판단기준	
3.2.2 관련사례	
3.3 거래지역 및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148
3.3.1 판단기준	
3.3.2 관련 사례	
3.4 정보교환담합	150
3.4.1 의미	
3.4.2 요건	

3.4.3 정보교환에 의한 합의 추정	
4. 입찰담합금지	157
4.1. 의의	157
4.2. 입찰담합의 유형	158
4.2.1 입찰가격담합	
4.2.2 낙찰예정자의 사전결정(수주자 선정에 관한 행위)	
4.2.3 경쟁입찰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유도	
4.2.4 수주물량 등의 결정	
4.2.5 경영간섭 등	
4.3 업무상 유의사항	161
4.4 관련 사례	163
4.5 위반시 제재	169
4.5.1 시정조치	
4.5.2 과징금	
4.5.3 고발 및 형사처벌	
4.5.4 손해배상청구(징벌적 손해배상)	
4.5.5 손해배상액 예정 제도	
4.5.6 입찰참가자격 제한	
4.6 공정위의 입찰담합징후 분석 시스템 운영	171
5.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시 제재	172
5.1. 행정적 제재	172
5.2. 형사적 제재	172
5.3. 최대 3배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172
6.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173
6.1 제도의 의의	173
6.2 감면의 요건	175
6.2.1 적극적 요건	
6.2.2 소극적 요건	
6.3 자진신고 지위확인인의 효과	176
6.3.1 과징금 및 시정조치의 감면	
6.3.2 형사고발의 면제	

목 차

6.3.3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제한	
7. 경쟁사 모임시 관련 행동지침	177
8. 경쟁사와의 정보 교환 관련 가이드라인	178
9. 문서 작성 및 정보보안 관련 가이드라인	178
10. 업계모임 참여시 행동요령	180
11. 체크리스트	182

III. 계열사 간 부당한 내부거래의 금지 관련부서 : 사업팀, 영업팀, 외주구매, 홍보팀

1. 개요	183
2. 부당지원행위의 금지	185
2.1 개념	185
2.1.1 의의 및 요건	
2.1.2 지원주체	
2.1.3 지원객체	
2.1.4 지원행위 해당성	
2.1.5 지원행위의 부당성 판단기준	
2.1.6 위반 시 제재	
2.2 유형	186
2.2.1 자금지원행위	
2.2.2 자산지원행위	
2.2.3 상품 및 용역지원행위	
2.2.4 인력지원행위	
2.2.5 물량 몰아주기	
2.2.6 통행세 거래	
3.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금지	205
3.1 개념	205
3.1.1 적용 대상	
3.1.2 부당성판단기준	
3.1.3 위반 시 제재	
3.2 유형	206

3.2.1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3.2.2 사업기회제공	
3.2.3 합리적 고려나 비교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	
4. 체크리스트	217

IV. 기업결합 **관련부서 : 사업팀, 전략기획팀**

1. 기업결합 심사제도의 의의.....	220
2. 기업결합규제 제도의 내용.....	220
2.1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의 금지	220
2.2 기업결합 신고제도	220
2.2.1 신고대상 기업결합 유형	
2.2.2 신고대상 회사 규모	
2.2.3 기업결합 신고시기 및 방법	
3. 업무상 유의사항	223

V. 소비자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관련부서 : 사업팀, 영업팀, 마케팅, 홍보팀**

1. 표시·광고법의 적용대상 및 위반시 제재	225
1.1 표시광고법의 개요.....	225
1.1.1 입법 목적	
1.1.2 관련 용어	
1.1.3 위법성 판단기준	
1.1.4 다른 법률과 관계	
1.2 위반시 제재	227
1.2.1 행정적 제재	
1.2.2 행정질서벌	
1.2.3 사법적 제재	
2. 부당한 표시·광고의 유형.....	228
2.1 표시광고의 기본원칙	228
2.2 유형	228
2.3 표시·광고시 유의사항	229

목 차

2.3.1 사업자 자신에 관한 표시·광고	
2.3.2 가격에 관한 표시·광고	
2.3.3 원재료, 성분에 관한 표시·광고	
2.3.4 품질, 성능, 효능 등에 관한 표시·광고	
2.3.5 보증에 관한 표시·광고	
2.3.6 추천, 권장 등에 관한 표시·광고	
2.3.7 경쟁사업자 및 경쟁관계 상품에 관한 비교표시·광고	
2.3.8 중상·비방하는 표시·광고	
2.3.9 누락, 은폐 등에 의한 기만적인 표시·광고	
2.3.10 기타 거래내용 및 거래조건에 관한 표시·광고	
3. 업무상 유의사항	234
4. 부동산의 표시 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236
4.1. 심사지침의 목적	236
4.2. 심사지침의 적용범위	236
4.3. 용어의 정의	237
4.4. 일반원칙	237
4.5. 세부심사지침	238
4.5.1. 상가 등의 명칭	
4.5.2. 시행자, 시공자, 분양자	
4.5.3. 분양업종, 분양방법, 분양현황, 공사현황 등	
4.5.4. 상권, 입지조건, 생활여건, 접근성	
4.5.5. 재산가치, 수익성	
4.5.6. 부동산의 가격	
4.5.7. 부동산의 면적	
4.5.8. 부동산의 특징(재료·제품, 품질, 부대시설, 별도계약품목 등)	
4.5.9. 용자·전세금 등	
4.5.10. 건축허가 등 인·허가에 관한 사항	
4.5.11. 조감도 등	
4.5.12. 건물인증 등에 관한 사항	
4.5.13. 견본주택(모델하우스)	
4.5.14. 콘도미니엄의 표시·광고	
4.5.15. 기타 거래조건	

4.5.16. 부당한 표시·광고의 예시	
5. 표시광고시 유의 사항	251
6. 표시광고법상의 실효성 확보	251
6.1 중요정보 공개제도(법 제4조 제1항)	251
6.2 임시중지 명령제도(법 제8조)	252
6.3 광고실증제도(법 제5조)	252
6.4 제제조치	253
6.5 동의의결 제도(법 제7조의2)	253
7. 관련 사례	254
8. 체크리스트	257

제3절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공정위 사건 처리 절차

1.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의 처리 절차

1. 개요	264
1.1 심판기능으로서의 공정위.....	264
1.2 공정위 사건처리 절차.....	265
1.2.1 인지단계	
1.2.2 조사·심사 단계	
1.2.3 심의·의결 단계	
1.2.4 의결 결과 통지	
1.2.5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 유형	
1.3. 공정한 심결을 위한 주요 제도.....	266
1.3.1 심의준비 절차제도(의견청취절차)	
1.3.2 심의 속개제	
1.3.3 심의 분리제	
1.3.4 출석 시차제	
1.4 불복절차	267
1.4.1 이의신청 및 집행정지	
1.4.2 행정소송	
1.5 사전심사 청구제도(띄어쓰기 수정).....	268
1.6 동의명령제도.....	268
2. 공정위 조사 절차.....	268
2.1 조사 주체.....	268
2.2 조사 단서.....	269
2.3 배당과 사전심사.....	269
2.4 사건번호·사건명 부여와 조사의 실시.....	269
2.5 조사와 피조사인의 절차적 권리	269
2.6 심사보고서 작성 후 심사관의 조치.....	270
3. 공정위 심판절차	271
3.1 심판 주체	271
3.2 주심위원 지정과 심결보좌.....	271
3.3 심의기일 및 장소의 지정	272

3.4 합의.....	272
3.5 의결서 작성.....	272
II. 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제도	273
1. 개요	273
2. 주요 분쟁조정 안내.....	273
2.1 공정거래 분쟁조정.....	273
2.1.1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설치 이유	
2.1.2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위원회의 구성	
2.1.3 조정의 대상	
2.2 약관 분쟁조정	273
2.2.1 약관분쟁조정협의회 설치 이유	
2.2.2 약관분쟁조정협의회위원회의 구성	
2.2.3 조정의 대상	
2.2.4 집단분쟁조정	
3. 분쟁조정 절차.....	275



CEO 메시지

임직원 여러분께,

롯데건설은 지속가능한 일류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이미 2018년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전담조직을 구축하고 교육,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준법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의 변수,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도, 가장 확실한 투자는 준법경영입니다. 준법경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가치를 창출하고 제공해야만 이해관계자와 고객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반윤리적 행위로 고객, 파트너사, 시민사회로부터 외면받고 정부로부터 책임을 추궁당한 기업은 대부분 도태되거나 경영상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한순간의 방심과 잘못된 판단은 회사가 어렵게 쌓아온 신뢰와 성과를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거래 기회 자체를 잃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윤리경영, 준법경영으로 인한 명성은 경쟁사와의 차별화를 가능하게 하므로 치열한 산업환경에서 오히려 유리한 입지를 제공하고 기업이익을 증진시키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실적과 준법은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준법을 통한 실적만이 진정한 경쟁력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제는 기업의 세계화에 따라 국경을 넘어선 컴플라이언스를 요구받고 있고, 이에 따라 국제적 컴플라이언스가 필수 요건이 되었습니다. 특히 해외부패방지법의 뇌물공여 금지규정을 위반한 자에게는 엄격한 벌칙이 부과될 뿐만 아니라 해외 스캔들은 기업 명성에 큰 해를 입히기 때문에 전사적인 준법 의식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따라서 더욱 강화된 컴플라이언스 의지와 위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무관용 원칙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단순히 법률, 회사 내규를 지키는 것 이상으로, 어려운 도전에 직면했을 때 회사와 임직원이 올바르게 책임감 있는 의사결정을 선택할 수 있게끔 건강한 기업문화를 만들 것입니다.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고, 적발된 컴플라이언스 위반에 대하여 단 한 번의 행위라도 묵과하지 않고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특히 내부고발자는 고발로 인해 보복당하지 않을 것이며, 내부고발자의 신상을 누설하거나 내부고발자에 대하여 차별을 가하는 자는 명백히 징계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어떠한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건물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견고한 건물은 그에 걸맞은 튼튼한 기둥들이 지탱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롯데건설도 견고한 건물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견고한 건물이라는 경영성과는 튼튼한 기둥들, 즉 기본적인 원칙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컴플라이언스는 롯데건설의 가장 중요한 기둥 중 하나이며, 컴플라이언스라는 기둥에 균열이 생긴다면 건물이 무너지는 참담한 광경을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모든 임직원이 컴플라이언스가 곧 경영성과라는 생각을 갖고 컴플라이언스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고 되돌아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구성원 모두가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행동하여야 실질적인 준법경영이 가능합니다. 컴플라이언스를 위한 비용이 크고 절차가 다소 불편하게 느껴지더라도, 효과적인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갖추지 않은 대가는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도 롯데건설은 컴플라이언스를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이며, 임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를 당부드립니다.

2025. 1. 1

롯데건설(주) 대표이사 박현철

제1절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개요



제1절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개요

I.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이해 관련부서 : 전부서

1.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Compliance Program)

1.1 의의

- 공정거래 관계법령의 이해 증진 및 자율준수를 위하여 당사가 도입, 시행하는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말한다.
- 「자율준수매뉴얼」 또는 「자율준수편람」이란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제정·시행하기 위하여 당사가 작성한 문서를 말한다.

1.2 이해당사자

- 「기업집단」이란 동일인이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으로서 최소 2개 이상의 회사로 구성된다.
- 「계열사」란 당사의 계열사를 말한다.
- 「경쟁업체」란 당사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경쟁적인 상품을 국내에 판매하고 있는 업체를 말한다.
- 「거래업체(거래상대방)」란 당사와 계약관계가 체결된 협력업체 및 공급업체를 말한다.
- 「직원」이란 당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모든 임원과 직원을 말한다.
- 「공정위」라 함은 공정거래위원회(Fair Trade Commission)를 말한다.

1.3 CP란?

- 당사가 공정거래 관련법규를 스스로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준법시스템 및 행동규범을 말하는 것으로 CP의 핵심은 공정거래 관련법규 위반시 수반되는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행동규범을 마련하는 것이다.

1.4 CP 필요성

1.4.1 경쟁력과 공정거래 능력을 강화

- 공정거래 자율준수 노력을 통해 경쟁력이 강화되고, 지속적 발전을 이루게 된다.

1.4.2 범위반에 따른 손실 사전 예방

- 법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당사는 과징금, 손해배상, 소송비용 등 경제적 부담뿐만 아니라 법 위반 사실 보도로 인한 사회적 이미지 실추와 같은 유형, 무형의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 법 위반행위에 가담하거나 책임자의 위치에 있는 임직원들도 고발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된다.

1.4.3 대내외 신인도를 제고

- CP도입을 대내외에 공표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할 경우 투명경영, 공정경영 실천기업으로서의 이미지를 더욱 제고할 수 있다.

1.4.4 법 위반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 실무자들이 우발적으로 공정거래 관련법규를 위반하였을 경우 경쟁당국으로부터 과징금 경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 용어 정의

- 「공정거래법」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지칭한다.
- 「하도급법」이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지칭한다.
- 「표시광고법」이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지칭한다.
- 「공정거래관계법령」이란 상기의 법률과 시행령을 개별적 또는 집단적으로 통칭한다.
- 「법」 또는 「법령」이라 함은 협의로는 해당 법률만을 지칭하나, 광의로는 해당 법률의 시행령, 수입기관의 지침 및 고시를 포함한다.

3. CP 8대 구성요소

3.1 CP 기준과 절차 마련 및 시행

- 경쟁법 자율준수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에 대한 단호한 의지와 관심이 중요하며, 경쟁법의 엄격한 준수가 경영정책의 중요한 요소임을 행동강령이나 준수정책을 통해 공식적 문서로써 조직 내, 외부에 효과적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다.

3.2 최고경영진의 자율준수 의지 및 지원

- 자율준수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자율준수관리자에게 명확하고 충분한 책임과 권한이 부여되어야 하며, 조직 규모에 적합한 인적, 물적 자원이 제공되는 등 최고경영진의 전폭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3.3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 최고경영자의 적극적인 자율준수 의지가 표명되었다면 기업에서는 CP의 구축과 운영을 주도하고 최고이사결정기구와 직접 논의가 가능한 자를 임명해야 하는데, CP규정은

이를 자율준수관리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의무를 정의하고, 실행 가능한 절차로 구체화하여 최고경영진이 기업의 경영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보고하는 등 기업 내 공정거래 자율준수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3.4 자율준수편람의 제작·활용

- 자율준수편람은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의 필수 지침서이다. 조직은 자율준수관리자의 책임하에 세부지침서로서 활용가능한 정확한 정보를 담고 있는 자율준수편람을 제작해야 하고, 임직원들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작성·배포하여야 한다. 경쟁법을 위반할 가능성 및 위험도는 기업 또는 부서의 특성에 따라 각기 다르므로 자율준수편람은 기업 또는 부서 특성에 맞도록 작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3.5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자율준수교육 실시

- 기업 내부에 자율준수관행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임직원들에게 어떤 행위가 구체적으로 경쟁법에 저촉되는 것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며, 특히 최고경영자 및 임원(자율준수관리자 포함), 그리고 법위반행위의 가능성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들에게는 보다 집중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3.6 사전모니터링 시스템

- 자율준수프로그램의 핵심은 법위반행위의 예방과 감시에 있으므로 일상적인 업무에서 법위반가능성을 상시적으로 감시·감독하고 법위반 발생 시 이를 자율준수관리자 및 최고경영진 등에게 신속하게 보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3.7 제재 및 인센티브 시스템

- 법위반행위를 기업 스스로가 용인하지 않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법위반자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제재조치를 강구해야하며, 임직원의 자발적인 경쟁법 준수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인센티브 마련이 필요하다.

3.8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와 개선

- 자율준수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상황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프로그램 운영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4. CP의 법제화

4.1 CP의 확산을 위한 개정 공정거래법의 시행

-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하여 CP 제도, CP 운영 등급평가, CP 우수 운영기업에 대해 과징금 감경, 포상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2024. 6. 21. 시행).

관련 조항 - 공정거래법 제120조의2

-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을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하여 내부준법제도(CP)를 운영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그 운영상황에 대하여 평가("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를 할 수 있다.
-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를 받으려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를 받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평가 결과 등에 근거하여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감경이나 포상 또는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4.2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및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 운영고시의 제정

- 공정거래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CP 평가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한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령이 시행되었고, 구체적인 평가 기준, 과징금 감경 등의 기준·정도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이하 'CP 고시)」이 제정·시행되었다(각 2024. 6. 21. 시행).

CP 법제화 관련 개정 시행령 및 CP 고시 주요 내용

구분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령	CP 고시
평가기준 및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신청 자격요건: CP 1년 이상 운영 사업자 - 신청 시 구비 서류 - 고시에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 평가결과 및 등급 미부여 시 사유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P 도입요건(8가지) 규정 - 사업자등록증 사본, 실적보고서 등 - 평가지표 축소 조정 - 과징금 감경 가능 등급(AA, 80점) 이상인 경우, 심층면접 평가 추가
혜택부여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경기준: 평가등급 및 CP의 효과적 운영 여부 - 과징금 감경율: 최대 20% - 적용제외 등 세부사항: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결과, AA 이상 등급, 유효기간 1회 → AA(10%), AAA(15%) + 조사개시 전 범위반 탐지, 중단(5% 추가감경) - 시정명령, 과징금 감경 적용제외 요건 신설: ① CP 담당자의 위반행위 개입, ② CP 도입 전 발생 위반행위, ③ 가격담합 등 경쟁제한성이 큰 부당공동행위, ④ 고위 임원(이사 이상)의 위반행위 직접 관여

제2절

공정거래 관련 업무시 유의사항



I. 하도급관련 불공정거래행위	24
II. 경쟁업체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142
III. 계열사 간 부당한 내부거래의 금지	183
IV. 기업결합	220
V. 소비자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225

제2절 공정거래 관련 업무시 유의사항

I. 하도급관련 불공정거래행위 관련부서 : 현장, 공사, 외주구매, 실행예산

1. 하도급법의 적용대상 및 위반시 제재

1.1 하도급법의 목적 및 입법취지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대기업)와 수급사업자(중소기업)가 상호 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법 제1조).
- 하도급법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이 가능한 경제활동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수평적·협력적 관계를 통해 자주적이고 창의적인 사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거래상 경제적 약자의 위치에 있는 중소기업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한다.

하도급법의 특성

- 민법 내지 상법의 특별법
하도급법은 강행법규이므로 당사자간 합의로 법 적용을 배제하지 못한다.
- 공정거래법의 특별법
하도급거래에 관하여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6호(거래상지위 남용행위)를 적용하지 않는다.
-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특별법
건설산업기본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과 중복 적용가능. 단, 위 법 내용이 하도급법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하도급법이 우선적용된다.
- 하도급법은 국내법
발주자가 해외사업자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국내 사업자(법인)인 경우에만 하도급법이 적용된다. 또한, 외국인이 국내에 법인을 가진 경우에도 하도급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1.2 하도급법의 구조

- 하도급법은 크게 목적 및 적용대상, 원사업자의 준수 의무사항 및 금지사항, 발주자의 준수 의무사항, 수급사업자의 준수 의무사항,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내용 및 절차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36개조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규제 내용은 크게 4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원사업자의 의무사항, 원사업자의 금지사항, 발주자의 의무사항, 수급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도급법 체계도

<p>목적 및 적용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 - 적용업종: 제조, 수리, 건설, 용역 - 적용대상: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거래 및 중소기업과 중소기업간 거래 - 적용기간: 거래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단, 3년 이내 신고 시 거래종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도 조사개시가 가능하며,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 끝난 날부터 7년 이내) 		
<p>하도급 거래의 규제내용</p>	<p>원사업자의 준수 의무사항 (10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면교부, 서류보존의무 - 내국신용장개설의무 -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 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의무 -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급금 지급의무 - 검사 및 검사결과 통지의무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무 - 설계변경, 물가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및 통지 의무 -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
	<p>원사업자의 금지사항 (13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당특약 설정금지 -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 부당반품 금지 - 물품구매대금 부당결제 청구금지 -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금지 - 부당한 경영간섭금지 - 탈법행위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금지 - 부당한 위탁취소 금지 - 감액금지 -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 부당한 대물지급 금지 - 보복조치 금지

하도급 거래의 규제내용	발주자의 준수의무사항 (1개)	-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무
	수급사업자의 준수의무사항 (3개)	- 서류보존의무 - 신의성실의 원칙 준수 - 원사업자의 위법행위 협조거부

1.3 관련 규정

하도급 관련 규정에는 하도급법과 하도급법을 뒷받침하고 있는 하도급법 시행령, 공정위에서 필요에 따라 고시하는 각종 고시와 심사지침들이 있다.

(1) 법령

-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고시·지침 등

-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
-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가이드라인 부당한 위탁취소, 수령거부 및 반품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 부당특약 고시, 심사지침
-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
- 기술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감액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 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할인율 고시
- 용역위탁 중 역무의 범위 고시
- 용역위탁 중 지식·정보성과물의 범위 고시
- 제조위탁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범위 고시
-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 지정고시
- 하도급법상 요구가 금지되는 경영상 정보의 종류 고시
-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지침
-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한 고시
-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하도급분야)

1.4 적용 범위

- 하도급법은 특별법이기 때문에, 하도급법상 규정된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의 요건을 충족하고, 하도급법상 규정된 위탁의 범위(제조, 수리, 건설, 용역)에 포함되어야 하며, 거래 종료후 3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하도급법이 적용된다(단, 3년 이내 신고시 거래종료일로부터 3년 경과 후에도 조사 개시가 가능하며, 기술탈취 및 유용의 경우 7년).

1.4.1 법적용 대상 사업자

- 하도급법상 하도급거래에 있어 물품의 제조·수리 또는 시공·용역을 수급인에게 도급(일의 완성을 대가로 보수를 지급하는 계약)하는 자를 발주자, 발주자로부터 도급 받아 중소기업에게 하도급을 주는 사업자를 원사업자, 원사업자로부터 하도급 받은 중소기업자를 수급사업자라 한다(하도급법 제2조 제2항, 제3항). 또한, 발주자 없이 물품의 제조·판매·수리 등을 위하여 당사가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도급을 주는 경우도 하도급이라고 한다.
 -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하도급거래'는 도급받은 것을 다시 위탁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원사업자가 발주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도 포함되므로, 법률의 명칭과는 달리 일반적으로 흔히 말하는 하도급관계 뿐만 아니라 원도급관계도 규제하는 것이다(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0다61435 판결 참조).
- 하도급법은 재하도급을 금지하지 않기 때문에, 하도급 받은 수급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재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당사가 발주자가 된다.

(1) 수급사업자(법 제2조 제3항)

- 수급사업자는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을 말하며(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중소기업협동조합도 포함한다.

중소기업 해당여부

- 중소기업은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이고, 중소기업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평균매출액 이하여야 한다.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제외되고,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이 최다 출자자로서 30% 이상 지분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된다.
- ※ 중소기업의 해당여부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sminfo.mss.go.kr/>)에서 검색 가능

(2) 원사업자(법 제2조 제2항)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 아닌 사업자(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기업, 중견기업 포함)
- 중소기업인 수급사업자보다 직전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건설위탁의 경우,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공시된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이 큰 중소기업

- 다만, 소규모 중소기업은 제외(제조·수리위탁의 경우, 연간매출액이 30억 원 미만, 건설위탁의 경우 시공능력평가액 45억 원 미만, 용역위탁의 경우, 연간매출액이 10억 원 미만인 경우 소규모 중소기업에 해당함)
- 하도급법상 중견기업의 경우, 대규모 중견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이거나, 직전 연간매출액 2조원 초과)과 소규모 중견기업(업종별로 직전 연간매출액이 800억원~3,000억원 미만)으로 나뉘어진다. 대규모 중견기업과 소규모 중견기업이 하도급 관계가 형성될 경우, 소규모 중견기업은 대금 지급 관련 규정에 한해서 수급사업자로 보호받는다(제13조 제11항, 2016.1.25. 시행). 즉, 소규모 중견기업이 대규모 중견기업으로 부터 하도급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하도급 대금 지급 규정(60일 대금 지급)이 적용되어 수급사업자로 보호받는다.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이 아닌 사업자(대기업, 중견기업)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중소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인 수급사업자보다 직전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건설위탁의 경우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이 큰 중소기업(다만, 소규모 중소기업은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사업자보다 직전 연간매출액(건설위탁의 경우 시공능력평가액)이 적은 중소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규모 중견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이거나, 직전 연간매출액 2조 초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규모 중견기업 (업종별로 직전 연간매출액이 800억원~3,000억원 미만) ※ 대금 지급 규정만 해당

업무시 주의사항

- “연간매출액”이라 함은 사업자의 하도급계약 체결시점의 직전사업연도의 매출총액을 말하며 이의 판단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작성된 감사보고서의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원칙으로 한다.
- 공정위 하도급 조사시 기본이 되는 것은 조사 대상 범위의 확정이므로, 조사 대응 과정에서 각 사업자가 대기업인지 혹은 중소기업인지 등, 하도급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 수급사업자의 구분을 평소에 명확히 실시하지 않을 경우, 하도급 조사에 대비해 선조치를 하면서 주지 않아도 될 지연이자 혹은 대금 지급을 불필요하게 선지급하거나 조사 범위의 확대등으로 인한 업무담당자의 업무 Loss발생, 조사시 낙장 대응으로 인해 공정위로부터 불필요한 오해를 받게 된다.

1.4.2 법적용 대상 거래

- 하도급법에서 정한 하도급거래란 “원사업자가 공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 수리위탁, 건설위탁, 용역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 용역위탁, 건설위탁, 수리위탁**을 받은 것을 공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을 하고, 이를 위탁 받은 공급사업자가 위탁 받은 것을 제조 또는 수리하여 이를 원사업자에게 납품, 인도, 제공하고 그 대가(하도급대금)를 수령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하도급법 제2조 제1항 참조).
- 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에 대한 거래 의존성에 착안하여 “그 업에 따른 위탁”을 하는 경우를 “하도급거래”로 보고 있다. 업(業)으로 한다는 의미는 경제적 대가를 목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해당 행위를 수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건설위탁의 경우 관련 자격증 소지 여부 고려한다(관련 법에 따라 자격이 필요한 경우).

(1) 제조위탁

- “제조위탁”이란 물품의 제조·판매·수리 및 건설에 해당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업에 따른 물품의 제조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하며, ‘그 업에 따른 물품’의 범위는 『제조위탁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범위 고시』에 규정된다(하도급법 제2조 제6항 참조).
- 규격품·표준품을 구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조위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단순구매). 그러나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공급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거래를 대상으로 하므로, 규격품·표준품일지라도 추가 가공이 있는 경우에는 제조위탁에 해당한다.
- 위탁받은 사업자가 제조설비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위탁받은 물품의 제조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에는 제조위탁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조위탁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범위 - 건설공사 관련

- 건설에 소요되는 시설물을 제조위탁 하는 경우로서, 규격 또는 성능 등을 지정한 도면, 설계도, 사양서 등에 의해 특수한 용도로 주문 제작한 것: 방음벽, 갑문, 수문, 가드레일, 표지판, 주차기, 엘리베이터 등
- 건축공사에 설치되는 부속시설물로서 규격 등을 지정한 도면, 사양서 및 사양서 등에 의해 주문한 것: 주방가구, 신발장, 거실장, 창틀 등
- 건설자재·부품에 대하여 규격 등을 지정한 도면, 사양서 및 사양서 등에 의해 주문한 것
 - ① 거래관행상 사양서 등 성능, 품질, 규격 등을 지정한 주문서가 없더라도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납품하도록 제조를 위탁하는 것은 해당됨: 레미콘, 아스콘 등
 - ② 규격·표준화된 자재라 하더라도 특별히 사양서, 도면, 사양서 등을 첨부하여 제조위탁 하는 경우에는 포함됨
 - ③ 단순한 건설자재인 시멘트, 자갈, 모래는 제외되나 규격·품질 등을 지정하여 골재 등을 제조위탁하거나 석산 등을 제공하여 임가공위탁 하는 경우는 해당됨

(2) 건설위탁

- “건설위탁”은 건설사업자가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위탁하거나 건설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른 경미한 공사)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하도급법 제2조 제9항).
- 건설위탁이 아닌 경우(예시)
 - 무면허건설업자와의 거래(경미한 공사는 제외)
 - 전기공사업 면허사업자가 해당 면허가 없는 전문건설업자와 거래
 - 건설장비임대차(포크레인 등)

건설위탁의 범위

-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사업자의 건설위탁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의 등록 등)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또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시공자격이 있는 공종에 대하여 당해 공종의 시공자격을 가진 다른 등록업자에게 시공위탁 한 경우
 - 건설사업자가 시공자격이 없는 공종을 부대공사로 도급받아 동 공종에 대한 시공자격이 있는 다른 사업자에게 시공위탁 한 경우
- 전기공사업자의 건설위탁
 - 「전기공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사업자가 도급받은 전기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기공사업 등록을 한 다른 사업자에게 시공위탁 한 경우
- 정보통신공사업자의 건설위탁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도급받은 정보통신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한 다른 사업자에게 시공위탁 한 경우
- 소방시설공사업자의 건설위탁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제 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을 한 다른 사업자에게 시공위탁 한 경우
- 주택건설 등록업자의 건설위탁
 -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등록사업자가 그 업에 따른 주택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공자격이 있는 다른 사업자에게 시공위탁 한 경우
- 환경관련 시설업자의 건설위탁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 「하수도법」 제51조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등록업자가 그 업에 따른 해당 환경전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공자격이 있는 다른 사업자에게 시공위탁 한 경우

■ 에너지관련 건설사업자의 건설위탁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7조에 따른 등록업자, 「도시가스사업법」 제12조에 따른 시공자가 그 업에 따른 해당 에너지 관련 시설공사를 시공자격이 있는 다른 사업자에게 시공위탁 한 경우

■ 경미한 공사의 건설위탁

-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건설사업자 및 「전기공사사업법」상의 공사사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및 전기공사사업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공사를 상기 법령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 자체 발주공사의 건설위탁

-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파트신축공사 등 건설공사를 자기가 발주하여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3) 용역위탁

- “용역위탁”은 지식, 정보성과물의 작성 또는 역무의 공급(이하 “용역”이라 한다)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이하 “용역업자”라 한다)가 그 업에 따른 용역 수행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하도급법 제2조 제11항).

용역위탁의 범위

■ 용역위탁 중 역무의 범위

1. 「물류정책 기본법」 제2조 제2호 규정에 의한 물류사업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다른 물류업자에게 아래와 같은 활동을 위탁하는 경우
 - 「물류정책 기본법」 제2조제2호 규정에 의한 화물운송업, 물류시설 운영업, 물류서비스업의 활동
 - 「항만운송 사업법」 제2조제1항 규정에 의한 항만운송 및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용역업·물품공급업·선박급유업(船舶給油業) 및 컨테이너수리업의 활동
2. 「건축물분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분양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분양업무 활동을 위탁하는 경우
3. 「건축법」 제2조제1항제16호의2 규정에 의한 건축물(주거용, 비주거용, 사업시설을 포함한다)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아래와 같은 활동을 위탁하는 경우
 - 청소, 폐기물의 수집 및 처리, 운반 등의 활동을 위탁하는 경우
 - 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 활동 (조경수 및 관목의 보호를 위한 활동을 포함한다)
4.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아래와 같은 활동을 위탁하는 경우

- 수요자의 요구에 의하여 컨설팅, 요구분석, 시스템통합 시험 및 설치, 일정기간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보수(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정보프로그램(상용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의 운영 및 유지·보수 활동을 포함한다) 등의 활동
 - 전산자료처리, 호스팅 및 관련서비스,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 또는 컴퓨터의 기억장치에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이를 검색 또는 제공하는 등의 활동
5. 광고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아래와 같은 활동을 위탁하는 경우
 - 광고와 관련된 판촉, 행사, 조사, 컨설팅, (사진)촬영 등의 활동
 - 광고와 관련된 편집, 현상, 녹음, 촬영 등의 활동 수급사업자가 편집, 현상, 녹음, 촬영 등의 활동을 별개의 단위로 위탁받은 경우, 동 고시의 적용을 받으며, 편집, 현상, 녹음, 촬영 등의 활동을 포함한 TV, 홍보영상, 라디오, 신문, 잡지, 온라인광고 등의 광고제작·편집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용역위탁 중 지식·정보성과물의 범위 고시」의 적용을 받는다.
 - 전시 및 행사와 관련된 조사, 기획, 설계, 구성 등의 활동
 6. 「공연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공연 또는 공연의 기획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편집, 현상, 녹음, 촬영, 음향, 조명, 미술 등의 위탁을 하는 활동
 7.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측량, 지질조사 및 탐사 등의 활동을 위탁하는 경우
 - 「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
 - 「엔지니어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 중 설계
 - 측량, 지질조사 및 탐사, 지도제작
 8. 이상에서 열거한 역무의 공급을 위탁받은 사업자가 위탁받은 역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행위

■ 용역위탁 중 지식·정보성과물의 범위

1. 정보프로그램 작성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아래와 같은 성과물의 작성을 위탁하는 경우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 컴퓨터, 통신, 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장치에 대하여 명령·제어·입력·처리·저장·출력·상호작용이 가능하게 하는 지시·명령(음성이나 영상정보 등을 포함한다)의 집합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술서(記述書)나 그 밖의 관련 자료(패키지 소프트웨어(게임소프트웨어 포함),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의 개발·공급 및 특정고객의 주문에 의하여 주문형 소프트웨어를 개발·공급(데이터베이스 및 웹사이트의 개발·공급을 포함한다) 및 상용소프트웨어 구매를 수반한 소프트웨어 설계·개발을 포함한다),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제안서·마스터플랜, 시스템구축 관련 설계(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 시스템개발(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설치 등 및 상용소프트웨어 구매를 수반한 시스템개발을 포함한다)

- 「저작권법」 제2조제16호 규정에 의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
- 2. 영화, 방송프로그램, 그 밖에 영상·음성 또는 음향에 의하여 구성되어지는 성과물의 작성 등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아래와 같은 성과물의 기획·편성·제작 등을 위탁하는 경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규정에 의한 영화 및 동법 제2조제12호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규정에 의한 게임물
 - 「방송법」 제2조제17호 규정에 의한 방송프로그램(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데이터방송, 이동멀티미디어방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을 포함한다)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규정에 의한 음원, 동법 제2조제4호 규정에 의한 음반, 동법 제2조제5호 규정에 의한 음악파일, 동법 제2조제6호 규정에 의한 음악영상물, 동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음악영상파일
 - TV, 홍보영상, 라디오, 신문, 잡지, 온라인광고 등의 광고제작·편집물(콘티, 썸네일 등의 작업 및 편집, 음향 등 후반작업(Post Production)을 포함한다)
 - 전자상거래 콘텐츠
- 3. 문자·도형·기호의 결합 또는 문자·도형·기호와 색채의 결합으로 구성되어 지는 성과물(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작성 등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아래와 같은 성과물의 기획·편성·제작 등을 위탁하는 경우
 - 「디자인보호법」 제2조제1호 규정에 의한 디자인
 - 「상표법」 제2조제1호 규정에 의한 상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규정에 의한 지도
 - 「저작권법」 제2항제17호 규정에 의한 편집물
 - 설계도면
- 4.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기술 서비스 및 연구 및 개발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아래와 같은 활동을 위탁하는 경우
 - 기술시험(결과)서, 검사보고서, 분석보고서, 평가보고서 등의 작성
 - 번역물 등의 작성
 - 시장 및 여론조사보고서 등의 작성
- 5. 이상에서 열거한 지식·정보성과물의 공급 및 작성을 위탁받은 사업자가 위탁받은 역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업무상 주의사항! 롯데건설의 하도급 관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개념 상세

* 원사업자는 목적물의 제조·건설 등을 위탁, 수급사업자는 이를 수행하여 납품·인도 후 대가를 수령



* 발주자 :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 / 원사업자 :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자 / 수급사업자 : 원사업자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

수급사업자란 (중소기업 + 일부 중견기업)

구분	정의	하도급법 적용 여부		비고
중소기업	자산총액 5,000억 미만인면서 매출액이 1,000억 이하인 사업자 (단, 공공기관, 해외 법인 제외)	하도급법 적용		렌시스에서 "매출액", "총자산금액" 확인 (계약 체결 당시 직전연도)
중견기업	중소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아닌 사업자 * 매출액 3천억원 미만만 하도급법 적용	매출액 3,000억 미만	하도급법 일부 적용(대금지급, 보복조치금지 등 일부 조항)	
		매출액 3,000억 이상	하도급법 미적용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공정거래위원회가 상호출자를 할 수 없도록 지정한 기업 집단 (대기업)	하도급법 미적용		기업집단포털 검색 (https://www.egroup.go.kr)

1.4.3. 거래종료일의 의미

- 거래종료일이란 ① 제조·수리·지식정보성과물 위탁의 경우 목적물을 납품 또는 인도한 날, ② 용역위탁의 경우 역무 공급을 완료한 날, ③ 건설위탁의 경우 공사 완공일을 의미한다.

1.5 위반시 제재

1.5.1 하도급 사건처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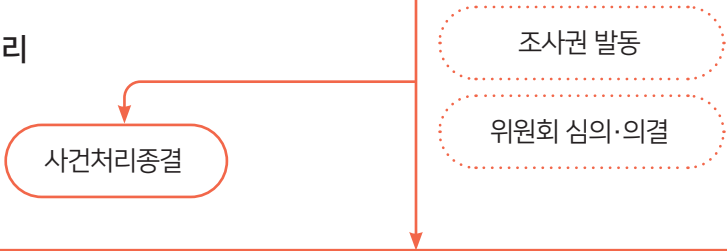
(1) 인지 단계



(2) 조사 단계



(3) 사건처리



법위반사실 없거나 위반행위 증거없음	적용요건 흠결, 신고취하, 위반여부 판단곤란	위반행위 시정조치 이행확보곤란	법위반
▼	▼	▼	▼
무혐의	심사절차종료	종결처리	시정명령

(4) 하도급법상 의무이행확보수단(하도급법 실효성확보수단)

위반행위 경미, 시정조치 실익없음	위반정도가 중대하고 위반동기가 고의적	악질적이나 상습적인 경우	지나치게 악질적이나 상습적인 경우	시정명령 불이행 등
▼	▼	▼	▼	▼
경고	공표명령	과징금	입찰참가제한 영업정지	고발

1.5.2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분쟁조정(하도급법 제24조)

구분	내용
협의회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설치(하도급법 의무사항)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및 9개 사업자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개사업자 단체 : 중소기업중앙회, 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소방시설공사협회, 엔지니어링협회, 소프트웨어산업협회, 대한건축사협회, 광고단체연합회
조정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쟁조정협의회에 직접 조정신청(원수급사자, 조합) 된 사건 -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된 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 직전사업연도 매출액 1조 5천억원 미만등 · 제조·수리·용역: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1조 5천억원 미만 *분쟁조정기간: 조정 요청받은 날로부터 60일(분쟁당사자 동의시 90일) *다만, 하도급 대금 관련 신고는 분쟁조정대상임
조정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쟁조정성립: 공정위의 시정조치로 간주 - 분쟁당사자는 조정합의 이행 사항을 공정위에 제출 - 공정위의 시정조치 면제는 합의 이행 결과를 확인한 후에 결정 - 분쟁조정 불성립: 공정위가 사건조사 처리

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하도급법 제24조의6)

-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조서 작성 의무(제1항)
 - 협의회 위원, 분쟁당사자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 조정조서 작성
 - 분쟁조정당사자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봄
- 분쟁당사자 조정조서 작성 요구 가능(제2항)
- 협의회의 조정절차 개시전 분쟁당사자 스스로 조정하고 조정조서의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 분쟁조정협의회는 그 조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함
- 분쟁당사자간의 조정 합의 사항 이행 및 이행결과 제출 의무(제3항)
 - 분쟁당사자는 조정조서의 내용을 이행하고, 공정위에 이행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시정조치 및 시정권고 면제(제4항)
 -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합의가 이루어지고 분쟁당사자가 그 합의된 사항 이행한 경우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및 제25조의5 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 면제
-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 재판상 화해 효력 부여(제5항)

1.5.3 하도급 위반 제재 유형

행정적 제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정조치: 시정권고, 특약 삭제나 수정, 시정명령(작위, 부작위 등) -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명령 - 과징금부과: 하도급대금의 2배이하(법위반 금액 비율에 따라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사업자가 공정위의 조사개시일 또는 지급요청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지급을 자진시정한 경우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을 수 있음 -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법위반 3회 이상 & 벌점 4점 초과) - 입찰제한(3년간 벌점 5점 초과), 영업정지 요청(3년간 벌점 10점 초과)
행정질서벌 (과태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태료 부과: 2억원 이하 - 조사 불출석자·자료제출명령 불이행자: 사업자 1억원 이하, 개인 1천만원 이하 - 조사거부·방해·기피: 사업자 2억원 이하, 개인 5천만원 이하 - 하도급대금 연동 미기재·건설하도급 입찰결과 미공개: 1천만원 이하 - 서면실태 조사에 따른 자료 미제출 또는 허위제출자: 사업자 500만원 이하
형사적 제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도급대금 2배 이하의 벌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사업자의 의무사항 및 금지사항 위반행위 -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위의 시정명령 불이행 · 경영간섭 · 탈법행위 - 3억원 이하의 벌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복조치 - 원칙적 고발(법위반 3회 이상 & 벌점 4점 초과)의 경우) - 양벌규정: 행위자 및 법인 처벌 - 공정위가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더라도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회적 파급효과, 수급사업자에 미친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고발요청을 받은 공정위 위원장은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함
민사적 제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지청구 - 3배 손해배상 책임(4대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당대금결정(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금지 및 감액 금지) · 부당위탁취소(부당한 위탁취소 및 수령거부 금지) · 부당반품 금지 · 기술자료 유용 금지 - 5배 손해배상 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복조치의 금지

(1) 벌점의 부과(법 제26조)

- 벌점은 법 위반행위가 속하는 위반유형에 대하여 각각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를 산출하고 (같은 유형에 속하는 법위반행위에 대하여 서로 다른 유형의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가장 중한 시정조치 유형의 점수만 반영), 각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를 더하여 정하며, 시정조치유형별 벌점점수는 다음과 같다.

0.25점	경고(서면직권실태조사에서 발견된 법 위반 혐의사항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진시정요청에 따른 경우)
0.5점	경고(신고 또는 직권인지에 따른 경우)
1.0점	시정권고, 시정명령(자진시정한 원사업자에 대한 재발방지명령)
2.0점	시정명령
2.5점	과징금(부당한 대금결정, 대금감액, 기술유용, 보복조치 시 2.6점)
3.0점	고발(부당한 대금결정, 대금감액, 기술유용, 보복조치 시 5.1점)

감경기준

유형	점수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직전 1년간)	- 2점(계약의 90% 이상) - 1점(계약의 70% 이상 ~ 90% 미만)
현금결제(직전 1년간)	- 1점(현금결제비율 100%) - 0.5점(현금결제비율 80% 이상)
건설하도급 입찰시 입찰 정보 공개 우수	- 1점(입찰정보공개비율 80% 이상) - 0.5점(입찰정보공개비율 50% ~ 80% 미만)
자율준수 프로그램(CP) 평가 우수업체	- 2점(최우수), 우수(1점)
공정위 하도급거래 평가 모범업체 선정	- 3점
협약이행평가 양호 등급 이상	- 3점(최우수) - 2점(우수) - 1점(양호)
가격 변동분이 하도급대금에 반영되는 비율이 50% 이상인 연동계약 체결	- 1점(체결 비율 50% 이상) - 0.5점(체결비율 10%이상~50% 미만)

하도급대금증액비율(연동제)	- 1.5점(증액비율 10% 이상) - 1점(증액비율 5% 이상~10%미만) - 0.5점(증액비율 1%이상~5%미만)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 혹은 사업자 간 합의를 통한 직불(발주자 -> 수급사업자)	- 1점(하도급대금 비율 50% 이상) - 0.5점(하도급대금 비율 50% 미만)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구제	- 벌점의 최대 50%

* 벌점 경감시 각 항목마다 1회만 경감함

* 벌점 누산점수 산정: 직전 3년간(벌점 부과점수 - 벌점 경감점수)

- 직전 3년: 신고사건은 신고 접수일, 직권조사는 조사계획 발표일 또는 조사공문 발송일 중 뒤의날, 상습법 위반사업자 명단 공표는 공표일 속하는 연도 1월 1일 기준 역산
- 직전 3년간 법 위반 횟수가 3회 이상이고, 벌점 4점 초과 시: 상습법위반자 명단 발표
- 직전 3년간 벌점 5점 초과 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 직전 3년간 벌점 10점 초과 시: 영업정지 요청

(2) 형사적 제재(법 제30조, 제31조, 제32조)

- 하도급법상 벌칙에는 형벌인 벌금형이 있고, 행정질서벌인 과태료처분이 있다. 즉, 형벌은 하도급법상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정착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실제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제재이며, 과태료는 조사의 거부·방해 등 하도급법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규정하고 있는 형식적인 절차규정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 다만, 벌금부과에 관한 권한은 사법부에 있는 것이므로 검찰의 기소에 의하여 법원에서 벌금액을 확정하여 부과한다(약식기소의 경우 대개 검찰이 청구한 금액으로 결정됨).

양벌규정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벌칙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科)한다(하도급법 제31조).
- 양벌규정이란, 법위반 행위를 직접 행한 행위자 외에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도 처벌하는 것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법인의 경우 법률에 의하여 법인격이 부여된 것에 불과하므로 징역형, 벌금형 등의 형벌을 받을 수가 없어 범죄능력이나 수형능력이 부인된다.

- 따라서, 법인이 법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도 실제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예외적으로 법률에 의하여 양벌규정을 두는 경우에는 법인 자체에도 벌금형은 부과할 수 있다.
- 하도급법처럼 법인에 대해 양벌규정을 둔 취지는 특히 사전에 법 위반행위를 억제할 필요가 있고,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강력히 규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벌금

① 다음에 해당하는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30조 제1항).

- 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규정(제3조)을 위반한 자
- 부당한 특약의 금지 규정(제3조의4)을 위반한 자
-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규정(제4조)을 위반한 자
-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규정(제5조)을 위반한 자
- 선급금의 지급 규정(제6조)을 위반한 자
- 내국신용장의 개설 규정(제7조)을 위반한 자
- 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규정(제8조)을 위반한 자
- 검사의 기준·방법 및 시기 규정(제9조)을 위반한 자
- 부당반품의 금지 규정(제10조)을 위반한 자
- 감액금지 규정(제11조)을 위반한 자
-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의 금지 규정(제12조)을 위반한 자
-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규정(제12조의2)을 위반한 자
-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규정(제12조의3)을 위반한 자
-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규정(제13조)을 위반한 자
-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규정(제13조의2)을 위반한 자
- 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규정(제16조의2 제10항)에 위반한 자

②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30조 제2항).

- 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규정(제18조)을 위반한 자
- 보복조치의 금지 규정(제19조)을 위반한 자
- 탈법행위의 금지 규정(제20조)을 위반한 자
-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제25조)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③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30조 제3항).

- 제27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감정을 거짓으로 한 자

(3) 과태료의 부과(제30조의2)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경우 1억원 이하,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종업원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법 제30조의2 제1항).
 -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의견 청취를 위한 출석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
 -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에게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경우 2억원 이하,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종업원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법 제30조의2 제2항).
-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시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원사업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 그 원사업자의 임원, 종업원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법 제30조의2 제3항).
- 하도급거래에 관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하도급대금 연동 규정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한 원사업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법 제30조의2 제4항).
-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미기재하거나, 건설하도급 입찰결과를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린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법 제30조의2 제5항).
- 하도급 서면실태조사에 따른 자료 미제출 또는 허위제출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법 제30조의2 제6항).
- 공정위 심판정 질서유지명령 미행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법 제30조의2 제7항).

(4) 손해배상책임(법 제35조)

- 기존에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을 탈취하여 유용한 경우에 적용하였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원사업자가 ①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② 부당한 위탁취소, ③ 부당반품, ④ 감액금지, ⑤ 보복조치 행위를 통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실제 발생한 손해의 3배 범위 내에서, ① 기술자료 유용 행위를 통하여 손해를 가한 경우 5배 범위 내에서(2024. 8. 28. 시행)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도(법 제35조의2)를 도입하여 손해 및 손해액 입증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영업 비밀을 이유로 법원의 자료 제출 명령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다. 한편 소송 과정에서 영업 비밀이 유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원의 비밀유지명령

조항(법 제35조의3) 및 관련 절차를 마련하여, 준비 서면 등에 영업 비밀이 포함되는 경우 법원의 명령으로 자료를 소송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당사자 이외의 자에게 공개하는 것 등을 금지할 수 있게 하였다.

(5) 과징금 부과(법 제25조의3)

- 일반원칙

- 위반행위의 중대성과 파급효과를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여부를 결정한다.

- 원칙적 부과대상

-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해 수급사업자의 수나 그 피해금액이 많은 경우, 위반행위의 수가 많거나 과거 범위반전력이 많아 향후 범위반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다만, 범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경우로서 공정거래협약 평가 우수등급 이상에 해당되는 자가 ① 자율준수노력, ② 외부 법률 자문 등 위법행위를 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으나 예상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인해 위반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③ 시행령 별표 2의 제1호나목에 해당되는 경우(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개시된 날 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미지급금의 지급에 관한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경우) 또는 ④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개시 이전에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점검하여 확인한 범위반행위에 대해 스스로 시정한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과징금액 산정 단계

■ 1단계: 기본과징금

- 하도급 대금의 2배에 위반사업자의 위반금액의 비율을 곱한 금액에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별로 정하는 부과기준율(20%~80%, 다만 50% 미만인 부과율을 곱하여 도출된 기본산정기준이 범위반행위로 인해 심의일 당시 잔존하는 불법적 이익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잔존하는 불법적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본산정기준으로 함)을 곱하여 산정.
-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 기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따라 판단하되, 위반행위의 유형, 피해발생의 범위, 수급사업자의 경영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

중대성의 정도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2 이상	60% 이상 80%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1.4 이상 2.2 미만	40% 이상 60%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4 미만	20% 이상 40% 미만

- 위반금액의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금액의 범위 내에서 기본산정기준을 도출한다.

중대성의 정도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2 이상	90억원 이상 20억원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1.4 이상 2.2 미만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4 미만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위반행위 중대성 평가 요소 및 반영 비중>

구분	행위유형	피해발생범위	피해정도규모	부당성
기술유용·기술자료요구·보복조치·탈법행위	40%		20%	40%
원사업자의 작위의무 위반 ¹	30%	30%		40%
그 외 원사업자의 금지의무 위반 등 ²	30%	20%	20%	30%

1. 서면 발급 및 보존, 신용장 개설, 수령증명서 발급, 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 제공,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협의 개시 의무 등
2. 부당 대금 결정, 위탁 취소, 감액, 부당 특약, 구매 강제, 부당 결제 청구, 경제적 이익 요구, 대물 변제, 경영 간섭 등

■ 2단계: 과징금의 조정(행위자요소, 고의과실 여부, 자진시정 여부 등)

- 1차 조정 : 위반행위의 횟수, 피해수급사업자의 수를 고려하여 기본과징금의 50% 이내에서 가중 또는 감경
- 2차 조정 : 위반사업자의 고의·과실, 위반행위의 성격과 사정 등의 사유를 고려하여 1차 조정된 기본 산정기준의 50% 범위에서 가중 또는 70% 범위에서 감경
- *감경: 위반행위 자진 시정(10~50%), 조사협조(10~20%)
- *가중: 보복조치(20%)

■ 3단계: 부과 과징금의 결정

-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그 밖에 시장경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차·2차 조정 절차를 거쳐 산출된 금액을 감액 또는 면제할 수 있음

(6) 4대 불공정 하도급 신고 포상금제

-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 행위
 - 4대 핵심 불공정 하도급 행위인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법 제4조), 감액(법 제11조), 부당발주취소(법 제8조), 부당반품(법 제10조), 기술유용(법 제12조의3 제4항) 행위이다.

- 신고 포상금 수령 적격
 - 위법행위를 신고하고 신고된 사실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 ① 법 위반행위를 한 원사업자,
 - ② 법 위반행위를 한 원사업자의 임직원으로서 그 법 위반행위에 관여한 임직원
 - ③ 해당 법 위반행위에 따라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
 - ④ 해당 법 위반행위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임직원
-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 등
 - 부과 과징금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본 지급액으로 하고, 증거 수준을 단계로 구분(지급율 설정)하여 지급 기준을 정하는 방식으로 관련고시에 규정할 계획이다.
- 지급 시기
 - 신고된 행위와 관련하여 법 위반 행위로 의결(재결)한 날부터 3개월 내에 지급한다.

(7) 하도급 대금 자진 시정 시 과징금, 벌점 감면

- 원사업자가 공정위의 조사개시일 또는 지급요청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 지급을 자진시정한 경우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을 수 있다.
- 하도급 대금 미지급 사업자가 공정위의 조사가 개시된 날 또는 공정위로부터 미지급금의 지급에 관한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함에 따라 경고조치를 받는 경우 그 경고에 대한 벌점은 0점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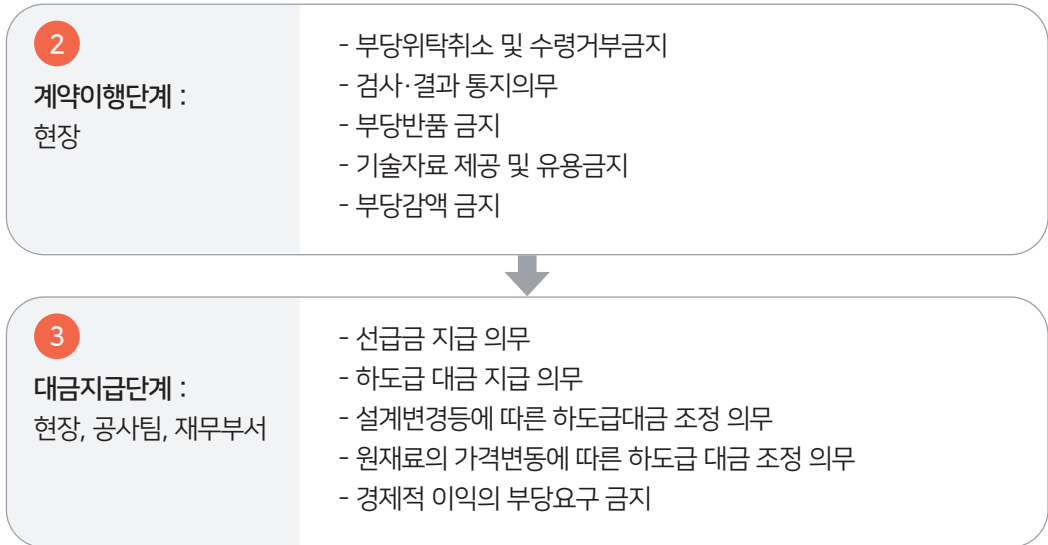
2. 업무단계별 법 위반 유형 및 업무시 유의사항

- 하도급거래는 계약체결, 계약이행, 대금지급의 3단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단계별 주요 준수의무사항과 금지사항은 아래와 같다.

업무단계별 하도급법의 주요 사항

<p>1</p> <p>계약체결 단계 : 외주구매, 현장, 공사팀, 사업팀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면교부 의무(서류보존의무 포함) - 부당특약 금지 -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 금지 - 계약이행보증 - 건설하도급 대금지급보증 -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의 체결
--	---





2.1 계약체결단계시 하도급법상의 규제내용

2.1.1 서면교부 및 서류보존의무(하도급법 제3조)

(1) 개념

- 서면 교부 의무는 당사자간의 계약내용을 명백히 하고, 향후 분쟁발생시 사실확인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함으로써 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발생하는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함과 동시에 당사자간 사후분쟁 예방 필요성 때문에 공정위에서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2) 원칙

① 중요 사항(법정기재사항)을 기재한 서면 발급

원사업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법정기재사항(7가지)을 작성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위탁업무를 착수하기 전에 교부하여야 한다. 교부된 서면에는 회사 또는 대표자 명의의 기명날인(서명)이 되어 있어야 한다.

법정기재사항

-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목적물의 내용(수량, 단가 포함)
- 목적물을 원사업자에게 납품 또는 인도하는 시기 및 장소
- 목적물의 검사방법 및 시기(역무의 위탁시 제외)
-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의 제조·수리 또는 시공에 소요되는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 수량, 제공일,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 하도급대금 연동의 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및 주요 원재료와 가격의 기준 지표, 하도급대금 연동의 조정요건 및 산식 등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
-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 하도급법에서는 발주서면의 양식을 정하고 있지 않으나, 발주 시에 하도급법상 요구되는 구체적 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되거나 기본 계약서를 보완하는 서면을 작성하여 교부

② 서면 발급 시점

원칙적으로 수급사업자와 위탁 계약의 주요 내용을 합의하여 정한 후 지체없이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최소한 수급사업자가 위탁업무를 시작하기 전 서면으로 발급하여야 한다.

- 제조위탁: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 수리위탁: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수리행위를 시작하기 전
- 건설위탁: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
- 용역위탁: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

발급대상 서면

단계	발급 서면의 종류
거래 개시 (하도급법 제3조)	1. 하도급계약서(추가·변경계약서 포함)(제3조 제1항) 2. 하도급계약 확인서면(제3조 제9항, 하도급계약 추정제도 관련) - 수급사업자로부터 구두발주 내용에 대해 확인요청을 받았을 경우, 인정 또는 부인(否認)의사를 서면으로 회신
거래 과정 (하도급법 제8조-제16조)	1. 목적물 등 수령증명서(제8조 제2항) 2. 검사결과 통지서(제9조 제2항) 3. 감액서면: 감액 시 그 사유와 기준, 물량, 금액, 감액방법 등 기재(제11조 제3항) 4. 기술자료 요구서: 기술자료 요구 시 명칭 및 범위, 목적, 비밀유지, 권리귀속 관계, 기술자료 사용기간, 반환 또는 폐기방법 대가 등 기재(제12조의3 제2항) 5.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변경 내역(증액 또는 감액) 통지서(제16조 제2항)

③ 보존대상 서면 및 보존 기간(3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의무적으로 하도급법상 교부하여야 하는 서면 및 하도급 거래의 중요사항을 담은 서면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단, 기술자료 관련 서류(기술자료 제공 요구서 등)은 거래가 끝난 날부터 7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번호	보존 대상 서면	비고
1	하도급계약서(추가·변경계약서 포함)	하도급법 3조 1항
2	하도급계약 확인서면	하도급법 3조 9항
3	목적물등 수령증명서	하도급법 8조 2항
4	검사결과 통지서	하도급법 9조 2항
5	감액 서면	하도급법 11조 3항
6	기술자료 제공 요구서(7년)	하도급법 12조의 32항
7	계약변경 내역 통지서	하도급법 16조 2항
8	목적물등의 검사결과, 검사 종료일 등이 기재된 서류	시행령 6조 1항 2호
9	하도급대금의 지급일·지급금액 및 지급수단이 기재된 서류 (어음결제시 어음의 교부일·금액 및 만기일 포함)	시행령 6조 1항 3호
10	선급금 및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 관세 등 환급액 및 지연이자를 지급한 경우 ⇒ 지급일과 지급금액이 기재된 서류	시행령 6조 1항 4호
11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 등의 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한 경우 ⇒ 원재료 등의 내용과 공제일·공제금액 및 사유를 기재한 서류	시행령 6조 1항 5호
12	설계변경 등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 ⇒ 조정한 금액 및 사유를 기재한 서류	시행령 6조 1항 6호
13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한 경우 ⇒ 신청내용 및 협의내용, 그 조정금액 및 조정사유를 기재한 서류	시행령 6조 1항 7호
14	입찰명세서, 낙찰자결정품의서, 견적서, 현장설명서, 설계설명서 등 하도급대금 결정 관련 서류	시행령 6조 1항 8호

(3) 범위반 유형

- 법정기재사항이 일부 또는 전부 누락된 서면을 교부한 경우(불완전한 서면교부)
- 추가 또는 변경된 위탁 수행 내용이 입증되었으나 당사자간의 다툼이 있어, 추가계약서나 작업지시서, 변경 계약서 또는 정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 시공 과정에서 추가 또는 변경된 공사물량이 입증되었으나 당사자 간의 정산에 다툼이 있어 변경계약서 또는 정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 위탁 이후에 서면을 교부하는 경우 등 서면을 지연 교부한 경우
- 하도급거래 당사자의 서명, 기명날인이 없는 서면을 교부한 경우
- 계약서면의 내용은 사실관계를 반영하여야 하므로 실제의 하도급거래와 상이한 서면을 교부한 경우
- 원사업자의 현장관리자가 추가공사에 대한 금액산정이 가능한 약식서류만을 제공한 경우(구체적인 계약서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경우)

(4) 사전 서면발급의무 예외

- 원사업자는 위탁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재해,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를 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사항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서면에 적어야 한다.
- 원사업자는 해당사항이 확정되는 때에 지체없이 그 사항을 적은 새로운 서면을 발급해야 한다.
- 기본계약서를 발급하고, FAX, 이메일 또는 전산시스템 게재 등의 형태로 위탁일, 품명, 수량, 단가, 하도급대금, 납기 등 하도급법상 중요기재사항을 담은 서면 발급은 적법한 서면 발급이다.
- 빈번한 거래에 있어 계약서에 법정기재사항의 일부가 누락되어 있으나, 건별 발주시 제공한 물량표 등으로 누락사항의 파악이 가능한 경우는 적법한 서면 발급이다.
- 법정기재사항의 일부가 누락되었으나 업종의 특성 등에 비추어 거래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법한 서면 발급이다.
- 2종 이상의 계약서가 존재할 때는 실제의 하도급거래관계에 입각한 서면을 적법한 것으로 본다.
- 경미하고 빈번한 추가작업으로 인해 물량변동이 명백히 예상되는 공중에 대해 시공완료 후 즉시 정산합의서로 계약서를 대체한 경우 적법한 서면발급이다.

(5) 서면발급의무 추정제도

- 원사업자의 구두발주시, 수급사업자는 서면통지로 위탁내용(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작업의 내용, 하도급대금,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일시, 원수급사업자의 사업자명과 주소)의 확인 요청이 가능하다(하도급법 제3조 제9항).
- 만일, 원사업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회신하지 않을 경우, 통지 내용대로 하도급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추정한다.
- 통지 및 회신의 방법은 내용증명우편 등으로 원·수급사업자의 주소(전자우편 주소 포함)로 통지 또는 회신해야 한다.

(6) 업무상 유의사항

Do



-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묵시적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이 승인되었다고 하더라도, 연장된 계약기간이 명시된 새로운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 업계 표준이나 거래 관행의 특성을 근거로 한 공정위의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활용하여 서면에 기재해야 할 항목이나 내용에 대해 표준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 발주서면에 하도급법상 정해진 사항이 기재되어 있거나, 보충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 서면 교부시 미확정 사유에 대한 정당성이 존재하여도, 그 내용이 정해진 경우 보충서면을 교부한다.
- 견적수량과 주문수량이 차이가 나는지 확인한다.
- 수량만 적시되어 있고, 단가가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Don't



- 실제 계약의 내용과 다른, 허위 사실을 기재한 서면 및 서류(허위계약일자, 이중계약(실계약, 허위계약), 허위내용의 서류 사후작성 등)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아야 한다.
- 하도급 관련 서류는 증거인멸의 의도로 폐기해서는 안 된다.
- 협력업체에 하도급 관련 서류등을 3년 이내에 폐기하도록 요구하지 않아야 한다.
- 거래종료일부터 3년간 서면(서류)을 보존하고 있으나 허위서면(서류)이거나 허위내용의 서류를 사후 작성하여 보존하지 않는다(허위서류 보존).
- 서명 또는 기명 날인이 없는 불완전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아야 한다.

(7) 관련사례

서면 미발급 사례

(㈜영동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 제2021-311호)

[사실관계]

(주)영동건설은 토공사 과정에서 공사 현장에 지하수가 많이 발생하게 되자 2017년 1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기간 동안 이 사건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다른 협력업체를 지원해주는 내용의 공사 등을 추가적으로 수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주)영동건설은 해당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추가공사를 하도록 하면서 기존 체결되어 있던 계약서에 해당 추가공사 내용을 반영한 새로운 계약서(변경계약서)를 다시 교부하여 주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이러한 약속을 어기고 변경계약서를 교부하여 주지 아니하였다. 또한, (주)영동건설은 최초 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수급사업자가 기실시한 공사에 대한 내역을 해당 계약서에 반영하지 아니하였음

[공정위 판단]

이는 사업자로 하여금 추가·변경위탁이 있는 경우, 해당 계약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공사 착공하기 전까지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

서면 지연 교부 및 일부 누락 사례

(대림산업(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 제2019-206호)

[사실관계]

대림산업은 2015.10.7부터 2017.12.27까지 35개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및 건설 위탁 등을 하면서 하도급대금 및 그 지급방법 등이 기재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또는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아니하고 4일에서 388일이 지난 이후에 발급하였다.

또한 계약서면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 중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또는 '목적물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요건, 방법 및 절차'와 관련된 내용을 누락한 계약서면을 발급하였다.

[공정위 판단]

수급사업자들이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또는 해당 계약 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하도급대금 및 그 지급기일 등 법정기재사항이 기재된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4~388일 지연하여 발급한 행위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에 해당한다.

또한 수급사업자들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면서 법정기재사항 중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및 기일,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방법 및 절차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행위는 법 제3조 1항에 위반된다.

허위의 하도급대금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한 사례

(양우종합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 제2024-349호)

[사실관계]

양우종합건설(주)은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의 82%에 미달하는 경우 발주자가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제도)를 회피하기 위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실제 하도급대금보다 큰 금액인 허위의 하도급대금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였다. 이때 허위하도급대금을 기재한 서면만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고, 실제 하도급대금을 기재한 서면은 원사업자인 자신이 보관하였다.

[공정위 판단]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들과 이중계약을 체결하고 허위의 하도급대금이 기재된 계약서면을 발급하여 수급사업자들의 혼란을 가중하고 하도급거래내용을 불분명하게 한 것으로, 불공정하도급행위에 해당한다(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묵시적 계약연장 사례

(서울고등법원 2009.9.13 선고 2008누2554 판결(확정))

[사실관계]

성림건설은 2004.5.1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법정사항이 기재된 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계약기간이 종료된 2005.2.1 이후에는 이 사건 계약이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되어 따로 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의 판단]

하도급 거래 기간이 종료된 이후 동일한 내용으로 종전 계약 기간을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더라도, 원사업자는 연장된 계약 기간을 명시한 계약서면을 작성하여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서면발급 관련 일반 체크리스트

	확인할 사항	예/아니오
1	서면발급시 법정 필수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하였는가?	
2	위탁 이전에 서면이 교부되었으며, 계약서 없이 선발주 후 계약서를 교부하지는 않았는가?	
3	계약서상 계약기간을 실제 공사기간을 고려하여 설정하였는가?	
4	법정기재사항 누락 시 해당사항 및 사유를 명시하고 작업진행 중 혹은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완전한 작업지시서 발급 및 변경계약을 진행하였는가?	
5	파트너사로부터 착공일이 계약일 이후인 실제 착공계를 교부 받아 보관하고 있는가?	
6	추가·변경공사 작업 착수 전 당사 작업지시서 표준양식을 사용하여 작업지시서를 발급하였는가?	
7	작업지시서 발급 후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실정보고 및 변경계약을 진행하였는가?	
8	추가공사 등으로 공기연장이 필요한 경우 당초 계약기간 만료 전에 기간변경계약을 완료하였는가?	
9	기간변경 계약이 실제 추가공사 등이 필요해서 체결하는 계약인가?	
10	(연동계약의 체결) 주요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조정사항을 서면에 기재하였는가?	

추가·변경 공사 관련 세부 체크리스트

	확인할 사항	예/아니오
서면발급 전		
1	설계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발주자, 감리단과 협의하고 회의록 작성, 공문 수발신등의 근거를 마련하였는가?	
2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추가공사시 발주자에 공사비에 대한 견적서를 송부하고 승인을 득하였는가?	
3	해당 작업의 공사 규모, 필요면허를 검토하고, 추가 입찰이 필요로 한 사항인지 기존 계약업체에 추가작업을 지시할 사항인지 유관부서와 협의하였는가?	

4	공사비(단가)산출시 적절한(하도급법 등 관련 법령 준수 포함) 검토가 이루어졌는가?	
5	서면교부시 법정 필수 기재사항을 충족하는 당사의 양식을 사용하고, 빠짐없이 기재하였는가?	
6	서면 교부시 도면과 내역서 등 필요서류를 구비하였는가?	
7	발주자의 긴급지시로 인해 5번, 6번 사항이 불가능한 예외적인 경우(도급현장에서 설계 미확정에 의해 발주자의 쪽도면(공문)작업지시에 따른 법정기재사항 기재 불가능한 경우) 해당상황 및 사유를 명시하고 발주자로부터 받은 쪽도면(공문 등)을 작업지시서에 붙여 교부하였는가?	

서면발급 후

1	교부한 서면(작업지시서 포함)은 당사자의 합의의 근거로서(계약) 2부 준비하고, 파트너사 현장대리인의 날인을 받아 각각 1부씩 보존하고 있는가?	
2	법정기재사항이 기재 불가능함에 따라 불완전한 서면교부시,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완전한 작업지시서 발급 및 변경계약을 진행하였는가?	
3	도급변경공사의 경우 발주자와 도급 설계변경을 통한 공사비 확정을 하였는가?	
4	작업지시서 발급 후 가능한 빠른 시일에 실정보고를 통한 예산반영 후 하도급 변경계약을 시행하였는가?	
5	서면에 기재된 대금 지불조건(지급일 등)을 준수하였는가?	

2.1.2 부당한 특약 설정 금지(하도급법 제3조의4)

(1) 개념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할 때 교부하거나 수령한 설계도면, 시방서, 유의서, 현장설명서, 제안요청서, 물량내역서, 계약 및 견적 일반조건·특수조건, 과업내용서, 특약조건, 도급업무내역서, 발주서, 견적서, 계약서, 약정서, 협약서, 합의서, 각서 등 그 명칭이나 형태를 불문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약정을 통해 설정한 계약조건으로서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

(2) 위법성 판단기준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에 제조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체결한 하도급거래의 계약조건이 공정하고 타당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계약조건이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쳐 결정되었는지 여부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료·정보를 성실하게 제공하였는지 여부
 - 당해 업종의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어긋나는지 여부
 - 관계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
 - 목적물등의 내용 및 특성
 - 수급사업자가 입은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3) 법위반 유형

① 서면에 없는 비용 전가

-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현장설명서 등의 서류에 기재되어 있음을 이유로 발생하는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은 부당한 특약에 해당된다.

② 민원처리, 산업재해 처리비용 전가

-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이다. 즉, 모든 산업재해에 대하여 전적으로 수급사업자가 책임을 진다는 약정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다.

③ 입찰내역에 없는 비용 전가

-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은 부당특약에 해당된다. 단,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입찰금액을 산출하기 위한 자료나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의 견적 누락 또는 견적 착오 등으로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킨 경우는 제외한다.

④ 인·허가, 환경관리 또는 품질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전가

- 관련 법령에 따라 원사업자의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인·허가, 품질관리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이다.

⑤ 설계나 작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비용 전가

- 원사업자가 설계를 변경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으로 부당특약의 한 유형이다.

⑥ 재작업, 추가 작업 또는 보수작업으로 인한 비용 전가

-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른 재작업, 추가 작업 또는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중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이다. 단,

해당 작업이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 여기서 수급사업자의 책임없는 사유란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하도급계약, 설계도면 등에 기재된 작업공정, 품질·성능검사 절차 등을 철저히 준수한 경우를 말한다.

⑦ 하자담보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 전가

- 발주자와 원사업자 사이의 계약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하자담보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이다.
- 예를 들어, 건산법에 따라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 부담하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을 2년으로 설정하면서, 수급사업자와 체결한 하도급계약서상 하자담보책임은 3년으로 약정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⑧ 위탁시점에 예측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한 책임 전가

-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면, 천재지변 또는 전쟁·화재·전염병·폭동, 제3자의 전국적인 노조파업, 매장문화재 발견, 해킹·컴퓨터 바이러스 발생 등을 말한다.

⑨ 하도급대금의 조정신청 제한

- 수급사업자는 원재료의 가격변동이 발생하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직접 신청하거나 원사업자와 협의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하도급계약기간 중 이러한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⑩ 법에 규정된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

- 수급사업자는 일부 사항이 누락된 서면을 발급받은 경우 원사업자에게 위탁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고,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을 받을 권리, 법 위반하였음을 관계 기관에 신고, 원사업자에 대한 조정신청 및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대한 조정신청, 서면실태조사를 위한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를 제출할 권리가 있는데, 이러한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을 말한다.

⑪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등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

-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거래를 준비하거나,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자료, 물건 등의 소유, 사용 등의 권리를 원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약정을 말한다. 또한 하도급거래를 준비하거나,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하는 상대방의 정보, 자료 등에 대한 비밀준수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만 부담시키는 약정도 포함된다.

⑫ 수급사업자의 의무를 법이 정한 기준보다 높게 설정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 보증 금액의 비율을 높이거나,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 보증기관 선택을 제한하는 약정 및 계약이행을 보증하였음에도 수급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계약책임, 불법행위책임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도록 하는 약정을 말한다.

⑬ 원사업자의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경우

- 목적물등의 검사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및 목적물등의 검사 결과 통지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이의제기를 제한하는 약정을 말한다. 또한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안전조치, 보건조치 등 산업재해예방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도 포함된다.

⑭ 수급사업자의 계약상 책임을 가중하는 경우

- 다음의 경우 수급사업자의 계약상 책임을 가중하는 약정이라고 본다.

- 계약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함이 없거나 당사자 간 이견이 있을 경우 계약내용을 원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정하도록 하는 약정
- 수급사업자에게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 계약 조건이 제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계약에 적용하기로 하는 약정
- 원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관계법령,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하자담보책임을 과도하게 가중하여 정한 약정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한 자재, 장비, 시설 등이 수급사업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멸실, 훼손된 경우에도 수급사업자에게 자재등에 대한 책임을 부담시키는 약정
- 계약 해제·해지의 사유를 원사업자의 경우 관계법령,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넓게 정하거나, 수급사업자의 경우 과도하게 좁게 정하는 약정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한 자재등의 인도지연, 수량부족, 성능미달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해 추가로 발생한 비용, 지체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4) 업무상 유의사항

- 부당한 특약 무효화 규정이 도입되었다(2025. 10. 2. 시행).

- ① 서면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을 요구하여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②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③ 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하여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은 무효
-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약정 등은 당사자 일방에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무효

Do

- 부당한 특약은 수급사업자와 합의가 있어도 내용이 부당하면 처벌됨에 유의하여야 한다.
- 수급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의무가 부당하게 설정되지 않도록 사전에 표준하도급 계약서의 규정을 참고해서 특약에 대해 사전 검토를 하여야 한다.
- 수급사업자에게 특약을 사전에 송부하여 검토시간을 충분히 주고, 수급사업자가 특약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Don't

- 당사의 사정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운임비용 또는 보관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운임비용 또는 보관비용을 전적으로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약정을 설정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 책임 분담에 관해 편향적인 보상 조항(원사업자에게 전적으로 유리한 조항)을 설정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 고객 클레임이 발생한 경우 무상으로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약정을 하지 말아야 한다.

(5) 관련 사례**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사례**

(대우조선해양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 제2019-042호)

[사실관계]

수급사업자로부터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수보증으로 총 계약금액의 10%를 각각 공탁받는 것 외에 추가로 법인대표이사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서게 하고, 추가 작업이 발생하더라도 총 계약금액의 3% 이내는 기성을 인정하지 않는 규정을 설정하였다.

[공정위 판단]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법 제3조의4 제2항 제2호)에 해당한다. 추가로 서면 미교부, 부당한 대금 결정 등의 위법행위가 인정되는바, 시정명령 및 10,799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사실관계]

(주)부경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토목건축공사를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 수급사업자에게 공사 위탁 당시 공시된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이 수급사업자보다 많으므로 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주)부경은 2016. 11. 22. 수급사업자에게 '부경파크하임 2차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건설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서 및 특약사항 등에 다음과 같은 부당한 계약 조건을 설정하였다.

(주)부경은 ① 지체상금률을 5/1,000로 과도하게 설정하고 지체상금 대상범위를 전체계약금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약정, ②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를 미리 교부하지 않았음에도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보증서 제출기한을 특정하여 이행을 요구하는 약정, ③ 공사 중단 시 기시공분에 대한 하도급채권을 포기하고 현장에 반입된 자재를 원사업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는 약정, ④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폐기물처리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약정을 설정하였다.

[공정위 판단]

- ① 수급사업자의 의무를 법이 정한 기준보다 높게 설정한 조항의 경우, 공사 위탁 당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에서 공사에 관한 지체상금률을 매 지체일수당 1/1,000로 정하고 있고, 민간공사도 대부분 이를 준용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지체상금률을 5/1,000으로 설정하고, 지체상금 대상 범위를 전체 계약금으로 설정한 행위는 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된다.
- ② 법에 규정된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의 경우, 계약이행보증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가 현금 또는 공제기관의 이행보증서 중 보증방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음에도 현금으로 계약이행보증을 이행하도록 요구하는 약정을 설정하였고, 원사업자의 공사대금 보증의무와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 보증의무는 동시이행관계임에도 (주)부경은 기성지급 특기사항에서 자신의 공사대금 지급보증 여부에 관계없이 수급사업자에게 2016.11.24.까지 기한을 특정하여 계약이행보증을 요구하는 약정을 설정하였으며, 공사완료 후 즉시 계약이행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함에도 이와 무관한 하자보수이행증권 제출 여부와 연계시켜 계약이행보증금 반환시기를 약정하는 행위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행위에 해당되므로 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된다.
- ③ 공사가 중단될 경우 수급사업자가 이미 발생한 하도급대금 채권을 포기하고, 현장에 반입된 자재를 원사업자에게 무상 양도하도록 하는 계약조건의 경우,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도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이미 시공한 부분에 상응하는 대금에서 손해배상금을 제외한 금액이 있을 경우 이를 정산하여야 하고, 대금 정산에 포함되지 않은 수급사업자의 자재는 수급사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기성지급 특기사항에 수급사업자가 이미 발생한 하도급대금 채권을 포기하고 자재의 소유권을 원사업자에게 무상 양도하도록 하는 것은 수급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에 해당되므로 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된다.

④ 폐기물 처리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조항의 경우, 원사업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서 동법 제17조 제1항의 폐기물 처리의무를 부담하므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직접 처리하거나, 향후 발생될 폐기물의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하도급대금에 반영한 다음 수급사업자가 처리하도록 함이 타당함에도 수급사업자에게 작업장 정리·청소 외에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반출·운반처리 비용까지 부담시키는 조항을 설정하는 행위에 해당되므로 법 제3조의4 제2항 및 법 시행령 제6조의2 제1호에 위반된다.

따라서, 각 행위는 하도급법 제3조의4 제1항에 해당되어 위법하므로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사례

(㈜세진중공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 제2022-008호)

[사실관계]

세진중공업은 ① (산업재해 비용 전가) 하도급계약에 따른 제작 및 설치 시 발생한 산업재해(안전사고)에 대하여 수급사업자가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는 내용, ② (하자담보책임 전가) 하자발생에 대한 모든 책임은 수급사업자에게 있다는 내용, ③ (추가작업 관련) 세진중공업이 제작상 필요하다고 판단한 작업일 경우, 수급사업자는 계약범위 내에서 이를 시행하여야 하며, 이때 수급사업자는 계약금액의 증액 또는 공기의 연장을 요구할 수 없다는 내용의 특약을 설정하였다.

[공정위 판단]

이는 공정거래법 제3조의4 제2항 제4호가 금지하는 “그 밖에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른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중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을 전가하는 약정)”에 해당한다. 이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한다.

부당특약 관련 체크리스트

	확인할 사항	예/아니오
1	현장설명서의 해당 조건이 하도급계약서면(편입 문서 포함)에 세부조건 또는 세부내역으로 명시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서면에 모두 명시하였는가?	
2	현장설명서의 해당조건이 하도급계약서면에 내역으로 구체적 명시가 불가능한 사항이지만, 사전에 도면 및 물량 등 파트너사가 자체적으로 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 합리적인 자료를 제공하였는가?	
3	현장설명서의 해당조건이 하도급계약 서면에 내역으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으로 파트너사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사항인 경우 삭제하였는가?	
4	해당 조건이 관련 법령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당사의 부담/의무사항으로 되어있음에도 파트너사에게 전가하고 있는 사항인 경우 삭제하였는가? (ex. 민원처리, 산업재해, 인허가, 환경관리, 품질관리)	
5	해당 조건이 당사(발주자 포함)의 설계변경, 지시 또는 파트너사의 귀책 없는 사정으로 인해 발생한 추가 업무에 대해 파트너사에게 책임 지우는 사항인 경우 삭제하였는가?	
6	고객 클레임이 발생한 경우 무상으로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한 약정이 있는가?	
7	해당 조건이 해당 하도급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간접비의 인정범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사항인 경우 삭제하였는가?	
8	해당 조건이 파트너사가 계약체결 시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 파트너사에게 책임 지우는 사항인 경우 삭제하였는가?	

2.1.3 건설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의무(하도급법 제13조의2)

(1) 개념

- 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수급사업자는 계약이행보증(계약금액의 10/100)을 해야 한다('14.11.29. 시행).

(2) 보증금액

- 공기기간 4개월 이하: 계약금액 - 선금금
- 공기기간 4개월 초과, 기성주기 2개월 이내: [(계약금액 - 선금금)/공사기간(월수)]×4
- 공기기간 4개월 초과, 기성주기 2개월 초과: [(계약금액 - 선금금)/공사기간(월수)]×기성주기(월수)×2

(3) 보증면제

- 1건 공사금액 1천만 원 이하('13.11.29. 이전 4천만 원 이하)
- 하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간 직접지급 합의한 경우
-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발주자가 원사업자 명의의 계좌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 공동이행방식(공동도급)의 공동 도급사업자는 지분비율에 의해 보증금액이 결정되고,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는 수급사업자와의 합의로 면제되지 않습니다.

(4) 관련 사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위반 행위

(D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 제2023-070호)

[사실관계]

D건설은 2020. 4. 3.부터 2022. 4. 7.까지 22건의 하자보수공사를 위탁하기 위해 17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않았다.

[공정위 판단]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은 원사업자가 부도 등의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이를 보증하는 제도이며, 원사업자는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예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을 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러지 아니한 경우 하도급법 제13조2 제1항에 위반으로 보고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 명령)을 내렸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위반 행위

(ㄱ건설 및 ㄴ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 제2023-159호)

[사실관계]

ㄱ건설 및 ㄴ건설은 원사업자에 해당하고, 이들은 경영상 의사결정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관계에 있었다(피심인들의 주식은 ㄱ건설 대표 지○○ 및 특수관계인이 100% 소유하고 있고, 피심인들은 등기된 주소와 별개로 같은 사업장에서 사무를 처리하고 있고, 피심인들의 임직원들은 서로 겸임하고 있으며, 피심인 및 피심인 임직원들은 피심인들을 모두 동일한 회사라고 인식하고 있음). ㄱ건설은 2018년 4월부터 2019년 4월까지 기간 동안 4개 수급사업자에게 'A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된 4건의 하도급 공사를 위탁하면서, ㄴ건설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기간 동안 7개 수급사업자에게 'A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된 8건의 하도급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사유가 소멸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다.

[공정위 판단]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가 있더라도 발주자가 처음부터 직접 지급하지 않고 원사업자가 묵시적·명시적으로 위임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직접지급합의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원사업자는 지급보증 의무를 부담한다.

이 사건 각 공사금액은 1천만 원을 초과하고, 피심인들이 2개 이상의 신용평가 전문기관으로부터 회사채 평가 A0 이상 또는 기업어음 신용평가 A2+ 이상의 등급을 받은 적이 없으며,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사실도 없고,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 간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합의한 사실이 없거나 합의 이후 그 효력이 상실되었음에도, 피심인들이 수급사업자들에게 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의2 제1항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명령) 및 과징금 3억 원을 부과하였다.

2.1.4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금지(하도급법 제4조)

(1) 판단기준

-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는지 여부는 다음의 2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위탁을 하는 경우에 ① 부당하게 ② 목적물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부당하게'의 판단기준

- 부당하다는 것은 하도급대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하도급의 내용, 수단 및 방법, 절차 등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지, 공정하고 타당한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 ②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에 대한 판단 원칙
- 목적물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해 정상적인 거래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 인지 여부이다. 단, 최저가 경쟁입찰에서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는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이 되며, 신규 개발품의 경우는 해당 목적물등의 제조원가 + 해당 원사업자가 거래 중에 있는 같거나 유사한 업종에 속하는 수급사업자들의 전년도 평균 영업이익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한 대가를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라고 본다.

(2) 법위반 유형: 아래 각 호의 행위는 곧바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로 간주됨

-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 인하 (법 제4조 제2항 제1호)
- 일률적 단가인하는 제조하도급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위반행위 중 하나이다. 그러나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으며, 정당한 사유인지는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해야 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 ② 협조 요청등을 통한 방법으로 일방적으로 금액 할당 (법 제4조 제2항 제2호)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들에게 협조등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하여 그 금액만큼을 빼고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다면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이다.
- ③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사업자를 차별취급 (법 제4조 제2항 제3호)
-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사업자를 차별 취급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도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에 해당한다. 여기서도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수급사업자별 경영상황, 생산능력, 작업의 난이도, 거래규모, 거래의존도, 운송거리·납기·대금지급조건 등의 거래조건, 거래기간,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존부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차별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 ④ 거래 조건의 착오를 일으키는 등의 방법 (법 제4조 제2항 제4호)
- 수급사업자에게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방법으로 수급사업자를 속이고 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정하는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이다.
 - 만약,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협상 과정에서 종전 계약보다 발주량이 늘어날 것처럼 수급사업자에게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는 위법하다.
- ⑤ 일반적으로 낮은 단가 (법 제4조 제2항 제5호)
-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결정과정에서 수급사업자와 실질적이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는지 여부 및 이 과정에서 수급사업자가 의사표시의 자율성을 제약받지 아니한 상태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합의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으니 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객관적이고 타당한 산출근거에 의하여 단가를 결정해야 한다.

⑥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공사비보다 낮은 금액(법 제4조 제2항 제6호)**

-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공사에 소요되는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이다. 여기서 직접공사에 소요되는 금액에는 재료비, 직접 노무비, 경비(재료비 및 노무비 이외의 제조원가 요소로 수급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를 말함, 다만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여 원사업자가 부담하기로 한 비목(費目) 및 원사업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법정(法定)경비는 제외) 등이 포함된다.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공사현장의 여건, 수급사업자의 시공능력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⑦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 입찰가보다 낮은 금액(법 제4조 제2항 제7호)**

- 만약, 원사업자가 실행예산 범위 내에서 최저가 낙찰자와 낙찰금액이 확정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추가로 협상을 한 경우, 법 위반이 되지 않으려면 당연히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중요 경쟁 입찰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

- 먼저, 최저 입찰금액이 원사업자의 예정가격을 초과할 경우 재입찰한다는 점을 사전에 공지하여 입찰참여자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해주어야 한다. 이때의 입찰예정가격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정해야 한다. 실제로 입찰 결과, 실행예산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 또한, 사전 고지를 하였더라도 예정가격에 대한 공증을 받는 등 사후에라도 낙찰자 선정에 대한 이의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의 예정가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낙찰자를 선정 후 일방적으로 낙찰자를 변경하는 행위 역시 주의해야 한다.

⑧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 (법 제4조 제2항 제8호)**

- 계속적 거래계약 기간 중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가 있다. 여기서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는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게 된 사정이 원사업자나 외부환경의 변화 등 (예를 들면 경영적자, 임금인상이나 노조파업, 판매부진, 경쟁심화에 따른 판매가격 인하, 글로벌 가격경쟁 심화나 환율변동 등)에 있고, 수급사업자에게는 귀책사유가 없다는 것을 말한다.

(3) 업무상 유의사항

Do



- 수급사업자들과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 수급사업자의 거래규모, 경영상황, 작업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출된 근거에 따라 단가를 조정해야 한다.
- 예정가격을 공개할 필요는 없으나 예정가격이 미리 정하여져 있음을 회사 내부 자료로 남기거나 공증을 통해 추후 예정가격에 대한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 예정가격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원사업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 최저 입찰금액이 당사의 예정가격을 초과할 경우 재입찰한다는 점을 사전에 공지해야 하고 예정가격을 사전에 확정하여 공증을 받는 것이 좋다.
- 공정을 받기 어렵다면(비용, 절차상의 번거로움) 사전에 예정가격이 확정되어 있었음을 회사의 기안 문서에 남겨놓아야 한다.
-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 때 수급사업자와 협의한 문건은 보관하여야 한다.
- 연료비 상승이나 환경규제 강화로 인한 비용 요청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와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 비용 변동 시 가격의 재검토가 지체될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므로, 가격 결정시 재검토의 시기도 충분히 협의하고, 비용변동을 신속하게 반영하여 대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 가격 결정시 국제적인 가격지표가 있는 원재료 등에 대하여 비용 변동을 반영한 가격 산정 방식을 사전에 협의한다.

Don't



- 결정된 인하율이 수급사업자에 따라 어느 정도 편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동일하거나 일정한 구분에 따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부당하게 인하한 것이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 경쟁입찰로 계약의 당사자를 선정할 경우, 최저 입찰가가 예정가를 초과하면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고 최저가 낙찰자와 추가 협상을 통해 금액을 낮은 금액으로 결정할 경우 부당한 하도급 대금결정행위에 해당된다.

- “경영상의 위기” 등을 이유로 일정기간 동안 낮은 단가 설정을 요구한 경우, 기간 종료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낮은 단가를 요구하지 말아야 한다.
-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거나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 말아야 한다.
- 어떠한 명목으로든 수급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한 후 그 금액을 빼고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 말아야 한다.
- 수급사업자에게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속이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 말아야 한다.

(4) 관련 사례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사례

(금강종합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 제2024-264호)

[사실관계]

금강종합건설(주)는 2018. 5. 최저가 경쟁입찰을 통해 이 사건 공사 계약을 체결하며, 최저가 입찰사업자를 포함한 상위 2~3개 업체와 추가적인 가격협상을 통해 공사대금을 인하하였다. 이로 인해 최저가 입찰자는 최저입찰가보다 4억 9천만 원 낮은 금액*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 이 사건 공사의 최저입찰가는 199억 7천만 원이었으나, 하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은 최저입찰가보다 4억 9천만 원 인화된 194억 8천만 원으로 결정되었다.

[공정위 판단]

공정위는 부당한 대금 결정 및 감액으로 보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3억 7,900만 원) 부과

직접공사비 항목보다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사례

(G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제2021-030호))

[사실관계]

G건설은 2012년 10월부터 2016년 5월 기간 동안 하남 및 대전 공사 현장 4건 공사의 하도급대금을 원사업자의 도급 내역상 직접 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인 19,805백만 원보다 1,134백만 원이 낮은 18,671백만 원으로 결정하였다.

[공정위 판단]

신고인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특허공법 등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기술력이 우수하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에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피심인의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심인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원사업자의 도급내역상의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점이 인정되므로 피심인의 이러한 행위는 법 제4조 제2항 제6호에 위반되어, 시정명령(재발 방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13.8억 원을 부과하였다.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사례

(B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제2022-58호))

[사실관계]

B건설은 수급사업자가 2,435,569,331원의 견적서를 제출하여 최저가로 낙찰되었음에도 단순히 계산의 편의성을 이유로 천 만원 단위 이하의 금액을 절사하여 하도급대금을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인 2,400,000,000원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공정위 판단]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는 하도급법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대금결정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였다고 주장하지만, 하도급거래상 비교적 열악한 지위에 있는 수급사업자가 흔쾌히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계산 편의를 위한 단위 절사가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27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다른 부문의 단가 인상을 약속하고 단가를 인하한 후 인상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례

(대법원 2010.4.29. 선고 2008두14296판결)

[사실관계]

기아자동차는 34개 공급사업자에게 쏘렌토 등 다른 차종에서 납품단가를 인상해주겠다고 약속하고, 리오 등 차종의 부품 단가를 인하(0.9%~29.9%)하였으나, 실제로는 단가 인상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급사업자들에게 25억 원의 손실을 입게하였다.

[법원의 판단]

기아자동차는 납품단가 인상을 통한 손실보전 등 사후조치에 관하여 내부계획을 수립한 적도 없는 점등을 고려하면, 인하된 납품 대금을 전액 보전해 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이를 보전해줄 것처럼 부품업체들을 기만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일률적 단가 인하 사례

(주)포스텍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 제2014-274호)

[사실관계]

포스텍은 2012년 4월경 부산 소재 사업장에서 발주자의 단가 인하 요구, 제조원가 상승 등을 이유로 선박블록을 제조하는 A사를 포함한 5개 공급 사업자에게 10%씩 동일한 비율로 단가를 인하였다.

이와 관련된 5개 공급 사업자는 그 작업의 내용, 거래 규모, 기존 작업 단가 등에서 차이가 있음에도, (주)포스텍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한 비율을 적용하여 하도급 단가를 인하였다. 또한 (주)포스텍은 2011년 1월경 발주자로부터 단가 조정요청을 받자, B사를 포함한 9개 공급 사업자에게 이미 작업을 완료하여 지급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했다. 2011년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총 7,900만 원을 회수했다.

[공정위 판단]

이러한 행위는 (주)포스텍과 발주자 간 단가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을 일방적으로 공급 사업자에게 전가한 행위이다. 부당한 단가인하 행위와 부당 감액 행위에 1억 3,500만 원 지급명령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내리고 과징금(3,900만원)을 부과한다.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 취급한 사례

(주)한국아트라스비엑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 제2021-043호)

[사실관계]

(주)한국아트라스비엑스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년 동안 차량용 배터리 부품을 납품하는 수급사업자에게는 최저임금 및 전력비 상승을 이유로 총 4회에 걸쳐 가공비를 29.4% 인상하였으나, 산업용 배터리 부품을 납품하는 특정 수급사업자에게는 2018년 3월에야 처음으로 가공비 6.7%를 인상하였다.

[공정위 판단]

최저임금이나 전력비 등이 상승하면 차량용 배터리 부품이나 산업용 배터리 부품 구분 없이 가공비 인상요인이 발생함에도 (주)한국아트라스비엑스는 차량용 배터리 부품의 가공비는 인상하면서, 산업용 배터리 부품의 가공비는 동결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 취급하였다. 이에 공정위는 (주)한국아트라스비엑스에게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 취급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하였다.

하도급대금결정 관련 체크리스트

	확인할 사항	예/아니오
1	대금결정 시 수급사업자에게 대금결정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였는가?	
2	원자재 가격하락 및 노임하락 등 객관적으로 타당한 단가인하 사유 없이,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는가?	
3	대금지급조건, 거래수량, 작업의 난이도 등의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협력사를 차별취급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는가?	
4	다량발주를 전제로 협력사에게 견적을 산출하도록 한 후, 실제로는 소량발주가 되었으나 기존의 견적가를 기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는 않았는가?	
5	실행예산 초과 또는 저가심의 이외의 재입찰금지 규정을 준수하였는가?	
6	재입찰 진행시 재입찰 사유(실행예산 초과 또는 저가심의)를 파트너사에게 명시적으로 안내하고, 규정을 준수하여 진행하였는가?	
7	오견적 투찰 제재 관련 규정을 파트너사에게 안내하고 규정을 준수하여 진행하였는가?	
8	추가·변경공사 단가산정 관련 현장여건 및 파트너사와 상호 협의없이 당사의 타현장 단가 적용 등 일방적으로 대금을 결정하지 않도록 관리하였는가?	
9	연간단가 경쟁입찰 재입찰 금지규정을 준수하였는가?	
10	역전단가 조정시, 하도급법을 준수하였는가?	
11	발주자가 있는 현장에서 협력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도급금액 중 직접공사비(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 미만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 않도록 관리하였는가? (다만, 특허공종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상 발주자의 적정성 심사를 통과한 경우는 제외)	

2.1.5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의 체결(납품단가연동제, 하도급법 제3조 제2항 제3호)

(1) 개념

-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것을 하도급대금 연동이라 한다(법 제2조 제17항). 원재료 가격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하도급계약 체결시 서면에 연동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기준 지표 및 산식 등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였다(법 제3조 제2항 제3호).
- 공정위는 2023. 10.경 법 시행 이후에도 계도기간을 두고 적극적으로 규제에 나서지 않았으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2024년 이후에 신규로 체결하거나 갱신되는 계약이 있을 경우, 연동제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것이 요구된다.
-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으로 하도급법 제16조와 제16조의2 등 하도급대금 조정에 대한 강행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음에 유의한다.
- 하도급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대상범위가 더 넓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의 위수탁거래에 해당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상생협력법상 납품단가 연동제 또한 문제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2) 원재료

- “주요 원재료”라 함은 수급사업자가 목적물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사용할 원재료로서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를 의미한다. 다만, 주요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는 원재료라 하더라도 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연동제 대상이 되는 원재료에 포함시킬 수 있다.
 - 노무비(인건비), 경비(운반비 등)는 연동제 대상이 아님
 - 유상사급자재비의 경우 원사업자가 직접 원재료의 판매처에서 해당 원재료를 구입한 후 수급사업자에게 판매한 가격(비용)을 의미

(3) 기준지표

- 기준지표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 주기적으로 고시하는 지표 또는 이에 준하는 지표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국제지표를 사용하는 경우 환율을 반영한 원 단위의 가격을 기준가격으로 설정할 수도 있다. 다만 기준지표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원사업자가 원재료의 판매처와 직접 협상한 가격 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판매한 가격, ② 원재료의 판매처가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판매한 원재료의

단위 당 판매가격으로서 원사업자가 확인할 수 있는 가격, ③ 그 밖에 양 당사자 간 협의한 자료(약정서, 원가내역서, 견적서 등)를 바탕으로 정한 가격을 지표로 정할 수 있다.

(4) 적용 예외 사유와 미연동 합의

①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의 예외 사유

- 원사업자가 소기업인 경우, 하도급거래 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하도급대금이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서면에 기재하지 않아도 되며(법 제3조 제4항), 아래 경우와는 달리 미연동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② 미연동 합의가 있는 경우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서면에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그 취지와 사유를 서면에 기재하여야 한다(법 제3조 제4항 제4호). 이에 공정위는 하도급계약에 부수하는 표준 미연동계약서를 마련하여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 대표적인 미연동 합의 사유로 ①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연동을 위해 필요한 원가 정보를 원사업자에게 제공하기를 원치 않음, ② 원재료 가격 하락이 예상되어 하도급대금이 인하될 것으로 예상됨, ③ 다른 주요 원재료에 대해 하도급대금 연동 약정을 체결하였음(복수의 주요 원재료가 있는 경우), ④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자회사 관계임, ⑤ 국가계약법 등 다른 법령상 의무에 따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을 충분히 조정하고 있음, ⑥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포함하여 원재료 구매비용을 전액보전함 등이 있다.

- 최초 하도급계약 체결 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다면 하도급계약 유효기간 동안 미연동 상태를 유지할 수 있으며, 이후 해당 기간 내에는 수급사업자가 연동 약정 체결을 요청하더라도 해당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5) 범위반행위의 제재

① 거래상 지위남용 및 탈법행위 금지

-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하도급거래에 관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연동하지 않을 것을 강요하는 탈법행위를 하는 경우 최고 5천만원의 과태료나 벌점(5.1점)을 부과받을 수 있다.

② 기타 범위반행위

- 연동 서면기재사항 위반, 성실 협의의무 위반, 미연동 합의 후 그 취지 및 사유 미기재 등의 경우에는 과태료 1천만 원, 최대 2점의 벌점을 부과받을 수 있다.

(6) 업무상 유의사항**Do**

- 회사는 수급사업자와 연동계약 체결시 성실히 협의하여야 한다.
- 수급사업자와 하도급대금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할 경우, 양 당사자가 연동제에 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발적인 협의와 검토를 거쳐 미적용 합의를 하였음을 나타낼 수 있는 자료(설명을 듣고 이해하였다는 점에 관한 확인서, 연동/미연동 시의 단가를 예상한 자료 등)를 작성·준비하여, 향후 문제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한다.
- 회사는 연동계약서 작성시 ①하도급대금 연동의 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②주요 원재료, ③조정요건, ④주요 원재료 가격의 기준 지표, ⑤하도급대금 연동 산식, ⑥주요 원재료 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⑦조정일, ⑧조정주기 및 ⑨조정대금 반영일 등을 서면에 기재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 회사는 수급사업자와 연동계약서에 정한 조정일마다 변동률을 확인하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하도급대금 연동 산식에 따라 목적물등의 하도급대금을 산출하여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물품등의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여 조정대금 반영일에 조정된 하도급대금을 적용하여야 한다.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연동계약서와 이에 부속되는 하도급대금 연동표·변동표를 3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Don't

- 하도급대금 연동과 관련된 탈법행위(쪼개기 계약, 미연동합의 강요 유도)를 하지 않아야 한다.
-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체결 시, 원사업자는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기 위하여 수급사업자에게 필요최소한의 원가정보 등을 요구할 수 있으나, 약정서 기재 사항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한 경영상 정보를 부당하게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하도급대금 연동제 위반업체를 제재한 첫번째 사례

(한일시멘트(주) 등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심결례 미발간)

[사실관계]

공정위는 원재료 비중이 높은 업종(가구 및 레미콘)에 대해 연동제 위반 여부를 조사하였는데, 한일시멘트(주), (주)시몬스, (주)시디즈 3개사는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기재하여 제공하지 않았다. 한일시멘트(주)는 시멘트 포장지 제조위탁에서 원재료 포장지 1단위당 하도급대금의 60%를 차지하는 계약, (주)시디즈는 스펀지 가공위탁에서 원재료 스펀지가 하도급대금의 80% 이상 차지하는 계약, (주)시몬스는 침대 프레임 등 제조위탁에서 원재료 목재합판이 하도급대금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계약에서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서면에 기재하지 않았다.

[공정위 판단]

하도급대금 연동 관련 기재 누락시 과태료 기준은 1천만 원이나, 공정위는 위 사업자들이 현장 조사 이후 수급사업자들과 미연동 합의를 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각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였다.

2.2 계약이행단계시 하도급법상의 규제내용

2.2.1 부당한 위탁(발주)취소 및 수령 거부 금지(하도급법 제8조)

(1) 유형

① 부당한 위탁취소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제조등의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위탁을 할 때 정한 발주량 또는 사양 등 위탁한 내용을 변경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여기서 위탁한 내용을 변경한다는 것에는 다음 세 가지를 포함한다.

- 하도급법 제3조에 따른 서면에 기재되어 있는 위탁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 당초에 위탁 내용과 다른 작업을 시키는 경우
- 목적물등의 수령 후 추가적으로 재작업을 시키는 경우

- 위탁 취소시 수급사업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위탁취소로 인해 수급사업자가 입게 될 손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하고 위탁을 취소하는 것은 가능하다.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는 수급사업자의 파산·회생절차의 신청 등의 경영상 중대한 사유 발생, 영업취소·영업정지 처분, 수급사업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제조 등의 착수 거부 또는 수급사업자가 계약내용을 위반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등을 말한다.

임의로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

임의로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실질적인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를 말한다.

- 공정위는 위탁 취소에 대한 합의서가 존재하는 경우라도 합의의 진정성(절차 및 내용)을 검토하여, 진정성이 없는 경우 임의로 위탁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② 부당한 수령거부

- '수령'이란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목적물을 받아 원사업자의 사실상 지배하게 두게 되는 것으로 검사의 유무와 관계없이 수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목적물을 이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검사를 시작하는 때를 수령한 때로 본다.
- 부당한 수령거부는 납기일 이후에 수급사업자의 목적물을 수령 또는 인수를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지연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 부당한 수령거부의 판단기준은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탁을 할 때 정한 납기 및 장소에서 목적물 수령을 거부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되, 위탁계약 체결 및 수령거부의 경위, 위탁계약의 내용, 수령거부한 목적물등의 범위, 계약 이행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는 부당한 위탁취소와 마찬가지로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또는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등을 말한다.

- 수급사업자가 직접 조달하기로 한 원재료의 공급지연으로 해당 기간을 넘겨 납품
- 수급사업자가 직접 조달한 원재료의 품질불량으로 하자가 있는 목적물 납품
- 수급사업자가 생산 또는 운송과정에서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오손·훼손된 목적물 납품

(2) 업무상 유의사항

Do



- 위탁취소의 사유가 하도급거래 계약서에 규정되어 있고, 위탁취소가 해당 계약서의 내용 및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인하여 발주취소를 할 경우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임을 입증할만한 근거자료를 충분히 마련하여야 한다.
- 수급사업자와 실질적으로 위탁취소와 관련한 협이가 있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위탁취소로 인해 수급사업자에게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
- 발주취소에 대한 협이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합의 절차에 강압이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근거자료를 남겨놓아야 하며, 수급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정당하게 보상하여야 한다.
- 발주취소가 발생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투입된 비용이 있다면 정산하고, 정산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수급사업자로부터 물품수령 시에는 검사전이라도 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한다(수령증에 검사 미완료 사실 및 향후 검사에서 하자 발견 시 조치계획 등을 기재). 단,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검사가 끝나는 즉시 그 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제8조 제2항).

Don't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임의로 위탁을 취소하거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3배손)의 대상이 된다.
-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작업을 중단하여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으나, 작업 중단 전에 다른 수급사업자에게 작업을 대신하도록 하였고, 작업 중단에 대해 시정요구 및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하여서는 아니된다.
- 수급사업자가 선행 작업의 납기를 준수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후행 작업의 위탁계약을 취소하였으나 원사업자가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 사급자재를 상당기간 지연하여 공급한 사실로 인해 납기 지연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하여서는 아니된다.

-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부품의 제조를 이미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설계변경을 이유로 당초 위탁한 규격과는 다른 규격의 것을 납품할 것을 요구하면서 수급사업자가 생산한 부품의 수량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수급사업자가 위탁을 받아 납품한 목적물 중 일부를 당사의 수주실패 또는 지연 등을 이유로 수량을 거부하지 않아야 한다.
-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부품의 제조를 이미 완료한 경우 당사의 생산계획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수급사업자가 생산한 부품의 수량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계속적 거래를 암시하거나 미지급 물품대금 지급을 조건으로 발주취소를 하지 말아야 한다.
- 당사의 경영상황 또는 시장여건의 변동, 원자재 공급 지연 등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탁을 취소하거나 변경을 해서는 아니 된다.

(3) 관련 사례

납기 이후 위탁취소 사례

(삼성전자^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 제2012-156호)

[사실관계]

삼성전자는 147개 수급사업자들에게 발주한 건에 대하여 납기일이 지난 시점에 ERP 전산시스템을 통해 생산물량 감소, 생산일정 변경, 자재 단종, 설계 변경, 과잉 발주 등의 이유를 들면서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피심인이 하고자 하는 위탁취소에 대해 허용(Accept)할 것인지 불허(Reject)할 것인지를 선택하도록 하고, 수급사업자가 불허(Reject)를 선택하면 해당 발주 건에 대해서 입고 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지연수량이 되었고, 동 전산시스템상으로 이러한 선택을 요구받은 수급사업자가 전산시스템상에 표시된 허용(Accept)표시 부분을 클릭함에 따라 동 전산시스템상의 발주항목에서 해당 수급사업자의 발주정보가 동시에 삭제되게 함으로써 위탁을 취소하였다.

[공정위 판단]

이러한 발주취소는 삼성전자 측의 생산물량 감소, 자재 단종,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이루어졌으므로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위탁취소에 해당하며, 납기일 종료 후에 위탁취소를 하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이미 제품생산을 완료한 상태이므로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였다. 또한, 재고부담, 미납품 자재처리, 이자부담 등 직접적인 피해만이 아니라 생산계획 차질에 따른 손실 등 간접적인 피해도 발생하였다. 따라서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발생함에도 납기일 종료 후에 제조위탁을 취소하는 것은 원사업자가 임의로 위탁 취소하는 것으로 위법이며, 전산시스템으로 동의를 이루어졌을지라도 납기일이 지난 이후에 동의한 것에 대해 이를 형식적인 동의로 판단하여 위법성을 인정하였다. 이에 부당한 위탁 취소 및 목적물 지연 수령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1,062백만 원)을 부과하였다.

수급사업자에게 양해를 구하였거나 사후에 금전보상이나 물량보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원사업자의목적물 지연수령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는 사례

(서울고등법원 2009. 11. 12. 선고 2008누11237(확정) 판결, 상고심은 심리불속행 기각)

[사실관계]

원고는 반도체, 휴대폰, LCD, 가전제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대기업자로, 주식회사 H 등 54개 사업자에게 휴대폰 부품 등을 제조위탁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원고는 46개 수급사업자에게 휴대폰 부품제조를 위탁한 후 수급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부품의 수령을 납기일보다 최장 8개월까지 지연하였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수령지연 행위, 서면 지연교부 행위,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 등 원고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합계 1억 7천만 원을 부과하였다.

[법원 판단]

원고가 2003. 1. 1.부터 2005. 5. 30.까지 사이에 46개 수급사업자들로부터 이미 생산완료한 부품의 수령을 2개월 내지 8개월까지 지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원고 작성의 부진재고 현황(을 제22호증)에서 나타나는 대부분의 지연수령 사유는 모델단종, 사양변경, 물량감소, 해외이전, 생산취소, 생산지연 등으로 수급사업자와는 거의 관련이 없는 것들인 점, 역시 원고가 작성한 '03년 감사인터뷰 및 대응'이라는 자료(을 제23호증)에서 수급사업자가 원고의 제조위탁으로 생산 완료한 부품의 납기가 도래하였음에도 수령을 지연함에 따라 수급사업자들의 재고 부담이 장기화되어 금융비용 손실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원고 스스로 진단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수급사업자들의 양해를 구하였거나 사후에 수급사업자들에게 금전보상이나 물량보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목적물 지연수령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행위는 부당한 목적물 지연 수령에 해당한다.

부당한 수령거부 사례

(주)피앤씨랩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 제2022-075호)

[사실관계]

(주)피앤씨랩스는 2018. 10. 13. 납품받은 마스크 팩 원단에 개미가 유입되었으나 수급사업자가 이에 대해 피해보상을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 건과 별개로 2018년 8월경에 위탁한 198백만 원 상당의 마스크팩 원단 수령을 거부하였다.

[공정위 판단]

개미 유입이 수급사업자가 제품을 납품하기 전에 발생된 것인지, 아니면 (주)피앤씨랩스가 납품받은 후 발생된 것인지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고, 개미가 유입된 건과 수령을 거부한 건은 별개의 위탁이므로 기존에 납품한 제품의문제로 다른 위탁 건의 수령을 거부한 행위는 타당하지 않은바, 이러한 행위는 법 제8조 제1항 제2호에 위반되어 위법하며, 향후 재발방지를 명령하였다.

부당한 위탁취소 사례

(주)비엔에이치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 제2024-046호)

[사실관계]

(주)비엔에이치는 '이천 하이닉스 배관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볼 수 없음에도 '상당한 손해를 끼치거나 끼칠 염려가 있는 경우' 등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계약해지 사유 및 자신에게만 부여한 즉시 계약해지권을 통해 수급사업자와 충분하고 실질적인 협의 없이 계약기간중이던 2020.12.2. 하도급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여 사실상 잔여공사 부분에 대한 하도급 위탁을 취소하였다.

[공정위 판단]

위탁취소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책임 여부 : 피심인은 계약해지의 근거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 제 법령을 위반한 경우, 신고인 귀책사유로 피심인에게 상당한 손해를 끼치거나 끼칠 염려가 있는 경우' 등 하도급계약서 제21조 제2항 제3호 및 제4호의 즉시해지 사유를 제시하면서 신고인의 책임으로 적시하였으나, ① 설계도면이 공사 착공 후 지연되어 제공됨에 따라 계약체결 당시보다 공사비용 증가 소요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이를 반영한 변경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고 신고인의 11월 기성청구 금액에 대해서도 신고인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체불 가능성이 예견됨에도 일부만 지급하였으므로 신고인의 임금 미지급행위는 피심인에게 기인한다고 볼 수 있고, ② 비록 신고인의 임금 미지급으로 근로자들의 피심인에 대한 항의가 있어 이로 인해 피심인에게 일부 손해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항들만으로 신고인이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계약목적 달성을 수 없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

원사업자가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였는지 여부 : ① 피심인이 계약해지 전일인 2020. 12. 1. 신고인에게 사전 통보하고 다음날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한 점을 고려할 때 계약해지와 관련하여 당사자간 실질적인 협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② 하도급계약서 제21조 제2항 제3호 및 제4호는 피심인에게만 일방적으로 주어진 특별한 해지사유로서 그 자체가 부당특약에 해당하며, ③ 피심인은 위탁을 취소함으로써 신고인이 입게 될 손실에 대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공사대금 정산 등 정당한 보상에 대한 방안이나 사후 절차에 대한 협의를 하지 않았는바, 신고인과 충분히 실질적인 협의 없이 임의로 취소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위 행위는 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어 위법한바, 공정위는 정명령(향후 재발방지명령) 및 과징금 550백만 원을 부과하였다.

부당한 위탁취소 관련 체크리스트

	확인할 사항	예/아니오
1	현장설명서에 당사의 귀책없이 발주자의 설계변경 등으로 발주물량이 줄어들 수 있음을 명기하고 사전 안내하였는가?	
2	불량이 상당한 정도로 축소되는 경우 물량축소 사유가 하도급법상 부당한 위탁취소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지 파악하고, 파트너사와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물량축소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였는가?	
3	물량축소에 따라 하도급대금이 감액되는 경우 감액사유와 기준 등을 정한 서면을 파트너사에게 교부하였는가?	
4	연간단가 계약인 경우 발주예상 물량(입찰물량)과 실제 발주물량이 상이 할 수 있음을 현장설명서에 명기하고 안내하였는가?	
5	연간단가 계약인 경우 발주예상 물량(입찰물량)과 실제 발주물량이 상당한 정도로 축소된 경우 계약갱신권 등 연간단가 조정 절차를 현장설명서에 명기하고 안내하였는가?	
6	연간단가 계약인 경우 실제 발주물량이 예상물량보다 상당한 정도로 축소된 경우 연간단가 조정절차를 통해 파트너사와 협의를 진행하였는가?	
7	연간단가 계약인 경우 실제 발주물량이 예상물량보다 줄어들어 계약기간 중 추가 발주물량 예상이 없더라도 계약기간을 준수하고 별도로 계약해지를 하지 않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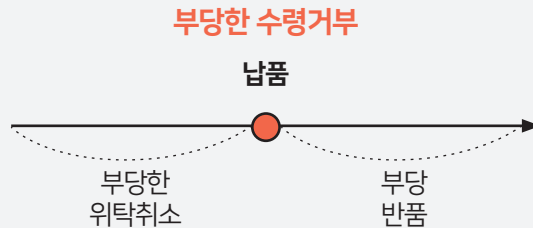
2.2.2 부당반품의 금지(하도급법 제10조)

(1) 유형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등을 수령한 후에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식에 상관없이 수령한 목적물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되돌려 보내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 반품의 위법성은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아님에도 반품한 것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되 위탁계약 체결 및 반품의 경위, 반품한 목적물등의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므로 이러한 과정 전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 해당 목적물의 납기일 이후 수령한 목적물을 반품하는 행위는 수급사업자의 동의를 근거로 이루어진 행위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부당반품에 해당된다. 다만, 납품된 해당 목적물의 품질이 사전에 약정된 검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잘못으로 인해 납품시기가 늦어진 경우에 한해서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부당한 위탁취소 vs 부당한 수령거부 vs 부당반품

부당한 위탁취소는 납품 전, 수령거부는 납품하는 때에 행하는 것을 말한다.
반면, 부당반품은 납품이 이루어진 이후에 목적물을 반품하는 행위이다.



(2) 반품의 예외 사유

- 수급사업자의 책임에 따른 반품은 가능하다.
 - 발주한 목적물과 다른 물품 등이 납품된 경우
 - 오손·훼손 등 하자있는 물품이 납품된 경우 등

(3) 범위반 유형

① 불명확한 검사 기준 및 방법에 근거한 반품

검사기준 및 방법을 정하지 않거나 정하긴 하였으나 그 기준이 정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원사업자가 통상의 기준보다 높은 검사기준을 적용하거나 일방적으로 검사기준을 적용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공정·타당하지 않은 검사기준 및 방법을 사용하여 목적물등을 불합격으로 판정하고 반품하는 경우 부당반품이라고 볼 수 있다.

②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가 위탁내용대로 납품한 목적물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품하는 것을 말한다.

-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발주중단 또는 클레임
- 원사업자의 생산계획 변경·사양변경·모델단종·판매부진·재고증가·보관 장소 부족
- 소비위축·경제상황 변동 등

③ 원사업자가 공급한 원재료의 품질불량

검사 결과 목적물등이 불합격품으로 판정된 이유가 수급사업자의 책임보다는 원사업자가 공급한 원자재·부자재·건축자재 등 원재료의 품질불량 때문인데도 수급사업자에게 그 책임을 물어 반품하는 행위는 부당한 반품에 해당된다.

④ 원사업자의 원재료 공급 지연

만일 원사업자가 자신이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 원자재·부자재·건축자재 등을 지연하여 공급함으로써 수급사업자가 납기 내 납품등이 곤란하였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 그 책임을 물어 반품하는 경우 부당 반품에 해당된다.

⑤ 제3자에게 검사를 위탁한 경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 이외의 제3자에게 검사를 위탁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3자의 검사를 필하여 납품하였음에도 이를 반품하는 행위는 부당한 반품에 해당된다.

⑥ 납기지연을 용인한 객관적인 사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납기지연을 용인한 객관적인 사실이 있었음에도 목적물등을 수령한 후 납기지연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되돌려 보내는 행위는 부당반품에 해당된다.

⑦ 하자에 대한 책임

목적물등의 하자에 대한 책임소재가 분명하지 않음에도 원사업자가 목적물등의 하자에 대한 책임을 수급사업자가 전적으로 부담할 것을 요구하면서 반품할 경우 부당한 반품에 해당된다.

(4) 업무상 유의사항

Do



- 반품 사유를 수급사업자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사전에 설정하여야 한다.
- 클레임약정서는 사전에 교부되어야 한다.
- 사전에 서로 약정된 계약 규정대로 반품을 하되, 반드시 검사결과를 같이 통보하여야 한다.

Don't



-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의 납품을 받은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으면 반품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는 징벌적 손해배상(3배)의 대상이 된다.
- 발주 착오로 인한 반품, 당사가 물품의 운송이나 보관상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 품질상의 하자를 이유로 반품, 가공이나 조립단계에서 발생한 손해를 이유로 반품하는 경우 등은 부당한 반품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 검사 기준 및 방법이 불명확한 경우, 불합격으로 판정하고 이를 반품하여서는 아니 된다.
-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당사가 공급한 자재 등의 품질불량 또는 공급지연 등을 이유로 반품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이미 수령한 물품을 발주자·외국수입업자 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반품하여서는 아니된다.
- 수급사업자 이외의 제3자에게 검사를 위탁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제3자의 검사를 필하여 납품하였음에도 이를 반품하여서는 아니된다.
- 수급사업자의 납기지연이 있었으나, 이를 용인한 객관적 사실이 있었음에도 이를 수령한 후 납기·공정지연을 이유로 반품하여서는 아니된다.

(5) 관련 사례

과다발주를 이유로 반품한 사례

인탑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 제2009-178호)

[사실관계]

인탑스는 사출물을 두 차례 납품받은 후, 납품받은 날부터 2~6월이 경과한 시점에 소요량보다 과다하게 발주하였다는 이유로 반품하였다. 인탑스 직원의 실수로 인한 과잉발주가 있었으며 이로 인해 반품한 것이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수급사업자에게 과잉 발주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출물을 납품받은 후 검사결과를 통보한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출물에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반품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웠다.

[공정위 판단]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반품하고 그 만큼을 감액한 하도급대금 합계 1,844,000원 및 이 금액에 대하여 감액한 날(2008. 12. 30.)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이자(연리 25%의 이율 적용)를 지체없이 지급하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하였다.

발주자의 가공과정에서 불량 발생을 이유로 반품한 사례

(심결례 미발간)

[사실관계]

(주)에스디케스텍은 수급 사업자로부터 정상적으로 유압기 부품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 9월부터 2013년 12월 기간 중 발주자의 가공 과정에서 불량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400만 원 상당의 유압기 부품을 반품하였다.

[공정위 판단]

이러한 행위는 수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반품한 행위로 하도급법 제10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시정명령).

2.2.3 검사 및 검사 결과 통보 의무(하도급법 제9조)

(1) 원칙

① 검사기준의 결정방법

- 검사기준이 불명확하거나 일방적으로 결정될 경우, 목적물 완성 및 납품여부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하도급대금 지급의 기준시점이 불명확해짐으로써 하도급대금 지급시기를 확정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하도급법에서는 검사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만, 이에 관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객관적인 검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협의 하에 제3의 공인기관 등에 의하여 검사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다.
- 여기서의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기준의 객관성·공정성에 관한 판단은 모든 구체적인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② 검사결과의 통지의무

㉓ 통지기간

검사결과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여기서 목적물을 수령한 날이라 함은 제조·수리위탁의 경우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이며, **건설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한다.

㉔ 통지의무의 예외

검사대상 물품이 과다하여 10일 이내에 검사가 곤란하거나 상당기간 경과 후에야 비로소 합격여부에 관한 판정이 가능한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에 검사기간 연장에 대해 명백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㉕ 통지하지 않은 경우의 효과

정당한 사유없이 위 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후부터는 원칙적으로 검사에 불합격한 것으로 반품하거나 감액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날을 기산일로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이 진행된다.

㉖ 검사비용문제

검사는 원사업자를 위한 것이므로 검사에 따른 비용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원사업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제3의 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경우에도 그 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2) 검사 결과 통보 의무의 예외

- 검사결과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의무의 예외는 다음과 같다.

- 검사대상 물품이 과다하여 10일 이내에 검사가 곤란한 경우
 -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합격 여부에 관한 판정이 가능한 경우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에 검사기간 연장에 대해 명백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등
- 검사와 반품의 관계(대량 납품하는 경우)
- 대량으로 납품하는 경우 목적물의 전부를 검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샘플검사나 무검사 인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납품받은 후 제품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위험은 원칙적으로 원사업자가 부담한다. **다만, 계약서에 반품에 관한 사항(반품사유, 시기, 보상 문제 등)이 명백히 밝혀져 있고, 반품사유가 수급사업자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반품이 허용되는 것으로 본다.**

(3) 범위반 유형(검사의무와 관련된 하도급법 위반 리스크)

- 검사 및 검사결과 통지의무와 연결되는 여러 가지 하도급법 위반사항이 있는데, 먼저 검사 기준과 방법에 관해 부당특약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고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서면 미발급이 있다. 또한 검사기준이 불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위탁취소, 수령거부, 반품, 감액, 대금미지급 등의 하도급법 위반사항이 있다. 따라서 원사업자는 검사 및 검사결과 통지의무에 대한 사항을 정확하게 알고 실제로 이행하여 사전에 법 위반을 예방해야 한다.

(4) 업무상 유의사항

Do

-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객관화시켜야 한다.
- 목적물 수령 후 수령증명서와 함께 검사 결과를 1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검사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수급사업자와 명백한 합의가 있어야 하며, 연장과 관련한 정당성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준비하여야 한다.
- 당사자 간의 검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객관적인 검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협의하여 제3의 기관에게 검사를 맡기는 것도 가능하다.
- 검사결과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하지 않았다면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목적물이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Don't

-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수급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지 않는다.
- 검사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지 않는다.
- 법정검사기일 이후에는 반품이나 불량을 이유로 감액을 하지 않는다.
- 법정검사기일(10일) 이후부터는 원칙적으로 검사에 불합격하였다는 이유로 반품하거나 대금을 감액할 수 없다.
- 검사 결과 통보는 서면 통지가 원칙이며 구두통지는 범위반이다.

(5) 관련 사례**검사결과를 미통지 후 하자를 이유로 한 대금 미지급 사례**

엔에스인터내셔널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 제2015-303호)

[사실관계]

피심인(엔에스인터내셔널)은 다운점퍼를 수령한 후 대리점 판매과정에서 오리털 빠짐 현상으로 인해 소비자로부터 반품 및 제품불만이 제기되자 이후 검사기관에 다운점퍼에 대해 깃솜털 투과성 검사를 의뢰한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후, 이에 수급사업자에게 A/S를 요구하였으나, 수급사업자가 거부하는 바람에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공정위 판단]

하도급법 제9조 제2항에는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등을 수령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운점퍼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물품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물품은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되며, 피심인이 목적물 수령 후 1개월 이상이 경과한 물품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하도급대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없다고 공정위는 판단하였다.

또한, 공정위는 목적물 수령 후 물품관련 하자로 인하여 판매가 부진하고 이로 인하여 피심인이 손해를 보았다 하더라도 이는 별도의 민사적인 절차에 따라 다투어야 할 부분이며, 이를 이유로 법상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지급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사실관계]

A업체는 수급 사업자로부터 에이징 지그를 납품받았으나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수급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알리지 않았다. 2017. 9. 8. 수급사업자부터 에이징 지그 40세트를 수령하고 수령한 날부터 10일이 지났음에도 목적물에 대한 검사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하자, 수급사업자는 2017. 10. 13. 피심인에게 하도급대금(중도금) 346,500,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피심인은 목적물에 대한 하자 등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 판단]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등을 수령한 날[제조위탁의 경우에는 기성부분(既成部分)을 통지받은 날을 포함하고,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을 통지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a업체는 수급사업자와 공동 검사를 실시하여 수급 사업자에게 검사 결과를 통지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워 시정명령(지급명령, 재발방지 명령)을 내렸다.

위탁목적물 검사 및 검사결과 통보 의무 관련 체크리스트

확인할 사항		예/아니오
1	사전에 해당 위탁목적물의 검사 기준 및 방법에 관해 적정하고 구체적으로, 협의 하에 설정하였는가?	
2	위탁목적물에 대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해 현장설명서 또는 계약서에 자세하게 안내하였는가?	
3	오건적 투찰 제재 관련 규정을 파트너사에게 안내하고 규정을 준수하여 진행하였는가?	
4	파트너사의 기성 또는 준공 청구내역(금액)과 당사의 기성 또는 준공검사결과내역(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재확인하였는가?	
5	최종 검사결과를 파트너사에게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10일내 서면 통지하였는가?	
6	파트너사의 최종 공사 완료시 준공검사 진행에 대한 안내공문을 작성하여 파트너사에 발송하였는가?	
7	공사관련 오시공 또는 미시공 부분에 대해 리스트를 작성하고 개선작업에 관한 내용공문을 파트너사에게 발송하였는가?	
8	오시공 또는 미시공 완료에 따른 개선작업 완료시 파트너사에 재검사결과를 개선작업 완료된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 서면으로 통보를 하였는가?	

2.2.4 하도급 대금 감액 행위 금지(하도급법 제11조)

(1) 원칙

-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이 없이 발주시에 결정한 하도급대금을 발주 후에 감액하는 것을 말하며, 감액의 명목과 방법, 금액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감액하는 일체의 감액 행위는 금지된다.
- 즉, 수급사업자에게 책임 없이 발주시에 정해진 금액(발주시에 즉시 교부하였던 서면에 기재된 금액)으로부터 일정액을 감하여 지급하는 것은 전면적으로 금지되며, 수급사업자와의 합의가 있어도 하도급법상 위반이 되는 경우가 있다.

(2) 감액의 정당성 판단기준

- 하도급 대금 감액의 정당성 여부는 하도급계약 체결 및 감액의 경위, 계약이행 내용, 목적물의 특성과 그 시장상황, 감액된 하도급대금의 정도, 감액방법과 수단,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된다. 그러나 감액은 명목이나

방법, 시점,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원사업자가 감액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하며, 만약 원사업자가 감액의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범위반으로 판단된다.

- 합의의 진정성(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합의 여부)이 필요하다.

• 감액 약정이 수급사업자의 자발적인 동의에 따른 것인지 판단기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의 정도, 수급사업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거래의존도, 거래관계의 지속성, 거래의 특성과 시장상황, 거래 상대방의 변경 가능성, 당초의 대금과 감액된 대금의 차이, 수급사업자가 완성된 목적물을 인도한 시기와 원사업자가 대금감액을 요구한 시기와와의 시간적 간격, 대금감액의 경위, 대금감액에 의하여 수급사업자가 입은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을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나 상관습 및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한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53457 판결 참조).

(3) 범위반 유형

① 소급단가 적용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단가인하에 합의를 하였는데, 합의일 이전에 위탁한 목적물에 인하된 단가를 적용하였다. 이것은 수급사업자와 단가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그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합의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이다.

피심인은 2010. 1. 월부터 2011. 2월까지의 기간동안 4개 수급사업자의 납품 단가를 평균 1.0%~24.4% 인하하면서, 이미 입고된 물량에 대해서도 인하된 단가를 소급적용하는 방법으로 424,790천 원을 감액한 사례에서 과징금 약 23억원을 부과하였다(공정위 의결 2012. 8. 30. 제2012-188호).

② 원사업자의 협조요청 또는 거래상대방의 발주취소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 감액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③ 현금지급이나 조기지급을 이유로 감액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지급기일 전에 지급하는 것을 이유로 대금을 지나치게 감액하는 행위이다.

④ 원사업자의 손해발생에 영향이 없는 수급사업자의 과오

A사는 B사에게 조립용 부품을 제조 위탁하였다. 이후 B사는 A사의 검사에서 합격된 조립용 부품을 A사의 보관 창고로 운송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포장지의 일부가 훼손되었다. A사는 포장지 훼손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며 납품 대금의 30%를 감액하였다. 이와 같이

원사업자에 대한 손해발생의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급사업자의 과오는 감액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원사업자로부터 위탁수행에 필요한 물품 구입

위탁수행에 필요한 물품을 사게 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경우이다. 즉, 목적물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하면서 적정한 대가 이상의 금액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는 경우이다.

⑥ 납품시점에 떨어진 물가나 자재가격

하도급대금 지급시점의 물가나 자재가격 등이 납품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도 부당감액이다. 납품이 이루어진 이후에 발생한 사유를 들어 감액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⑦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는 부당감액으로 본다.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는 원사업자의 경영실책이나 가격경쟁력 상실 등 자신의 귀책사유에 따른 손실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것과 같이 감액이유 및 방법이 타당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된다.

⑧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

관계법령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그 밖의 경비를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도 부당감액에 해당된다.

(4) 업무상 유의사항

Do



-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을 미리 교부하여야 하고, 공정위가 정한 표준 양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때 발급하는 서면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기재되어야 한다.
 - 감액사유와 기준
 - 감액대상이 되는 목적물등의 물량
 - 감액금액
 - 공제 등 감액방법
 - 기타 감액의 정당성 입증사항 등
- 수급사업자의 소홀한 장비관리로 인한 수리비를 하도급 대금에서 공제하는 경우는 정당한 감액에 해당된다.
- 수급사업자가 하도급 계약 체결 후 하도급 대금 산정 자체에 중대하고 명백한 착오가 있다는 사실을 원사업자가 발견하여 이를 정당하게 수정하고 금액을 감액하는 경우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
- 수급사업자가 위탁내용과 다른 목적물 납품하는 경우에는 해당목적물을 반품하면서 해당 금액만큼 감액할 수 있다.
- 수급사업자가 불량품을 납품하는 경우, 해당 목적물의 금액만큼 감액이 가능하다.
- 수급사업자가 정해진 납기일을 초과하여 납품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약정된 지체상금 규정에 따라 감액이 가능하다.
- 감액을 하기 전 감액사유와 기준 등이 기재된 감액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미리 발급하여야 한다.

Don't



- 수급사업자와 단가를 인하시기로 합의한 후, 위탁이 완료된 목적물에까지 인하된 새단가를 소급하여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고객사의 발주취소, 현금지급이나 조기지급 또는 당사의 경영적자 또는 납품가격 인하 등을 이유로 감액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거나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
- 견적시 수량 없이 단가만 먼저 확정된 후, 발주시 소량 발주하는 경우는 발주 이후에 단가를 인하한 것이므로 하도급대금의 감액으로 본다.

(5) 관련 사례

단가 인하 합의 후 소급적용하여 감액한 사례

(㈜한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 제2022-076호)

[사실관계]

H사는 2017. 10. 16. 수급사업자와 단가 인상 협상을 하던 중 알품의 시장가격이 하락하자 단가를 인하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2018. 3. 15. 수급사업자에게 2018. 2. 1.부터 단가 조정을 시행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송부하였다. 2018. 4월경, 신고인과 단가를 인하하는 방향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인하된 단가는 2018. 3. 1.부터 적용하였다.. 그러나 H사는 수급사업자가 2018. 3. 1. ~ 같은 해 4. 5. 기간 중에 이미 납품한 물량에까지 인하 단가를 소급 적용함으로써 기존 단가 적용 시 보다 약 111만 원의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였다.

[공정위 판단]

이러한 제조위탁 단가에 대한 인하 합의 후 소급 적용하는 행위는, 원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하는 것으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단가 인하에 대해서 합의 했더라도 이와 별개로 소급 적용하는 것은 부당 감액으로서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한다는 함으로 시정명령(재발방지 명령), 과징금(100만 원) 납부명령을 내렸다.

인하된 단가를 소급적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사례

(엘지전자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 제2018-225호)

[사실관계]

엘지전자는 하도급업체에게 휴대폰 부품을 제조위탁하고 주로 분기별로 생산성 향상, 원자재 가격 하락 등을 사유로 해당 부품에 대한 납품단가를 인하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2014년 7월부터 2017년 3월까지의 기간 동안 24개 하도급 업체에게 제조위탁한 총 1,138개 품목에 대하여 납품단가를 인하하기로 합의한 후, 그 인하된 납품단가를 합의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하였다.

[공정위 판단]

① 하도급법 제11조 제2항 제2호는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그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합의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엘지전자의 행위는 부당감액에 해당한다. ② 엘지전자는 월말 정산에 따른 소급적용이며, 이와 같은 소급적용에 대해 하도급업체와의 합의 또는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사항은 하도급대금 감액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시정명령 및 과징금 약 33억 원 부과).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사례

(주)진성이엔지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 제2014-279호)

[사실관계]

진성이엔지는 2012. 1월부터 2013. 6월까지 수급사업자 영진테크에게 자동차 부품을 제조 위탁하면서 ①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고, ② 생산성이 낮은 자신의 생산라인 운영 요청에 대하여 수급사업자가 이를 거절하자 임의로 위탁을 취소하였으며, ③ 자신의 납품처 위치 변경에 따른 물류비 증가분 일부를 수급사업자에게 부담하게 하기 위하여 하도급대금 6,500천 원을 감액하였다.

[공정위 판단]

중소기업청장은, 진성이엔지의 부당한 위탁취소 및 감액행위로 인하여 수급사업자가 약 197,000천 원의 피해를 입었고, 진성이엔지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거래의존도가 100%인 상황에서 부당한 위탁취소로 인하여 심각한 경영난을 겪게 되어 결국 폐업까지 이르게 되는 등 위반행위가 중대하고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보고 공정위에 고발 요청을 하였고, 이를 공정위는 받아들였다.

하도급대금을 당좌어음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사례

(주)에이치티엠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 제2025-089호)

[사실관계]

(주)에이치티엠은 하도급대금을 당좌어음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월별 납품 금액에서 매월 3.85%를 감액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였다. 해당 기간 동안 에이치티엠이 감액한 금액은 총 78,859,935원에 달하였다.

[공정위 판단]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하도급대금을 지나치게 감액하는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행위에 해당하되, 이때 “지나치게 감액” 했는지 여부는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예금은행 가중평균 대출금리와 비교하여 판단하는데(「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감액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이 사건의 경우 적정 비율 대비 최소 9배에서 최대 16배를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는 하도급법 제11조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공정위는 에이치티엠에 대해 재발 방지를 명령하고, 부당 감액 행위에 대해서는 감액된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의 지급을 명령하였다.

2.2.5 기술자료제공요구 및 유용행위금지(하도급법 제12조의3)

(1) 기술자료가 되기 위한 요건

- 기술자료란 수급사업자의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자료를 말한다.
 -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정보·자료(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당해 업무에 관련된 것에 한정되지 않음에 유의)
 -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기술정보·자료로서 수급사업자의 기술개발(R&D)·생산·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 기타 사업자의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자료로서 수급사업자의 기술개발·생산·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 기술자료에 해당하려면 수급사업자에 의해 객관적으로 비밀로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가능한 상태여야 함(①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한 경우, ② 자료 접근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한 경우, ③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는 등 자료접근자에게 비밀유지준수 의무를 부과한 경우 등)
- 잠재적/간접적으로 유용한 정보 및 연구개발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정보까지 모두 '기술자료'에 포함됨



경제적 유용성과 기술성의 의미에 대한 법원의 태도

(서울고등법원 2022. 2. 17. 선고 2019누51675 판결(확정) 참조)

- **경제적 유용성** -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도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져야 기술자료가 될 수 있다. 경제적으로 유용한 정보가 바로 생산·영업활동에 이용될 수 있을 정도의 완성된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거나, 실제 제3자에게 아무런 도움을 준 바 없거나, 누구나 시제품만 있으면 실험을 통하여 알아낼 수 있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위 정보를 기술자료로 보는 데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다. 동종업계 종사자들 사이에 어느 정도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정보나 자료라 하더라도 세부 사항에 있어서 고유 기술과 노하우가 반영되어 있고 비공개 상태가 유지되며 세부 사항이 유출될 경우 다른 사업자가 제품 개발에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거나 생산 또는 영업활동에 도움이 될 만한 가치가 있다면 기술자료에 해당할 수 있다.
- **기술성** - 각각의 기술 내용 자체는 수급사업자의 독자적 기술이 아니지만, 라우팅 도면을 기초로 회로도의 내용을 추가하고 해당 부품에 적용되는 기술표준을 찾아내 반영하는 등으로 위 각 기술 내용을 종합하여 하나의 도면으로 완성해 내는 것에는 수급사업자의 노력과 시간이 소요된다. 수급사업자가 독자적으로 선택한 제조 방법이 기술적으로 최적의 방법임이 증명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제작되어 장기간 오류 없이 작동해 온

부품의 제조 방법이라는 점에서, 수급사업자의 고유 기술이나 노하우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제3자가 이 사건 하네스 도면을 취득할 경우 해당 부품의 제작 또는 관련 기술·노하우의 습득이 가능해지거나 이에 들일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면 도면의 유용성은 하나의 서면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집약하면서도 일목요연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하는 것에 의하여 증진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수급사업자가 원고의 회로도 및 라우팅 도면 등의 내용을 하나의 하네스 도면으로 구성한 것과 같은 변경 내지 추가를 한 것은 앞서 본 수급사업자 고유의 기술이나 노하우가 반영된 사항들에 더해져서 수급사업자의 기술적 기여 정도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2) 기술자료제공 요구(하도급법 제12조의3 제1항)

- “기술자료 제공 요구”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자신 또는 제3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자료의 제출, 제시, 개시, 물리적 접근 허용(전자파일 접속·열람허용), 기술지도, 품질관리 등 그 방법을 불문하고 기술자료의 내용에 접근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기술자료 제공 요구행위는 원칙적으로 위법하다. 다만, 예외적으로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다.
-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위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 절차적, 기술적으로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를 의미한다.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공동으로** 특허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그 특허출원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공동으로** 기술개발 약정을 체결하고 동 약정 범위 내에서 기술개발에 필요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시 **하도급대금의 인상폭 결정과 직접 관련이 있는 원재료의 원가비중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인규명**을 위해 하자와 **직접 관련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 **발주자의 승인, 품목 등록, 구매조건** 등을 이유로 발주자가 해당 자료를 요구하는 등 **발주자와의 거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 유의할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 요구할 때에도, ① 필요최소한의 범위에 한정되어야 하며, ② 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및 대가 지급방법, 대상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요구일, 제공일 및 제공방법, 기술자료의 사용기간, 반환 또는 폐기방법, 반환일 또는 폐기일,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을 사전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기술자료제공요구서)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해당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 수급사업자와 의무적으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비밀유지계약에는 해당 기술자료의 범위,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비밀유지의무 및 목적외 사용금지, 위반시 배상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3)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화(하도급법 제12조의3 제3항)

-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 수급사업자와 기술자료에 대해 다음 사항이 포함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기술자료의 사용기간
 - 기술자료를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기술자료의 비밀유지 의무
 - 기술자료의 목적 외 사용금지, 비밀유지의무 위반시 배상
 - 기술자료의 반환 또는 폐기방법, 기술자료의 반환일 또는 폐기일

(4) 기술자료 유용행위(하도급법 제12조의3 제4항)

- “기술자료의 유용”이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그 취득 목적 및 합의된 사용 범위를 벗어나 자신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얻거나 수급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원사업자가 취득한 기술자료뿐만 아니라 “열람” 등을 통해 취득한 기술자료를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도 대상이 된다.
- 기술자료 유용의 위법성은 기술자료 제공 요구 시 사전협의를 거쳐 서면으로 제시한 기술자료의 사용목적과 범위를 벗어나 사용함으로써 하도급거래의 공정성을 침해하였는지를 위주로 판단하게 된다.

공정성 침해 여부 판단

하도급거래의 공정성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 기술자료 사용의 부당성 여부
- 하도급거래과정에서 서면을 통하여 충분한 협의를 거쳤음에도 그 합의를 벗어나 사용하였는지 여부
-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유용으로 수급사업자의 사업활동이 곤란하게 되는지 여부
-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어긋나거나 사회통념상 옳바르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나 수단 등을 사용하였는지 여부

(5) 손해배상 책임

-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제출을 사전에 서면동의 없이 강제로 요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 배상을 하여야 하고(법 제35조 제1항), 수급사업자의 기술을 정당한 대가 지급 없이 유용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발생한 손해의 5배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배상하여야 한다(법 제35조 제2항).
- 다만, 기술요구 또는 유용의 경우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법 제35조 제1항, 제2항).

(5) 법위반 유형

① 기술자료제공 강요행위

- 정당한 사유없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하도급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비밀유지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지 않거나, 원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기술자료를 제공받을 정당한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2항에 따른 서면을 교부하지 않고 제안서 등의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원재료 가격, 납품단가 구성내역 원가 등이 포함된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기술지도, 품질관리를 명목으로 그 목적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수급사업자들과 재계약시 기술자료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듯한 태도를 보여 기술자료 제공을 유도하는 경우

② 취득한 기술자료 유용행위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기술이전계약(기술사용계약 등 포함)을 체결하고 기술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필요한 기술을 취득한 후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거나 계약 종료 후 위 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에 위반하여 그 기술을 이용하여 독자적으로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제품을 상용화하거나 무단으로 다른 기업에 기술을 공여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납품관련 기술자료 등을 요구하여 넘겨받아 다른 경쟁사업자에게 그 기술을 제공하여 가격경쟁을 하도록 한 후 그 수급사업자에게 납품가격의 인하를 요구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공동으로 협력하여 기술개발을 하면서 수급사업자의 핵심기술을 탈취한 후 공동개발을 중단하고 자체적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기술에 대해 수급사업자가 출원을 하기 전에 원사업자가 선(先)출원하여 해당 기술에 대한 특허권, 실용신안권을 선점하거나, 수급사업자가 제공한 기술을 일부 수정하여 원사업자가 선(先)출원하는 경우

(6) 업무상 유의사항

Do



-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 마다 기술자료 요청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할 때 발급해야 하는 서면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기재되어야 한다.
 -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 기술자료와 관련된 권리귀속관계
 - 기술자료의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 요구일, 제공일 및 제공방법
 - 기타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등
- 아래의 경우, 기술자료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판단될 수 있다.
 - 수급사업자와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한 후 그 약정에 따라 기술자료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 기술자료 임차계약을 체결한 기술에 대하여 교부조건이 발생한 경우
 - 공동기술개발약정 체결 후 그에 따른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 공동특허출원을 하거나 특허출원지원을 하는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공유하는 경우
 - 납품 제품의 하자 발생 원인 규명, 불량 예방 등 공동의 품질관리를 위해 비밀유지 의무등을 규정한 합의를 작성한 후 기술자료를 공유하는 경우
 - 공동기술 개발 참여 여부, 신제품 또는 신기술 적용 여부, 거래개시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해 수급사업자의 기술개발 능력의 평가 또는 부품 승인 등에 필요하여 비밀유지의무등을 규정한 서면을 작성한 후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 수의계약시 또는 공급업자를 대상으로 지명입찰을 통한 위탁 계약시 아직 시장가격이 형성되지 않은 주문품의 기준가격을 마련하기 위해 개략적인 원가내역이 포함된 견적서를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
 - 원재료가격변동에 따라 납품단가 인상요청을 받은 후 인상 폭 결정을 위해 해당 원재료의 원가비중 자료 등을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

- 수급사업자의 요청으로 당사의 기술전수 또는 지도하거나 수급사업자에게 경영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위 전수 또는 경영지도의 목적상 필요한 범위내에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 공동개발 기술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기여도를 반영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기술자료를 사용한 경우, 기술자료 유용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판단될 수 있다.

Don't



- 아래의 경우, 기술자료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위법한 기술자료 요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거부하고,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 구두로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원재료 가격, 납품단가 구성내역 원가등이 포함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 기술지도, 품질관리를 명목으로 그 목적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 재계약시 기술자료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듯한 태도를 보여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기술자료 제공 요구를 유도하는 경우
 - 기술자료 요구시 기술자료 내역,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관계, 대가, 인도일 및 인도방법 등을 서로 협의하여 정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 정당한 대가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 아래의 경우, 기술자료 유용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위법한 기술자료 유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 기술이전 계약(기술사용계약 등 포함)을 체결하여 기술자료를 제공받은 후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거나 계약 종료 후 계약상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상용화하거나 무단으로 제3자에게 기술을 공여한 경우
 - 기술력을 심사한다는 목적으로 기술자료를 제공받은 후 기술력 부족등을 이유로 계약을 파기하고 수급사업자의 경쟁사업자, 당사의 기존 거래처나 관계사 등에 기술자료를 제공하여 동일 기술을 개발하도록 하여 제품을 납품 받은 경우

- 수급사업자로부터 납품 관련 기술자료 등을 요구하여 넘겨 받아 다른 경쟁사업자에게 그 기술을 제공하여 가격경쟁을 하도록 한 후 수급사업자에게 납품 단가의 인하를 요구한 경우
- 공동으로 기술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의 핵심기술을 탈취한 후 공동개발을 중단하고, 그 핵심기술을 이용하여 자체적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 수급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기술에 대하여 수급사업자가 출원을 하기 전에 원사업자가 선출원하여 해당 기술에 대한 특허권, 실용신안권을 선점하거나 수급사업자가 제공한 기술을 일부 수정하여 선출원하는 경우

(7) 관련 사례

중장비용 카메라 업체의 기술유용행위요구 사례

(H사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 제2023-085호)

[사실관계]

H사는 2014.1.부터 에이(이하 'A') 협력사로부터 중장비용 카메라를 납품받아 볼보건설기계에 납품하던 중, 이를 자체 개발 카메라로 대체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계획하였다. 이후 2017.1.부터 새로운 협력사 비(이하 'B')로부터 카메라 모듈*을 공급받아 자체 카메라를 생산하면서 A사와의 거래는 2017.10.경 중단하였다. A사 카메라를 대체할 자사 카메라 개발 과정에서 A사 기술자료를 B사 등 타 사업자들에게 송부하고, 이를 토대로 견적 의뢰, 표본 모형(샘플) 작업, 개발 회의 등을 진행하였다. H사는 A사의 카메라와 자체 생산 카메라는 광학적 특성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수급사업자의 기술을 유용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공정위 판단]

하도급법은 거래상 열위에 있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이익에 반하여 당초 제공된 목적 외로 기술자료를 사용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수급사업자의 기술을 동일하게 적용하지 않고 변경했다고 하더라도, 기술자료를 활용하여 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것 또한 기술유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확립된 법원 판례이다. 특히 이번 사건은 수급사업자의 제품을 대체할 카메라를 개발하기 위하여, 즉 수급사업자의 이익에 반하여 기술자료를 사용한 점, 그 과정에서 기술자료 사용에 대해 수급사업자와 사전 협의를 하거나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 결과적으로 대체 카메라 개발로 수급사업자의 납품이 중단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법성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H사의 기술자료 유용행위, 기술자료 요구행위, 기술자료 요구 전 서면 미교부 행위가 하도급법 제12조의3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및 과징금 총 1억 원을 부과하는 한편, 법인 및 당시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중국으로 유출한 사례

(삼성SDI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 제2022-106호)

[사실관계]

삼성SDI는 2018. 5. 18. 중국 내 법인의 현지 협력업체로부터 요청을 받고 국내 수급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던 다른 사업자의 기술자료(운송용 트레이 도면)를 받아 중국 현지 협력업체에게 제공하였음

[공정위 판단]

삼성SDI는 수급사업자가 작성하여 소유한 기술자료를 취득한 경우에만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된다고 주장하였으나, 공정위는 하도급법의 목적, 법 문언상 의미, 다양한 거래 현실(다층적 거래관계, 기술자료의 교환 또는 공유 필요성, 소유와 보유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 존재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란 수급사업자가 작성(소유)한 기술자료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수급사업자가 보유(매매, 사용권 허여 계약, 사용 허락 등을 통해 보유)한 기술자료도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음.

공정위는 삼성SDI의 기술유용행위, 기술자료 요구서면 사전 미교부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총 270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음(기술자료 유용행위는 250백만원, 기술자료 요구서면 사전 미교부 행위는 20백만원)

금형제작 상세 도면 요구 사례

(엘지하우시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 제2014-228호)

[사실관계]

엘지하우시스는 2003년부터 수급사업자와 거래하면서 대부분 자신이 설계한 금형 설계 도면을 제공하면서 금형 제작을 위탁하여 납품받았으나, 15개 금형의 제작을 위탁할 때는 수급사업자에게 제품 도면만을 제공하고 금형은 수급사업자에게 스스로 설계하여 제작하도록 한 후, 금형 수정·보완 및 유지 보수 등을 이유로 관련 상세 도면의 제공을 요구하였다.

[공정위 판단]

수급사업자가 엘지하우시스에게 제공한 도면은 금형의 각 부분별 상세 도면은 물론 주요 부분 제조 방법, 제작 시 유의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어 수급사업자의 기술적 비법이 포함된 기술자료이다.

엘지하우시스는 시험생산 과정에서 금형을 수정·보완하거나 하자 발생 시 유지 보수를 위해서는 설계 도면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제공 요구의 정당화 사유로 볼 수 없다.

엘지하우시스가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설계 도면을 요구하면서 요구 목적, 비밀 유지 관련 사항 등을 협의하지 않고, 관련 내용을 서면으로 제공하지 않은 것은 하도급법 제12조의 2 제2항에도 위반되며, 기술자료 제공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고, 서면으로 작성하여 교부해야 하는데 엘지하우시스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라벨제조 관련 기술 자료 유용 사례

(엘지화학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 제2015-2889호)

[사실관계]

엘지화학은 2013년 3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수급사업자로부터 배터리 라벨 제조관련 기술자료를 취득하여 자신의 해외 자회사인 중국 남경법인 내에 라벨 제조시설을 설치하고 라벨을 제조하는데 활용하는 등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유용하였다.

[공정위 판단]

엘지화학은 2013년 3월부터 같은 해 10월 기간 중, 수급사업자에게 요구하여 취득한 라벨 제조관련 기술자료를 사용하였음에도, 그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취득한 라벨 제조관련 기술자료를 활용하여 자회사인 중국 남경법인으로 하여금 라벨을 생산하도록 함에 따라, 중국 남경법인과 거래 중이던 수급사업자는 거래가 중단되어 사실상 폐업상태에 이르는 등 피심인의 기술자료 사용으로 수급사업자의 사업활동이 심히 곤란하게 되었으므로 검찰에 고발조치 하였다.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경쟁업체에 제공하는 등 유용한 사례

(㈜현대케피코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 제2024-304호)

[사실관계]

현대케피코는 2009년 베트남에 진출한 이후, 국내에서 운송되는 부품을 현지화하는 과정에서 A수급자에게 베트남 진출을 제안했으나 수급사업자 회사 사정으로 거절당했다. 그러자 부품 개발과 관련된 기술자료 5건을, 수급사업자와 협의 없이 경쟁사업자인 B사에 제공하였고, 해당 부품 개발에 참고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현대케피코는 제조 위탁 목적 달성에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가 아님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C수급사업자에게 금형 도면 4건을 요구하여 제공받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하였다. 현대케피코는 수급사업자들에게 금형 도면을 요구하고 제공받으며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고, 비밀유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도 했다.

[공정위 판단]

공정위는 제3자 제공행위가 납품단가 인하 내지 협력업체 이원화 등 현대케피코 이익의 극대화를 위한 행위가 아니더라도,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동의 없이 제공한 행위는 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원사업자가 금형의 수리나 수정을 위해 금형도면이 필요한 경우 실제 그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 자료를 요구하면 충분하고 금형도면을 미리 요구하여 받아두는 것은 필요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한 후,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억 7,400만원을 부과하였다.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 관련 체크리스트

	확인할 사항	예/아니오
1	당사가 파트너사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지?(① 공동특허 및 기술개발을 위한 경우, ② 파트너사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의 승인 규모를 정하기 위한 경우 및 ③ 제품의 하자 원인규명을 위한 직접적 기술에 해당하는 경우 등)	
2	당사가 파트너사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려는 경우, 사전에 법정기재사항이 명기된 기술자료 요구서를 발급하였는지?	
3	해당 공종에 신기술공법(특허공법 등)이 적용되는 경우에, 파트너사와 미리 협의하여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법정기재사항이 명기된 기술자료 요구서를 파트너사에게 발급하였는지?	
4	파트너사가 당사의 요구 없이 임의로 기술영업 등을 위해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당사의 요구에 의한 제공이 아니라는 확인서를 받았는지?	
5	파트너사에게 요구하려는 기술자료(시공설명서, 제조공정도 등)가 당사 자체적으로 취득 가능한 자료임을 확인하고, 가능한 자료는 파트너사에 별도 요구하지 않았는지?	
6	파트너사로부터 기술자료를 제공받은 후 목적을 벗어나 당사가 임의로 사용하거나 파트너사의 경쟁회사 등 제3자에 제공하지 않도록 관리하였는지?	
7	사전에 파트너사와 기술자료의 반환·폐기기한 및 사유를 정하고, 그 절차에 따라 처리하였는지?	
8	수급사업자로부터 기술자료를 제공받을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비밀유지계약을 교부하였는지?	

2.2.6. 부당한 경영간섭(전속거래 강요행위 금지 및 경영정보 요구) 금지(하도급법 제18조)

(1) 개념

-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량을 조절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간섭하여서는 아니된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본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가 기술자료를 해외에 수출하는 행위를 제한하거나 기술자료의 수출을 이유로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구속하는 행위 ※ 전속거래 강요 행위 금지
 3.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원가자료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2)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금지

- 경영상의 정보 유형
 - 수급사업자가 목적물등의 납품을 위해 투입한 재료비, 노무비 등 원가에 관한 정보(원가계산서, 원가내역서, 원가명세서, 원가산출내역서, 재료비, 노무비 등의 세부지급 내역 등)
 - 수급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납품하는 목적물등의 매출 관련 정보(매출계산서, 거래처별 매출명세서 등)
 - 수급사업자의 경영전략 관련 정보(제품 개발·생산 계획, 판매 계획, 신규투자 계획 등에 관한 정보 등)
 - 수급사업자의 영업 관련 정보(거래처 명부, 다른 사업자에게 납품하는 목적물등의 납품조건(납품가격을 포함)에 관한 정보 등)
 - 수급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사용하는 전자적 정보 교환 전산망의 고유식별명칭, 비밀번호 등 해당 전산망에 접속하기 위한 정보

요구금지 원가 관련정보 예시

1. 원가계산 관련 서류: 원가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등
2. 회계정보: 매출계산서, 매출처별 거래명세서 등
3. 영업정보: 고객 및 거래처 정보 등

- 심사지침이 2016.12.27. 개정되면서, 기술자료의 예시에서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생산원가 내역서”와 “매출정보”가 삭제되었다.
- 향후 생산원가 내역서나 매출정보를 수급사업자에게 요구하는 행위는 하도급법 제18조(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의 적용을 받을 것이다.

(3) 업무상 유의사항

Do

-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인상협의 시 하도급대금의 인상폭 결정과 직접 관련이 있는 원재료의 원가비중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는 가능하다.
- 정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 입찰 시 발주처에서 수급사업자의 원가정보를 필수 제출자료로 지정하여 원가계산서 등 관련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다.
- 계약의 특성상 실비를 정산하는 것이 적절한 항목이 있는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해당 항목의 실비정산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다.
- 다른 법령에 의해 원사업자에게 부여된 수급사업자 관리 및 감독 의무이행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다.
- 원사업자가 상생협력과 공정거래협약 이행을 위해 하도급업체에 경영정보를 제출하도록 요청하는 경우는 가능하다.
- 산재보험료 산출을 위해 임금대장 등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다.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2차 또는 그 이하 수급사업자와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하도록 권유하고, 협약체결에 따른 실적 확인을 위해 수급사업자와의 협약체결 내역을 요청하는 것은 가능하다.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인건비, 복리후생비, 금융비용 등을 지원하고 그 범위 안에서 2차 또는 그 이하 수급사업자에게 지원하도록 요청 내지 권하고, 지급내역을 제출하도록 요청하는 것은 가능하다.
- 수급사업자의 효율성 증진,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위해 필요한 범위 안에서 수급사업자가 컨설팅 받고자 하는 경영전략 관련 정보를 요청하는 것은 가능하다.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업교육, 채용박람회 실시 및 채용연계 등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범위 안에서 채용 관련 정보를 요청하는 것은 가능하다.

Don't



- 협력사에 대해 거래단절, 물량축소 등 불이익을 제공할 것을 거래조건으로 내걸면서 오직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한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자신의 특허로 개발한 부품이 아닌 일반부품의 제조를 협력사에 위탁하면서, 해당 부품을 자신에게만 납품토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수급사업자가 임직원을 선임·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인을 채용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사에 간섭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수급사업자의 생산품목·시설규모 등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차 수급사업자의 재 하도급거래에 개입하여 자신의 위탁한 목적물의 품질유지 및 납기 내 납품여부 등 하도급거래의 목적과 관계없이 2차수급사업자의 선정·계약조건설정 등 재 하도급거래내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수급사업자가 정상적으로 공사를 시공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장근로자를 동원하여 공사를 시공케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자신 또는 자신의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급사업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원가내역, 생산과정, 투입인력, 재료배합 등을 실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관련 사례

(주)포스코케미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등에 대한 건

(의결 제2022-268호)

[사실관계]

(주)포스코케미칼은 2010년경부터 협력사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협력사 임원의 임기, 임원 처우, 배당률, 이익잉여금 등 적정 자본 규모, 지분구성 등 협력사 내부 경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협력사 경영관리 기준'을 만들어 운영하였다. 경영관리 기준이 변경될 때마다 관련 협력사에게 이를 설명하고 준수하도록 요청하였고, '협력사 KPI 평가지침'을 제정한 이후로 매년 협력사의 핵심성과지표(KPI)를 토대로 협력사를 평가하고 해당 결과를 인센티브 지급 혹은 페널티(계약해지, 물량축소 등) 부과와 근거자료로 사용하였다. 경영관리 기준에 명시된 협력사 임원의 임기가 도래하면 피임인은 해당 자리에 부임할 내부 직원을 후임자로 선정하여 협력사에 통보하고 후임자는 전임자가 보유한 협력사의 지분을 인수하여 전임자의 직책에 부임하였고, 협력사의 임원 전직이나 교체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협력사를 지속적으로 압박하였다.

[공정위 판단]

임원의 임기, 처우에 관한 사항은 물론이고 특히 배당률 및 이익잉여금은 사업자가 자신의 손익, 투자 여부 등 재무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안인 점, 지분구조는 의결권 행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안인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이 상법상 독립된 법인인 협력사에 대해 이러한 내용을 간섭할 이유는 없다. 특히, 협력사 임원의 임기가 도래하면 다음 후임자를 내정하여 임원의 선·해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는데, 이는 협력사가 납품하는 목적물의 품질 유지 등 피심인과 협력사간 거래의 목적달성과 관계없이 피심인의 인사적체 해소 및 퇴직자의 편의 제공 창구로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이 명백하므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협력사에게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통지를 명하였다.

재하도급 거래 관련 부당한 경영간섭 사례

(웅진코웨이(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 제2009-032호)

[사실관계]

대유전자(주) 등 21개 1차 수급사업자에게 공기청정기, 비데 등의 부품 제조를 위탁함에 있어, 이들 수급사업자들의 2차 수급사업자와 직접 재하도급 단가를 결정한 후 동 단가대로 거래하도록 함으로써 1차 수급사업자들의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를 하였다.

[공정위 판단]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와는 별개의 독립된 사업자이므로 재하도급 거래시 단가, 물량 등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권한이 있음에도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의 재하도급 단가결정에 직접 개입하였다. 이는 하도급 납품단가 결정이 경영의 본질적인 사항임을 감안할 때 1차 수급사업자의 2차 수급사업자에 대한 자율적인 납품가격 결정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서 부당한 경영간섭행위로 인정되며, 피심인이 제품의 품질유지, 기술 및 자금지원 등의 이유로 1차 수급사업자와 2차 수급사업자의 재하도급거래 조건에 개입하는 행위는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사실관계]

OO전자가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승인원(Specification Sheet)을 제출하도록 하였는데, 그 승인원에는 회로도, 부품의 종류와 구체적 기능, 동작원리뿐 아니라 원자재 구매처 및 제조공정 등 구체적인 조립방법까지 기재토록 하였다. 그리고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2차 벤더 관리담당 인력을 선정하게 하고 위 인력의 주요 역할까지 구체적으로 기재하였다.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2차 벤더 관리 전담 인력을 선정하여 운용하도록 하며 위 인력으로 하여금 2차 벤더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대법원 판단]

“품질 유지 목적을 벗어나” 수급사업자의 재하도급 거래내용을 간섭한 행위로 보아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로 판단하였다.

부당한 경영간섭 금지 관련 체크리스트

확인할 사항		예/아니오
1	협력사의 재하도급거래에 개입하여, 당사가 위탁한 목적물의 품질유지 및 납기 내 납품 여부 등 하도급거래 목적과 관계없이 2차 협력사의 선정 또는 계약조건 설정 등의 재하도급 거래 내용을 제한하였는가?	
2	협력사의 경영자료 등을 일방적으로 요구하거나 인사청탁을 명목으로 경영에 간섭하였는가?	
3	협력사가 당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한다는 이유로 거래중단 또는 거래물량을 축소하지는 않았는가?	
4	사전예고 없이 거래중단 또는 거래물량축소를 결정하였는가?	

2.2.7 보복조치의 금지(하도급법 제19조)

(1) 개념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 또는 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하도급법 제19조).
 1. 원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하였음을 관계 기관 등에 신고한 행위
 2. 제16조의2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 또는 같은 조 제11항의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대한 조정신청
 - 2의2. 관계 기관의 조사에 협조한 행위
 3.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한 행위
-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제13조제11항이 적용되는 거래를 포함한다)와 관련하여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이 법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하도급법 제20조).

(2) 업무상 유의사항

Don't



- 법 위반 사실을 관계기관 등에 신고한 행위를 이유로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정지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에 따라 하도급대금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후 이를 회수하거나 납품대금에서 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어음할인료·지연이자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후 이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 포기각서 제출을 강요한 후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관련 사례

법 위반 사실을 관계기관 등에 신고한 이유로 불이익을 준 사례

(고성조선해양(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건, 의결 제2013-188호)

[사실관계]

수급사업자인 (주)○○(대표 조○○)은 2010. 9. 28. 부당하도급대금 결정 및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피심인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하여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신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비슷한 시기인 2010년 9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발주자인 ★★을 비롯하여 ****,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에도 유사한 내용의 진정서를 수차례 제출하였고, 신고사실을 인지한 피심인은 2010. 10. 5. (주)○○ 대표 조○○을 신용훼손 및 업무방해로 경남 고성경찰서에 고소하였으며, '현재 진행 중인 물량 이후 추가물량이 없고 수급사업자가 **** 및 ★★에 제출한 공문으로 인하여 발생한 명예훼손은 기본계약서 제38조 제1항 제9호에 해당된다'는 사유를 들어 2010. 10. 11. 신고인에게 계약해지예정을 통보하였다. 피심인은 2010. 10. 25. (주)○○이 제작하던 ---호선의 잔여물량에 대한 제조위탁계약을 태영산업(대표 최△△)과 체결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인 (주)○○과의 하도급계약을 사실상 해지하였다.

[공정위 판단]

피심인이 수급사업자 (주)○○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등을 이유로 합리적 사유 없이 거래를 중단한 행위는 법상 보복조치에 해당된다.

지급한 어음할인료를 회수하거나 하도급 대금에서 공제한 탈법사례

((주)화인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건, 의결 제2017-004호)

[사실관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였던 어음할인료 중 00000 등 15개 수급사업자에 대한 어음할인료 26,739천 원을 2014. 2. 11., 2014. 2. 21., 2014. 2. 27. 3회에 걸쳐 피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회수하였다.

[공정위 판단]

피심인이 위원회가 실시한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에서 발견된 미지급 어음할인료를 수급사업자들에게 지급한 후 그 시정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통상적인 조치보다 경미한 '경고' 조치를 받은 후, 그 지급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수급사업자로부터 다시 회수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회적인 방법을 통하여 어음할인료 미지급에 대한 법 적용을 피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2.3 대금지급단계의 하도급법상 규제내용

2.3.1 하도급 대금 지급 의무(하도급법 제13조)

(1) 개념

① 원칙

- 하도급대금은 원사업자가 목적물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 여기서의 목적물 수령일이라 함은 이동이 가능한 물건의 경우 원사업자에게 납품한 날(사실상 원사업자의 지배에 두게 된 날)을 의미하고, 이동이 불가능한 물건의 경우에는 검사를 개시한 날을 의미한다.

② 60일 이내 대금 지급 원칙의 예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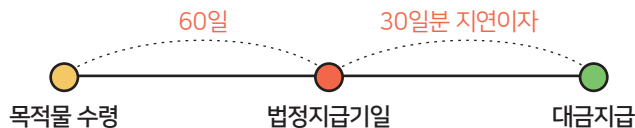
- 일괄마감제도를 채택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기준으로 본다. 즉, 목적물의 납품이 빈번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1회 이상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업무의 혼선을 피하기 위하여 그 정한 날을 목적물 수령일로 본다.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받은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추가공사 및 공사중단, 계약해지 등으로 정산이 되지 않아 하도급대금을 확정하지 못한 경우의 목적물 인수일은 정산시점에 불구하고 추가공사의 완료일, 공사중단일, 계약해지일 등을 목적물 인수일로 본다.

(2) 기간의 계산

-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이 기간으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초일은 산입하지 않고, 기간종료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거래일에 기간이 만료하는 것으로 본다.

(3) 지연이자 지급 의무

- 하도급대금은 목적물 수령일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나 이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연이자(연 15.5%)를 지급해야 한다. 예를 들어, 목적물을 수령하고 90일째 되는 날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였다면 30일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4) 어음할인료 지급 의무

- 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어음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7.5%)를 수급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원사업자가 법정지급기일에 30일이 만기인 어음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였을 경우, 30일에 대한 어음할인료를 지급해야 한다.



(5)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수수료 지급 의무

- 어음대체결제수단은 하도급 대금 지급 시 어음을 대체하여 사용하는 결제수단으로 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구매론을 말한다. 특히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해 지급하는 경우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날 이후부터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상환기일까지 해당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수수료율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과 사전에 체결한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6) 하도급 대금 지급 수단

- 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의 지급수단과 관련하여 특별한 제한은 없다. 따라서 하도급대금은 현금 외에 어음 및 어음대체결제수단을 통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단,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했으나 어음이 부도 처리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7) 범위반 유형

-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까지 전부 또는 일부를 미지급하는 경우
- 하도급대금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를 미지급하는 경우
-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결제되는 장기어음으로 지급함에 따른 어음할인료를 미지급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라도 수급사업자에게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8) 업무상 유의사항

Do



-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했으나 동 어음이 부도 처리된 경우, 이는 어음금이 결제되지 못한 것이므로 처음부터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이를 주의한다.
- 하도급 대금의 지급 기일은 대금 지급 기일인 60일 이내에 당사자가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
- 발주처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Don't



- 수급사업자의 대금 청구 지연을 이유로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대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 수급사업자의 하자 이행을 위한 목적으로 하도급 대금중 일부를 유보하여서는 아니된다.

(9) 관련사례

하도급대금 미지급 및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미지급 행위

(엠브이저토건(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 제2023-111호)

[사실관계]

A건설은 무안지역 아파트 건설공사 중 조적·타일·방수 공사 등 14건의 공사를 7개의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후,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일부 하도급대금 396,240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5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868,850천원 중 472,610천 원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10,681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7개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 지연이자 10,681천 원 및 하도급대금 396,240천 원 중 378,570천 원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추가로 상환하였다. 다만, 이에 따라 발생한 지연이자 90,273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정위 판단]

피심인이 목적물등을 수령하고도 이 사건 관련 수급사업자들에게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법정지급기일)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 상환기일이 하도급대금의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법 제13조 제1항, 제7항에 위반되므로 위법하다.

포스코건설의 선급금 및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포스코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 제2021-129호)

[사실관계]

(주)포스코건설은 2016. 3.~2019. 4. 기간 중 52개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8,221천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어음 대체 결제 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수수료 90,625천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15개 수급사업자에게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하여 선급금을 지급하면서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487천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 판단]

원사업자가 지급기일을 경과하여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자체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가 되어 제재대상이 되며, 포스코건설에 대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법정 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사례

(쌍용자동차(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 제2018-029호)

[사실관계]

쌍용자동차(주)는 2014년 6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10개 수급 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용 금형을 제조 위탁하고 하도급 대금 56억 8,095만 원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 할인료 3,424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 판단]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목적물 수령일 부터 60일이 지난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연 7.5%)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13조 제6항에 위반된다. 이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하나, 2017년 3월경 어음 할인료 전액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 법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한 점을 고려하여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는다.

본 계약의 미완성을 이유로 추가 개발 용역대금을 미지급한 사례

(한화에스엔씨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 제2014-134호)

[사실관계]

한화에스엔씨는 2건의 추가개발 용역에 대한 하도급대금 미지급과 관련하여 추가개발 용역은 본 계약인 '한국교직원 공제회 회원관리 차세대 시스템 구축 용역'과 연계된 것으로 000이 본 계약 구축 용역을 완료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용역수행을 중단하여 본 계약이 완성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본 계약과 연계되어 개발되는 이 사건 추가 개발 용역건도 용역수행을 완료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대금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공정위 판단]

① 위 교육행정정보 시스템 추가개발 용역 건은 발주사의 요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피심인이 발주사로부터 추가개발에 따른 계약금액 50,798천 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는 점, ② 피심인은 위 2건의 추가개발 용역을 위탁하기 위하여 000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본 계약 구축용역과는 별건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000이 용역을 완료하고 납품한 목적물에 대해, 양측의 담당자협의를 통해 000의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사실이 있는 점, ③ 위 2건의 추가개발을 위한 용역계약서상에는 000의 목적물 납품에 따라 피심인이 검수완료 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000이 납품한 '교육행정정보 시스템 추가개발 용역' 건에 대한 검사내역기록을 보면 투입인력(김00, 김00)이 기재되어 있으며, 용역 완료여부에 'Y' 라고 표시하여 검사에 합격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인터페이스 추가개발 용역' 건도 이 건의 개발일정 및 진척관리도를 보면, 2012. 5. 1. 개발을 시작하여 2012. 5. 24. 개발을 완료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④ 위 2건의 추가개발이 본 계약 용역과 연계된 개발이라 하더라도 000이 별건의 계약에 의하여 추가개발 용역수행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000이 작성하여 피심인에게 보고한 주간업무보고서(2013. 2. 13. 및 2013. 3. 6. 보고자료)에는 교육행정정보 시스템 추가개발을 위하여 2명의 인력을 투입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한화에스엔씨는 목적물을 수령하고 검사까지 마쳤다면 본 계약 구축용역의 완성여부와 관계없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에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72,600천 원과 이 금액에 대하여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연 20%의 이율을 적용한 지연이자를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하였다.

건설위탁에서의 목적물 수령일이 문제된 사례

(유강종합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 제2025-080호)

[사실관계]

유강종합건설(주)는 2023. 10. 15. 수급사업자에게 '백통신원 제주리조트 개발사업 A-4블럭 A, B동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위탁하면서 '기성금은 청구금액의 85%만 지급하면서 유보된 하도급대금의 지급시기를 준공 이후 2개월 이내로 유예하는 약정'을 설정하였고, 목적물을 인수하였음에도 위 계약조건에 따라 유보된 하도급대금 71,445천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정위 판단]

법 제13조 제1항에서 목적물등의 수령일은 건설위탁의 경우 인수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Ⅲ. 11. 나.에서는 건설위탁의 경우 목적물 수령일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고 검사를 완료한 날(법 제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목적물의 인수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 제8조 제2항 단서에서는 건설위탁의 경우 검사가 끝나는 즉시 그 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9조 제2항에서는 건설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건설위탁에서의 목적물 수령일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고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였다면 수급사업자가 검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을 목적물 수령일로 봄이 타당하고,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준공 또는 기성부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11일째 되는 날을 목적물 수령일로 봄이 타당하다.**

신고인은 미지급 하도급대금과 관련이 있는 6, 7회차 기성에 대하여 각각 2024. 6. 24., 2024. 7. 1.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신고인은 2024. 5. 30. 이 사건 지급유예 약정에 따라 71,445천 원을 공제한 18,855천 원을 청구하였고 양 당사자가 2024. 6. 5. 공사완료확인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의 목적물 수령일은 2024. 6. 5.로 봄이 타당하다. 피심인이 2023. 10. 15. 신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를 위탁한 후 2024. 6. 5. 목적물을 인수하였음에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현재까지 하도급대금 71,445천 원(부가가치세 포함)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되는바, 공정위는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및 미지급 하도급대금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의 지급명령을 결정하였다.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체크리스트

확인할 사항		예/아니오
1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 그 받은 날부터 15일(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지급하고 있는지?	
2	목적물 수령 후 법정지급기한(60일)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며, 기간 도과시 어음할인료 또는 법정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있는지?	
3	당초 계약의뢰서 작성시 발주자로부터 지급받는 대금조건을 명확히 파악하여 작성하였는지?	
4	발주자로부터 현금으로 도급대금을 지급받는 현장의 경우 파트너사에게 현금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 있는지?(건설자재를 제조 및 용역 위탁한 경우도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는지?)	
5	추가공사에 대한 실정보고 지연으로 변경계약 지연시, 기존 계약내역을 활용하여 작업지시서에 따른 기성에 대한 기성금을 지급하고 있는지?	
6	기존 계약내역을 활용하여 작업지시서에 따른 기성에 대한 기성금 지급시, 파트너사도 위와 같은 내용을 인지하고 동의하였다는 증빙서류를 남겨놓았는지?	
7	기성금 지급 과정에서 공제 및 지급 유보를 한 경우 컴플라이언스팀의 자문을 받았는지?	
8	하도급대금 채권이 가압류된 경우 해당 하도급 대금을 법정지급기한내에 공탁 처리하고 있는지?	
9	법정지급기한 이후 하도급 대금을 공탁하는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하였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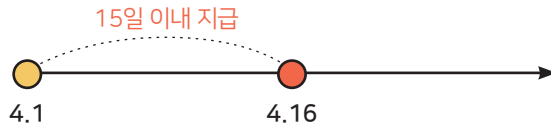
2.3.2 선급금 지급 의무(하도급법 제6조)

(1)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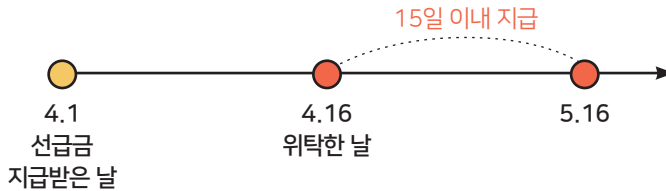
- 하도급대금은 물품 등의 납품 또는 시공을 완료한 다음 그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는데, 이것을 기성금이라고 한다. 경우에 따라 발주자가 공사착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장차 지급할 공사대금 중 일부를 미리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하도급법상 선급금이라고 한다.

(2) 원칙

-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지급해야 한다.



- 만약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기 전에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3) 지급 방법

-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액에 원도급금액 대비 하도급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4) 준수 의무

- 선급금은 선지급한 하도급대금의 일부이므로,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하도급법에서 규정한 현금결제비율유지의무, 어음만기일유지의무, 지연 지급시 지연이자 지급의무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현금결제비율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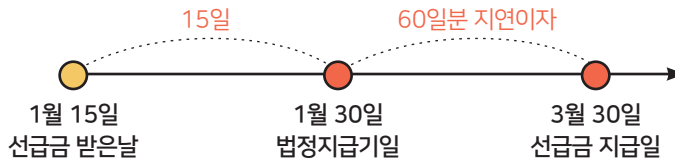
-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았을 경우 지급받은 현금비율이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② 어음만기일유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어음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도 교부받은 어음의 만기일을 초과하지 않는 어음을 지급해야 한다.

③ 지연이자 지급 의무

선급금은 선지급한 하도급대금의 일부이므로 지연 지급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라면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해주어야 하고, 15일이 지난 이후에 선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연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예를 들어, 원사업자가 1월 15일 선급금을 현금으로 받고 3월 30일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였다면, 60일에 대한 지연이자(연15.5%)를 지급해야 한다.



(5) 범위반 유형

-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현금 또는 어음으로 선급금을 지급하였으나 지연이자를 미지급하는 경우
- 선급금을 법정지급기일내에 어음으로 지급하고 어음만기일이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였으나 이에 대한 어음할인료를 미지급한 경우
-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날로부터 실제 지급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미지급하는 경우

(6) 업무상 유의사항

Do



- 발주자가 선급금의 사용용도, 지급대상품목 등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지급한 경우, 원사업자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용도에 한정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하면 된다. 이와는 반대로 발주자가 특정한 공사나 품목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사업자는 전체 대금 중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계약서상 선급금 지급에 대한 규정이 없어도,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수급사업자가 선급금 지급 보증서를 지연제출하였을 경우에는 지연일수만큼 선급금 지연 지급이 가능하다.
- 수급사업자가 보증한도 부족 등으로 선급금 지급 보증서를 미제출할 경우에는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 선급금의 내용과 방법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선급금 지급 시 어음만기일유지의무나 현금결제비율유지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Don't



- 수급사업자와 체결한 선급금 포기 각서는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어 부당한 특약에 해당되므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 하도급법상 선급금은 장차 지급해야 할 하도급대금을 미리 지급하는 것으로 작업이 얼마나 진행되었는지(기성률)에 맞추어 공제해 나가야 한다. 따라서 원사업자가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고 다음 기성에서 선급금 전체를 일괄적으로 공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7) 관련 사례

선급금 미지급 사례

(부강종합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 제2021-039호)

[사실관계]

B건설은 발주자로부터 받은 비율에 따라 공사대금 10%에 해당하는 282,018천원을 2016.9월에 지급하였으나, 2016.10월 해당 공사의 설계변경에 따른 도급금액 증액이 있었음에도 추가 공사대금 2,327,720천 원의 10%에 해당하는 선급금 232,772천 원을 공사 위탁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후 해당 수급사업자와 2017.3월 수급사업자의 운영자금 부족 등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였으며, 해당 기간 동안 기성 지급을 모두 완료하였으나 이때 선급금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의 판단]

B건설은 추가 공사대금 2,327,720천 원의 10%에 해당하는 선급금 232,772천 원을 이 사건 공사 변경 위탁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아울러 해당 선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기성금을 지급함에 따라 발생한 선급금 지연이자 3,434천 원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선급금 및 선급금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는 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된다.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명령하고, 선급금 지연이자 3,434천 원을 수급사업자에게 지체없이 지급하도록 명령하였다.

계약규정을 근거로 선급금 미지급한 사례

(케이에이치피티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 제2016-123호)

[사실관계]

(주)케이에이치피티는 2013년 1월 '3차 화학용품 및 암모니아 열교환기 제관 제작'을, 2013년 7월 '유지씨(Ugcc) 에틸렌 저장용기 제관 제작'을 수급 사업자 A사에게 제조 위탁했다. 이들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하였음에도, A사에 지급해야 할 선급금 3억 1,150만 원을 '선급금 없음'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유로 법정 지급 기일인 15일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의 판단]

원사업자가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하도급대금을 기성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선급금 지연이자를 수급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하도급법에 따라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 그 내용과 비율대로 반드시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선급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주)케이에이치피티에 향후 금지명령과 임원·담당자에게 교육 이수명령을 결정 또한 선급금 지연이자 2,463만 원을 지급하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하였다.

선급금 지급 관련 체크리스트

	확인할 사항	예/아니오
1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파트너사에 선급금 지급사실을 통보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는가?	
2	파트너사에 내용과 비율에 따라 지급할 선급금액을 기재한 서면(변경계약서)을 발송하였는가?	
3	파트너사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선급금 지급 및 포기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하였는가?	
4	파트너사가 선급금 수령을 포기하려는 경우, 파트너사가 포기각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안내하였는가?	
5	파트너사 선급금 수령 선택 시 발주자로부터 선급금 수령 후 15일 이내에 파트너사에 지급하였는가?	
6	선급금 지급 지연시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한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였는가?	

2.3.3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 대금의 조정의무(하도급법 제16조)

(1) 조정절차

① 조정내역 통지

- 원사업자는 설계변경 등에 의해 하도급대금이 증액 또는 감액된 경우 해당 하도급대금 조정내역을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통지한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별도로 통지할 필요가 없다.

② 변경계약 체결

- 그 다음으로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조정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의 증액 또는 감액과 관련된 변경계약을 해야 한다. 즉,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조정 받은 내용을 반영해 주어야 한다.

③ 조정금액 지급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경우,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5일을 초과하는 날로부터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고, 추가 하도급대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수수료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2) 조정기준

① 분명한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

- 설계변경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이 명확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② 불분명한 추가금액의 내용

-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평균비율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

③ 총액지급 방식

- 총액지급방식의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평균비율을 적용하여 지급하면 된다.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증액 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 각각에 해당하는 비율을 산정하여 증액시켜주는 경우에는 적법하나, 수급사업자 각각에 해당하는 비율 미만으로 증액시켜주는 경우에는 위법하다.

(3) 조정방법

-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대금을 조정해준 내용과 비율에 따라 물가변동 대금조정외의 경우, 복잡한 개별품목의 조정방법보다는 전체 계약금액에 물가변동지수를 적용하여 총액조정방법을 택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다만, 품목별 조정방법의 경우 해당공종별로 발주자로부터 인정받은 세부공사 내역별로 조정받은 내용과 비율로 해야 한다.

(4) 범위반 유형

-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으로 추가금액을 지급받고도 수급사업자와 약정이나 국가계약법(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지 않고 물가변동률이 5% 미만이면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을 이유로 조정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위법하다.
- 설계변경 등에 의해 도급대금이 증액 또는 감액된 경우, 원사업자가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지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동 또는 물가연동 금액을 수령 받고도 이를 미지급하거나 또는 받은 비율이나 내용보다 적게 지급하는 경우는 범위반에 해당한다.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물가연동 금액을 조정받고도 30일을 초과한 날까지 조정하지 않거나 30일을 초과하여 지연조정하는 경우는 범위반에 해당한다.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금액 또는 물가연동 금액을 수령하고도 15일을 초과하는 어음을 지급하거나 15일을 초과하여 현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를 미지급하는 것으로서 범위반에 해당한다.

(5) 업무상 유의사항

Do

- 설계변경 등에 의해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 받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통보하고, 30일 이내에 증액 또는 감액이 이루어져야 한다.
- 설계변경 또는 물가연동으로 증액 또는 감액 받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조정사유와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 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협의를 완료하고 조정 절차를 마무리하여야 한다.
- 협의의 절차가 지연되어 30일이 초과되어 합의가 된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조정받은 대금을 받은날로부터 15일을 초과하는 일수만큼 지연이자 또는 어음할인료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Don't

- 설계변경 또는 물가연동에 따른 조정을 특약으로 배제하지 않는다.

(6) 관련 사례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 증액을 받고도, 하도급대금을 미조정한 사례

(심결례 미발간)

[사실관계]

D건설은 2020. 8. 24. ~ 2022. 3. 31.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에게 '춘천농협 NH타운 신축공사 중 AI창호공사를 위탁하며 관련 추가·변경공사*를 지시하였음에도, 수급사업자가 추가·변경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추가·변경공사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D건설은 물가변동 등을 이유로 발주자로부터 2021. 10. 29. 및 2022. 1. 10. 2차례에 걸쳐 자신의 도급 공사대금을 증액받았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 15일*내에 증액 사유 및 내용을 통지하지 아니하였고, 30일**내에 관련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 주지도 아니하였다.

[공정위의 판단]

D건설의 이러한 행위는 경제상황 변동 등의 이유로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증액사유와 내용을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증액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법 제16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위반된다. 서면 미발급 내용이 전체 공사대금이나 내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하도급대금 조정 금액이 약 82백만 원 수준으로 전체 공사 규모 대비 크지 않은 점, 해당 신고내용이 신고인에게 한계구제적 성격 및 민사분쟁적 성격이 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고 및 벌점 0.5점을 부과하였다.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받았음에도 하도급대금을 미조정한 사례

(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건, 의결 제2024-302호)

[사실관계]

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는 발주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총 4번에 걸쳐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증액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증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않거나, 3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증액하기 위한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발주자로부터 증액된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한 날에 대한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의 판단]

공정위는, 위 행위가 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 조정의무를 위반한 행위라고 보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 4,500만 원을 부과하였다.

발주자 설계변경 및 공급원가 변동 관련 체크리스트

	확인할 사항	예/아니오
1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ESC 포함)을 반영 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파트너사에 이 사실을 통지하였는가?	
2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ESC 포함)을 반영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파트너사와 변경계약을 체결을 하였는가?	
3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ESC 포함)에 따라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경우 대금 수령 후 15일 이내에 파트너사에 지급하였는가?	
4	설계변경(ESC 포함)에 따른 추가금액 지연 지급 시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지급하였는가?	
5	ESC 관련 현장설명서에 기간계산, 기준요율, 참고물가지수, 반영 내역 등 ESC 산정기준 및 방식에 관해 사전 안내를 하였는가?	
6	파트너사와 발주자의 ESC에 대한 하도급대금 증액분 산정 시, 당사의 비용으로 ESC를 계산할 외부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객관성을 확보하였는가?	
7	하도급대금 변동에 따른 파트너사의 대금조정 요청시 10일 이내에 조정협의를 개시하였는가?	

2.3.4 물품구매대금등의 부당결제청구 금지(하도급법 제 12조)

(1) 개념

-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의 계약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는 다음 행위는 금지된다.
 - 해당 목적물등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 전에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게 하는 행위
 - 자기가 구입·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급하는 조건 보다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구매대금이나 사용 대가를 지급하게 하는 행위
- 물품구매대금 등의 결제를 사전에 요청할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에 반하지 않음을 원사업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2) 업무상 유의사항

Don't



- 지속적인 하도급거래에 있어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원재료를 구매한 경우, 실제 투입한 물량에 대한 가액 이상으로 차감하지 말아야 한다.
- 자신의 장비를 사용하도록 함에 있어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 대가를 과다하게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 자신이 제공하는 중장비 임대료 등을 당월 기성금 지급기일 이전에 지급하게 하는 행위 또는 장비임대업자의 통상적인 중장비임대료를 초과하여 과다하게 지급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3.5 경제적 이익의 부당한 요구 금지(하도급법 제12조의2)

(1) 개념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업무상 유의사항

Don't



- 원사업자의 수익 또는 경영여건 악화 등 불합리한 이유로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재물 및 경제적 가치 있는 이익을 포함. 이하 같음)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 하도급거래 개시 또는 다량거래 등을 조건으로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지 않아야 한다.
- 수급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없음에도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지 말아야 한다.

(3) 관련 사례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행위

(㈜크리스에프앤씨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 제2020-009호)

[사실관계]

(주)크리스에프앤씨는 2014년 1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6차례에 걸쳐 50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자신이 판매하는 '파리게이츠'와 '마스터바니 에디션' 브랜드 골프 의류를 특정 백화점 또는 직영 매장에서 구입하도록 요구하였고 재계약이 임박하거나 매출이 부진한 매장의 매출 증대를 위하여 거래 중인 수급 사업자들에게 골프 의류 구입 일자, 매장 및 금액 등을 정해서 통보, 수급 사업자들이 요구한대로 구입했는지 결과도 보고하도록 했다. 그 결과 50개 수급 사업자들은 (주)크리스에프앤씨의 요구에 따라 총 124,254,280원에 해당하는 골프 의류를 구입했다.

[공정위의 판단]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주)크리스에프앤씨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향후 위탁 거래가 중지 또는 축소되는 불이익을 당할 것을 우려한 수급 사업자들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신을 위하여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요구한 행위로 하도급법 제12조의2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행위

(주)영동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 제2021-311호)

[사실관계]

(주)영동건설은 2017년 12월경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자신에게 부과된 200만 원 상당의 벌금을 계약서에 특약 조건(‘환경 법규 위반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모든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조항’)이 존재한다는 이유를 들어 수급사업자에게 전부 부담시켰다.

[공정위의 판단]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수급사업자들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신을 위하여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요구한 행위로 하도급법 제12조의2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하였다.

2.3.6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 대금의 조정(하도급법 제16조의2)

(1) 수급사업자의 조정 신청

- 수급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후 목적물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거나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목적물등의 납품등의 시기가 지연되어 관리비등 공급원가 외의 비용이 변동되는 경우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공급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수급사업자가 목적물등의 제조, 수리, 시공하거나 용역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하며, 공급원가 외의 비용은 재료비, 노무비뿐만 아니라, 관리비 등이 추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 발주자로부터 원사업자가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추가금액을 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수급사업자는 별도로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2) 원사업자의 협의 개시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 구체적인 대금 조정은 당사자간 협의에 의해 결정하여야 한다.

(3)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

- 조정신청일부부터 10일 경과 후에도 원사업자가 협의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
- 조정신청일부부터 30일 안에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

(Fast Track)협약개시 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로서, ①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합의 중단의사를 밝힌 경우, ② 조정금액이 상호 간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③ 합의 지연 시 영업활동의 심각한 곤란 등 중대한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등

하도급 대금 조정 신청 및 협의 요건 확대(2020.5.27 시행)

- 공사가 시간이 연장되거나 납품 시기가 늦어지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올려주거나 하도급 업체 간에 합리적으로 분담될 수 있도록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목적물등이 납품등 시기가 지연되어 관리비등 공급원가 외의 비용이 변동되는 경우'를 조정 신청 사유에 추가했다.
- 따라서, 수급사업자는 재료비, 노무비뿐만 아니라, 관리비 등이 추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원사업자에게 조정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급원가 조정협의

- 공급원가의 급격한 변동으로 조합원인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조정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급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조합도 원사업자에게 조정신청 협의가 가능하다. 다만,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같은 조합원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 수급사업자가 조정신청에 따른 원사업자의 거래중단, 물량감소 등의 위험으로 인해 신청을 꺼려하는 경우를 감안하여 도입(조합에게 하도급대금 조정협의권 부여)
 - 조합은 신청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원사업자에게 조정 신청
 - 조합의 조정상대 원사업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건설업의 경우 평균매출액 등이 1,200억 원을 초과하는 중견기업

(5) 업무상 유의사항

Do



- 하도급거래에서 원재료의 가격이 급격히 변동되면 수급사업자 또는 조합은 하도급법에 따라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원사업자는 10일 이내에 협상에 응할 의무가 있다.
- 수급사업자 또는 조합이 협의를 신청하면 실질적인 단가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책임자가 협의(담당자를 통한 단가조정 관련 지시·보고 등 간접적 형태의 협의를 포함)에 임하여야 한다.
- 원재료 등의 가격 변동 등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 요건, 방법 및 절차를 사전에 하도급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 관련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Don't



- 수급사업자의 협의 신청에 응답하지 않거나, 협의를 개시하겠다고 통보한 후 회의 개최, 의견 교환, 단가조정안 제시 등 실질적인 협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 단가조정을 위한 시장조사, 원가 산정 등 객관적 근거 없이 수급사업자가 수용할 수 없는 가격을 되풀이하여 제시하여서는 안된다.
- 수급사업자의 협상 요청을 거부하거나 게을리하여서는 안 된다.

수급사업자가 목적물의 공급원가 변동 등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하였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조정 협의를 늦게 한 사례

(현대엘리베이터(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건, 의결 제2023-064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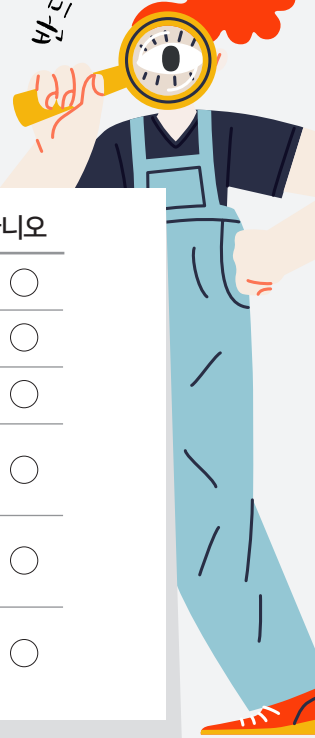
[사실관계]

현대엘리베이터는 2021. 1. 20.부터 같은 해 7. 13. 기간 중 10개 수급사업자들로부터 11건의 위탁 건에 대해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 신청을 공문 등으로 받은 후(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11일~126일 이후 수급사업자와 협의를 개시하였다.

[공정위의 판단]

공정위는, 위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 조정협의를 개시하지 않은 행위로 하도급법 제16조의2 제7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하였다.

반드시 확인



3. 하도급 거래단계별 체크리스트

실행예산편성 관련 체크리스트

	확인할 사항	예/아니오
1	실행예산 편성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한 '실행예산편성업무규정'을 마련하고 있는가?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2	'실행예산편성업무규정'에 부합하게 실행예산을 편성하였는가?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3	입찰전에 편성한 실행예산과 입찰후의 실행예산이 변경없이 동일한가?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4	실행예산편성을 위해 파트너사로부터 원가정보 등 경영상 정보로 해석될 수 있는 자료(실행예산 견적서 등)를 요구하여 제공받지 않도록 관리하였는가?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5	파트너사에 실행예산 견적서 요청시 실행예산 편성을 위해 견적을 요청하는 것임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원가에 관한 정보를 기재하지 않도록 안내하였는가?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6	실행예산 편성을 위해 견적을 제출한 파트너사에게 입찰참여기회 등 반대급부를 제공하였는가?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아니오'라고 체크될 경우 컴플라이언스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발급 관련 일반 체크리스트

	확인할 사항	예/아니오
1	서면발급시 법정 필수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하였는가?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2	위탁 이전에 서면이 교부되었으며, 계약서 없이 선발주 후 계약서를 교부하지는 않았는가?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3	계약서상 계약기간을 실제 공사기간을 고려하여 설정하였는가?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4	법정기재사항 누락 시 해당상황 및 사유를 명시하고 작업진행 중 혹은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완전한 작업지시서 발급 및 변경계약을 진행하였는가?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5	파트너사로부터 착공일이 계약일 이후인 실제 착공계를 교부 받아 보관하고 있는가?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6	추가·변경공사 작업 착수 전 당사 작업지시서 표준양식을 사용하여 작업지시서를 발급하였는가?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7	작업지시서 발급 후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실정보고 및 변경계약을 진행하였는가?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8	추가공사 등으로 공기연장이 필요한 경우 당초 계약기간 만료 전에 기간변경계약을 완료하였는가?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9	기간변경 계약이 실제 추가공사 등이 필요해서 체결하는 계약인가?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10	(연동계약의 체결) 주요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조정사항을 서면에 기재하였는가?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3. 하도급 거래단계별 체크리스트

추가·변경 공사 관련 세부 체크리스트



	확인할 사항	예/아니오
서면발급 전		
1	설계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발주자, 감리단과 협의하고 회의록 작성, 공문 수발신등의 근거를 마련하였는가?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2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추가공사시 발주자에 공사비에 대한 견적서를 송부하고 승인을 득하였는가?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3	해당 작업의 공사 규모, 필요면허를 검토하고, 추가 입찰이 필요로 한 사항인지 기존 계약업체에 추가작업을 지시할 사항인지 유관부서와 협의하였는가?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4	공사비(단가)산출시 적절한(하도급법 등 관련 법령 준수 포함) 검토가 이루어졌는가?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5	서면교부시 법정 필수 기재사항을 충족하는 당사의 양식을 사용하고, 빠짐없이 기재하였는가?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6	서면 교부시 도면과 내역서 등 필요서류를 구비하였는가?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7	발주자의 긴급지시로 인해 5번, 6번 사항이 불가능한 예외적인 경우(도급현장에서 설계 미확정에 의해 발주자의 쪽도면(공문)작업지시에 따른 법정기재사항 기재 불가능한 경우) 해당상황 및 사유를 명시하고 발주자로부터 받은 쪽도면(공문 등)을 작업지시서에 붙여 교부하였는가?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서면발급 후		
1	교부한 서면(작업지시서 포함)은 당사자의 합의의 근거로서(계약) 2부 준비하고, 파트너사 현장대리인의 날인을 받아 각 각 1부씩 보존하고 있는가?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2	법정기재사항이 기재 불가능함에 따라 불완전한 서면교부시,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완전한 작업지시서 발급 및 변경계약을 진행하였는가?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3	도급변경공사의 경우 발주자와 도급 설계변경을 통한 공사비 확정을 하였는가?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4	작업지시서 발급 후 가능한 빠른 시일에 실정보고를 통한 예산반영 후 하도급 변경계약을 시행하였는가?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5	서면에 기재된 대금 지불조건(지급일 등)을 준수하였는가?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아니오'라고 체크될 경우 컴플라이언스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당특약 관련 체크리스트



	확인할 사항	예/아니오
1	현장설명서의 해당 조건이 하도급계약서면(편입 문서 포함)에 세부조건 또는 세부내역으로 명시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서면에 모두 명시하였는가?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2	현장설명서의 해당조건이 하도급계약서면에 내역으로 구체적 명시가 불가한 사항이지만, 사전에 도면 및 물량 등 파트너사가 자체적으로 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 합리적인 자료를 제공하였는가?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3	현장설명서의 해당조건이 하도급계약 서면에 내역으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으로 파트너사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사항인 경우 삭제하였는가?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4	해당 조건이 관련 법령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당사의 부담/의무사항으로 되어있음에도 파트너사에게 전가하고 있는 사항인 경우 삭제하였는가? (ex. 민원처리, 산업재해, 인허가, 환경관리, 품질관리)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5	해당 조건이 당사(발주자 포함)의 설계변경, 지시 또는 파트너사의 귀책 없는 사정으로 인해 발생한 추가 업무에 대해 파트너사에게 책임 지우는 사항인 경우 삭제하였는가?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6	고객 클레임이 발생한 경우 무상으로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한 약정이 있는가?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7	해당 조건이 해당 하도급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간접비의 인정범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사항인 경우 삭제하였는가?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8	해당 조건이 파트너사가 계약체결 시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 파트너사에게 책임 지우는 사항인 경우 삭제하였는가?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아니오'라고 체크될 경우 컴플라이언스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도급대금 결정 관련 체크리스트



	확인할 사항	예/아니오
1	대금결정 시 수급사업자에게 대금결정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였는가?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2	원자재 가격하락 및 노임하락 등 객관적으로 타당한 단가인하 사유 없이,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는가?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3	대금지급조건, 거래수량, 작업의 난이도 등의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협력사를 차별취급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는가?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4	다량발주를 전제로 협력사에게 견적을 산출하도록 한 후, 실제로는 소량발주가 되었으나 기존의 견적가를 기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는 않았는가?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5	실행예산 초과 또는 저가심의 이외의 재입찰금지 규정을 준수하였는가?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6	재입찰 진행시 재입찰 사유(실행예산 초과 또는 저가심의)를 파트너사에게 명시적으로 안내하고, 규정을 준수하여 진행하였는가?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7	오건적 투찰 제재 관련 규정을 파트너사에게 안내하고 규정을 준수하여 진행하였는가?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8	추가·변경공사 단가산정 관련 현장여건 및 파트너사와 상호 협의없이 당사의 타현장 단가 적용 등 일방적으로 대금을 결정하지 않도록 관리하였는가?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9	연간단가 경쟁입찰 재입찰 금지규정을 준수하였는가?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10	역전단가 조정시, 하도급법을 준수하였는가?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11	발주자가 있는 현장에서 협력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도급금액 중 직접공사비(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 미만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 않도록 관리하였는가?(다만, 특허공종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상 발주자의 적정성 심사를 통과한 경우는 제외)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아니오'라고 체크될 경우 컴플라이언스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당한 발주취소 관련 체크리스트



	확인할 사항	예/아니오
1	현장설명서에 당사의 귀책없이 발주자의 설계변경 등으로 발주물량이 줄어들 수 있음을 명기하고 사전 안내하였는가?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2	불량이 상당한 정도로 축소되는 경우 물량축소 사유가 하도급법상 부당한 위탁취소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지 파악하고, 파트너사와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물량축소에 대한 합의를 진행하였는가?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3	물량축소에 따라 하도급대금이 감액되는 경우 감액사유와 기준 등을 정한 서면을 파트너사에게 교부하였는가?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4	연간단가 계약인 경우 발주예상 물량(입찰물량)과 실제 발주물량이 상이 할 수 있음을 현장설명서에 명기하고 안내하였는가?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5	연간단가 계약인 경우 발주예상 물량(입찰물량)과 실제 발주물량이 상당한 정도로 축소된 경우 계약갱신권 등 연간단가 조정 절차를 현장설명서에 명기하고 안내하였는가?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6	연간단가 계약인 경우 실제 발주물량이 예상물량보다 상당한 정도로 축소된 경우 연간단가 조정절차를 통해 파트너사와 협의를 진행하였는가?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7	연간단가 계약인 경우 실제 발주물량이 예상물량보다 줄어들어 계약기간 중 추가 발주물량 예상이 없더라도 계약기간을 준수하고 별도로 계약해지를 하지 않았는가?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아니오'라고 체크될 경우 컴플라이언스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목적물 검사 및 검사결과 통보 의무 관련 체크리스트



	확인할 사항	예/아니오
1	사전에 해당 위탁목적물의 검사 기준 및 방법에 관해 적정하고 구체적으로, 합의 하에 설정하였는가?	
2	위탁목적물에 대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해 현장설명서 또는 계약서에 자세하게 안내하였는가?	
3	오건적 투찰 제재 관련 규정을 파트너사에게 안내하고 규정을 준수하여 진행하였는가?	
4	파트너사의 기성 또는 준공 청구내역(금액)과 당사의 기성 또는 준공검사결과내역(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재확인하였는가?	
5	최종 검사결과를 파트너사에게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10일내 서면 통지하였는가?	
6	파트너사의 최종 공사 완료시 준공검사 진행에 대한 안내공문을 작성하여 파트너사에 발송하였는가?	
7	공사관련 오시공 또는 미시공 부분에 대해 리스트를 작성하고 개선작업에 관한 내용공문을 파트너사에게 발송하였는가?	
8	오시공 또는 미시공 완료에 따른 개선작업 완료시 파트너사에 재검사결과를 개선작업 완료된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 서면으로 통보를 하였는가?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 관련 체크리스트



	확인할 사항	예/아니오
1	당사가 파트너사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지?(① 공동특허 및 기술개발을 위한 경우, ② 파트너사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의 승인 규모를 정하기 위한 경우 및 ③ 제품의 하자 원인규명을 위한 직접적 기술에 해당하는 경우 등)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2	당사가 파트너사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려는 경우, 사전에 법정기재사항이 명기된 기술자료 요구서를 발급하였는지?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3	해당 공종에 신기술공법(특허공법 등)이 적용되는 경우, 파트너사와 미리 협의하여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법정기재사항이 명기된 기술자료 요구서를 파트너사에게 발급하였는지?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4	파트너사가 당사의 요구 없이 임의로 기술영업 등을 위해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당사의 요구에 의한 제공이 아니라는 확인서를 받았는지?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5	파트너사에게 요구하려는 기술자료(시공설명서, 제조공정도 등)가 당사 자체적으로 취득 가능한 자료임을 확인하고, 가능한 자료는 파트너사에 별도 요구하지 않았는지?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6	파트너사로부터 기술자료를 제공받은 후 목적을 벗어나 당사가 임의로 사용하거나 파트너사의 경쟁회사 등 제3자에 제공하지 않도록 관리하였는지?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7	사전에 파트너사와 기술자료의 반환·폐기기한 및 사유를 정하고, 그 절차에 따라 처리하였는지?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8	수급사업자로부터 기술자료를 제공받을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비밀유지계약을 교부하였는지?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아니오'라고 체크될 경우 컴플라이언스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체크리스트



	확인할 사항	예/아니오
1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 그 받은 날부터 15일(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지급하고 있는지?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2	목적물 수령 후 법정지급기한(60일)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며, 기간 도과시 어음할인료 또는 법정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있는지?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3	당초 계약의뢰서 작성시 발주자로부터 지급받는 대금조건을 명확히 파악하여 작성하였는지?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4	발주자로부터 현금으로 도급대금을 지급받는 현장의 경우 파트너사에게 현금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 있는지?(건설자재를 제조 및 용역 위탁한 경우도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는지?)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5	추가공사에 대한 실정보고 지연으로 변경계약 지연시, 기존 계약내역을 활용하여 작업지시서에 따른 기성에 대한 기성금을 지급하고 있는지?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6	기존 계약내역을 활용하여 작업지시서에 따른 기성에 대한 기성금 지급시, 파트너사도 위와 같은 내용을 인지하고 동의하였다는 증빙서류를 남겨놓았는지?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7	기성금 지급 과정에서 공제 및 지급 유보를 한 경우 컴플라이언스팀의 자문을 받았는지?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8	하도급대금 채권이 가압류된 경우 해당 하도급 대금을 법정지급기한내에 공탁 처리하고 있는지?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9	법정지급기한 이후 하도급 대금을 공탁하는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하였는지?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아니오'라고 체크될 경우 컴플라이언스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공정산 관련 체크리스트



	확인할 사항	예/아니오
1	각 공종별로 기완료된 공사에 대해 해당 공종 공사 완료 후 즉시 정산절차를 진행하고 있는가?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2	사전에 정산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공사 완료 전 정산서류 제출 요청 및 독촉 공문을 파트너사에게 발송하고, 각 공종의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정산내역서 초안 작성을 하고 있는가?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3	공사 완료 후 60일(발주자로부터 정산금 수령시 15일) 이내에 정산합의 및 정산금 지급을 완료하고 있는가?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4	정산에 대한 당사자간 이견으로 정산지연시 공사완료 후 60일(발주자로부터 정산금 수령시 15일) 이내에 당사가 인정하는 정산금액 중 기지급금액을 제외한 잔여금액(단, 하자보수보증금만큼은 유보가능)에 대해 파트너사에게 서면 통보 후 지급하였는가?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5	당사가 인정하는 정산금액을 선지급한 후, 이견이 있는 미지급 잔금에 대해 추가협의를 통해 빠른 시일내에 정산합의를 완료하고 있는가?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아니오'라고 체크될 경우 컴플라이언스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금금 지급 관련 체크리스트



	확인할 사항	예/아니오
1	발주자로부터 선금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파트너사에 선금금 지급사실을 통보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는가?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2	파트너사에 내용과 비율에 따라 지급할 선금금액을 기재한 서면(변경계약서)을 발송하였는가?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3	파트너사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선금금 지급 및 포기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하였는가?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4	파트너사가 선금금 수령을 포기하려는 경우, 파트너사가 포기각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안내하였는가?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5	파트너사 선금금 수령 선택 시 발주자로부터 선금금 수령 후 15일 이내에 파트너사에 지급하였는가?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6	선금금 지급 지연시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한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였는가?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아니오'라고 체크될 경우 컴플라이언스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주자 설계변경 관련 체크리스트



	확인할 사항	예/아니오
1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ESC 포함)을 반영 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파트너사에 이 사실을 통지하였는가?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2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ESC 포함)을 반영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파트너사와 변경계약 체결을 하였는가?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3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ESC 포함)에 따라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경우 대금 수령 후 15일 이내에 파트너사에 지급하였는가?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4	설계변경(ESC 포함)에 따른 추가금액 지연 지급 시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지급하였는가?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5	ESC 관련 현장설명서에 기간계산, 기준요율, 참고물가지수, 반영 내역 등 ESC 산정기준 및 방식에 관해 사전 안내를 하였는가?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6	파트너사와 발주자의 ESC에 대한 하도급대금 증액분 산정 시, 당사의 비용으로 ESC를 계산할 외부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객관성을 확보하였는가?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7	하도급대금 변동에 따른 파트너사의 대금조정 요청시 10일 이내에 조정협의를 개시하였는가?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아니오'라고 체크될 경우 컴플라이언스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위탁 관련 체크리스트



	확인할 사항	예/아니오
1	해당 거래가 하도급법상 용역위탁에 해당하여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하도급거래인지?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2	하도급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실행예산편성 업무가이드라인 등 앞서 마련한 업무가이드라인을 모두 준수하고 있는지?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아니오'라고 체크될 경우 컴플라이언스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I. 경쟁업체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관련부서 : 사업팀, 영업팀, 마케팅

1. 공동행위(담합)의 개요

1.1 의의

- 2 이상의 사업자간 계약, 협정, 결의 등의 방법으로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조건, 거래량, 거래상대방 또는 거래지역을 제한하는 행위로서, 부당한 공동행위를 카르텔(Cartel) 또는 담합이라고도 한다.

관련 조항

- 주체 : 2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 합의 :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행위유형)를 “합의”하여
 - 가격을 결정·유지·변경하는 행위(제1호)
 -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 조건을 정하는 행위(제2호)
 -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제3호)
 -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제4호)
 - 생산 또는 용역의 거래를 위한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제5호)
 -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거래 시에 그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규격을 제한하는 행위(제6호)
 - 영업의 주요부문을 공동으로 수행·관리하거나 수행·관리하기 위한 회사등을 설립하는 행위(제7호)
 -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競落者), 투찰(投札)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제8호)
 - 그 밖의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그 행위를 한 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제한하거나 가격, 생산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제9호)

*시행령 제44조 제2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 공정거래법은 **정보교환**을 독자적인 담합 유형으로 규정, 경쟁사와 민감한 정보를 교환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으므로 극도의 유의 요망

1. 원가
2. 출고량, 재고량 또는 판매량
3. 거래조건 또는 대금·대가의 지급조건

- 경쟁제한성: 경쟁 자체가 감소하여 특정사업자가 자기 의사로 어느 정도 자유롭게 가격, 품질, 수량 기타 제반 조건을 좌지우지하게 됨으로써 시장을 지배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함

1.2 규제 현황

- 담합은 '공모'로 인한 경쟁제한성이 가장 심하며, 가장 큰 피해를 소비자에게 직접 유발하므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카르텔 근절에 공정거래 관련법규 집행의 제1순위를 부여하고 있다.

1.3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의 요건

1.3.1 사업자간 공동행위에 대한 합의의 존재

- 계약, 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인 합의뿐만 아니라 사업자간의 양해와 같은 묵시적인 합의까지도 포함된다.
- Knowing wink can mean more than words(이해한다는 눈짓만으로도 합의가 인정될 수 있음)
- 당초부터 합의에 따를 의사가 없이 진의(眞意) 아닌 의사표시에 의해 합의한 경우도 부당 공동행위로 인정된다. 특히, 법원은 합의의 의미를 폭넓게 해석하고 있다.
- 합의('의사 연락'을 의미, 회의록, 협정서, 임직원의 진술서 등이 직접 증거가 될 수 있음)가 존재하는 이상 그 합의내용에 따른 실행행위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카르텔이 성립한다.

1.3.2 '경쟁제한성'이 존재

-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서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수량·품질·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8도6341 판결).
-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 선택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12. 선고 2009두7912 판결).
- 사업자간 합의가 모두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가 금지의 대상이 된다.
- 가격담합·입찰담합은 합의의 존재만 입증되면 추가적인 경쟁제한성에 대한 입증·분석 없이 곧바로 위법성이 인정된다.

2. 합의추정제도

- 명시적 합의와 같은 명백하고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제반사정에 비추어 카르텔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정황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합의를 추정하여 제재할 수 있다.
- 합의추정을 적용한 사건도 이후 자진신고, 재조사 과정 등을 통해 실제 합의사실이 사후적으로 확인되는 사례들도 발생하고 있다.
- 법 제19조 제5항에 의하여 합의가 추정되는 경우, 사업자는 그 행위가 합의에 기한 것이 아님을 입증함으로써 추정을 복멸할 수 있다.

정황증거의 예시

㉠ 직·간접적인 의사연락이나 정보교환 등의 증거가 있는 경우

예 1 해당 사업자가 가격인상, 산출량 감축 등 비망록 기입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예 2 모임을 갖거나 연락 등을 하고 그 이후 행동이 통일된 경우

예 3 특정 기업의 가격, 산출량 등 결정을 위한 내부 업무보고 자료에 다른 경쟁기업의 가격, 산출량 등에 대한 향후 계획 등 일반적으로 입수할 수 없는 비공개 자료가 포함된 경우

예 4 특정기업이 가격인상 또는 산출량 감축 의도를 밝히고 다른 경쟁기업들의 반응을 주시한 후 그 반응에 따라 가격인상 또는 산출량 감축을 단행한 경우

㉡ 공동으로 수행되어야만 당해 사업자들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고 개별적으로 수행되었다면 당해 사업자 각각의 이익에 반하리라고 인정되는 경우

예 1 원가상승 요인도 없고 공급과잉 또는 수요가 감소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동일하게 인상하는 경우

예 2 재고가 누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동시에 인상된 경우

㉢ 당해 사업자들의 행위의 일치를 시장상황의 결과로 설명할 수 없는 경우

예 1 수요공급조건의 변동, 원재료 공급원의 차이, 공급자와 수요자의 지리적 위치 등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동일하고 경직되어 있는 경우

예 2 원재료 구입가격, 제조과정, 임금인상률, 어음할인금리 등이 달라 제조원가가 각각 다른데도 가격변동 폭이 동일한 경우

예 3 시장상황에 비추어 보아 공동행위가 없이는 단기간에 높은 가격이 형성될 수 없는 경우

㉣ 당해 산업구조상 합의가 없이는 행위의 일치가 어려운 경우

예 1 제품차별화가 상당히 이루어진 경우에도 개별 사업자들의 가격이 일치하는 경우

예 2 거래의 빈도가 낮은 시장, 수요자가 전문지식을 갖춘 시장 등 공급자의 행위 일치가 어려운 여건에서 행위의 일치가 이루어진 경우

3.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의 유형

3.1 가격을 결정·유지·변경하는 행위

3.1.1 판단기준

-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라 함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 여기서 말하는 가격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 즉 사업자가 거래의 상대방으로부터 반대급부로 받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가리키는 것으로, 당해 상품의 특성, 거래내용 및 방식 등에 비추어 거래의 상대방이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로서 사업자에게 현실적으로 지불하여야 하는 것이라면 그 명칭에 구애됨이 없어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에 포함된다.
 - 공동으로 가격을 인상하거나, 인하율(폭)을 결정하거나, 일정수준으로 가격을 유지하는 행위
 - 평균가격, 기준가격, 표준가격, 최고 및 최저가격, 금리협정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가격설정의 기준을 정하는 행위 (합성수지건에서 대표규격 가격→나머지 규격은 대표규격에 연동)
 - 할인율, 이윤율 등 가격의 구성요소에 대해 그 수준이나 한도를 정하거나 일률적인 원가 계산의 방법을 공동으로 결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가격을 동일하게 결정, 유지, 변경하는 행위 (석도강판건에서 운송비 공동결정)
 - 과당경쟁금지, 정부고시가격 준수 등을 이유로 일정가격 이하로 응찰하지 않도록 합의하는 행위

3.1.2 관련 사례

공동으로 판매가격을 결정하고 유지한 사례

(4개 소형 베어링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의결 제2015-057호)

[사실관계]

피심인들은 1998. 1. 1.부터 2011. 8. 25.까지 영업책임자 등 간에 수십 회의 의사연락을 통해 국내 주요 철강사에 납품하는 철강용 베어링의 수주물량을 배분하고 견적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할 것을 합의한 후 이를 실행하였다. 기본적인 합의 내용은 기존 점유율을 존중한다는 전제 하에 ① 오리지널 베어링을 수주한 피심인이 보수용 베어링을 우선 수주하고, ② 피심인들이 납품하고 있지 않은 신규 입찰에 대하여는 각각 50%씩 수주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기본 합의 내용을 전제로 실제 철강용 베어링 입찰 건이 나오면 엔에스케이 코리아와 제이텍트 코리아는 다시 건 별로 수주 형편을 나누어 납품할 물량비율을 배분하고 제출할 견적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는 등 구체적인 내용을 합의한 후 엔에스케이와 제이텍트(이하 '일본국 내 피심인들')로부터 승인을 받아 실행하였다.

[공정위 판단]

피심인들은 공동으로 철강용 베어링의 가격을 결정하고 수요처를 분할하거나 수요처별 물량을 배분을 하기로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심인들이 국내 철강용 베어링 시장에서 7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약 14년여의 기간 동안 이 사건 공동행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상호간에 공조를 유지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의 행위는 수요 공급의 원칙 및 각 사별로 수립된 독자적인 영업과 판매전략 등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철강용 베어링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실행함으로써 국내 철강용 베어링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음이 인정된다(2개 사업자에 대하여 과징금 총 778억 원 부과, 4개 사업자 모두 고발하였음).

발급수수료를 공동으로 결정한 사례

(25개 국제물류주선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의결 제2015-028호)

[사실관계]

피심인들은 국제물류주선업을 영위하면서 선하증권 등 서류의 발급 수수료를 공동으로 결정하는 방법으로 컨테이너 소량화물 수출 주선 서비스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였다. 이 사건 공동행위의 관련시장은 국내의 LCL화물 수출 주선 서비스 시장으로 피심인들이 LCL화물의 서류발급비를 인상하기로 합의하였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류발급비를 공동으로 결정한 행위는 수요자인 수출업자에게 피해만 초래할 뿐 어떠한 효율성 증대효과도 발생시키지 않았다.

[공정위 판단]

2013년 기준으로 LCL화물 수출 주선 서비스 시장에서 피심인들은 약 60%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바, 이와 같은 점유율을 갖고 있는 피심인들이 서류발급비를 공동으로 결정하기로 합의한 행위는 국내 LCL화물 수출 주선 서비스 시장에서 유효한 경쟁을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국제물류주선업을 영위하면서 선하증권 등 서류의 발급 수수료를 공동으로 결정하는 방법으로 컨테이너 소량화물 수출 주선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3.2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3.2.1 판단기준

-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라 함은 사업자 사이에 각 당사자의 생산량이나 판매량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거나 일정한 비율로 감축시키는 것을 말한다.
-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에서 생산량, 판매량, 출고량, 거래량, 수송량 등을 일정한 수준 또는 비율로 제한하거나 사업자별로 할당하는 행위 및 가동률, 가동시간, 원료 구입여부 또는 비율 등을 제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생산·출고·수송을 제한하는 행위, 특정회사를 통해서만 공급하는 등 공급방식을 제한하는 행위 등이 있다.
 -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에서 생산량, 판매량, 출고량, 거래량, 수송량 등을 일정한 수준 또는 비율로 제한할 것을 합의하거나 사업자별로 할당
 - 가동률, 가동시간, 원료구입 여부 또는 비율 등을 제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생산·출고·수송을 제한

3.2.2 관련사례

판매가격, 거래량 및 거래상대방등을 공동으로 결정한 사례

(4개 반응개시제 제조·판매업체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의결 제2015-015호)

[사실관계]

피심인들은 위와 같은 기본합의에 따라서 2013년 1월까지 수시로 영업담당자 간의 회합, 전화연락 등을 통하여 수요처 입찰이 있을 때마다 수요처별 낙찰자 또는 납품업체를 미리 정하는 방식으로 상호간에 거래처 또는 거래물량을 침범하지 않기 위한 합의를 지속하였다. 또한 견적가격을 미리 정하거나 상호 교환하면서 가격을 인위적으로 인상하였다. 그 과정에서 가야쿠 약조는 피엠씨와 세기, 동성 간의 수요처 및 물량 분할, 가격인상 합의 진행 상황을 피엠씨로부터 정기적으로 보고 받았으며, 피엠씨가 경쟁사와 합의하여 작성한 견적을 큰 변동 없이 제출하도록 승인하여 공동행위 지속에 대한 의사를 암묵적으로 표시하였다.

[공정위 판단]

이 사건 공동행위는 그 내용이 가격의 공동결정, 거래수요처 분할, 수요처별 물량 분할이고, 그 유형상 경쟁제한 효과만 발생시킬 뿐 어떠한 효율성 증대효과도 발생시키지 아니한다. 또한 이러한 합의는 그 목적이 경쟁으로 인한 피심인들 각 사의 이익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그 외에 다른 의도나 목적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피심인들이 국내 반응개시제 시장에서 7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6년여의 기간 동안 이 사건 공동행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상호간에 공조를 유지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의 행위는 수요 공급의 원칙 및 각 사별로 수립된 독자적인 영업과 판매전략 등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반응개시제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실행함으로써 국내 반응개시제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 것으로 판단된다(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투찰물량을 상호 배분 등을 통해 공동으로 결정한 사례

(농협중앙회 패화석비료 구매입찰 참가 7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의결 제2013-202호)

[사실관계]

피심인들은 농협중앙회의 2012년도 정부무상분 패화석비료 구매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 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2011. 11. 8. 농협중앙회(서울 중구 충정로 소재)에서 개최된 설명회에 참석한 후 다음 날의 입찰에 참가하기 위하여 농협중앙회 인근에 소재한 B호텔(서울 중구 ○○로 소재)에 투숙하였으며, 동 호텔에서 모임을 갖고 투찰물량을 배분하였다.

피심인들은 최종 합의한 바와 같이 2011. 11. 9. 농협중앙회 입찰장에서 투찰하였으며, 동 입찰에는 피심인들만이 응찰하여 피심인들 모두가 합의된 투찰물량대로 톤당 144,900 ~ 145,000원의 투찰단가에 낙찰받았고 계약을 체결하였다.

[공정위 판단]

농협중앙회의 패화석비료 구매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투찰물량을 상호 배분함으로써 농협중앙회 패화석비료 구매입찰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판단하였다(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3.3 거래지역 및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3.3.1 판단기준

- 법 제19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 중 시장분할(market allocation)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동행위 참가 사업자 간에 거래지역을 공동으로 정하여 상호 간에 침범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 특정한 사업자와는 거래하지 않도록 하거나 또는 특정한 사업자와만 거래하도록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공동행위 참가 사업자들의 개별 수주활동을 제한하고 공동 수주하도록 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 공동으로 수주하도록 합의하거나, 입찰 또는 수주의 순위, 자격 등을 합의
- 공동행위 참가사업자간에 거래처 또는 거래지역을 제한하거나, 거래처 또는 거래지역을 공동으로 정하여 상호간에 침범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
- 특정한 사업자와는 거래하지 않도록 하거나 특정 사업자와고만 거래하도록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 없이 특정한 사업자를 우량업자 또는 불량업자로 구분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3.3.2 관련 사례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도록 공동으로 결정한 사례

(5개 석유제품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의결 제2011-161호)

[사실관계]

2000년 3월 초경 피심인 SK, GS, 현대, SO의 본사 소매영업담당임직원은 여의도 소재 일식당에서 개최된 「석유제품 유통질서 저해행위 대책반」 모임에서 정유사가 다른 정유사를 원적으로 하는 주유소(이하에서는 이 경우의 정유사, 주유소를 각각 '원적사', '원적주유소'라 한다)를 자기의 거래상대방으로 유치함에 있어 원적사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원적' 관리를 통하여 주유소 유치경쟁을 제한하기로 하면서 아울러 정유사가 원적사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원적주유소를 유치하는 경우 그에 대한 대응유치(Counter attack)를 수용하도록 하는 데에 합의하였다.

피심인들은 2000년 3월 초 「석유제품 유통질서 저해행위 대책반」 모임에서 주유소 확보 경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적 관리 원칙(정유사의 원적주유소에 대한 기득권 인정 원칙)을 합의하고, 이에 기초하여 경쟁사의 원적주유소에 대해 거래를 거절하거나 피심인들 간 자기의 원적주유소를 서로 맞교환하였으며, 맞교환이 어려운 경우 동일 또는 유사수준의 다른 주유소를 교환하는 등 '원적관리 합의'를 실행하였다.

피심인들은 한국석유유통협회 등 사업자단체를 통한 공식적 모임이나 임직원들 간의 비공식적 모임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정보를 교환하였다.

정유사와 주유소 간 석유제품 유통구조가 정유사 주도로 수직계열화 되어 있는 점, 피심인들 이외에 다른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매우 낮고 피심인들의 거래상대방인 주유소의 시장집중도도 미미한 점, 상품 품질의 동질성이 높은 점 등은 공동행위가 발생하기 쉬운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공정위 판단]

이 사건 공동행위는 피심인들이 거래상대방인 주유소에 대한 유치경쟁을 자제함으로써 피심인별 계열 주유소의 점유율을 고착화시키고, 정유사 간 주유소 유치경쟁을 통해 나타날 수 있는 주유소의 거래 조건 개선을 차단함으로써 경질유 석유제품 도매시장에서의 경쟁을 저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피심인들이 이 사건 공동행위에 참여한 의도나 목적을 보아도 경쟁제한성이 있음이 인정된다.

피심인 에스케이에너지 주식회사, 지에스칼텍스 주식회사, 현대오일뱅크 주식회사, 에스대시오일 주식회사는 기존 주유소와 거래를 함께 있어 경쟁사의 상표를 표시하고 영업하고 있거나 종전에 경쟁사의 상표를 표시하고 영업하였던 주유소와는 서로 거래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거래상대방을 제한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주유소를 통하여 공급되는 휘발유, 등유, 경유 등 국내 경질유 석유제품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장을 통한 정상적인 정보 수집의 방법을 제외하고는 직접 혹은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 등 사업자단체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 등 여하한 방법으로도 상호 간에 주유소의 상표표시 변동과 관련하여 정보를 교환하거나 제공해서는 아니된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였다(후속 소송에서 에스대시오일 주식회사에 대한 처분은 증거부족으로 취소, 대법원 확정됨).

3.4 정보교환담합

3.4.1 의의

-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9호는 '가격, 생산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부당공동행위 유형으로 보고 있다. 예를 들어 경쟁사업자 간에 시기적으로 임박한 상세한 가격인상 계획을 교환하고 실제로 그 교환된 정보에 부합하는 가격결정이 이루어진 경우등을 말한다.
- 또한 유통업자, 사업자단체, 시장조사기관, 언론 등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정보교환도 문제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교환담합 대상 '정보'의 유형

1. 원가
2. 출고량, 재고량 또는 판매량
3. 거래조건 또는 대금·대가의 지급조건

- 기업이 타 경쟁사의 정보를 수집해 자사의 경영에 활용하는 것은 사업활동으로서 자연스러운 행위이지만, 이른바 기밀정보 또는 민감정보(가격, 생산량, 비용 등)의 수집 및 교환(이하 '정보교환'이라고 함)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나 양태에 따라 경쟁법 위반의 리스크가 존재한다.

- '정보교환' 행위는 '사업자가 직·간접적으로 다른 사업자에게 가격, 생산량 등의 정보를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 정보를 일간지 등 불특정다수가 자유로이 접근할 수 있는 매체에 공개·공표하는 행위는 위법한 정보교환에 해당하지 않지만, 공개·공표 전에 은밀한 정보교환이 선행된 경우에는 범위반이 될 수 있다.
- 따라서 공개된 공유정보라고 해도 해당 정보교환에 의해 해당 정보를 입수하기 쉬워졌는지 여부, 다른 공유정보가 아닌 정보와 조합했는지 여부의 사항의 평가에 따라서는 공유정보라도 기밀정보에 해당하고, 해당 정보교환이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 또한 정보는 역사적 정보, 최근의 정보 및 장래의 정보로 구분하는데 역사적 정보를 제외하고 1년 미만의 현재의 정보나 장래의 정보, 특히 기밀 정보에 관한 정보를 교환했을 경우, 경쟁 타사가 해당 시장에서 채택할 시장 전략의 예측이 용이하게 됨에 따라,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강하다고 판단된다.

3.4.2 요건

(1) 정보

- '정보의 의미'를 살펴보면 좁게는 담합을 촉진하거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정보로서 가격인상계획안, 인상내역, 월별매출목표, 매출실적, 목표달성도, 판촉내용, 영업전략 정보 등이 해당되며, 넓게는 기업의 기밀에 속하고, 경쟁의 핵심적 요소인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원가 등 가격정보, 생산량 등 생산 능력, 거래조건 등을 말한다.
- 판례는 '정보'의 의미를 담합을 촉진하거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정보를 말하며, 예시로 라면 회사들의 가격인상 계획 및 인상 내역, 유제품 사업자들의 시유 및 발효유 제품별 가격 인상안, 음료회사들의 월별매출목표, 매출실적, 목표달성도, 판촉내용, 신제품의 가격, 영업전략정보, 가격인상안을 들고 있다.
- 공정거래법은 가격, 생산량, 원가 등 가격정보, 생산량 등 생산능력, 거래조건 등을 정보의 예시로 들고 있다.

(2) 교환("주고받음으로써")

- 사업자 간 정보를 '주고받는'(이하 "정보교환"이라 한다) 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가격, 생산량, 원가 등의 경쟁상 민감한 정보를 알리는 행위를 의미함. 우편, 전자우편(이메일), 전화통화, 회의 등 알리는 수단은 불문한다.
-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9호는 "사업자 간 정보를 '주고받는' 것을 합의하는 것이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 그 합의를 금지"하고 있으며, 동법 제40조 제5항 제2호는 "사업자 간 정보를 '주고받았음'을 근거로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를 추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뿐만 아니라, 사업자단체(협회, 협동조합 등), 제3의 사업자 등 중간 매개자를 거쳐 간접적으로 알리는 행위도 포함(기업이 제3자 기관에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제3자 기관은 정보를 집약하고 축적하여 기업에 사전에 합의한 형식과 빈도로 정보를 전달하는 행위)된다.
 - 구성사업자들이 사업자단체에게 재고량, 판매량 정보를 제공하고, 사업자단체가 각 구성사업자별 재고량, 판매량을 문서로 정리하여 전체 사업자들에게 송부한 경우는 정보교환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봄
 - 간접적으로 알리는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 사업자의 정보가 중간 매개자를 거쳐 다른 경쟁사업자에게 전달되어야 하며, 단 사업자단체 등 중간 매개자에게 일방적으로 정보가 전달되기만 하는 경우는 정보교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지 않음
- 다만 사업자가 불특정 다수에게 위 정보들을 공개적으로 공표 또는 공개하는 행위는 정보교환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 공개적으로 공표 또는 공개한다 함은 불특정 다수가 별도의 비용부담 없이 자유로이 접근할 수 있는 매체(일간지, 전문지, 무료로 접근가능한 인터넷 사이트 등)에 공표 또는 공개하는 것
- 주의할 것은 사업자간 비공개적으로 정보교환 행위를 한 후 그 정보를 사후적으로 공개적으로 공표 또는 공개하였다고 하여 선행된 비공개적인 정보교환행위까지 규율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3)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경쟁제한성)

- 일정한 거래분야의 경쟁이 감소하여 특정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 수량, 품질, 그밖의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① 교환된 정보의 특성

- 교환되는 정보가 현재 또는 미래의 정보일 경우 경쟁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 시장에 공개되지 아니한 비공개정보 또는 비밀정보가 교환될 경우 경쟁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 상품가격, 생산계획 등 경쟁상 민감한 정보가 개별 사업자별로 교환될 경우 경쟁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② 정보교환 행위의 양태

- 정보교환의 기간이 길수록, 교환빈도가 높을수록, 정보교환의 주체가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임직원이나 실무자- 중간관리자- 고위급 등 다양한 직급에서 각각 교환이 이루어졌을수록, 정보교환의 시점이 가격 등의 의사결정 직전에 가까울수록 경쟁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③ 정보교환의 목적

- 정보교환 합의가 가격인상, 생산량 축소 등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 예를 들어, 시장내 총 사업자가 10개사에 불과한 과점시장에서 9개 사업자가 공급처에 따라 품질 차이가 크지 아니한 원자재를 구매하는 가격을 공동으로 하향 안정화시킬 목적으로 대외비로 관리하고 있는 구매가격 관련 정보들을 6년간 160회가량 교환한 후 이를 언론에 공표하는 방식으로 애초에 공개된 정보를 교환한 것처럼 위장하려는 형태를 보였으며 실제로 각 사들의 원자재 구매가격이 유사한 수준으로 하향 안정화된 경우
 - 사업자단체가 회원사들의 과거 1년간의 가격, 판매량을 취합하고 이를 집계화하여 대국민 보고서를 발간하였고, 개별 회원사들이 이를 통해 공식적인 업계동향을 인지하게 된 경우
 - 제조위탁을 하려는 사업자가 수탁사업자 선정을 위해 복수의 사업자들로부터 연간 가능생산량, 생산원가, 원자재 출고량을 제출받은 경우

(4) '합의'의 존재

-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묵시적 합의도 포함되며, 합의는 둘 이상 사업자 사이의 의사의 연락을 본질로 한다.
- 단순 외형 일치(정보교환의 존재)를 즉시 합의로 인정할 수는 없으며, 1) 의사연결의 상호성, 2) 정보교환이 합의에 의한 것인지가 추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판례). 다만 정보교환 자체를 규제하는 개정 공정거래법에서도 그대로 적용될지는 논란이 있으며, 법원이 '민감한 정보의 교환을 정보교환 담합 합의 추정'과 같은 사실상의 추정 등을 인정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정보교환이 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뤄진 경우

- 경쟁사가 보내온 가격 정보 관련 메일을 수신하자마자 더 이상 관련 메일을 보내지 말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고 실제로도 이후 그러한 메일이 오지 아니한 경우
- 사업자단체의 판매량 정보 제공 요청에 대해 타 구성 사업자에게는 공유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정보 제공에 응하였으나 사업자단체가 해당사업자의 의사에 반해 판매량 정보를 타 구성 사업자들에게 공유하는 한편 타 사업자들의 정보를 임의로 해당 사업자에게 송부한 경우

3.4.3 정보교환에 의한 합의 추정

(1) 합의 추정의 의의와 요건

- 정보교환을 이유로 가격담합 등의 합의가 있었음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① 20이상의 사업자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함으로써 가격 등이 유사 또는 동일해지는 '행위의 외형상 일치'가 있어야 하고, ② 외형상 일치 창출에 필요한 정보의 교환이 있어야 한다(공정거래법 제40조 제5항 제2호).
- '합의추정'의 2가지 요건을 충족할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합의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므로, 사업자는 외형상 일치가 성립하지 않았음을 입증하거나, 설령 외형상 일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거나 그 일치와 교환된 정보 간에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즉 '필요한 정보'의 교환이 없었음을 입증함으로써 합의의 추정을 깨뜨릴 수 있다.

합의 추정을 깨뜨릴 수 있는 경우

-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적 요인(금리, 환율, 원자재 가격 등)의 변동에 대해 사업자들이 내부프로세스를 거쳐 '각자' 대응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외형상 일치가 나타난 경우
- 다른 업체의 가격인상 등을 단순 추정하는 과정(의식적 병행행위)에서 외형상 일치가 나타난 경우
- 행정지도(구두 등 유형 불문)에 '각자' 따른 결과 외형상 일치가 나타난 경우

(2) '외형상 일치'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 사업자 간 행위의 외형상 일치가 있는지 여부는 다음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 ① 가격 등의 변동률, 변동시점
가격 등 경쟁변수의 변동률, 변동폭, 변동시점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외형상 일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 ② 구매대체의 정도
가격 등 경쟁변수의 변동률, 변동폭 등에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그로 인한 소비자의 상품 또는 용역들 간 구매대체의 정도가 미미한 경우에는 외형상 일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입증하려는 합의의 내용

입증하려는 합의의 내용이 다소 느슨한 형태의 합의(예: 가격을 특정 수준으로 인상하는 합의가 아닌, 가격을 인상하자는 등의 방향만 공동으로 결정하는 합의)라면 가격 등 경쟁변수의 변동률 등에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외형상 일치가 있다고 본다.

외형상 일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사례

- 경쟁사별 상품 가격의 인상폭이 원단위까지 동일한 경우
- 10개 보손해보험사들이 종래 무료로 제공하던 긴급출동 서비스 중 긴급견인, 비상급유 서비스를 4개월에 걸쳐 배터리 충전, 타이어교체, 잠금장치 해제 서비스를 6개월에 걸쳐 순차적으로 유료화하는 방식으로 거래조건을 변경한 경우
- 강판 제조업자 3개사가 5년 간 10여회에 걸쳐 강판 가격 변동 결정을 하였는데, 결정된 가격이 거의 유사하였고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최대 2.3% 수준에 불과하였으며, 가격 인상시점이 1개월 내로 대체로 근접한 경우

(3) 교환된 정보가 외형상 일치 창출에 '필요한 정보'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 교환된 정보가 외형상 일치 창출에 '필요한 정보'인지 여부는 다음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① 정보의 종류 및 성격

가격, 생산량 등 교환되면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은 정보가 교환된 경우 '필요한 정보'의 교환에 해당될 가능성이 큰 반면, 인사동정, 소비자 성향 분석자료 등 경쟁에 큰 경향을 미치지 않는 정보가 교환된 경우에는 '필요한 정보'의 교환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② 정보가 교환된 시점

사업자의 의사결정 시점에 임박해 정보가 교환된 경우 해당 정보의 교환은 '필요한 정보'의 교환에 해당될 가능성이 크다.

③ 외형상 일치의 내용과 교환된 정보의 내용 간의 관계

교환된 정보의 내용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가격 등 경쟁변수에 외형상 일치가 나타난 경우에는 '필요한 정보'에 해당될 가능성이 크다.

'필요한 정보' 교환에 해당하는 경우

- 가격, 생산량, 원가, 판매·재고·출고량, 거래조건, 지급조건 등 경쟁상 민감한 정보로서 미래정보, 비공개 정보, 개별 사업자별 경쟁변수가 특정되는 정보가 경쟁사업자 간에만 배타적으로 교환되는 경우
- 가격인상 결정 시점에 임박하여 인상일자, 인상계획 내역 등의 교환이 이루어진 경우
- 가격인상계획 관련 정보가 상호 교환이 되었고, 각 회사들이 제시한 가격인상안에 준하는 수준의 가격인상이 실제로 있었던 경우

'필요한 정보' 교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경쟁변수가 아닌 일상적 정보(인사동정, 소비자 성향 분석 자료, 최신 상품 트렌드 분석자료 등), 단순 경영목표치(목표 성장률, 목표 매출액 등)의 교환이 이뤄진 경우
- 외형일치가 나타난 경쟁변수와 교환된 경쟁변수 정보간 상관관계가 약한 경우(예를 들어, 가격의 외형상 일치가 있었는데, 실제로 교환된 정보는 대금지급 정보인 경우)

(4) 업무상 유의사항

Do

- 경쟁사의 가격이나 거래조건, 생산량, 마케팅 전략 등이 언급되는 문서를 작성할 때에는 출처를 명확히 기록해두어야 한다.
- 전자우편 즉, 이메일의 쌍방향적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경쟁사 임직원과는 가급적 이메일을 교환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불가피하게 교환하여야 한다면 내용에 민감한 문구나 과장된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다.
- 내부보고 생성시 담합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표현이나 문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컴플라이언스팀과 사전에 공유하도록 한다.
- 경쟁사 임직원과 불가피하게 접촉한 경우 접촉경위나 모임의 성격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 가격이나 공급량의 결정이 독자적인 분석과 이에 기초한 경영판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보여줄 수 있는 분석자료와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내부자료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Don't

- 기업의 비밀에 속하고 경쟁의 핵심요소인 가격인상 계획이나 인상내역 같은 민감한 정보는 경쟁사와 교환해서는 아니 된다(가격, 판매조건, 이익률, 판매량, 시장점유율, 판매구역 뿐만 아니라 매출, 영업지원책, 홍보 및 판촉 계획, 신제품 출시 계획 등이 모두 경쟁핵심 요소에 포함).
- 전자우편 즉, 이메일은 이메일의 쌍방향적 성격을 감안하여 경쟁사 임직원과는 가급적 이메일을 교환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불가피하게 교환하여야 한다면 내용에 민감한 문구나 과장된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다.

4. 입찰담합금지

4.1. 의의

- 입찰담합은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계약, 협정, 결의 어떠한 방법으로 입찰에 있어 낙찰자, 투찰가격, 낙찰의 비율, 설계 또는 시공의 방법등을 합의하는 것을 말한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금지되는 부당한 공동행위 중 하나의 유형이며, 2007년 11월에 입찰담합 규제 강화를 위해 구법 제19조 제1항(가격담합) 규정에서 입찰담합 금지규정을 별도 분리하였다(구법 제19조 제1항 제8호, 현행법 제40조 제1항 제8호).
- 입찰담합은 가격담합, 시장분할 담합 등과 같은 경성카르텔의 일종으로 미국, EU, 우리나라 등 모든 나라에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으며, 특히 공공기관(방위산업청,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서의 담합은 국가재정의 낭비를 가져온다는 측면에서 정부가 중점적으로 규제하는 분야이다.
- 국내에서는 공정거래법 외 형법, 건설산업기본법, 국가계약법 등에서도 규제하고 있고, 입찰 발주 기관에서도 입찰담합 방지를 위한 제도들을 운영하고 있다.

-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競落者), 입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8호)
- 공정거래법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시행령 제44조 제1항)
 1. 낙찰 또는 경락의 비율
 2. 설계 또는 시공의 방법
 3. 그 밖에 입찰 또는 경매의 경쟁 요소가 되는 사항

4.2. 입찰담합의 유형

4.2.1 입찰가격담합

-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최저입찰가격(계약목적에 따라서는 최고입찰가격), 수주예정가격 또는 그와 비슷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관련시장 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원칙적으로 법 위반에 해당한다.
- 가격은 본래 사업자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서 형성되어야 하므로,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가격결정에 관한 활동을 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 여기에서의 결정은 명시적 결정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최저입찰가격 등에 관해 암묵적인 이해 또는 공통인 의사가 형성되는 것으로 충분하다.
- 타당한 가격 설정을 위한 것이라거나, 대상이 되는 제조위탁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거나, 부당한 저가 수주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이유 등으로 정당화되지 않는다.

4.2.2 낙찰예정자의 사전결정(수주자 선정에 관한 행위)

- 사업자가 공동으로 낙찰예정자 또는 낙찰예정자의 선정방법을 결정하는 것은 입찰제도의 취지에 반하고 상품 및 용역거래에 관한 경쟁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위반이 된다.
- 기본적으로 입찰 관련 수주 예정자 또는 수주 예정자의 선정 방법의 결정은 입찰시 사전에 수주받아야 할 자를 특정해 그 자가 수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수단이나 방법 등은 문제되지 않는다.

- 여기에서의 결정은 명시적인 결정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수주 예정자 또는 수주 예정자의 선정 방법에 관해 암묵적인 이해 또는 공통 의사가 형성되는 것으로 충분하다.
-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든가, 수주의 균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라든가, 각 사업자의 영업 활동이나 기존의 수주와의 계속성이나 관련성을 존중하기 위해서와 같은 이유로 정당화되지 않는다.
- 만일 제3자가 수주 예정자에 대해 추천이나 권장을 하고, 사업자가 공동으로 그 추천이나 권장을 따를 것을 결정한 경우 이 역시 수주 예정자의 결정에 해당한다.

(1) 원칙적으로 위반이 되는 것

- 사업자가 공동으로 입찰 관련 수주 예정자 또는 수주 예정자의 선정 방법을 결정하는 것.

(a) 수주 예정자를 결정하기 위한 수단

다음과 같은 행위는 수주 예정자를 결정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것이며, 수주 예정자에 관한 암묵적인 이해 및 공통의 의사의 형성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위반의 우려가 강하다.

㉠ 수주 의욕의 정보교환 등

입찰에 참가하려는 사업자가 당해 입찰에 대해 가지고 있는 수주 의욕, 사업활동 실적, 대상물건 등에 관련한 수주실적 등 수주 예정자의 선정과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사업자들 간에 정보를 교환하는 것

㉡ 지명회수, 수주실적 등에 관한 정보의 정리·제공

사업자가 공동으로 과거 입찰에 있어서 개별 사업자의 지명회수, 수주실적 등에 관한 정보를 이후의 수주예정자 선정의 우선순위 기준으로 하는 것 같은 형식으로 정리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것

(b) 수주 예정자 또는 수주 예정자의 선정방법의 결정

수주 예정자로부터 입찰가격에 관한 연락, 지시 등을 받은 상태에서 수주 예정자가 수주 받을 수 있도록 각각의 입찰가격을 설정하는 것

(c) 기타

다음과 같은 행위는 수주 예정자 또는 수주 예정자의 선정방법의 결정을 전제로 하여 그 결정을 용이하게 하거나 또는 강화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것인바, 수주 예정자 또는 수주 예정자의 선정방법을 결정하는 이러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위반이다.

㉢ 다른 입찰참가자에 대한 이익공여

사업자가 공동으로 수주 예정자에게 다른 입찰 참가자 등에게 업무발주, 금전지급 등의 이익을 제공하도록 시키는 것을 말한다.

㉣ 수주 예정자 결정에 대한 참가의 요청, 강요 등

사업자가 공동으로 입찰참가를 예정하는 사업자에 대해 수주 예정자의 결정에 참가할

것 또는 결정의 내용에 따를 것을 요청, 강요하고 결정에 참가, 협력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거래거절, 사업자간 차별적인 취급 등으로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결정의 내용에 따르지 않고 입찰한 사업자에 대해 거래거절, 사업자간 차별적 취급, 금전지급 등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2) 위반이 될 우려가 있는 것

- 입찰 참여 사업자간에 각 사업자에 대해 지명경쟁입찰에 관한 지명을 받은 것과 입찰참가의 예정에 대해 보고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 공동기업체(컨소시엄)에 관한 정보교환
 - 공동기업체로 입찰에 참가하려는 사업자가 다른 공동사업체로 당해 입찰에 참가하려고 하는 사업자간에 당해 입찰참가를 위해 공동기업체의 결성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 이러한 정보교환은, 수주 예정자 결정을 위한 정보교환으로 발전하는 것으로서 수주 예정자의 결정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3) 원칙적으로 위반이 되지 않는 것

- 발주자에 대한 입찰참가 의욕 등의 설명
 - 사업자가 지명경쟁입찰에서, 지명 이전의 단계에서 제도상 정해진 발주자로부터의 요청에 따라, 다른 사업자체와 연락·조정 등이 없이, 자기의 입찰 참가에 대한 의욕, 기술 정보(유사 업무의 실적, 기술자의 내용, 해당발주 업무의 수행 계획 등)등을 발주자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을 말한다.
- 자기 판단에 의한 입찰 사퇴
 - 지명경쟁입찰에서 지명을 받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연락·조정 등을 하거나 요청 등을 받은 일 없이 자기의 사업경영상의 판단에 의해 입찰을 사퇴하는 것을 말한다.

4.2.3 경쟁입찰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유도

-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특정사업자로 하여금 수의계약에 의해 계약할 수 있도록 결정·유도하는 것은 자유로운 경쟁을 배제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위반이 된다.

4.2.4 수주물량 등의 결정

- 사업자가 공동으로 입찰에 관련된 수주물량결정과 이러한 수주물량을 나누어 갖기 위해 입찰참가자간 배분 등을 결정하는 행위는 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위반이 된다.
- 입찰제도 중에는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서 가격 이외에 수량 등 기타의 조건으로 신청을 하고, 그 신청의 내용에 따라 낙찰자 및 낙찰 가격에 추가하여 낙찰 수량 등도 함께 결정하는 것이 있다. 이러한 입찰에서, 사업자가 공동으로 입찰에 관한 수주 수량, 비율 등을 결정하는

것은 입찰 방법으로 발주하는 물품 또는 서비스의 거래에 관한 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위반이 된다.

- 여기에서의 결정은 명시적 결정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수주 수량, 비율 등에 관해 암묵적인 이해 또는 공통의 의사가 형성되는 것으로 충분하다.

4.2.5 경영간섭 등

- 입찰에 참가하려는 사업자가 공동으로 당해 입찰에 관련된 사업자의 활동에 대해 지도를 행함에 있어서 입찰가격이나 수주예정자 결정에 영향을 주는 행위는 경쟁제한적인 행위로 원칙적으로 위반이 된다.

4.3 업무상 유의사항

Do



- 독자적으로 입찰대상건에 관한 관련업계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가능하다.
- 단순히 발주처가 공표한 설계금액의 계산에 대해 조사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 공동으로 안전시공과 원가인하를 위해 신공법 또는 신기술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거나 관련사례를 수집하여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다.
- 경쟁입찰에 지명을 받은 경우 다른 사업자와 협의없이 경쟁력이 우위인 사업자가 있어 자주적으로 입찰을 사퇴하는 것은 가능하다.
- 발주처가 제시하는 설계단가가 낮아 수익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자주적 판단에 의해 입찰참가를 하지 않는 것은 가능하다.
- 자주적 판단에 따라 관련사업 수행능력의 부족 또는 기술경쟁력저위 등을 이유로 입찰에 참가하지 않는 것은 가능하다.
- 급격한 가격상승 등으로 입찰공고 당시 설계금액으로는 입찰참가가 불가능하여 자주적으로 입찰에 참가하지 않는 것은 가능하다.
- 1차 입찰에만 참여하고 같은 입찰조건 이하에서는 수주할 여건이 안되어 재입찰에는 참가하지 않는 것은 가능하다.
- 관련 법령 또는 발주처의 요구에 의하거나 기술적 필요 등에 의해 공동 수주하는 것은 가능하다.
- 타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실공사방지를 위한 품질보증 및 안전시공을 위해 회합 또는 기타의 의견·자료교환 방식으로 기술분야의 경쟁을 촉진·확산시키려는 것은 가능하다.
- 입찰에 참여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발주자에 대한 기술관계 등 입찰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설명하는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은 가능하다.

Don't



- 공동으로 입찰과 관련한 최저입찰가격 등을 결정하거나 이에 응하여서는 안 된다.
- 입찰가격을 협의하거나 그에 관한 정보 교환·제공을 통해 입찰가격을 결정하여서는 안 된다.
- 입찰에 참가하면서, 다른 사업자의 산출내역서를 복사 또는 대신 작성하여 주는 등의 방법에 의해 입찰을 하여서는 안 된다.
- 공동으로 발주처의 예정가격을 올릴 목적으로 예정금액보다 높은 수주금액 또는 수준을 정한 후 고의적으로 유찰시켜서는 안 된다.
- 공동으로 수주를 희망하는 자 가운데 낙찰예정자를 미리 결정하고 이에 협조하여서는 안 된다.
- 공동으로 지명회수, 수주실적 등을 정리하여 낙찰예정자 선정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입찰에 참가하려는 사업자들이 이에 협조토록 강요하여서는 안 된다.
- 낙찰에 협조하는 대가로 차기 공사발주시 낙찰의 협조, 금품지급 등의 이익을 공여하거나 또는 이익공여를 약정하는 방법에 의해 낙찰자를 사전 결정하여서는 안 된다.
- 입찰에 참가하려는 사업자에 대하여 수주예정자 결정에 따르도록 강요하고 협력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 입찰참가를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 특정입찰에 대한 연고권 주장을 통하여 특정업체에 낙찰이 이루어지도록 하거나 이에 협조하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 교대로 수주하거나 특정업체가 다른 입찰참가업체들의 산출내역서를 대신 작성하여 주면서 입찰에 참가하게 하거나 입찰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등의 형태로 입찰에 참가하여 특정업체의 낙찰을 밀어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산출내역서를 전문적으로 작성하는 용역업체에 다른 사업자의 산출내역서 작성을 의뢰하고 이를 참여사업자에게 배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수주예정자 선정과 관련하여 공동으로 낙찰예정자를 결정한 후 이를 관련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조를 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낙찰자선정에 협조한 대가로 낙찰사업자에게 사례금 또는 특별회비, 부과금 등을 징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회합 등을 통해 수주물량을 결정하거나 입찰참가자간 수주물량배분을 결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공동으로 수주물량 배분등의 결정에 비협조적인 사업자에 대해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기타 불이익 제공 등의 차별적 취급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단독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물량에 대하여만 응찰하여 다른 사업자와의 공동수주를 유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공동으로 당해입찰을 수의계약으로 유도할 것을 합의하고 입찰참가자 모두 예정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의해 계속적으로 유찰시키거나 입찰참가를 의도적으로 거부하여서는 안 된다.
- 특정사업자의 수주를 목적으로 공모하여 들러리 등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였다가 도중에 입찰을 포기하여 특정사업자 이외의 다른 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봉쇄하여 수의계약으로 유도하여서는 안 된다.
- 공동으로 객관적 기준 없이 특정한 사업자를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부당업자 또는 불량업자로 구분하여 발주처에 통보하거나 대외공표함으로써 입찰참여를 방해한 후 수의계약을 유도하여서는 안 된다.

4.4 관련 사례

내장형(빌트인) 특판가구 입찰담합 제재 건

(현대엔지니어링(주) 발주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입찰 관련 4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의결 제2024-048호 등)

[사실관계]

국내 건설사들은 특판가구(빌트인 특판가구의 비용은 아파트 등의 분양원가에 포함되어 있음)를 구매할 때 등록된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하여 최저가 투찰 업체와 계약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구업체의 건설사별 영업담당자들은 입찰에 참여하기 전에 모임 또는 유선 연락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들러리 참여자·입찰가격 등을 합의하였다(31개 가구 제조·판매업체들이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약 10년간 24개 건설사들이 발주한 총 738건의 특판가구 구매입찰과 관련하여 담합하였음).

이후 합의된 낙찰예정자는 전자우편, 카카오톡 등을 통해 들러리사에 견적서를 전달하고, 들러리사는 견적서 그대로 또는 견적서 상 금액을 일부 높여서 투찰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하였다.

[공정위 판단]

공정위는 이 사건 담합이 국내 주요 가구업체들이 장기간에 걸쳐 전국적인 범위에서 이루어진 고질적인 담합으로 관련매출액(입찰의 계약금액 합계액)이 약 1조 9,457억 원에 달하며, 대다수 국민들의 주거공간인 아파트의 분양원가 상승에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하여, 가구업체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31억 원을 부과하였다.

신용카드 IC카드 통합입찰 담합 제재 건

((주)케이비국민카드 등 7개사 발주 금융카드 구매입찰 관련 6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의결 제2022-225호)

[사실관계]

6개 카드 제조사들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국내 신용카드사가 실시한 '카드 플레이트'와 'IC칩'이 결합된 IC카드 공급업체 선정입찰(총 20건)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 가격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 합의 주요내용은 개별 입찰에서 이 중 4개사를 모두 낙찰자로 선정할 것과 IC칩과 플레이트를 분리하여 각각 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두 품목을 묶어서 1개의 입찰로 실시하되 입찰참가 자격을 '국내에 플레이트 제조시설을 갖춘 업체'로 제한할 것(일명 '통합입찰')이었다.
 - 이들 4개사는 이러한 합의사항을 신용카드사가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입찰 참가를 거부하기로 합의하였다.
-

[공정위 판단]

공정위는 IC칩사와 플레이트사 간의 가격 경쟁이 치열해지는 와중에 삼성페이 등 다양한 모바일카드가 등장하면서 실물 카드 수요가 2012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자신들이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던 플레이트 공급 능력을 활용하여 IC칩사를 입찰에서 배제시키고 안정적 물량 확보 등을 시도한 것으로 판단하여 과징금 140억 원을 부과하였다.

국내 철도차량 물량 배분 담합 제재 건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철도운영기관 발주 철도차량 구매 입찰 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의결 제2022-236호)

[사실관계]

현대로템 주식회사는 철도차량 등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로서 사실상 철도차량(완성차)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사업자였다. 그러나 우진산전 및 다원시스가 철도차량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기 시작하면서 철도차량 시장의 출혈경쟁이 심화되어 수주가격이 하락하였고 이에 따라 피심인은 수주가격 상승과 안정적인 물량 확보를 위해 철도차량 제작이 가능한 사업자인 우진산전, 다원시스와 물량 배분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현대로템 및 우진산전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발주가 예정된 9건의 입찰에 대해 총 3회에 걸친 합의를 통해 각 입찰 건 별로 낙찰자를 정하고 낙찰예정자 외의 사업자는 미응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는 입찰이 단독응찰로 유찰될 경우 낙찰예정자가 유리한 가격조건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었다. 다만 수요기관이 유효한 입찰 성립을 위해 낙찰예정자 외의 사업자에게 응찰을 요구할 경우 낙찰예정자 외의 사업자는 낙찰예정자보다 높은 가격으로 응찰하기로 하였다.

또한 피심인들은 2019년 발주가 예상되는 철도차량 물량 약 1,200량을 고속전철을 제외하고 대략 6:2:2로 안분하여 수주하기로 합의하였다, 고속전철(GTX)에 대하여는 유일하게 생산능력이 있는 현대로템이 수주하되 우진산전 및 다원시스는 해외 사업자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또한 철도차량의 경우 경쟁입찰을 통해 수주자가 선정됨에 따라 해당 물량 관련 입찰에서는 물량을 배분받은 사업자만 응찰하고 나머지 사업자는 응찰하지 않기로 하였다.

[공정위 판단]

피심인들은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하고 그 합의를 실행하여 이 사건 입찰 시장에서 실질적인 경쟁을 통하여 낙찰자가 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낙찰예정자가 실질적인 경쟁 없이 자신이 원하는 가격으로 낙찰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이 사건 입찰 시장에서의 경쟁을 직접적으로 제한하였다. 또한 합의 대상이 철도차량이었고, 지역적 범위를 국내의 특정 지역에 한정시키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관련시장은 '국내 철도차량(완성차) 시장'으로 볼 수 있는바, 국내 철도차량 시장에서 물량 공급을 제한하는 것으로 사업자 간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을 뿐 효율성 증대 효과는 없는 경성담합에 해당하는 점, 피심인들의 국내 철도차량 시장 점유율이 100%에 달하는 점, 피심인들은 자신의 이윤을 확대하기 위해 이 사건 합의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국내 철도차량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이므로 경쟁제한성을 인정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공정위는 피심인들에게 총 564억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민간건설사 계측관리용역 입찰 담합 제재 건

(민간건설사 발주 계측관리용역 입찰 관련 37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의결 제2022-080호)

[사실관계]

민간건설사가 발주한 계측관리용역 입찰은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발주처에 협력업체로 등록되어 현장설명회에 초대받은 계측업체들이 해당 입찰 건에서 응찰하지 않는 경우 다음번 입찰에 초대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았으므로 설령 해당 입찰 건에서 낙찰 의사가 없더라도 발주처로부터 지명을 받은 이상 응찰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또한 계측관리용역 입찰 참여사들은 입찰대상 현장을 보고 현장의 지리적 위치, 세부 공종 등을 기초로 어느 업체가 수주에 유리한지 대략 예상할 수 있었다. 이에 계측관리용역업을 영위하는 37개 사업자들은 2010. 5월부터 2019. 5월까지의 기간 동안 민간건설사가 발주한 총 99건의 계측관리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개별 입찰 건별로 입찰 참가대상 업체 중 수주를 희망하는 피심인이 다른 입찰 참가대상 피심인들에게 자신이 수주할 수 있도록 자신의 투찰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해 달라고 요청하는 방식으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공정위 판단]

공정위는 피심인들이 이 사건 99건의 각 입찰에 참가하면서 낙찰예정자, 들러리,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이를 이 사건 각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 투찰가격 등을 정하는 의사의 합치를 통해 경쟁입찰 제도의 취지를 무력화시켜 실질적인 경쟁을 통해 낙찰자가 결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시키고, 경쟁관계에 있는 피심인들 사이의 경쟁을 소멸시켜 정상적인 경쟁상황에서 보다 높은 수준에서 낙찰가격이 결정되도록 하였으므로 피심인들에게 매출규모에 따라 각 시정조치, 경고 및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입찰 담합 사례

(현대건설(주) 등 3개사 발주 케이블 구매입찰 관련 7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의결 제2018-045호)

[사실관계]

7개 전선 제조 사업자들(대한전선, 엘에스전선, 가온전선, 넥상스코리아, 대원전선, 서울전선, 일진전기)은 최저가 낙찰제에 따른 저가 수주를 방지하고, 생산·판매 물량을 서로 균등하고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담합을 하게 되었다.

7개 전선 제조 사업자들은 2011년 1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실시된 37건의 고압 전선 등의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받을 업체, 들러리 업체, 투찰 가격 및 낙찰된 물량의 배분을 합의했다. 즉, 낙찰받을 업체가 들러리 업체들의 투찰 가격을 정한 후 들러리 업체들에게 전화 연락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기로 했으며, 낙찰받은 업체는 자신이 낙찰받은 물량을 들러리 업체들에게 균등하게 배분하기로 했다.

7개 전선 제조 사업자들은 낙찰받을 업체로부터 전달받은 가격대로 투찰하는 등 합의된 내용대로 실행했다. 다만, 전선의 원자재인 구리 가격의 상승 등으로 인하여 들러리 업체가 물량을 배분받기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물량 배분이 이행되지 않기도 했다.

[공정위 판단]

7개 전선 제조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60억 6,000만 원을 부과하고 사업자 모두를 고발하기로 결정

입찰 담합 사례

(한국수력원자력(주) 발주 구매입찰참가 8개 케이블 제조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결정 제2013-011호)

[사실관계]

구 LG전선(LS전선의 전신), 대한전선, 구 진로산업(현 JS전선 변경 전 상호), 구 일진전기, 서울전선 등 5개 사업자 영업 담당자들은, 2004년 2월 10일 신고리·신월성 1·2호기(2004년 입찰 예정) 및 신고리 3·4호기(2008년 입찰 예정) 원자력 발전용 케이블 입찰과 관련, 각 품목별로 낙찰자를 사전에 협의·결정하고 투찰가격·낙찰가격 등을 합의했다(1차 기본합의).

또한 5개 사업자 영업 담당자들과 극동전선의 영업 담당자는, 2004년 8월 13일 물량배분 등 위 기본합의의 큰 틀속에 극동전선을 참가시키기로 합의하면서 신한울 1·2호기(2010년 입찰)의 일부 품목에 낙찰자를 사전에 협의·결정했다(2차 기본합의).

[공정위 판단]

사업자들이 원자력 발전용 케이블 구매 입찰에 참가하면서 성립된 합의에 따라 케이블 종류별로 '나눠먹기식'으로 낙찰받았고, 사전에 합의하여 품목별로 물량을 배분하여 낙찰자를 협의·결정하고 각 입찰별로 들러리를 세워 입찰에 참가한 행위는, 원자력 발전용 케이블 입찰분야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라고 판단하였다.

공정위는 전체 사업자들에게 향후 금지명령, 정보교환 금지명령을 내리고, 7개 사업자에게 총 63억5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고, LS전선, 대한전선, JS전선, 서울전선, 일진전기, 극동전선은 검찰에 고발하였다(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정보교환을 통한 입찰 가격담합 사례

(시스템에어컨 정부조달계약 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의결 제2010-151호)

[사실관계]

피심인 S사 및 L사, C사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조달청과 시스템에어컨 연간 조달단가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조달청과의 단가협상 전에 조달단가를 인상 또는 유지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공정위 판단]

피심인들은 시스템에어컨의 정부조달계약을 위한 조달청과의 협상에 있어 조달단가 및 품목을 합의를 통한 정부조달시장에서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되며 직접 접촉, 유무선 전화통화, 이메일 교환 등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시스템에어컨 정부조달계약에 있어 공개되지 아니한 내부협상안이나 원가자료 정보를 교환해서는 아니된다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하였다(17,652백만원).

수주예정자의 참가 및 요청으로 인한 입찰 담합 사례

(파형강관 납품 입찰 참가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약식 제2011-057호)

[사실관계]

피심인들은 2009.3.1.경 00시가 조달청 쇼핑몰을 통해 제안요청한 '파형강관 납품 입찰'에 대해, A사가 낙찰받도록 하기 위해 사전에 A사 회의실에서 B사 및 C사 관계자와 모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A사는 다른 2개 피심들에게 자신이 조달청과 연간단가계약을 체결한 품목의 합계액의 98%에 해당하는 216,097천원으로 투찰할 것임을 알려주면서 자신이 낙찰받도록 협조요청하였고, 이에 다른 2개 피심인들은 이 건 입찰의 낙찰자 선정요건이 최저가격 투찰임을 감안하여 A사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였다.

[공정위 판단]

파형강관 납품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공동으로 결정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4.5 위반시 제재

4.5.1 시정조치

- 사업자가 공동으로 입찰담합행위를 한 경우, 당해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법 제42조, 제52조).
- 필요한 조치로는 입찰담합과 관련한 협정의 파기, 협정을 파기한 사실의 주지 철저, 앞으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하는 것의 금지, 범위반사실의 공표 등이다.

4.5.2 과징금

- 관련매출액의 20%(매출액이 없을 경우 40억원) 범위 내에서 부과 가능하다(법 제43조).
- 관련매출액이란 법 위반사업자가 위반기간 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말한다.
- 입찰담합에 있어 관련매출액은 ①낙찰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②낙찰은 되었으나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낙찰금액을, ③낙찰되지 않은 경우에는 예정금액(또는 응찰금액)으로 본다.

4.5.3 고발 및 형사처벌

- 공정위의 고발에 의해 입찰담합행위를 한 자 또는 이를 행하도록 한 자 등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법 제124조, 징역과 벌금은 병과 가능).

- 공정위 시정조치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법 제125조).
-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 개인에 대하여서도 처벌이 가능하다(법 제128조, 양벌규정).
- 기타 형벌: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형사처벌(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형법에 의한 처벌(형법 제315조 위반 경매·입찰 방해죄, 2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4.5.4 손해배상청구(징벌적 손해배상)

- 발주기관은 입찰담합을 한 사업자에 대하여 발생한 손해의 최대 3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법 제109조).

4.5.5 손해배상액 예정 제도

- 입찰 참여시 입찰담합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으나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을 배상하도록 청렴계약서 등에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 공정위는 손해배상액의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에 손해액 배상제도 도입을 권고하고 있다.

4.5.6 입찰참가자격 제한

- 공정위는 법위반행위를 한 당해 사업자(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한 조치 외에 필요한 경우 법위반행위의 정도, 횡수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에 입찰참가자격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 과거 5년간 입찰담합으로 받은 벌점 누계가 5점을 초과한 사업자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을 하여야 한다.
 - 과거 5년간의 기간산정은 당해 입찰담합에 대한 위원회 시정조치일로부터 과거 5년으로 역산하되 초일을 산입한다.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

유형	경고	시정 권고	시정 명령	과징금	고발
점수	0.5	1.0	2.0	2.5	3.0

* 1개의 사건에 대하여 서로다른 유형의 시정조치가 병과된 경우에는 최상위 조치유형의 점수만 반영함.

4.6 공정위의 입찰담합징후 분석 시스템 운영

-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입찰 관련정보를 온라인으로 전송받아 낙찰률 및 참여업체 수 등 입찰담합징후를 계량적으로 자동분석하는 시스템을 말하며, 입찰담합관련 정보에 가중치를 두어 담합 징후를 점수화 하고, 순번제 입찰담합 등을 포착할 수 있는 검색기능을 보유하고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발주하는 입찰과 관련된 부당한 공동행위를 적발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입찰 관련 자료의 제출과 그 밖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입찰공고를 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입찰 관련 정보를 공정위에 제출하여야 한다(공정거래법 제41조).
- 정보수집 범위
 - 입찰참가 사업자 수: 20개 이하
 - 추정가격: 건설공사 입찰(50억원 이상),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수리 공사 입찰(5억원 이상), 물품구매 및 용역입찰(5억원 이상)
- 입찰정보 전송기관: 조달청, 한국전력공사 등 12개 공공기관
 - 자체입찰시스템 보유기관: 공정위 시스템과 직접 연계하여 자동전송
 - 자체입찰시스템 미보유기관: 공정위 홈페이지에 연결된 입찰정보 입력시스템에 입찰결과를 입력

5.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시 제재

5.1 행정적 제재

- 시정조치: 법 위반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 기타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공정위는 명할 수 있다.
- 관련매출액(입찰담합의 경우 계약금액 또는 낙찰금액 등을 매출액으로 봄)의 20% 한도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관련 매출액 산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4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액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5.2 형사적 제재

- 공동행위 사업자에 대하여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행위자 외에도 법인 또는 개인도 처벌이 가능하다. 그러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법인 또는 개인(감독자)은 면책될 수 있다.

5.3 최대 3배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 공동행위로 인해 손해(=공동행위로 설정한 가격과 경쟁시 형성되었을 정상가격과의 차이)를 입은 제3자나 소비자는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해 발생한 손해의 최대 3배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공정거래법 제109조).
- 손해배상청구소송 시 자료제출명령제의 도입(공정거래법 제111조)
 - 법원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위법행위자)에게 해당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음(공정거래법 제111조 제1항)
 -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원은 “자료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공정거래법 제111조 제4항)
 - 법원은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않고, 자료의 제출을 신청한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고, 자료로 증명할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경우 법원은 “그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로 증명하려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공정거래법 제111조 제5항)

6.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6.1 제도의 의의

-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실무상 '리니언시(Leniency) 제도'라고 불림)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가 위법행위 사실을 자진신고하는 경우에 제재 감면 등의 파격적인 혜택을 부여하여 참여자 스스로 위법행위를 신고하고 시정할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부당공동행위자들 사이의 균열을 유도하고 적발률을 높이고자 하는 제도이다.
- 엠네스티 플러스(Amnesty Plus)제도는 진행 중인 특정 담합사건의 조사 과정에서 사업자가 다른 담합에 대한 증거를 첫 번째로 제공하면 현재 조사 중인 담합에 대해서도 감면을 받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에 의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 담합에 대한 조사개시일/자진신고일 중 빠른 날 이후'부터 '특정 담합에 대한 공정위 심의일 이전'에 다른 담합에 대하여 자진신고를 해야 한다.

관련 조항 - 공정거래법 제44조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소속 전·현직 임직원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제42조에 따른 시정조치나 제43조에 따른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고, 제129조에 따른 고발을 면제할 수 있다.
 1.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
 2.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의결에 협조한 자
- ②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받은 자가 그 감경 또는 면제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새롭게 제40조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감경 또는 면제를 하지 아니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받은 자가 그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재판에서 조사과정에서 진술한 내용과 달리 진술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나 과징금의 감경 또는 면제를 취소할 수 있다.
- ④ 공정거래위원회 및 그 소속 공무원은 사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진신고자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의결에 협조한 자의 신원·제보 내용 등 자진신고나 제보와 관련된 정보 및 자료를 사건 처리와 관계없는 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관련 조항 -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51조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이 감경·면제되는 자의 범위와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법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자진신고한 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및 시정조치를 모두 면제**한다.

가.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그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한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증거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이들이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계열회사이거나 회사의 분할 또는 영업양도의 당사회사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단독으로 제공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최초의 자일 것

나.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지 못했거나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진신고했을 것

다.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사실을 모두 진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 및 심의·의결(이하 “조사등”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했을 것

라. 그 부당한 공동행위를 중단했을 것

2.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한 후에** 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조사등에 협조한 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면제하고, 시정조치를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가.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지 못했거나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사등에 협조했을 것

나. 제1호가목, 다목 및 라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할 것

3.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법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자진신고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한 후에**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조사등에 협조한 자(이하 이 조에서 “자진신고자등”이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하고, 시정조치를 감경할 수 있다.**

가.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두 번째의 자**(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가 2개이고, 그 중 한 사업자인 경우는 제외)일 것

나. 제1호다목 및 라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할 것

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진신고자등이 자진신고하거나 조사등에 협조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자진신고하거나 조사등에 협조했을 것

4. 부당한 공동행위로 과징금 부과 또는 시정조치의 대상이 된 자가 그 부당한 공동행위 외에 그 자가 관련되어 있는 다른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제1호 각 목 또는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다시 과징금을 감경하거나 면제하고, 시정조치를 감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감경하거나 면제하지 않는다.**

1. 다른 사업자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해당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하도록 강요하거나 이를 중단하지 못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일정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법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경우

6.2 감면의 요건

6.2.1 적극적 요건

(1) 자진신고자 지위의 획득

- '1순위 신고자'는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진신고한 자로서, ①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최초의 자이고, ② 그 신고 당시 공정위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지 못하였거나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인 경우를 말한다.
- '1순위 조사협조자'는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한 후에 최초로 조사에 협조한 자로서, 공정위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지 못하였거나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독으로 조사에 협조한 자를 말한다.
- '2순위 신고자 또는 조사협조자'는 공정위의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진신고하거나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한 후에 조사에 협조한 자로서,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두 번째 사업자를 말한다.

(2) 성실협조의무

- 자진신고자 등은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사실을 모두 진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 사업자의 임직원이 내부적으로 공정위의 조사에 대비한 문건을 작성한 바 있다거나, 그 외 외부기관의 감독활동에 대한 각종 대응방안을 마련해 둔 바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조사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하지 않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부당한 공동행위의 중단 의무

- 행위의 중단 여부는 공동행위의 합의가 더 이상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6.2.2 소극적 요건

- ① 자진신고 감면을 받은 자가 5년 이내에 새로운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지 않을 것(법 제44조 제2항), ② 다른 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담합에 참여하도록 강요하는 등의 사실이 없을 것(시행령 제51조 제2항 제1호), ③ 일정 기간 반복적으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시행령 제51조 제2항 제2호), ④ 공정위 조사에서 한 진술이나 제출했던 자료의 중요한 내용을 재판에서 부정하거나 그 내용이 재판에서 거짓인 것으로 밝혀지지 않았을 것, ⑤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에서 진술을 하지 않거나 출석하지 않는 행위, 자진신고한 부당한 공동행위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시행령 제51조 제3항)

6.3 자진신고 지위확인의 효과

6.3.1 과징금 및 시정조치의 감면

- 자진신고에 따른 과징금 감면은 법정 한도액 범위 내의 부과과징금을 산정한 다음에 적용한다.

	과징금	시정조치
1순위 신고자	100% 면제	의무적 면제
1순위 조사협조자	100% 면제	의무적 감면
2순위 신고자 등	50% 감경	임의적 감경

6.3.2 형사고발의 면제

- 공정위는 자진신고자 등에 대하여는 고발을 면제할 수 있다(공정거래법 제44조 제1항). 즉 고발면제는 공정위의 재량사항이나, 자진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원칙적으로 고발하지 않는 것이 실무상 관행이다.

6.3.3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제한

-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3배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고 실손해에 대해서만 배상책임을 진다. 즉 자진신고자로 인정된 사업자의 경우 그 배상액은 해당 사업자가 부당공동행위를 하여 손해를 입은 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공정거래법 제109조 제2항).

7. 경쟁사 모임시 관련 행동지침

- ① 경쟁사 임원과의 공식·비공식 모임을 제의 또는 수락하지 말고, 특히 “업계 담당자간의 모임” 등 가격이나 거래조건이 논의될 수 있는 경쟁사 임직원과의 모임은 절대적으로 피하여야 한다.
- ② 어떠한 명목으로든 경쟁사 임직원과의 모임에 참석하고자 하는 경우 공정거래 자율준수 관리자에 업계모임 참여 신고서를 제출하고 업계모임 참여원칙 및 프로세스를 준수하여야 한다.
- ③ 업계 공식모임의 경우 사전에 회의 안건을 받아보고 공정거래법 저촉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참석하도록 하고, 판단이 애매한 경우 공정거래 자율준수 관리자 또는 법무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 ④ 경쟁사 임직원과 만난 자리(협회 등 업계간 또는 경쟁사와의 공식적인 모임, 우연하거나 비공식적인 만남 포함)에서 가격 등 거래조건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i) 이의를 제기하고, (ii) 이의 제기에도 불구하고 논의가 중단되지 않을 경우 즉시 자리를 이탈하여야 하며, 즉시 해당부서 공정거래 자율준수 담당자를 통하여 공정거래 자율준수 관리자에게 직접 보고하며, (iii) 공식적인 모임의 경우 이의를 제기하거나 자리를 떠난 사실을 회의록에 기록될 수 있도록 요청하고, 회사 내부 기록에 남겨 놓아야 한다.
- ⑤ 경쟁사와의 논의 또는 교환될 수 있는 정보의 종류가 합법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관리자 또는 법무담당부서와 사전에 상의하고, 정확한 내용을 사후에 공정거래 자율준수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8. 경쟁사와의 정보 교환 관련 가이드라인

- ① 가격 등을 포함한 거래조건이나 이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경쟁사에게 요구, 제공 또는 교환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팩스, 이메일은 물론 전화통화 등 일체의 수단이 포함되며, 비공식적이거나 사적인 모임에서 초안 또는 결정(안) 등을 보여주거나, 주고받는 행위도 포함된다.
- ② 경쟁사에게 향후 제품개발, 생산량 계획 내용을 서로 교환하지 말아야 한다.
- ③ 경쟁사로부터 가격, 거래조건 등의 정보에 대한 문의 또는 요청이 있을 경우 제공이 불가능함을 분명히 하고,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공하지 않은 사실을 공정거래 자율준수 관리자에게 보고하여 이를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 ④ 경쟁사 관련 정보를 공사자료나 거래처를 통해 적법하게 입수한 경우 그 입수경위와 출처를 분명히 기록해 두어야 한다.
- ⑤ 경쟁사 관련 정보를 독자적인 경로를 통해 파악한 경우에도 이에 맹목적으로 따르지 말고 시장 상황, 고객 수요 및 비용 등 다양한 경쟁적 소요를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하여야 한다.

9. 문서 작성 및 정보보안 관련 가이드라인

- ① 회사가 독자적으로 사업판단을 하고 상품 관련 조건을 결정한 경우 그러한 내용이 문서 내용에 분명히 나타나도록 하여야 한다(특히 경쟁사가 유사한 시기 또는 내용으로 상품 내용을 결정 또는 변경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 ② 회사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로부터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는 표현의 사용에 주의하여야 한다.

표현 예시

- 동업사 "협력" 강화
- "업계공동대응(예정)", "업계차원의 검토"
- "A사는 200x.10.1부터 추진예정", "B사 5% 결정 예정"
- "경쟁자제", "경쟁지양"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적극적 협조"
- "시장안정화"협조, "시장 정화"방안, "시장질서"유지, 개선 필요
- 업계간 "공조", "협조" 체제, 타사와 정보 "공유"
- "당사의 지역", "타사 지역"
- "경쟁사의 조건은 당사 조건과 동일(xxxx 시행 예정)", "L사 28%(당사 조정시 인하 예정)," "월 x회 정기적인 교류활동"
- "상위사와 하위사가 시차를 두고 폐지하기로" 합의

- ③ 문서 작성 시 경쟁사 자료 또는 정보를 인용하는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출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 ④ 문서규정의 보존기간을 준수하고, 오해를 살 수 있는 내용의 메일, 기록, 메모를 작성하거나 보관하지 말아야 한다.
- ⑤ 회사의 중요정보는 주관부서에서 자체 관리 및 정보보안을 철저히 하고 담당자 외 보관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⑥ 회사의 중요정보에 대한 자료를 회의 등의 사유로 배포 시회의 종료 후 필히 회수하고 메일 형식으로 배포하는 것을 지양하여야 한다.
- ⑦ 문제가 될만한 용어를 사용하거나 지배력을 의미하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 ⑧ 경쟁사업자의 가격 또는 계획과 같은 민감한 정보를 입수한 경우 추후 이 정보를 부적절한 방법으로 취득하였다는 의심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그 정보의 출처에 대하여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 ⑨ 내부 또는 외부 문서 작성시 항상 해당 문서가 외부에 공개되거나 공정위 담당자가 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함. 또한 가능한 가장 최악의 내용으로 해석될 것을 가정하여야 한다.
- ⑩ 당사의 가격이 사업적 판단에 의하지 않고 다른 요소에 근거하여 결정되는 듯한 용어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 ⑪ 경쟁사업자와 모임을 가질 경우 안건이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0. 업계모임 참여시 행동요령

경쟁사업자와의 모임은 그 형태와 구체적 논의내용, 합의 여부를 불문하고 참가사실만으로도 부당한 공동행위(이하 '담합'이라 한다) 추정 of 정황증거로 사용될 수 있음을 모든 임직원은 명심하고 다음과 같은 요령에 따라 행동한다.

- ① 업계모임이 공정거래법규를 위배하거나 위배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부서 공정거래 자율준수 담당자를 통하여 공정거래 자율준수 관리자에게 직접 보고한다.
- ② 판매, 공급 등 모든 가격, 거래조건 등 공정거래법에서 담합을 금지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논의하지 않는다.
- ③ 담합은 합의 사항의 실행없이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되므로 공정거래법위반 가능성이 있는 협의나 결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불참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한다. 범위반가능성 여부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자율준수전담부서의 자문 또는 협의를 받아야 한다.
- ④ 불가피하게 참석하게 되는 경우, 적극적인 찬성을 표시하지 않고 침묵하여도 해당 행위가 참가로 간주되므로 반대의사 표시를 명확히 하고(의사록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명기 요구), 즉시 그 장소를 이탈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거부의를 명확히 알린다.
- ⑤ 업계모임에서 실제로 협의가 없었던 사항이나 일부 참석자가 단순의견 개진한 사항에 대하여 회의록, 정보보고, 활동보고 등의 형식을 빌어 마치 협의가 있었던 것처럼 작성하면 담합으로 오인되거나 담합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사실에 입각하여 기록하고 허위의 보고를 하지 않도록 한다.
- ⑥ 모든 업계모임 참여자는 사전에 공정거래 자율준수관리자에게 "업계모임 참여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⑦ 공정거래 자율준수관리자는 신고서 검토 및 참여자 면담을 거친 후 참여 승인 또는 금지를 하거나 필요 시 모임내용을 사후에 즉시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다.
- ⑧ 업계모임에 참여하는 임직원은 그 내용이 공정거래법상 담합금지조항에 해당하거나 해당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반대의사표시를 명확히 하고 그 장소를 이탈하여야 하며, 즉시 해당부서 공정거래 자율준수담당자를 통하여 공정거래 자율준수관리자에게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 ⑨ 공정거래 자율준수담당자는 매월 해당부서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시 참석한 업계 모임에 대한 활동내역을 포함시켜 공정거래 자율준수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업계모임 참여 신고서

모임명	
모임의 목적	
예상활동내용	※ 되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주간사	
참여회사 (협회 등 포함)	
회합주기	
활동내용보고 여부 및 방법	
담당부서(팀)	
담당자(연락처)	
특이사항	

위 내용과 같은 업계모임을 참여하고자 자율준수관리자에게 신고합니다.

2025. . . .

소속부서장

(서명)

11. 체크리스트

항목	점검사항
가격협약	- 경쟁사업자와 판매가격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의사연락이나 정보교환한 사실이 있는가?
물량조절	- 경쟁사업자와 생산량, 출고량, 재고량 등에 대하여 정보를 교환하거나 협의한 사실이 있는가?
입찰	- 경쟁입찰 시 사전에 입찰 참가자와 낙찰자, 응찰금액, 응찰물량 등 입찰 관련 자료를 상호 교환하거나 또는 협의한 사실이 있는가? - 거래상대방과 입찰가격, 입찰수량, 입찰거래조건 등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협의, 약정한 경우가 있는가?
경쟁업체 모임시	- 위와 같은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에 참여한 적이 있는가? - 위와 같은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한 적이 있는가? - 경쟁업체 모임시 공정거래자율준수관리자에게 업계 모임 참여 신고서를 제출하였는가? - 경쟁사 임직원과 만난 자리에서 가격 등 거래 조건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는가? - 경쟁사 모임시 관련 회의록을 작성하였는가?
문서작성시	- 당사가 독자적으로 사업판단을 통해 가격등을 결정한 경우, 관련 내용이 문서내용에 적시되었는가? -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가격이나 거래조건의 결정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살수 있는 “협력”이나 “공동으로” 문구가 적시되었는가? - 문서 작성시, 경쟁사 자료 또는 정보 인용시 출처를 명확히 하였는가?



Ⅲ. 계열사 간 부당한 내부거래의 금지 관련부서 : 사업팀, 영업팀, 외주구매, 홍보팀

1. 개요

- 1996년 12월 30일 공정거래법에 부당지원행위금지 규정이 도입된 이후,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집단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부당한 지원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 이후 공정거래법은 2013년 8월 13일 대기업집단의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행위(사업기회 유용 또는 일감몰아주기)를 규제하기 위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금지(사익편취) 규정을 신설하였다.
- 그에 따라, 공시대상 기업집단(당사 포함)의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부당지원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다.

구분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사익편취행위)	부당지원행위
조항	공정거래법 제47조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9호
규제대상	총수 있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기업	모든 사업자
지원객체	① 특수관계인(공시대상기업집단의 동일인 및 동일인의 친족에 한하며, 친족은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 ② 특수관계인이 20% 이상 지분(상장여부와 무관)을 보유한 계열회사 ③ 특수관계인이 2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자회사(50% 초과 지분 보유)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 (계열사에 한정하지 않음, 자회사 포함)
규제목적	대기업집단 특수관계인(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 금지	공정거래저해성(특히 경쟁제한성) 있는 부당지원행위 금지
규제내용	① 정상적인 거래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②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의 제공 ③ 현금이나 그 밖의 금융상품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④ 합리적인 고려나 비교 과정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일감 몰아주기)	①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상품·용역·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②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

<p>안전지대</p>	<p>①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거래조건 차이가 7% 미만이고, 해당 연도 거래총액이 50억원(상품·용역의 경우에는 200억원)미만인 경우</p> <p>② 상당한 규모의 거래: 연간 거래총액이 200억원 미만이고, 거래상대방 평균 매출액이 12% 미만인 경우</p>	<p>① 자금, 자산, 부동산, 인력 등 지원: 정상가격과의 차이가 7% 미만이고, 연간 거래금액이 30억원(상품·용역의 경우에는 100억원)미만인 경우</p> <p>② 거래대가 차이가 나는 거래 : 거래 당사자간 해당 연도 거래총액이 100억 원 미만이고, 정상가격과의 차이가 7% 미만인 경우</p> <p>③ 상당한 규모의 지원행위: 거래당사자 간 해당 연도 상품·용역거래 총액이 100억 원 미만이고, 거래상대방의 평균매출액의 12% 미만인 경우</p> <p>④ (모든 유형의 지원행위에 대하여) 개별 지원행위 또는 일련의 지원행위로 인한 지원금액이 1억 원 이하로서 공정거래저해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p>
<p>위반시 제재</p>	<p>① 시정조치: 부당지원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필요한 시정 조치를 부과</p> <p>② 과징금 부과: 직전 3개 사업년도 평균매출액의 100분의 10(지원금액 X 부과기준율) 이내 또는 매출액이 없는 경우 40억 원 이내 과징금 부과 - 지원금액: 정상가격과 실제 거래금액의 차액 - 부과기준율: 위반행위 중대성에 따라 80%, 50%, 20% 부과기준율 적용</p> <p>③ 공정위 고발에 따른 형사제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다만, 지원객체는 형벌 적용대상에서 제외)</p> <p>④ 양벌규정에 따라 행위자 및 법인 처벌 가능</p>	

대기업 집단 자산 규모별 규제 차등화

현행 공정거래법상 대규모기업집단 규제는 1)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국내총생산(GDP)의 0.5%로 연동, 자산 규모가 약 10조 원 내외)과 2) 5조 원 이상의 공시 대상 기업집단으로 구분

1)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는 ① 상호·순환출자 금지, ② 채무 보증 금지, ③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④ 공시 의무, ⑤ 특수 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 등을 적용

2) 공시 대상 기업집단에는 ① 공시 의무, ② 특수 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 등을 적용

2. 부당지원행위의 금지(법 제45조 제1항 제9호)

2.1 개념

2.1.1 의의 및 요건

- 부당한 지원행위란,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상품·용역·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부당지원행위의 구성요건) ① 당해 행위 주체(지원주체)의 특징, ② 당해 행위 객체(지원객체)의 특징, ③ 당해 행위의 유형(지원행위의 유형) 특징, ④ 당해 행위가 경제적 이익의 지원에 해당할 것인지 여부의 판단, ⑤ 당해 행위의 부당성 존부 판단의 구조에 의하게 된다.

2.1.2 지원주체

- 사업자가 지원주체가 될 수 있으며, 공정거래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가 모두 포함된다.
- 부당한 지원행위의 지원주체는 경제적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당해 행위의 경제적 지원을 어떤 사업자가 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따라서 어떤 지원행위의 형식적, 외형적 주체를 달리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관점에서 다른 사업자가 당해 지원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실질적 사업자를 행위주체로 인정할 수 있다('우회지원'의 형태로 지원행위가 있는 경우 문제될 수 있음).

2.1.3 지원객체

- 지원객체란 지원주체의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는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의미한다. 문언상 지원주체 이외의 모든 사업자가 이에 해당할 수 있다(100% 완전 자회사도 지원객체에 포함됨).

2.1.4 지원행위 해당성

- "지원행위"라 함은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급부의 정상가격이 그에 대한 대가로 받는 경제적 반대급부의 정상가격보다 높거나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여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정상가격"이란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간에 이루어졌을 경우 형성되었을 거래가격 등을 말한다.

- 지원행위의 유형으로는 ①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등 자금을 거래한 경우, ② 유가증권·부동산·무체재산권 등 자산을 거래한 경우, ③ 부동산을 임대차한 경우, ④ 상품·용역을 거래한 경우, ⑤ 인력을 제공한 경우, ⑥ 거래단계를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한 경우 등이 있다.

2.1.5 지원행위의 부당성 판단기준

-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 유력한 사업자의 지위를 형성, 유지, 강화할 우려
 - 경쟁사업자 배제 우려
 - 경쟁조건이 상당히 유리하게 되는 경우
 - 지원객체의 퇴출이나 다른 사업자의 신규 시장진입 배제
- 단순한 사업경영상 필요 또는 거래상 합리성 내지 필요성만으로 부당지원행위 성립요건으로서 부당성 또는 공정거래 저해성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2.1.6 위반 시 제재

- 시정조치: 부당지원행위의 중지, 시정명령 사실 공표, 기타 필요한 시정 조치
- 과징금 부과: 직전 3개 사업년도 평균매출액의 100분의 10(지원금액 X 부과기준율) 이내 또는 40억 원 이내 과징금
- 공정위 고발에 따른 형사제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 양벌규정: 행위자 및 법인 함께 처벌

2.2 유형

2.2.1 자금지원행위

(1) 개념

- 가지급금, 대여금 등 자금을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대가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회계처리상 계정과목을 가지급금, 대여금으로 분류하는 경우에 국한하지 않고, 현금 기타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 공사대금을 미회수 하는 경우 발주처에 대한 자금지원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2) 판단 기준 : “정상금리”

- **개별정상금리** 또는 개별정상금리 산정이 어렵고 개별정상금리가 일반정상금리를 하회하지 않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일반정상금리**를 기준으로 하여 지원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 개별정상금리란 자금거래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의 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자금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적용될 금리
- 일반정상금리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시중은행의 매월 말 평균 당좌대출금리
- 지원금액의 산정에 부가가치세가 수반되는 거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부당지원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한다.
- 적용금리와 개별정상금리 또는 일반정상금리 차이가 후자의 7% 미만이면서 연간 자금거래 총액이 30억 원 미만인 경우 지원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안전지대).

(3) 유형

- 계열 금융회사가 계열회사의 약정 연체이자율을 받지 않고 비계열사의 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 연체이자를 수령하는 경우
- 계열회사에 대한 저리자금대여, 저리자금예치, 선급금 명목의 자금제공, 기업어음, 사채 저리인수, 후순위사채 매입, 전환사채인수 및 전환행위
- **대여금, 용역대금을 변제기 이후에 회수하지 않거나 변제기 이후에 회수하면서 지연이자를 가산하지 않는 경우**
- 출자행위성질을 갖는 신주인수행위를 하는 경우
- 지원주체가 제3자인 은행에 정기에금을 예치한 다음 이를 다시 지원객체에 대한 대출금의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지원객체로 하여금 은행으로부터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도록 하는 경우

(4) 업무상 유의사항

Do



- 실제적용금리와 개별정상금리의 차이가 7% 이상 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대여금, 용역대금, 공사대금을 변제기 내에 회수하고, 변제기를 초과하여 회수하는 경우 지연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Don't



- 상품 용역거래와 무관하게 '선급금 명목'으로 계열회사에게 무이자 또는 저리로 자금을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5) 관련 사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CJ 소속 CJ 및 CJ CGV가 총수익스와프 계약을 이용하여 계열회사인 CJ건설 등이 영구전환사채를 저금리로 발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부당한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기업집단 CJ 소속 계열회사들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건, 의결 제2025-164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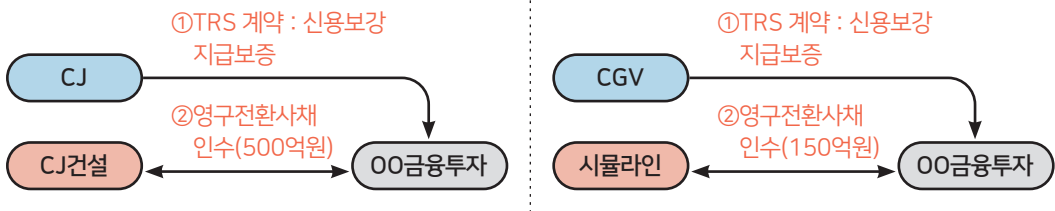
[사실관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CJ 소속인 CJ(주)와 CJ CGV(주)는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신용보강·지급보증 수단으로 이용하여 계열회사인 CJ건설(주) 및 (주)시몰라인이 영구전환사채를 저금리로 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당시, CJ건설(주)와 (주)시몰라인은 심각한 재무적 위기 상황에 빠져 있는 상황으로 영구전환사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확충하려해도 이를 인수할 투자자를 찾기 어려웠고, 설령 찾는다 하여도 금리가 대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CJ(주)와 CJ CGV(주)는 금융회사가 CJ건설(주)와 (주)시몰라인이 발행한 영구전환사채를 인수하는 전제조건으로 같은 날 TRS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영구전환 사채 인수계약과 TRS 계약이 일괄거래 방식으로 체결되었다. 즉, 금융회사는 재무적 위기 상황에 처한 지원객체의 영구전환사채를 인수함에 따른 위험을 TRS 계약을 통해 지원 주체에 이전한 것이다. 특히, 영구전환사채 계약조건 상 TRS 계약 기간 동안에는 전환권 행사가 봉쇄되어 있었고, CJ(주)와 CJ CGV(주)의 이익 실현 의사 및 가능성도 전혀 없었다.

그 결과, CJ건설(주)은 500억 원, (주)시몰라인은 150억 원 상당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되었고, 발행금리도 CJ(주)와 CJ CGV(주)의 신용도를 기준으로 결정되어 자금조달 비용도 최소 30억 원(CJ건설) 또는 20억 원(시몰라인)을 절감할 수 있었다.

이 사건 TRS 계약을 이용한 지원행위 거래구조



[공정위의 판단]

공정위는 위 행위를 통해 지원객체들은 자본성 자금을 조달하여 자본잠식 상태를 벗어나며 신용등급을 유지하거나 시장 퇴출이 저지되어 경쟁사업자에 비해 상당히 유리한 경쟁조건을 확보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가 저해되었다고 판단하였고, 시정명령 및 지원주체·지원객체에게 총 65억 4,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아모레퍼시픽그룹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건

(의결 제2020-130호)

[사실관계]

아모레퍼시픽그룹은 2016. 8. 11. ~ 2017. 8. 11. 기간 동안 코스비전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시설자금을 저리로 차입할 수 있도록 자기가 소유한 우리은행 750억원의 정기예금을 코스비전에게 담보로 무상 제공하였다. 코스비전은 위 담보를 이용하여 산업은행으로부터 600억원의 시설자금을 1.72% ~ 2.01%의 금리로 5회에 걸쳐 차입하였다.

[공정위의 판단]

아모레퍼시픽그룹의 이 사건 담보제공 행위를 통해 코스비전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자금차입 시 적용받은 금리(1.72% ~ 2.01%)는 코스비전의 개별정상금리(2.04% ~ 2.33%)보다 0.32% 낮은 금리로서 개별정상금리와의 금리차 비율이 최소 13.7%에서 최대 15.7%로 상당한 차이가 있는바, 아모레퍼시픽그룹과 코스비전의 이 사건 담보제공 거래는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한다(시정명령 및 과징금 각 4,800만 원 부과).

2.2.2 자산지원행위

(1) 개념

- 유가증권·부동산·무체재산권이나 기타 자산을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대가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2) 판단 기준: “정상가격”

- 정상가격은 해당 자산의 거래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이루어졌다면 형성되었을 거래가격을 의미한다.
- 해당 거래와 동일한 실제사례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① 먼저 해당 거래와 비교하기에 적합한 유사한 사례를 선정하고, ② 그 사례와 해당 지원행위 사이에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래조건 등의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살펴, ③ 그 차이가 있다면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 정상가격을 산정한다.
- 해당 거래와 비교하기에 적합한 유사한 사례도 찾을 수 없다면 부득이 통상의 거래 당사자가 거래 당시의 일반적인 경제 및 경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편적으로 선택하였으리라고 보이는 현실적인 가격을 규명함으로써 정상가격을 산정한다. 이 경우 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및 동법

시행령 제2장 제1절(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조정)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장(재산의 평가) 및 동법 시행령 제4장(재산의 평가)에서 정하는 방법을 참고할 수 있다.

- 부동산 거래의 경우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상증세법 시행령 제50조). 부동산 임대차에서 정상가격 산정이 어려운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산정한다.

(부동산 정상가격의 50/100) * 임대일수 * 정기예금이자율 / 365 = 해당기간의 정상임대료

- 실제 거래가격과 정상가격의 차이가 정상가격의 7% 미만이고, 거래당사자간 해당 연도 자산거래 총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안전지대).

(3) 유형

- 비상장 주식을 저가 매도한 경우
- 부동산을 정상가격에 비하여 저가로 매도하거나 고가로 매수하는 경우
- 임차한 건물을 계열사에 저가로 전대한 경우
- 계열사로부터 임대료 수령을 지연한 경우
- 단독 또는 계열회사와 공동개발한 무체재산권을 계열회사에 양도하여 단독 특허 출원하도록 한 경우

(4) 업무상 유의사항

Do

- 지원주체와 객체 간의 자산 거래 시 해당 자산 거래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이루어졌다면 형성되었을 거래가격에 비하여 상당히 낮거나 높지 않도록 거래가격을 설정한다.
- 지원객체에 대하여 기존에 채무보증을 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그 채무보증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원객체의 채무를 인수하는 등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한 범위 내에서의 지원은 가능하다.
- 임대료 산정 시 당해 부동산의 종류, 규모, 위치, 임대시기, 기간 등을 참작하여, 시장에서 형성된 정상적인 임대료를 고려하여야 한다.
- 계열사간 부동산을 임대차 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임차료를 제공하거나 임대료를 제공받아야 한다.
- 계열사 간 부동산 거래 시 되도록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매매대금을 정하여야 한다.



Don't

- 정상적인 임대수익률에 비해 낮은 임대보증금을 수령하지 않는다.
- 계열사간에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제공하거나 제공받지 않아야 한다.

(5) 관련 사례

경영권 프리미엄 대가를 치르고 산 주식을 경영권 프리미엄 없이 매각한 것은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07.12.13, 선고2005두5963 판결)

[사실관계]

현대자동차가 2001. 2. 23. 자신과 업무상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들인 씨앤씨캐피탈 주식회사등 문화창업투자그룹 소속 계열회사 5개사로부터 원고 현대제철 주식회사의 발행 총 주식 121,571,567주의 6.82%에 해당하는 830만 주를 경영권을 취득하는 대가(이른바 '경영권 프리미엄')로 전일 증권거래소 종가인 1주당 4,800원보다 6.25% 높은 1주당 5,100원(총 매수대금 42,330,000,000원)에 장외에서 매입하고, 여기에 자신이 이미 보유하고 있던 원고 현대제철 발행 총 주식수의 4.70%에 해당하는 5,709,517주와 합쳐 11.52%(14,009,517주)의 지분을 확보함으로써 제1대 주주가 된 사실, 원고 현대자동차는 이 사건 주식을 매입한 지 11일 후(거래일 기준 6일 후)인 2001. 3. 6.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원고현대제철의 주식 전부인 14,009,517주를 시간외 증가매매를 통하여 1주당 4,830원(총 매도대금 67,666,000,000원)에 원고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에 매각한 사실이 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현대자동차가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씨앤씨캐피탈 등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경영권 프리미엄을 주고 장외매입한 후 원고 기아자동차에 경영권 프리미엄 없이 시가로 장내 매각한 행위는 결과적으로 원고 기아자동차로 하여금 원고 현대자동차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은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켜 원고 기아자동차에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지원행위이고, 원고 기아자동차의 경영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매매행위는 지원객체인 원고 기아자동차로 하여금 자금력을 제고시키고 이로 인해 경쟁사업자에 비해 경쟁조건이 유리하게 되거나 시장에서의 유력한 사업자로써의 지위를 형성·유지·강화시킬 수 있게 해 줌으로써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2.3 상품 및 용역지원행위

(1) 개념

- 상품·용역을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대가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2) 판단 기준: "정상가격"

- 정상가격은 해당 자산의 거래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이루어졌다면 형성되었을 거래가격을 의미한다.
- 상품·용역을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대가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지원행위에 해당한다.
- 단,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사이에 거래된 상품·용역의 실제 거래가격과 정상가격의 차이가 정상가격의 7% 미만이고, 거래당사자간 해당 연도 상품·용역 거래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안전지대).

(3) 유형

- 지원객체와 비계열회사 간 거래 또는 다른 경쟁사업자들의 거래와 비교하여 상품·용역의 내용·품질 등 거래조건이 유사함에도 높은 매출총이익률을 나타내는 경우
- 매출채권 회수 지연, 지연하여 회수하면서 지연이자를 받지 않는 경우, 자회사에게만 특별판매 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 대금결제방식을 기존에 비해 유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 지원객체가 운영하는 광고매체에 정상 광고단가보다 높은 단가로 광고를 게재하는 방법으로 광고비를 과다 지급하는 경우
- 원재료의 고가매입
- 용역대금(수수료 등)의 과다건적

(4) 업무상 유의사항

Do



- 계열사와의 상품·용역거래의 조건을 비계열사의 거래조건과 비교하여,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상품·용역거래시 시장에서 형성된 정상가격을 산정·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동일 또는 유사한 거래가 없어 정상가격 산정이 어려운 경우 최저가 입찰에 의하여 거래 상대방과 거래조건을 정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 동일 또는 유사한 거래가 없어 정상가격 산정이 어려운 경우 여러 업체들에게 견적을 받아 거래조건을 비교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 위와 같이 최저가 입찰에 따른 계약 또는 복수 견적을 바탕으로 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각 회사가 제출한 자료, 견적서 및 내부적으로 그를 비교분석한 자료 등을 작성·보관해두어야 한다.
- **공사계약 시 공사대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가산하는 조항을 반드시 삽입하고, 지연이자가 정상금리 수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Don't



- **계열사와 상품·용역거래 시 거래조건을 비교하고 검토하는 절차를 생략하여서는 안 된다.**
- 인쇄비/물품구매 위탁수수료/노임단가 등 용역수수료를 과다 지급하여서는 안 된다.
- 계열사에게 무료광고를 게재하여서는 안 된다.
- 경쟁입찰에 의한 낙찰률보다 높은 낙찰률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안 된다.

(5) 관련사례

용역대금 지연 수령을 통한 계열사 부당 지원 사례

(현대중공업 외 17개사의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한건,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4두7610 판결)

[사실관계]

현대상선은 징수수수료의 입금에 대한 상호 정산이나 구체적인 합의를 하지 아니하는 등 용역대금의 수령을 지연하여 오다가, 1998. 1. 1. 위 용역계약에 대한 추가약정을 체결하면서, 원고 현대상선이 현대물류로부터 매출액 전액을 수령하는 대신 현대물류에게 추가약정서에서 특정된 운영인건비 등을 정산지급하기로 약정함에 따라, 운영권사용대가의 지급방식을 변경함과 아울러 추가약정의 내용을 최초 계약일에 소급 적용하도록 합의하여, 현대물류의 수수료지급 지체책임을 사실상 면책시켰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새로운 자금지원행위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으므로 이 사건 용역대금 지연수령행위 전부가 자금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교환광고를 통한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여 계열사 부당 지원 사례

(메가박스의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한 건, 의결 제2012-131호)

[사실관계]

피심인은 (주)온미디어와 사이에 명시적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3년 9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교환광고'를 하였으며 이후 교환광고 관련 상호 정산이 이루어진 바는 없다.

피심인은 2003. 9. 20. ~ 2007. 8. 22. 기간 동안 당시 피심인의 계열사인 (주)온미디어의 채널브랜드(OCN, OnStyle, SuperAction 등)에 대한 광고를 대행사를 통하지 않고 무상으로 상영해준 사실이 있으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7,335백만원의 가치가 있다.

반면 (주)온미디어는 같은 기간 동안 <표 8>과 같이 피심인이 주최한 '서울유럽영화제'의 홍보영상물을 무상으로 제작하여 피심인에 제공하는 한편, 2003년, 2005년, 2007년 중 78회에 걸쳐 서울유럽영화제의 예고편 등을 자신의 영화채널(OCN)을 통해 무상방영 해주었으며, 2003년, 2005년, 2006년, 2007년 중에는 피심인이 주최한 '일본영화제'의 예고편 등을 160회에 걸쳐 자신의 영화채널(OCN)을 통해 무상방영해 준 사실이 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121백만 원의 가치가 인정된다.

한편, 피심인이 2007. 9. 19. 호주 맥쿼리펀드 계열로 매각이 결정되어 피심인이 오리온 계열에서 분리된 이후부터는 (주)온미디어는 광고대행사를 통해 2007. 12. 19. ~ 2008. 1. 2. 15일간 총 22개의 메가박스 상영관에 채널브랜드를 상영하고 광고료 총 22,209,670원을 지급하였다.

[공정위 판단]

피심인이 (주)온미디어와 실시한 교환광고 행위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고려할 때 계열사인 (주)온미디어에게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행위로 인정된다.

첫째, 피심인이 (주)온미디어에 제공한 무료 극장광고의 가치가 당시 피심인 극장에 적용되는 광고대행단가를 적용하였을 경우 총 7,335백만원에 달하는 반면, (주)온미디어가 피심인을 위해 제공한 영화제 홍보영상물과 예고편 광고방송은 당시 비슷한 내용의 홍보물에 대한 제작비 수준이나 (주)온미디어 광고단가를 기준으로 적용할 경우 121백만원에 불과하여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차이가 현저하다.

둘째, 교환광고를 함에 있어 상호간 명시적 계약이나 경제적 가치의 명확한 계산, 정산과정 등이 없이 실행되었을 뿐 아니라, 극장매체와 방송매체는 매체간 광고단가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았으며 광고기간·횟수 면에서도 피심인과 (주)온미디어간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바, 이는 계열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사이의 업계 교환광고 관행과 배치된다.

이에 대하여 피심인은 교환광고행위가 사업적 이익을 교환할 수 있는 사업자라면 쉽게 할 수 있는 전형적 업무제휴이며, 지원행위성 판단시 지원주체가 스스로 포기하고 지원객체에게 이전한 경제상 이익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바, 동 경제적 이익은 피심인이 영화광고대행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었던 수수료 상당의 금액에 불과하고 피심인이 (주)온미디어에 제공한 급부의 정상가격보다 (주)온미디어가 피심인에게 제공한 반대급부의 정상가격이 더 크므로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계열사라 하더라도 광고영화 상영에 대한 정당한 댓가를 지불하고 광고하는 것이 업계의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므로 무상으로 광고 영화를 상영하는 것은 전형적인 업무제휴의 형태로 보기는 어려운 점, 지원행위 여부의 판단시 급부의 정상가격은 지원주체가 지출한 금액이 아니라 지원객체가 받았거나 받은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경제상 이익으로써 (주)온미디어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광고를 피심인의 극장에 상영하였다면 부담하였을 가격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 이러한 방법으로 급부 및 반대급부의 정상가격을 산정할 경우 급부의 정상가격(7,335백만원)이 반대급부의 정상가격(121백만원)을 크게 상회하여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된다.

2.2.4 인력지원행위

(1) 개념

- 인력을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대가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2) 판단 기준: "정상급여"

- 정상급여는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이루어졌다면 형성되었을 급여를 의미한다.
- 근로제공 및 대가지급의 구분관계가 합리적이고 명확한 때에는 당해 인력이 지원객체와 지원주체로부터 지급받는 일체의 급여, 수당 등에서 당해 인력의 지원주체에 대한 근로제공의 대가를 차감한 금액을 정상급여로 간주한다.
- 구분관계가 합리적이지 않거나 불명확한 때에는 지원객체와 지원주체로부터 지급받는 일체의 급여, 수당 등에서 지원객체와 지원주체의 당해 사업연도 매출액 총액 중 지원객체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한 분담금액을 정상급여로 간주(매출규모에 따라 안분) 한다.
- 단, 실제지급급여와 정상급여의 차이가 정상급여의 7% 미만이고, 거래당사자간 제공된 인력의 해당 연도 인건비 총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3) 유형

- 업무지원을 위해 인력을 제공한 후 인건비는 계열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 인력파견계약을 체결하고 인력을 제공하면서 퇴직충담금 등 인건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회수한 경우
- 지원객체의 업무를 전적으로 수행하는 인력을, 지원주체 회사의 고문 등으로 위촉하여 지원주체가 그에 대하여 수당이나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4) 업무상 유의사항

Do

- 업무지원을 위해 인력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급여를 제공하여야 한다.
- 업무지원을 위해 다른 회사에 인력을 파견할 때 인건비 정산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Don't

- 인건비를 과도하게 지급하여서는 안 된다.
- 계열사의 인건비를 무상으로 부담하여서는 안 된다.

(5) 관련 사례

대규모 부당인력지원행위 제재 사례

(씨제이프레시웨이(주)의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한 건, 의결 제2024-293호)

[사실관계]

2010년 전후 프레시웨이는 식자재 유통 시장에서의 시장 지위를 공고히하기 위해 기존 대기업이 진출하지 않았던 중소상공인 위주의 지역 식자재 시장을 신속하게 선점한 뒤 다른 대기업 경쟁사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진입장벽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프레시웨이는 시장에 직접 또는 단독으로 진출 시 예상되는 중소상공인들과의 마찰을 피하고자 대외적으로 이들과의 상생을 표방하며 합작법인 형태의 프레시원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지역 식자재 시장에 진출하였다.

그러나 합작계약은 프레시웨이가 지칭하는 중소상공인들이 프레시원을 설립하도록 한 이후에 프레시웨이가 지분을 매입(프레시웨이가 51% 또는 66% 지분취득)하여 프레시원을 장악하는 내용이었고, 중소상공인들을 상생의 대상이 아닌 장애물 및 사업 위협 요소로 인식한 결과 씨제이그룹까지 개입하여 이들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퇴출(프레시웨이가 100% 지분취득)시켰다.

프레시웨이가 내부적으로 중소상공인들을 조직적으로 퇴출시켜 나가는 동안, 프레시원은 이 사건 인력지원을 바탕으로 시장에 원활히 안착하고 유력한 지위를 획득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지원은 프레시원에 대규모 부실이 발생한 시점까지 계속되어 프레시원의 시장 퇴출을 저지·지연시켰고, 그 결과 합작계약 과정에서 프레시원은 중소상공인들로부터 확보한 영업망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프레시웨이는 프레시원에 12년 8개월 동안 총 221명의 인원을 파견하여 법인장 등 프레시원 핵심 관리자 업무를 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면서, 인건비334억 원 전액을 프레시원 대신 지급하였다.

[공정위 판단]

프레시웨이의 지원행위를 통해 프레시원은 사업초기부터 직접 채용이 어렵고 풍부한 업계 경험을 보유한 프레시웨이의 전문인력을 아무런 노력 없이 무료로 확보할 수 있게 되어, 자체적인 경쟁력 이외의 요소로 경쟁여건 및 재무현황을 인위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프레시원은 중소상공인 위주의 시장에서 유력한 지위를 획득하였고 시장 퇴출도 인위적으로 방지되어, 중소상공인이 본래 획득하였을 정당한 이익이 대기업에 잠식되는 결과까지 초래되었다. 결국 프레시웨이의 지원행위는 부당한 인력지원에 해당하고, 이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45억 원(프레시웨이 167억 원, 프레시원 78억 원)을 부과한다.

인건비를 대신 부담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계열사 부당 지원 사례

(삼양식품의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한 건, 의결 제2015-374호)

[사실관계]

삼양식품은 1995년부터 2015년 3월까지 라○○ 등 자신의 직원 11명에게 계열회사인 에코그린캠퍼스의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이들의 급여를 에코그린캠퍼스 대신 지급하였다.

피심인 삼양식품은 자신의 소속 임원들로 하여금 에코그린캠퍼스의 대표이사를 겸임하도록 하고 그 급여를 대신 지급하였다. 삼양식품 소속인 이○○는 2007. 5. 31.부터 2011. 3. 28.까지, 그리고 박○○은 2011. 3. 29.부터 2015. 3. 31까지 에코그린캠퍼스 대표이사를 겸임하였다.

[공정위 판단]

삼양식품 주식회사는 인력을 파견하여 계열회사의 업무를 행하게 하면서 인건비를 대신 부담하거나, 차량을 제공하고 소요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상당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계열회사인 에코그린캠퍼스 주식회사를 지원하였고, 피심인 에코그린캠퍼스 주식회사는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열회사로부터 무상으로 인력을 파견 받고 차량을 지원받는 방식으로 피심인 삼양식품 주식회사로부터 지원을 받았다. 이에 두 회사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302백만원)을 부과한다.

2.2.5 물량 몰아주기

(1) 개념

-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 대여금, 인력, 부동산, 유가증권, 상품, 용역, 무체재산권 등을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말한다.
- 계열사에게 상당한 규모로 물량을 몰아주는 경우 이 유형의 부당지원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2) 판단 기준

- 상품·용역을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 거래규모,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지원기간, 지원횟수, 지원시기, 지원행위 당시 지원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의 구조와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거래대상의 특성상 거래물량으로 인한 규모의 경제 등 비용절감 효과가 지원객체에게 과도하게 귀속되는지 여부 고려
 - 해당 거래물량만으로 지원객체의 사업개시 또는 사업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물량을 초과할 정도의 거래규모가 확보되는 등 지원객체의 사업위험이 제거되는지 여부 고려

- 정당화 사유: 비용절감, 품질개선 등 효율성 증대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상당한 규모의 거래라도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거래당사자간 해당 연도 상품·용역거래 총액이 100억원 미만이고, 거래상대방의 평균매출액의 100분의 12 미만인 경우에는 상당한 규모에 의한 지원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안전지대).

(3) 유형

- 각종 물류업무를 수의계약의 방식을 통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대부분 몰아주는 경우
- 상당한 규모의 거래를 통하여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4) 업무상 유의사항

Do



- 계열사와 거래할 때에도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도록 함. 만약, 불가피하게 수의계약을 할 경우 수의계약의 사유가 적정한지 검토하여야 한다(긴급성, 보안성, 효율성 등).
- 계열사와 거래시 거래규모가 상당하여 과도한 이익을 제공하게 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 계열사와 대규모의 거래시 비용절감, 품질개선 등 효율성 증대효과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 계열사와 거래할 때에도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불가피하게 수의계약을 할 경우 수의계약의 사유가 적정한지를 검토하고, 필요성을 검토한 자료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 계열사와 계속적으로 유사한 거래를 하는 경우 거래조건의 적정성을 재차 검토하고, 다른 회사와의 거래조건과 비교하여야 한다.

Don't



-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지원할 목적으로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계열사에게 업무의 대부분을 수의계약 형태로 몰아주어서는 아니 된다.
- 계열사와 계속적으로 유사한 거래를 하는 경우 재검토 없이 종전의 거래조건으로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계열사간 거래물량으로 인한 규모의 경제 등으로 비용절감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비용절감효과가 계열사에게 과도하게 귀속되어서는 아니 된다.
- 계열사에 거래조건의 특혜가 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5) 관련 사례

계열회사에 물류 업무 대부분을 몰아준 것이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현대자동차 등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건, 서울 고등법원 2009. 8. 19. 선고 2007누30903판결, 대법원 상고기각 확정)

[사실관계]

원고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 현대제철은 원고 글로비스가 설립(2001년 2월)된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한 2001년 3월부터 원고 글로비스가 통합물류체계를 완성한 2004년 6월까지 원고 글로비스에게 자사 제품의 생산·판매에 부수하는 완성차 배달 탁송, 철강 운송 등 각종 물류업무를 비경쟁적인 사업 양수도 또는 수의계약의 방식을 통하여 대부분 몰아주었다.

[법원의 판단]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들이 계열사인 현대글로비스에 물류업무를 집중시켜준 사안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은 문제된 거래물량의 비중이 당시 물류시장 1위 사업자의 매출액의 약 30%에 해당하는 점, 글로비스 전체 매출액의 35.8~41.7%에 이르는 점 등을 이유로 현저한 규모의 거래로 인정하고, 글로비스가 비계열사와의 거래보다 훨씬 높은 매출총이익률을 시현한 점, 운송단가를 시장가격 인상률보다 높게 인상한 점, 대부분 수의계약 후 단기간 내 운임단가를 대폭 인상한 점 등에 비추어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본건 지원행위로 글로비스가 산업 평균에 비하여 높은 자기자본 증가율, 매출증가율, 총자본영업이익율을 보인 점 등에 비추어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받은 것으로 인정하면서 현대글로비스가 설립후 2년만에 2위 사업자로, 4년만에 1위 사업자로 급부상한 점에 비추어 본건 '물량몰아주기'는 글로비스의 경쟁상 지위를 부당하게 제고하여 관련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하여 부당성을 인정하였다.

계열회사에 급식물량 100%를 몰아준 것이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기업집단 삼성 소속 계열회사들의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한 건, 의결 제2021-228호)

[사실관계]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에스디아이 및 삼성디스플레이는 삼성그룹 미전실의 개입 하에 2013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거래상대방 변경 등을 고려하지 않고 계열회사인 삼성웰스토리에 급식물량 100%를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였다.

[공정위 판단]

공정위는 삼성전자 등 4개사가 2013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삼성웰스토리와 급식거래 물량이 식수 연평균 5500만식, 연평균 매출액 3277억의 삼성웰스토리 전체 매출액의 28.8%에 달하는 현저한 규모이고, 식재료비 마진 보전 및 인건비를 별도 협의 없이도 매년 인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한 바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과징금 총 2349억원, 삼성전자와 전 미래전략실장을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총수익가 소유 계열회사에 상당한 규모의 공사 일감을 제공한 행위가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제일건설(주)의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한 건, 의결 제2024-329호)

[사실관계]

제일건설은 그룹 내에서 아파트 시공사업을 단독 수행할 수 있는 신용등급과 시공능력을 갖춘 유일한 건설사로서 그룹 차원에서 확보한 공공택지 개발사업의 시공권을 사실상 독점적으로 확보하고 있었다. 반면 제이제이건설과 제이아이건설은 제일건설로부터 하도급을 받거나 소규모 관급공사를 수주하는 수준에 불과하여 아파트 건설공사를 수행할 시공역량이 없는 상태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일건설은 제이제이건설과 제이아이건설이 건설실적을 확보하고 수익성을 증대할 수 있도록 자신이 시공권을 확보한 공공택지개발사업 총 7건에서 합리적 사유 없이 이들을 공동시공사로 선정하여 공동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규모의 공사 일감을 제공하였다.

특히, 제이제이건설은 2016~2020년 동안 1,574억 원의 시공매출과 138억 원의 시공이익을, 제이아이건설은 2017~2023년 동안 848억 원의 시공매출과 107억 원의 시공이익을 획득하였다. 해당 기간 동안 지원객체가 이 사건 지원행위로 거둔 시공매출이 총시공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제이제이건설은 83.3%, 제이아이건설은 49.3%에 육박하였고, 총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제이제이건설은 20.9%, 제이아이건설은 12.8%에 달하였고, 시공능력평가 순위도 제이제이건설은 2016년 1,337위에서 2020년 205위로, 제이아이건설은 2017년 546위에서 2023년 405위로 크게 상승하였다.

[공정위 판단]

공정위는 이 사건 지원행위로 인해 제이제이건설 및 제이아이건설은 국내 주거용 건물 건설업 시장에서 경쟁상 지위를 부당하게 제고시킬 수 있었다고 보고, 아울러 지원객체들은 상당한 규모의 건설실적을 확보하여 공공택지 분양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였다고 판단한 후,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96억 8,900만 원을 부과하였다(제일건설 약 48억 원, 제이제이건설 약 31억 원, 제이아이건설 약 16억).

2.2.6 통행세 거래

(1) 개념

- 거래상 실질적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하여 거래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판단 기준

- 지원주체가 지원객체를 거래단계에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하기로 결정함에 있어 통상적으로 행하는 필요최소한의 분석·검증 작업을 거치지 않는 등 정상적인 경영판단에 따른 결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통상적인 거래관행이나 지원주체의 과거 거래행태상 이례적인지 여부
- 불필요한 거래단계를 추가하는 것이어서 지원주체에게 불리한 조건의 거래방식인지 여부
- 지원주체가 역할이 미미한 지원객체를 거래단계에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함으로써 지원객체에게 불필요한 유통비용을 추가적으로 지불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지원주체가 지원객체를 거치지 않고 다른 사업자와 직접 거래할 경우 지원객체를 거쳐서 거래하는 것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3) 유형

- 통상적인 직거래관행 및 기존의 거래형태와 달리, 지원객체를 통해 제품을 간접적으로 구매하면서 실제 거래에 있어 지원객체의 역할을 지원주체가 수행하거나 지원주체와 지원객체의 역할이 중복되는 등 지원객체가 거래에 있어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 경우
- 지원주체가 직접 공급사로부터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지원객체를 중간 유통단계로 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 지원주체가 자신에게 제품을 납품하는 회사로 하여금 제품생산에 필요한 중간재를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지원객체를 거쳐 구매하도록 하는 경우

(4) 업무상 유의사항

Do



- 중간 매개자인 계열사의 역할은 무엇인지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계열사의 구체적 역할).
 - 중간 매개자인 계열사의 전문적 역할, 당사의 거래비용 절감, 당사의 규모의 경제 달성 등 구체적 역할 등을 확인·정리하여야 한다.
- 중간 매개자인 계열사의 매개가 있기 전과 후의 거래관계에 변동(매개가 있기 전에 비해 매개가 있은 후 불리, 불이익 등)이 있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Don't



-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의 거래상 역할에 비해 과도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다.
-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한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계열사를 거래단계에 추가시켜 수익을 귀속시키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관련 사례

통행세 수취회사 설립을 통해 계열사를 부당 지원

(주)엘에스와 엘에스전선(주)의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한 건 (의결 제2017-174호)

[사실관계]

2005년말 (구)엘에스전선은 총수일가와 공동출자하여 엘에스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를 설립하고, 다수 계열사가 핵심 품목인 전기동을 구매 또는 판매하면서 이 회사를 거치도록 하는 거래 구조를 설계한 뒤 총수일가의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2006년부터 엘에스니꼬동제련은 자신이 생산한 전기동을 판매 시에, 엘에스전선은 수입전기동을 트레이더로부터 구매 시에 엘에스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를 중간 유통 단계로 추가하여 통행세를 지급해왔다. 이 과정에서 엘에스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는 전기동 중계시장에서 유력한 사업자의 지위를 확보했고, 부당이익을 바탕으로 정보통신기술(IT)서비스 분야로까지 사업을 확장했으며, 총수일가도 막대한 이익을 실현했다.

[공정위 판단]

(구)엘에스전선[현(現) (주)엘에스]이 직접 그리고 엘에스니꼬동제련(주)에게 지시하여 엘에스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주)를 장기간 부당지원한 행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경영진과 법인을 고발한다.

(참고로, 이와 관련하여 서울고등법원은 부당지원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과징금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정상가격 산정에 오류가 있음) 과징금 총액 259억 6,100만 원 가운데 189억 2,200만 원을 취소하였고, 대법원은 그러한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을 확정하였음)

비계열사를 교사해 계열사를 부당 지원

하이트진로(주)의 부당한 지원 행위에 대한 건 (의결 제2018-110호)

[사실관계]

하이트진로는 박태영이 서영이앤티를 인수한 직후부터 각종 통행세 거래와 우회 지원으로 서영이앤티에 막대한 부당 이익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삼광글라스(제조업체)에서 직접 구매하던 맥주 공캔을 서영이앤티를 거쳐 구매하면서 통행세를 지급했고, 나중에는 삼광글라스를 교사하여 삼광글라스가 직접 구매하던 알루미늄 코일(공캔의 원재료)과 글라스락캡(유리밀폐용기 뚜껑)을 서영이앤티를 거쳐 거래하면서 통행세를 지급하도록 요구했다. 특히, 서영이앤티가 보유 주식을 고가로 매각할 수 있도록 인수자와 이면 약정을 체결하고 인수된 회사에 거래 단가를 인상해주는 방식으로 우회 지원까지 했다. 이 과정에서 하이트진로는 중소기업에 각종 피해를 끼치며 총수2세의 경영권 승계 구도를 구축했다.

[공정위 판단]

하이트진로(주)가 총수일가 소유회사인 서영이엔티(주)를 직접 또는 삼광글라스(주)를 교사하여 장기간(2008년 4월 ~ 2017년 9월) 부당 지원한 행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하이트진로(주) 경영진과 법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한다.

→ 이후 2024. 4. 하이트진로 대표이사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상무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하이트진로 법인은 벌금 1억 5천만 원이 확정되었음

교환광고를 통한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여 계열사 부당 지원 사례

(메가박스의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한 건, 의결 제2012-131호)

[사실관계]

메가박스는 계열사인 온미디어에 대한 광고를 대행사를 통하지 않고 무상으로 상영(환산가치 약 7,335백만원) 해 준 사실이 있으며, 온미디어는 같은 기간 동안 메가박스의 홍보영상물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환산가치 약 121백만원) 교환광고를 하였다.

[공정위 판단]

계열사라 하더라도 광고영화 상영에 대한 정당한 댓가를 지불하고 광고하는 것이 업계의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므로 무상으로 광고 영화를 상영하는 것은 전형적인 업무제휴의 형태로 보기는 어려운 점, 지원행위 여부의 판단시 급부의 정상가격은 지원을 한 기업이 지출한 금액이 아니라 지원을 받은 기업이 받았거나 받은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경제상 이익으로써 온미디어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광고를 피싱인의 극장에 상영하였다면 부담하였을 가격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 이러한 방법으로 급부 및 반대급부의 정상가격을 산정할 경우 급부의 정상가격(7,335백만원)이 반대급부의 정상가격(121백만원)을 크게 상회하여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행위로 볼 수 있다.

다만, 메가박스가 두 차례의 인수·합병을 거치는 과정에서 더 이상 어느 기업집단에도 속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된 점, 현재 계열사를 가지고 있지 않은 점, 지원행위로 인해 이익을 취득한 자는 메가박스가 아니라 온미디어를 매각함으로써 시세차익을 얻은 관련자들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없이 재발방지를 위한 시정명령만 부과한다(이후 취소소송이 제기되었으나, 패소 확정됨).

3.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금지(법 제47조)

3.1 개념

3.1.1 적용 대상

- 총수 있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계열사가 총수일가 개인이나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 또는 그 회사의 자회사(단독으로 50%를 초과하는 지분을 소유한 회사)와 거래하여 총수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는 금지된다(공정거래법 제47조).

• 의결권 유무는 무관하며, 직접지분만 계산한다.

- 지원주체는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기업을 말한다.

• 공시대상 기업집단: 당해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회사들의 기업집단 지정 직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5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

- 지원객체는 특수관계인 또는 특수관계인이 직접 30%(비상장사 20%)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사를 의미한다.

특수관계인은 동일인(총수) 및 그 친족(동일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 동일인이 지배하는 국내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5촌·6촌인 혈족이나 4촌인 인척, 동일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에 한정한다.

3.1.2 부당성판단기준

- '부당한 이익' 인지 여부는 제공주체와 제공객체 및 특수관계인의 관계,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의 경위와 그 당시 제공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거래의 규모,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는 이익의 규모, 이익제공행위의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칙적인 부의 이전 등을 통하여 대기업집단의 특수관계인을 중심으로 경제력 집중이 유지·심화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 법 제45조 제1항 제9호의 부당한 지원행위의 경우 별도로 공정거래저해성 요건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과 달리,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는 이익제공행위를 통하여 그 제공객체가 속한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되거나 경제력이 집중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2017두63993 판결 등 대법원 판결을 반영한 공정위 지침변경).

부당한 이익제공 유형(공정거래법 제47조 제1항)

유형	내용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1호, 3호)	정상가격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 의 자금, 자산, 상품·용역, 인력거래 또는 특수관계인과의 현금 기타 금융 상품 거래 ※ 적용제외 : ① 실제가격과 정상가격과의 차이가 7% 미만 이고, ② 거래당사자간 해당연도 거래 총액이 50억원(상품·용역의 경우에는 200억원) 미만 인 경우
사업기회 제공 (2호)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로서 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기회를 특수관계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 적용제외 : ① 회사가 해당 사업기회를 수행할 능력이 없는 경우, ② 사업기회 제공의 정당한 대가 를 지급받은 경우, ③ 기타 회사가 합리적인 사유로 사업기회를 거부한 경우
합리적 고려·비교 없는 상당 규모의 거래(4호)	거래상대방 선정 및 계약체결 과정에서 거래 특성상 통상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는 거래상대방의 적합한 선정과정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 ※ 적용제외 : ① 거래당사자간 상품·용역 거래총액이 200억원 미만 이고, ② 거래상대방의 직전 3개년도 평균매출액의 12% 미만 인 경우 ③ 기업의 효율성 증대, 보안성, 긴급성 등 거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1.3 위반 시 제재

- 시정조치: 부당지원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사실의 공표, 기타 필요한 시정 조치
- 과징금 부과: 직전 3개 사업년도 평균매출액의 100분의 10 이내 또는 40억 원 이내 과징금
- 공정위 고발에 따른 형사제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 양벌규정: 행위자 및 법인 함께 처벌

3.2 유형

3.2.1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1) 개념

-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또는 특수관계인과 현금 기타 금융상품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계열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말한다.

-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는 실제 거래가격이 해당 자산·상품·용역 거래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간에 이루어졌다면 형성되었을 거래가격(정상가격)에 비하여 상당히 낮거나 높은 경우에 성립한다.

(2) 적용제외

- 정상가격(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이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과의 차이가 **100분의 7 미만이고 거래당사자 간 연간 총거래금액이 50억 원(상품·용역의 경우에는 20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3) 유형

- 계열회사에 대한 저리자금대여, 저리자금예치, 선급금 명목의 자금제공, 기업어음, 사채 저리인수, 후순위사채 매입, 전환사채인수 및 전환행위로 지원을 하는 경우
- 출자행위성질을 갖는 신주인수행위를 통해 지원을 하는 경우
- 기업 어음 고가 매입
- 회사채 고가 매입
- 주식 고가 매입
- 부동산 등 기타 자산의 고가 매입
- 지원객체에 대한 매출채권회수를 지연하거나 상각 하여 회수불가능 채권으로 처리한 경우
- 외상매출금, 용역대금을 약정기한 내에 회수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 회수하면서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받지 아니한 경우
- 지원객체가 생산·판매하는 상품을 구매하는 임직원에게 구매대금을 대여하거나 용자금을 알선해 주고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직원 소속 계열회사의 자금으로 부담한 경우
- 지원객체가 운영하는 광고매체에 정상광고단가보다 높은 단가로 광고를 게재하는 방법으로 광고비를 과다 지급하는 경우
- 업무지원을 위해 인력을 제공한 후 인건비는 지원주체가 부담하는 경우
- 인력파견계약을 체결하고 인력을 제공하면서 퇴직충담금 등 인건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회수한 경우

(4) 관련 사례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함으로써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킨 사례

(현대 계열회사의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한 건, 의결 제2016-189호)

[사실관계]

현대증권은 2015년 2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제록스와 직거래할 수 있음에도 총수일가가 9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주)에이치에스티를 거래 단계에 끼워넣어 실질적 역할없이 상당한 마진을 확보하게 하고 총수일가에 부당 이득을 귀속시켰다. 그리고 현대로지스틱스(주)는 2012년 5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주)쓰리비로부터 택배 운송장을 높은 단가(12~45%)로 구매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였다.

[공정위 판단]

공정위는 기업집단 현대 소속 현대증권(주) 및 현대로지스틱스(주)가 총수 친족 회사인 (주)에이치에스티 및 (주)쓰리비에게 부당 지원한 행위 등에 시정명령, 총 12억 8,500만 원의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을 하였다.

3.2.2 사업기회제공

(1) 개념

-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해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계열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공주체 측면에서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말하며, 제공주체 측면에서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이면 충분하고 제공객체에게 그 이익이 이전될 필요는 없다.
- 상법 제397조의2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규정에서 사용된 표현과 유사하지만, 상법에서는 위반한 이사회에 책임을 묻는 규정이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으면 원칙적으로 이사의 책임이 면제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 적용제외

- 회사가 해당 사업기회를 수행할 능력이 없는 경우
 - 회사가 법률적 불능(해당 사업기회가 법적으로 수행이 금지된 경우) 또는 경제적 불능(재정적 능력이 현저히 악화된 상태인 경우)으로 해당 사업기회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
- 회사가 사업기회 제공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 그 밖에 회사가 합리적인 사유로 사업기회를 거부한 경우

- 사업기회 거부가 합리적인지 여부는 사업기회를 제공한 회사의 입장에서 평가하고, 제공주체가 해당 사업기회를 거부하는 것이 기업집단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볼 때 경제적이고 합리적이었다는 등의 사정은 원칙적으로 위 면제 사유의 평가 기준이 되지 아니함에 주의

(3) 관련 사례

SK 사업기회 유용 및 잔여주식 취득 지원 부당행위 제재 건

에스케이(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대한 건, 의결 제2022- 071호

[사실관계]

에스케이(주)는 구 LG실트론(현, 에스케이실트론(주), 이하'실트론')의 주식 70.6%를 직·간접적으로 취득한 후, 잔여주식 29.4%를 자신이 취득할 경우 상당한 이익이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에스케이(주)의 대표이사이자 「에스케이」의 동일인 ○○○이 취득할 수 있도록 자신의 인수기회를 합리적 사유 없이 포기하고 ○○○의 잔여주식 취득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여 자신의 사업기회를 제공하였다.

- 특히, 에스케이(주)는 앞선 51% 및 19.6%의 주식취득 과정에서 이 건 잔여주식 29.4% 인수는 '추후 결정'하기로 내부검토 하였는데, 이후 ○○○이 인수 의사를 피력(2017년 4월 14일)하자 이사회 의 심의를 통한 합리적 검토 없이 대표이사 □□□이 에스케이(주)의 입찰 참여를 포기(2017년 4월 19일 또는 동년 4월 21일)하였다.

- 나아가 에스케이(주)는 매도자인 우리은행 측과 비공개협상을 진행하고, 에스케이(주) 임직원이 ○○○의 주식매매 계약 체결 전 과정을 지원하는 등 ○○○이 이 사건 잔여주식을 확정적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직·간접적으로 지원하였다.

[공정위 판단]

해당 이익이 사업기회의 정당한 귀속자인 에스케이(주)에게 귀속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의 동의(이사회의 승인)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이를 위법하게 이용하여 자신에게 귀속시켰으며 그러한 과정에서 ○○○이 「에스케이」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에스케이(주)가 사업기회를 포기하고 대신 이를 자신이 취득하는데 관여하면서 에스케이(주)로 하여금 자신의 사업기회 취득 실현을 위한 행위를 하게 한 점, 그러한 결정 과정에 사업기회의 정당한 귀속자인 에스케이(주)는 사실상 배제되었고, ○○○에게 귀속된 이익의 규모가 상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익의 부당성이 인정되므로 제공주체인 에스케이(주)와 제공객체이자 특수관계인인 ○○○에게 각각 과징금 8억 원을 부과한다.

사업기회 제공을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킨 사례

(기업집단 대림 소속 계열회사들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대한 건, 의결 제2019-217호)

[사실관계]

대림산업은 자신이 개발한 대림그룹 호텔 브랜드(GLAD)를 APD가 출원·등록하게 하고, 동 브랜드를 적용하여 대림산업 소유 여의도 호텔을 시공한 뒤 자신의 자회사이자 호텔 운영사인 오라관광이 APD와 브랜드 사용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APD에게 GLAD 브랜드 사업 기회를 제공했다. 오라관광은 APD와 총 3건의 GLAD 브랜드 사용 거래를 하면서 APD가 제공해야 하는 브랜드 마케팅 등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했음에도 APD에게 고율의 브랜드 수수료(2016년 1월 ~ 2018년 7월까지 약 31억 원)를 지급했다.

[공정위 판단]

대림산업(주)가 APD(주)에게 대림그룹 호텔 브랜드(GLAD) 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이후 오라관광이 APD와 유리한 조건으로 브랜드 사용 거래를 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3억원을 부과하고 법인 및 특수관계인(총수 2세)를 고발한다.

3.2.3 합리적 고려나 비교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

(1) 개념

-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거래규모, 거래시기 또는 거래조건 등 당해 거래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조사하고, 이를 객관적·합리적으로 검토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비교·평가하는 등 당해 거래의 특성상 통상적으로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것으로 기대되는 거래상대방의 적합한 선정과정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계열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말한다.
- 일반 부당지원행위로서 물량몰아주기와 달리, 성립 요건에 있어서 '상당히 유리한 조건' 및 '부당성'의 요건 충족이 요구되지 않는다.

(2) 적용제외

- 거래당사자 간 상품·용역의 해당 연도 거래총액(2 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경우에는 각 회사의 거래금액의 합계액)이 200억 원 미만이고, 거래상대방의 평균매출액의 100분의 12 미만인 경우에는 상당한 규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 효율성, 보안성, 긴급성 등의 이유로 불가피한 경우에도 적용이 제외된다.

(3) 효율성, 보안성, 긴급성의 구체적 검토

①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는 거래

- 다른 자와의 거래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비용절감 또는 판매량 증가나 품질개선·기술개발 등의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음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거래를 말한다.
- 다른 자와의 거래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효율성 증대효과가 명백하다는 것은 경쟁입찰을 하거나 여러 사업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해당 회사와의 거래에 따른 효율성 증대효과가 다른 자와의 거래로는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는 것 자체가 비효율을 유발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세부유형

- ☑️ **상품의 규격·품질 등 기술적 특성상 전후방 연관관계에 있는 계열회사 간의 거래로서 해당 상품의 생산에 필요한 부품·소재 등을 공급 또는 구매하는 경우에는 생산하는 제품의 품질이나 경쟁력이 부품이나 소재, 기초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열사의 품질 혹은 경쟁력과 결합되어 평가되기 때문에 계열회사에 일감을 맡기는 것이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는 거래로 인정될 수 있다.**

예시 제조 공정에서 상품의 특성상 계열회사의 부품·소재 등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하거나, 계열회사로부터 부품·소재 등을 공급 또는 구매하는 경우

- ☑️ **회사의 기획·생산·판매 과정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서비스를 산업연관성이 높은 계열사로부터 공급받는 경우에는 단일 상품거래가 아닌 유기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거래라고 할 수 있으므로 계열회사와의 거래에 효율성 증대효과를 인정할 수 있다.**

예시 해당 회사가 판매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기획, 설계, 구현, 운영 등 단계에서 계열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또는 용역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경우

- ☑️ **회사가 주된 사업영역에 대한 역량 집중, 구조조정 등을 위하여 일부 사업을 전문화된 계열회사에 전담시키고 그 계열회사와 거래하는 경우에는 기업의 구조조정이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기존의 사업부가 분사되어 계열사가 된 것이므로 효율성 증대효과를 인정할 수 있다.**

예시 회사의 상품·서비스 생산 공정을 분할하여 일부 공정에 대해 전문화된 계열회사를 신설하고 전문화된 계열회사를 통해 부품·소재 또는 서비스를 공급받는 경우

예시 계열회사별로 직접 운영하던 기능 또는 조직을 분사 및 통합하여 전문화된 계열회사를 신설하고, 관련 업무를 해당 전문화된 계열회사와 거래하는 경우

- ✓ 긴밀하고 유기적인 거래관계가 오랜 기간 지속되어 노하우 축적, 업무 이해도 및 숙련도 향상 등 인적, 물적으로 협업체계가 이미 구축되어 있는 경우에는 업무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상호 거래 시 종합적인 시너지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계열회사와의 거래에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예시 회사의 상품·서비스 생산 공정과 관련하여 계열회사와의 지속적인 거래를 통해 계열회사가 일정 역할을 분담하고 있는 경우

예시 업무 절차 또는 관련 전산시스템이 계열회사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거나 표준화되고 유사한 구조로 구축되어 있어 거래 시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

- ✓ 거래목적상 거래에 필요한 전문 지식 및 인력 보유, 대규모 또는 연속적 사업의 일부로서 밀접한 연관성 또는 계약이행에 대한 신뢰성 등을 고려하여 계열회사와 거래하는 경우에는 거래상대방 변경 시 과도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거나 품질의 안전성 확보가 보장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계열사와의 거래에 효율성 증대효과가 인정될 수 있다.

예시 상품·서비스 생산 공정을 구축 또는 개발한 계열회사와 관련 상품·서비스 생산 공정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거래하는 경우

예시 기존 상품·서비스 생산 공정을 활용하여 새로운 상품·서비스 생산 공정을 구축 또는 개발함에 있어 기존 상품·서비스 생산공정의 구축·개발에 참여한 계열회사와 거래하는 경우

예시 기존 상품·서비스 생산 공정에 대해 부분적으로 기능의 개선 또는 변경, 추가, 하자보수함에 있어 기존 상품·서비스 생산공정의 구축·개발에 참여한 계열회사와 거래하는 경우

예시 사용자가 많거나 사용 빈도가 높아 사회적 파급력이 크거나 중요도가 높은 상품·서비스 관련 사업으로 계열회사 외에 신뢰성이 검증된 다른 사업자를 찾기 어려운 경우

예시 상품·서비스 생산 과정이 표준화되지 않아 경쟁방법으로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정보제공이 어려운 경우

예시 장치산업에 있어 기존 공정에 연계되거나, 기존 공정과 동일 또는 유사한 공정을 설치하기 위해 기존 용역 수행자인 계열회사와 계속 거래하는 경우

예시 회사가 판매하는 상품·서비스와 관련하여 계열회사와 이미 거래한 건으로서 해당 계열회사와 계속 거래를 하여야 신뢰성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

② 보안성이 요구되는 거래

- 다른 자와 거래할 경우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 또는 정보 등이 유출되어 경제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거래를 말한다.
- 다른 자와 거래할 경우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성격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회사의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 또는 정보 등과 관련된 거래라고 하여 모두 법 적용제외 사유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물리적 보안장치 구축, 보안서약서 체결 등 보안장치를 사전에 마련함으로써 외부 업체와 거래하더라도 정보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지, 실제 시장에서 독립된 외부업체와 거래하는 사례가 있는지 등을 중심으로 판단한다.

세부유형

- ☑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공장·연구개발시설·통신기반시설 등 필수시설의 구축·운영, 핵심기술의 연구·개발·보유 등과 관련된 경우에는 보안기술 및 정보가 상품 또는 용역의 경쟁력 확보에 핵심적인 부분이므로 계열사와의 거래에 보안성을 인정할 수 있다.

예시 새롭게 개발되어 아직 관련 보안기술이 시장에 보급되지 아니한 필수시설·핵심기술의 관리·보관이 필요한 경우

예시 핵심적 영업비밀에 접근 가능한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 기밀보호구역 등의 관리를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예시 방산업체로서 군수지원시스템 등을 운영함에 따라 국가안보에 관한 비밀정보 취급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비계열회사인 시스템통합업체와 거래할 경우 비밀취급 인가를 받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비밀정보가 외국 등 외부로 유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

- ☑ 거래 과정에서 영업·판매·구매 등과 관련된 기밀 또는 고객의 개인정보 등 상호간의 핵심적인 경영정보에 접근 가능한 경우에는 다른자와 거래할 경우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 또는 정보 등이 유출되어 상당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안성이 있는 거래라 할 수 있다.

예시 신상품 개발 및 출시와 관련하여 비계열사를 통한 운송 시 해당 상품의 기술 또는 디자인 등 공개되기 전까지 극비에 붙여야 할 중요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

예시 인재채용을 위한 시험지의 보관·운송 등 거래 과정에서 철저한 보안정책이 요구되는 경우

③ 긴급성이 요구되는 거래

- 경기급변, 금융위기, 천재지변, 해킹 또는 컴퓨터바이러스로 인한 전산시스템 장애 등 회사 외적 요인으로 인한 긴급한 사업상 필요에 의해 불가피한 거래를 말한다.
- '회사 외적 요인'이란 불가항력적인 요인을 일컫는 것으로서, ① 예견가능성 ② 회피가능성이 없는 외부의 힘에 의하여 사건이 발생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회사 스스로 긴급한 상황을 자초하거나 회사 내부적으로 긴급한 사업상 필요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긴급성 요건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긴급한 사업상 필요'란 거래상대방 선정 과정에 있어 합리적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를 할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황을 의미한다. 단기간에 장애를 복구하여야 하는 경우, 상품의 성격이나 시장상황에 비추어볼 때 거래상대방을 선정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생산, 판매, 기술개발 등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는데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세부유형

- ✔ 천재지변으로 인한 공장의 폭발사고로 긴급한 복구가 필요한 경우
- ✔ 상품 생산을 위한 핵심 소재·부품, 설비 등을 외국 또는 외국기업으로부터 상당 부분 수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외국에서 천재지변이 발생하거나 그 외국정부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수출규제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정상적인 공급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 ✔ 상품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상품 수거 또는 리콜 명령이 내려짐에 따라 신속하게 해당 상품을 시장에서 수거할 필요가 있는 경우
- ✔ 랜섬웨어, 디도스해킹 등 긴급 전산사고가 발생하여 회사의 영업비밀이나 다수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유출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고객들의 피해 확산 등 방지를 위해 긴급하게 계열회사인 시스템통합업체와 거래할 필요가 있는 경우
- ✔ 외부업체의 지급불능, 법정관리, 기업 워크아웃 신청 등으로 사업자를 긴급하게 변경할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 적합한 대체사업자가 없거나 대체사업자를 찾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거래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 ✔ 전산망이나 대규모 클라우드 서비스 시설에 화재 등 사고로 장애가 발생하여 이를 방지할 경우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나 기업의 사업 수행에 방해가 될 수 있어 신속한 대처가 필요한 경우

(4) 판단기준

- 원칙적으로 ① **시장조사 등을 통해 시장참여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② 주요 시장참여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는 등 거래조건을 비교**하여, ③ 합리적 사유에 따라 거래상대방을 선정하는 과정을 거친 경우에는 합리적 고려나 비교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 경쟁입찰을 거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합리적 고려·비교가 있는 것으로 본다.
-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사전에 시장참여자에 대한 조사를 거쳐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실질적인 내용이 담긴 제안서를 제출받고 그에 대한 검토보고서 등을 작성한 뒤 통상적인 결재절차를 거쳐서 합리적 사유에 따라 수의계약 당사자가 선정되었다는 점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합리적 고려·비교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대규모 거래임에도 타사로부터 견적을 받는 등 검토 절차 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비딩을 진행하였으나 보여주기식에 그치는 경우 등 통상적이고 적합한 거래상대방 선정과정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경우, 정상가격 거래도 위법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음에 유의한다.

(5) 업무상 유의사항

Do



- 계열회사 거래 시 동일인 측 직접 지배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 동일인 측 직접 지배 계열사와 거래 시 적용제외사유를 검토하여야 한다.
- 동일인 측 직접 지배 계열사와 거래 시 시장조사 등을 통해 시장참여자 및 정상가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주요 시장참여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는 등 거래조건을 비교하여야 한다(관련 검토자료를 작성·정리해두어야 한다).

Don't



- 동일인 측 직접 지배 계열사에게 수의계약 형태로 물량을 몰아주어서는 아니 된다.
- 형식적 비딩에 근거한 계약 체결을 해서는 아니 된다.

(6) 관련 사례

한진그룹의 총수일가 사익 편취 행위 제재

(기업집단 한진 소속 계열회사들의 부당지원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제공행위에 대한 건, 결정 제2017-002호)

[사실관계]

대한항공과 싸이버스카이 간 거래에서 대한항공은 자기가 노력하여 만들어낸 인터넷 광고 수익을 싸이버스카이가 전부 누리도록 하고, 계약상 지급받기로 한 통신 판매 수수료를 이유없이 면제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싸이버스카이와 그룹 총수 자녀들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였고, 대한항공과 유니컨버스 간 거래에서 대한항공은 유니컨버스에게 콜센터 운영 업무를 위탁한 후 시스템 장비에 대한 시설사용료와 유지보수비를 과다하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유니컨버스와 그룹 총수 자녀들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였다.

[공정위 판단]

대한항공이 계열회사인 (주)싸이버스카이 및 유니컨버스(주)와의 내부거래를 통해 총수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총 14억 3,000만 원)을 부과하고, 대한항공(법인)과 조원태를 검찰 고발한다.

합리적 고려·비교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킨 사례

(기업집단 미래에셋 소속 계열사들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대한 건, 의결 제2020-262호)

[사실관계]

미래에셋 11개 계열사들은 골프장과 호텔에 대한 객관적·합리적 고려·비교없이 그룹 차원에서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블루마운틴CC 및 포시즌스호텔과의 거래를 원칙으로 세우거나 사실상 강제했다. 그 결과 2015년부터 약 3년에 걸쳐 미래에셋 계열사들과 미래에셋컨설팅 간에 430억 원에 이르는 상당한 규모의 내부거래가 이루어졌고, 미래에셋컨설팅의 주주인 특수관계인들(박현주 48.63%, 배우자 및 자녀 34.81%, 기타 친족 8.43%)은 골프장 사업 안정화 및 호텔 사업 성장이라는 부당한 이익을 얻게 되었다.

[공정위 판단]

기업집단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합리적 고려·비교없이 미래에셋컨설팅과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킨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3억 9,100만원을 부과한다.

4. 체크리스트



항목	구분(법조항)	점검사항
자금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열 금융회사가 계열회사의 약정 연체이자율을 받지 않고 비계열사의 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 연체이자를 수령하였는가? - 출자행위성질을 갖는 신주인수행위를 통해 계열사에 대한 자금 지원이 이루어졌는가?
자산 및 상품 등의 지원	법 제45조 1항 9호 (부당지원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열사에 대하여 가지급금, 대여금 등 자금을 타 사업자와의 거래 조건과 비교하여 낮거나 높은 대가 또는 현저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였는가? - 지원객체에 대한 매출채권회수를 지연하거나 상각 하여 회수불가능 채권으로 처리하였는가? - 외상매출금, 용역대금을 약정기한 내에 회수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 회수하면서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받지 아니하였는가? - 지원객체가 생산·판매하는 상품을 구매하는 임직원에게 구매대금을 대여하거나 융자금을 알선해 주고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직원소속 계열회사의 자금으로 부담하였는가? - 지원객체가 운영하는 광고매체에 정상광고단가보다 높은 단가로 광고를 게재하는 방법으로 광고비를 과다 지급하였는가? - 주택관리업무를 지원객체에게 위탁하면서 해당 월의 위탁수수료 지급일보다 지원객체로부터 받는 해당 월의 임대료 등 정산금의 입금일을 유예해주는 방법으로 지원객체로 하여금 유예된 기간만큼 정산금 운용에 따른 이자 상당의 수익을 얻게 한 경우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상품·용역을 무상으로 또는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거나 지원객체로부터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제공받았는가?
인력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열사에 대하여 인력을 타 사업자와의 거래조건과 비교하여 낮거나 높은 대가 또는 현저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였는가? - 업무지원을 위해 인력을 제공한 후 인건비는 계열회사가 부담하였는가? - 인력파견계약을 체결하고 인력을 제공하면서 퇴직충담금 등 인건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회수 하였는가?

항목	구분(법조항)	점검사항
물량몰아주기	법 제45조 1항 9호 (부당지원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규모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가 계열회사 또는 비계열회사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계열회사를 지원할 목적으로 거래하였는가? - 부당하게 계열사 또는 자회사에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제공함으로써 계열회사 또는 자회사를 지원하였는가? -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였는가?
통행세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사업자와 직접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계열사 또는 다른 회사를 통해서 거래를 하고 있는가?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산 및 상품 등의 부당한 이익 지원	법 제47조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 등 자산 또는 상품·용역을 계열회사와 거래 시 비계열사의 금액 조건과 7%이상 차이 나는 경우가 있는가? - 상당히 유리한 조건(할값제공 또는 고가 매입)의 거래인가? -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였는가? - 합리적 고려 없이 상당한 규모의 물량을 제공하였는가? - 정상가격(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이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과의 차이가 100분의 7 미만이고 거래당사자 간 연간 총거래금액이 50억원(상품·용역의 경우에는 2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에 해당 하는가?(안전지대)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열사와 매출 거래 시 계열사가 거래상대방 선정 및 계약체결 과정에서 당사의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거래규모, 거래시기, 거래조건 등 해당 거래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조사하고, 이를 객관적·합리적으로 검토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비교·평가하였는지를 근거자료(품의서, 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하였는가?

내부거래 체크리스트



거래 개요

계약명		계약상대방	
계약기간		거래금액	

점검사항

다음 사항에 관하여 모두 “예”에 해당될 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컴플라이언스팀]에 제출해야 하고, 1개 이상의 항목에서 “아니오”에 해당될 시 [컴플라이언스팀]의 검토 없이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순	점검사항	예	아니오
1	거래상대방이 계열회사인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해당 계열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컴플라이언스팀] 담당자는 아래 항목 중 1개 이상의 항목에서 "아니오"로 답변이 기재된 경우, 계약체결을 승인할 수 없다. 다만, 공정성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이루어졌으며, 리스크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컴플라이언스팀] 담당자는 예외적으로 부서장의 승인을 얻어 계약 체결을 합의·승인할 수 있다.

순	점검사항	예	아니오
1	해당 계열회사가 거래상 실질적 역할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해당 계열회사와 수의계약으로 거래하여야 하는 특수한 이유나 근거가 있는가? (ex. 효율성, 보안성, 긴급성 등)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	해당 계열회사와 수의계약으로 거래하여야 하는 특수한 이유나 근거를 별도로 기록·보존하였는가? (ex. 효율성, 보안성, 긴급성 등)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	해당 계열회사와 계약/거래를 결정하기 전에 가격 등 거래조건이 정상가격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V. 기업결합 관련부서 : 사업팀, 전략기획팀

1. 기업결합 심사제도의 의의

- 기업결합이란 상호 독립적으로 운영되던 기업들이 자본적, 인적, 조직적인 결합을 통하여 공통의 지배력 하에 통합되는 것을 의미한다.
- 다른 회사와의 합병, 다른 회사 주식의 취득, 영업의 양수 등을 통하여 소수의 기업에게 경제력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업결합 심사제도가 도입되었다.

2. 기업결합규제 제도의 내용

2.1.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의 금지

- 공정거래법 제9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시행령 제14조)을 통하여 기업결합으로서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다만,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이라고 하더라도 기업결합으로 발생하는 효율성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에 따른 피해보다 크거나 회생이 불가한 회사와의 기업결합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기업결합 심사제도와 신고제도

-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에 관한 원칙 규정은 제9조이다. 동조에서는 누구든지 기업결합의 방법을 통하여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공정위는 사업자가 그 규모를 불문하고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언제든지 이를 인지하여 금지할 수 있다. 그런데 시중에서 일어나는 기업결합을 빠짐없이 감시하고 심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정한 규모 이상의 회사가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신고를 하게 하여 공정위가 효율적인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이것이 신고제도의 의의이다.

2.2. 기업결합 신고제도

2.2.1. 신고대상 기업결합 유형

(1) 주식취득(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9조 제1항 제1호)

- 다른 회사 발행주식총수 20%(상장법인은 15%)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을 이미 20%(상장법인은 15%) 이상 소유한 자가 당해 회사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 회사의 발행주식에는 주식회사의 주식 또는 합병, 합자, 유한회사의 지분을 포함한다.
- 상법 제344조의3 제1항 및 제369조 제2항, 제3항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은 발행주식 총수에서 제외하며 따라서 이를 취득하는 경우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없다.
 - 다만, 의결권 없는 주식이 이후 총회 의결 등으로 의결권이 회복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발행하며 사후신고 대상에 해당
- 주식의 소유 또는 인수 비율 산정이나 최다출자자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회사의 특수관계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모두 합산한다(법 제11조 제5항).
 - 예: 상장회사인 甲사의 주식을 A사 5%, B사 10%, C사 7%, D사 16%를 각각 취득한 경우 A, B, C가 계열회사라면 총 22%로 A, B, C가 최다출자자가 되고, 기업결합 신고의무는 A, B, C, D사 모두에게 발생
-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란 최다출자자가 아닌 상태에서 주식 추가취득으로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시행령 제18조 제5항).
- 따라서 최초 20% 주식 취득으로 이미 최다출자자가 된 경우 그 이후 주식을 추가 취득하더라도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 다음과 같이 연속적으로 진행되는 기업결합의 경우에는 최종취득자가 전체 기업결합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신고시 중간취득자는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 주식의 취득과 동시에 재매각하거나 기업결합 신고기간 중 재매각하는 경우
 -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 주식의 공모를 대행한 결과 발생한 실권주를 인수하는 경우(다만 이 경우 6개월 내에 재매각되는 경우에 한하여 신고의무가 면제되며, 6개월 내에 재매각하지 못하는 경우 신고의무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됨에 유의)

(2) 임원겸임(법 제11조 제1항 3호, 제9조 제1항 제2호)

대규모회사(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합계가 2조원 이상인 회사)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다른 회사의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

- 자신의 임원 또는 종업원을 다른 회사의 임원으로 겸임하게 하는 회사에게 신고의무 발생
- 계열회사 간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 겸임하는 임원 수가 임원이 겸임되는 회사 임원 총수의 3분의 1 미만인면서 대표이사가 아닌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 대규모회사가 아닌 회사의 임직원이 대규모회사의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 사외이사가 다른 회사의 사외이사를 겸임하는 경우, 임원겸임 후 임원겸임의 신고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임원겸임이 해소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

- 임원겸임은 일방 당사자가 대규모회사임에도 사후신고 대상에 해당(임원이 겸임되는 회사의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에서 임원의 선임이 의결된 날로부터 신고의무 발생)
- 임원의 수, 직위의 변동 없이 자연인만 변경되거나 직위의 변동 없이 겸임하는 임원의 수가 감소하는 경우 신고 불요

(3) 합병(법 제11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1항 제3호)

다른 회사와 신설, 흡수, 분할합병을 하는 경우

- 흡수합병의 경우에는 존속회사가, 신설합병의 경우에는 신설회사가 신고회사로서 신고의무를 가진다.
 -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모자회사 간 합병의 경우 신고 불요
- 합병 이전에 신고하는 경우 존속예정인 회사가 단독으로 신고하거나(흡수합병의 경우) 결합 당사회사가 연명으로 신고(신설합병의 경우)

(4) 영업양수(법 제11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1항 제4호)

- 다른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 양수
- 다른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 임차
- 경영의 수임
- 다른 회사의 영업용 고정자산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양수

- 영업이라 함은 회사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조직화되고 유기적 일체로서 기능하는 재산권의 집합(조직, 인력, 계약관계 등 포함)을 의미
 - * 판매권, 특허권 등 무체재산권, 기타 인허가와 관련되어 재산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며, 당해 영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설비는 해당하지 않음
- “주요부분”이란 ①양수 또는 임차부분이 독립된 사업단위로 영위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거나, 양수 또는 임차됨으로써 양도회사의 매출의 상당한 감소를 초래하는 경우로서, ②영업양수금액이 양도회사의 직전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의 10%이상이거나 100억원이상인 경우(두가지 요건을 동시 충족해야함)
-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모자회사 간 영업양수의 경우 신고 불요

(5) 새로운 회사설립 참여(법 제11조 제1항 제5호, 제9조 제1항 제5호)

새로운 회사설립에 참여하여 그 회사의 최대출자자가 되는 경우

- 새로운 회사설립에 참여하여 최대출자자가 되는 경우에는 인수 비율을 불문하고 신고해야 한다. 최대출자자인 신고회사, 회사설립에 참여한 특정 상대회사가 당사회사 규모 요건(3000억원, 300억원) 충족시 나머지 회사의 동요건 충족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참여회사를 상대회사로 하여 신고
- 최대출자자인 신고회사 자체가 신고요건인 당사회사 규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 없음
- 최대출자자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특수관계인 간 출자하는 주식을 모두 합산(법 제11조 제5항)
- 예: 甲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A사가 15%, B사가 25%, C사가 15%, D사가 45%를 각각 취득한 경우 A, B, C가 계열회사라면 총 55%로 최대출자자이고, 기업결합 신고의무는 A, B, C사에게 동시에 발생
- 특수관계인만 회사설립에 참여하는 경우는 기업결합이라고 보지 않으므로 신고의무 없다.
 - 예: 甲사가 100% 출자하여 乙사 설립하거나, 계열회사 관계인 A, B, C사가 각각 30%, 40%, 30% 출자하여 X사 설립한 경우는 기업결합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따라 '경영을 지배하려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당해 기업결합에 참여하는 자'가 포함된 특수관계인 간 기업결합은 여전히 신고대상에 해당

2.2.2. 신고대상 회사 규모

-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기업결합에 참여하는 당사회사의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일방은 3,000억원, 타방은 300억원을 넘는 경우 기업결합 신고대상에 해당한다.
- 이 경우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규모는 기업결합일 전부터 기업결합일 후까지 계속하여 계열회사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 반면, 법 제9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영업양수의 경우에는 영업을 양도하는 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규모를 산정할 때 계열회사의 자산 총액 또는 매출액을 합산하지 않는다.

2.2.3. 기업결합 신고시기 및 방법

- 기업결합 신고는 기업결합을 완료한 후 신고하는 사후신고가 원칙이나(원칙적으로 당해 기업결합일부터 30일 내 신고), 결합 당사회사 중 일방 이상이 대규모회사(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2조원이상인 회사)인 경우는 당해 결합등이 기업 및 경제에 미칠 영향등을 고려하여 의무적으로 사전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기업결합 신고시기

구분	원칙: 사후신고	예외: 사전신고(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2조원 이상 대규모회사)
주식취득	주권교부일 등으로부터 30일	계약체결일 후 ~ 기업결합일 전
합병	합병등기일로부터 30일	
영업양수	대금지불 완료일로부터 30일	주주총회(이사회) 의결일 이후 기업결합일 전
회사설립 참여	주금납입일 다음날부터 30일	
임원 겸임	겸임 회사의 주주총회/사원총회에서 선임이 의결된 날로부터 30일	(없음)

- 또한 사전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기업결합의 경우 신고 후 공정위의 심사결과를 통지받기 전까지는 기업결합 완료행위(주식소유, 합병등기, 영업양수계약의 이행행위, 주식인수행위)가 금지되며 이러한 이행행위금지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 대규모회사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사전신고 대상이나, 시행령 제20조 제2항 개정을 통해 2012년 1월 1일부터 대규모회사의 주식취득과 관련하여 사전신고 대상 범위를 확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신주취득 등이 사후신고로 분류되었으나, 현재는 거래시기 및 금액 등을 사전에 특정하기 어려운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사전신고 대상으로 전환되었다.
- 신고기간 이전이라도 공정위에 임의적 사전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후 간이신고제도를 통해 정식 신고할 수 있다.
- 기업결합 신고는 기업결합 인터넷신고 시스템을 이용한 온라인 신고가 원칙이며, 불가능할 경우 공정위 등기우편 송부 및 방문접수도 가능하다.

3. 업무상 유의사항

- 새로운 회사 설립에 참여하면서 그 회사의 최대출자자가 될 경우 기업결합을 신고하여야 한다.
- 다른 회사의 주식의 20%를 취득하게 될 경우(무의결권 주식 제외) 기업결합을 신고하여야 한다.
- 대규모회사가 합병을 이행할 경우 기업결합을 신고하여야 한다.
- 대규모회사의 종업원이 다른 회사의 임원을 겸임하게 될 경우 기업결합을 신고하여야 한다.

V. 소비자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관련부서 : 사업팀, 영업팀, 마케팅, 홍보팀

1. 표시광고법의 적용대상 및 위반시 제재

1.1 표시광고법의 개요

1.1.1 입법 목적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표시광고법)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광고를 할 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1.2 관련 용어

- 표시
 -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등”)가 상품/용역(이하 “상품등”)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상품의 용기·포장(첨부물 및 내용물 포함), 사업장 등의 게시물 또는 상품권·회원권·분양권 등 상품등에 관한 권리를 나타내는 증서에 쓰거나 붙인 문자·도형 및 상품의 특성을 나타내는 용기·포장을 말한다. 말한다.
- 광고
 - 상품등에 관한 사항을 신문·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방송, 전기통신, 전단·팜플렛·견본·입장권, 인터넷·PC통신, 포스터·간판·네온사인·에드벌론·전광판, 비디오물·음반·서적·간행물·영화·연극, 자기의 상품 외의 다른 상품, 기타 이와 유사한 매체 또는 수단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으로, 사보, 홍보만화, 고객 안내문 등 대고객 홍보용 자료도 광고에 해당한다.
-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자, 제2조 제2호에 따른 사업자단체를 말한다.
- 소비자
 - 사업자등이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상품등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 소비자 오인성(誤認性)
 -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음을 의미하며,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판례: 대법원 2003.6.27 선고 2002두6965판결].
- 공정거래저해성
 - 부당한 표시·광고에 의해 소비자가 오인으로 잘못된 선택권을 행사하고, 이로 인해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빼앗는 등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를 의미한다.

1.1.3 위법성 판단기준

- 다음 세 가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한다.

① 반진실성

-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의 4가지 유형에 해당할 것
- 거짓 내지 허위는 그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으면서 소비자의 구매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이르는 상태를 의미(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두4187 판결) 연구 조사자료 등 실증자료, 통계자료 등 객관적 자료 등 기초로 판단
- 광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무과실 책임, 사업자 입증 책임)

② 소비자 오인성

- 전문가가 아닌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 기준
- 오인유발의 주관적 기준, 즉 표시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
- 소비자를 오인시킬 경향과 가능성만 있으면 충족되고, 실제로 소비자가 기만당했음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③ 공정거래저해성

- 경쟁자를 방해하거나 배제할 우려가 있는 등 시장의 경쟁질서를 왜곡
-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여 상품선택을 왜곡시킴으로써 자기와 거래하도록 만드는 행위

1.1.4 다른 법률과 관계

- 공정거래법

- 공정거래법(불공정거래행위 중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등)과 표시광고법은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이다. 따라서 표시광고법이 우선 적용되는 범위 내에서 공정거래법은 그 적용이 배제된다.

- 부정경쟁방지법

- 부정경쟁방지법(광고에 의하여 원산지나 상품의 품질·내용·제조방법·용도 또는 수량의 오인을 일으키게 하는 부정경쟁행위)과 표시광고법은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이다.

- 소비자보호법

- 소비자보호법(제10조, 제11조의 표시, 광고의 기준)과 표시광고법은 각각 각 입법 목적을 달리 하므로 경합하여 적용된다(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 아님).

1.2 위반시 제재

1.2.1 행정적 제재

- 시정조치(제7조)

-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한 사업자등에게 ①당해 위반행위의 중지, ②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③정정광고, ④기타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과징금(제9조)

- 부당한 표시·광고를 한 사업자는 법 위반 관련매출액의 2%를 곱한 범위 안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①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영업 중단 등으로 인하여 영업 실적이 없는 경우, ② 재해 등으로 매출액 산정자료가 소멸되거나 훼손되는 등의 사유로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③ 위반기간 또는 관련 상품등의 범위를 확정할 수 없어 관련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5억 이하의 정액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임시중지명령(제8조)

- 의의: 소비자 또는 경쟁사업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하여 정식절차에 의한 시정조치를 하기 전까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일시 중지토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 적용 대상: ① 표시·광고행위가 제3조제1항(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한다고 명백하게 의심되는 경우, ② 당해 표시·광고행위로 인하여 소비자 또는 경쟁사업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불복 절차: 임시중지명령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1.2.2 행정질서벌

- 다음 행위자에게 1억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제20조 제2항).

- 중요사항으로 고시된 표시·광고사항을 표시·광고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자
- 요청받은 실증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
- 임시중지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의견청취 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

-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을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사업자등에게는 2억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제20조 제1항).
- 상기와 관련한 법인 또는 임직원 기타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1천만 원 이하 (조사방해의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1.2.3 사법적 제재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제17조)
 -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한 자
 -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하게 한 자
 -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
- 양벌규정(제19조)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상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 대하여도 1억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다.

2. 부당한 표시·광고의 유형

2.1 표시광고의 기본원칙

- 소비자는 자기가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 또는 용역(이하 "상품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알 권리가 있고, 공급자는 자기가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등에 관하여 소비자에게 알릴 권리가 있는 동시에 또한 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2.2 유형

- ①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② 기만적인 표시·광고
 -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광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③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 비교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상품등을 다른 사업자등이나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과 비교하여 우량 또는 유리한 것으로 표시·광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④ 비방적인 표시·광고

- 다른 사업자등 또는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표시·광고하여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광고하여 비방하는 행위를 말한다.

2.3 표시·광고시 유의사항

2.3.1 사업자 자신에 관한 표시·광고

(1) 판단기준

- 사업자가 자신이나 구성사업자의 규모, 연혁, 생산시설, 수상경력, 사업계획, 사업실적, 기술제휴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표시·광고할 경우 사실과 다르게 또는 사실을 과장하거나 모호하게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된다.

(2) 범위반 유형

- 자기의 생산규모가 국내에서만 가장 큰 규모인데도 “세계(아시아)최대의 규모”라고 표시·광고하는 경우
- 자기의 생산규모가 국내에서만 가장 큰 규모인데도 “세계최대의 규모”라고 표시·광고하는 경우
- A사가 자사의 주주회원을 모집하면서 향후 자사주식의 공개상장여부는 미래의 불확실한 사실(영업실적등 공개상장여건 충족여부등에 따라 결정)인데도 불구하고, “○○년에는 틀림없이 공개상장되어 5,000원권 주식이 6만원선에 매각가능”이라고 마치 확실한 사실인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 특정사업과 관련된 부지구입, 사업승인, 건축허가등 구체적인 사업 진척사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조감도와 함께 “착공기일: ○○년 ○월, 준공기간: xx년 xx월” 등이라고 확정된 사실인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 “○○○출판사 중앙고시연수원”이라는 상호의 사업자가 정부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중앙고시연수원”이라고 표시·광고함으로써 마치 자기가 국가에서 인정한 교육기관이거나 국가 또는 공공기관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경우
- 단순히 수험교재 판매사업자로서 학원업을 운영하지 않음에도 마치 학원인 것처럼 “학원개강” 등으로 표시·광고하는 경우
- “한남”이라는 상호의 사업자가 국내유명 재벌그룹인 “제일”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대리점을 모집하면서 자신을 “한남제일” 또는 “제일한남”이라고 표시·광고하여 마치 제일그룹의 계열회사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2.3.2 가격에 관한 표시·광고

(1) 판단기준

-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의 가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된다.
 -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을 할인 또는 가격인하 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 허위의 종전거래가격을 자기의 판매가격과 비교하여 표시·광고하는 행위
 - 타사가격과의 비교시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등의 실제판매하는 가격을 현저히 낮게 보이기 위하여 허위의 경쟁사업자가격을 자기의 판매가격과 비교하여 표시·광고하는 행위
- 이 경우 타사의 명칭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어느 회사를 지칭하는지 명백한 경우에는 해당이 된다.

(2) 범위반 유형

- 자기가 판매하고 있는 A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대하여 타사업자가 실제판매하는 가격 1,000원, A상품과 유사한 규격의 상품에 대하여 타사업자가 실제판매하는 가격 1,200원, 자기가 판매하고자 하는 A상품의 가격이 900원일 때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자기의 판매가격을 표시·광고하는 경우
“타사가격 1,200원 → 당사가격 900원”

참고

(종전거래가격) 당해 사업자가 당해 상품과 동일한 상품을 최근 상당기간(과거 20일 정도)동안 판매하고 있던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기간동안 당해 상품에 붙인 가격, 단, 위 기간 중 당해 상품의 실거래가격이 변동한 경우에는 변동된 가격 중 최저가격을 종전거래가격으로 봄

-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등에 대하여 할인 또는 가격인하 판매시 당해 할인율이나 가격인하율을 산출하는 근거로서 동일조건인 상품이 아니거나 또는 허위의 종전거래가격을 비교기준가격으로 하여 자기의 할인율이나 가격인하율을 산출하여 표시·광고하는 행위
- 할인특매기간이 종료한 후에도 현수막 등 표시·광고물을 제거하지 아니하고 이를 부착시켜 둠으로써 소비자로서 하여금 할인특매를 계속하고 있는 것처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
- 가격인하판매를 실시하면서 비교가격의 기준과 인하시점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행위
- 실제거래가격에는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특정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
- 실제와는 달리 한정된 기간이나 한정된 수량만을 판매하는 것으로 표시·광고하는 행위

2.3.3 원재료, 성분에 관한 표시·광고

(1) 판단기준

-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에 사용된 원재료나 성분에 관하여 표시·광고할 경우 아래와 같이 사실과 다르게 또는 과장하여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된다.

(2) 범위반 유형

- 실제 사용되지 않는 원자재나 성분이 포함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 실제 사용된 양보다 많이 포함된 것처럼 과장하여 표시·광고하는 행위

2.3.4 품질, 성능, 효능 등에 관한 표시·광고

(1) 판단기준

-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의 품질, 성능, 효능 등에 관하여 표시·광고할 경우 아래와 같이 사실과 다르게 또는 과장하여 표시·광고하거나 모호하게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된다.

(2) 범위반 유형

- 품질 또는 성능이 일정한 수준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당해 수준에 해당한다고 하거나 당해 수준에 해당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2.3.5 보증에 관한 표시·광고

(1) 판단기준

-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등에 관하여 보증·사후관리(A/S)에 관하여 표시·광고하고자 할 경우 그 내용, 범위, 방법, 기간, 장소, 책임자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된다.

(2) 범위반 유형

- 보증의 내용, 기간 등에 관하여 표시·광고함이 없이 막연히 “100% 품질보증” 또는 “무조건 보증”이라고만 표기함으로써 사실과 다르게 완벽하게 보증이 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2.3.6 추천, 권장 등에 관한 표시·광고

(1) 판단기준

-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등에 대한 추천, 권장 등의 사실을 표시·광고할 경우 아래와 같이 사실과 다르게 또는 과장하거나 모호하게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된다.

(2) 범위반 유형

- 전문가, 연구기관, 유명단체에 의한 추천, 권장, 수상 등의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 사실이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 당해 상품 등을 실제로 구입·사용해 본 사실이 없는 소비자의 추천을 표시·광고하는 행위
- 당해 상품에 관하여 실제로 시험, 조사, 검사를 한 사실이 없는 당해 부문 전문가의 추천을 표시·광고하는 행위
- ○○신문사가 매년 실시하는 ○○인기상품 선정 행사에서 대상이 아닌 10대 부문 히트상품으로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으로 선정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 단지 1년 중 하반기 히트상품으로 선정된 사실을 당해 년도 전체의 히트상품인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 특허를 출원한 사실만을 가지고 '특허 획득'이라고 표시·광고하는 경우

2.3.7 경쟁사업자 및 경쟁관계 상품에 관한 비교표시·광고

(1) 판단기준

- 허위의 표시·광고
 - 경쟁사업자의 규모, 연혁 등 경쟁사업자 자신에 관한 사항이나 경쟁사업자가 공급하는 상품의 가격, 품질 등 거래내용 또는 거래조건 등(이하 "경쟁사업자의 것"이라 한다)에 관하여 표시·광고함에 있어서는 사실대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경쟁사업자의 것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된다.
-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의 표시·광고
 - 자기 자신이나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이하 "자기의 것"이라 한다)이 경쟁사업자의 것보다 현저히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나타내기 위하여 "최대", "최고", "최초", "제일", "유일" 등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의 용어를 사용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된다.
 - 다만 사업자가 명백히 입증하거나 또는 객관성이 있는 자료에 의해 절대적 표현이 사실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경쟁사업자 또는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할 수 있다.

(2) 범위반 유형

- "최초"를 입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표시·광고하는 경우
- 국내 최초로 제공되는 ○○제품
- 경쟁사업자의 것과 비교 표시·광고
 - 자기의 것과 경쟁사업자의 것을 비교하여 표시·광고함에 있어서는 사실대로 적정하게 하여야 한다.

- 따라서 경쟁사업자의 것에 관하여 허위의 내용을 인용하여 비교표시·광고하거나 또는 사실과 같다고 하더라도 동일 조건하에서 비교하지 않고 자기에게 유리한 부분만을 발췌하여 비교표시·광고하거나 사업자 또는 상품 등의 일부에 대하여 비교하면서 마치 전체에 대한 비교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된다.

2.3.8 중상·비방하는 표시·광고

(1) 판단기준

- 경쟁사업자의 것에 관하여 중상·비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이 현저히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소비자를 오인시키기 위하여 경쟁사업자의 것에 관하여 객관적 근거없는 허위의 내용으로 중상·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표기하여 비방하는 표시·광고 행위를 말한다.
- 이 경우 “회사” 등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아니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어느 사업자를 지칭하는지 명백한 경우에는 해당이 된다.

(2) 범위반 유형

- 경쟁사의 제품과 자사의 제품이 품질상 우열을 가리기 어려움에도 “아직도 ○○사 제품을 사용하십니까?” 광고하는 경우

2.3.9 누락, 은폐 등에 의한 기만적인 표시·광고

(1) 판단기준

- 사업자 자신이나 사업자가 공급하는 상품에 대하여 표시·광고함에 있어서는 소비자가 제품을 선택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표기하여야 하며 제품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나 내용을 누락하거나 은폐하여서는 아니된다.

(2) 범위반 유형

- 경쟁사는 100% 좌석을 확보해 주는 반면 자사는 그렇지 못한 경우 자사의 통근용 정기항공편 이용의 장점을 광고하면서 그러한 사실을 밝히지 않음으로써 자사도 100% 좌석확보가 되는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 유행상품을 모아 한 셋트로 팔면서 상품구성에 있어서 구식모델을 일부 섞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밝히지 아니하고 표시·광고하는 경우

2.3.10 기타 거래내용 및 거래조건에 관한 표시·광고

(1) 판단기준

- 사업자가 경품류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표시·광고함에 있어서는 사실대로 명확하게 표시·광고하여야 함. 따라서 제공되는 경품류 내용, 제공 기간 등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또는 모호하게 표시·광고하여 일반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된다.

(2) 범위반 유형

- “선착순 100명에 한함” 또는 “○월 ○일부터 ×월 ×일까지” 등 경품제공수량 또는 기간에 관한 구체적 제한내용을 명시하지 아니한 채 특정상품을 경품류로 제공한다고 표시·광고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신청자에 대해 정당한 이유없이 경품류 제공을 거절하는 경우
- 유명회사 제품이 아닌 소형의 TV와 세탁기를 경품으로 지급함에도 경품제공사실을 표시·광고함에 있어 “경품: TV, 세탁기” 등으로만 모호하게 표기하여 마치 유명회사의 중형이상의 제품을 제공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 단지 왕복 항공편만 제공되고 숙박이나 식사는 제공되지 않음에도 경품제공사실을 표시·광고함에 있어 “동남아여행” 또는 “유럽여행”이라고만 모호하게 표시·광고함으로써 마치 숙박도 제공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3. 업무상 유의사항

Do



- 담당자는 표시·광고의 정확한 이해를 하여야 한다.
- 개별사업단위에서 임의 제작하는 유인물은 반드시 공정거래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 부당한 광고행위의 책임주체는 직접 부당광고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에 행하게 한 자이므로 영업사원, 대리점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객관적인 사실이나 자료에 근거한 비교광고는 허용되므로 필요 시 동종의 상품에 대해 비교광고를 하되, 부분적인 우수성을 전체의 우수성으로 표현하는 행위 등은 지양하여야 한다.
- 사보, 홍보만화, 고객 안내문 등 대 고객 홍보용 자료도 광고에 해당하므로 각별히 주의하여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표현을 수정하여야 한다.

- 인터넷, 사외유통망, 구내방송 등 사원끼리 유통되는 정보교환 등도 경우에 따라서는 법에 저촉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한다.
- 사소한 민원이라도 규제기관에 제소될 수 있으므로 민원에 대한 초기대응에 유의하여야 한다.
- 홍보물이나 광고물 작성시 문안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입각한 것인지, 평균 이하의 지적 수준을 지닌 소비자의 입장에서 오인할 우려가 없는지 생각하여야 한다.
- 광고적으로 기발한 표현이라도 경쟁사를 비방한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는 지양하여야 한다.
- 표시나 표현을 확정하기 전에 항상 전문가가 아닌 평범한 소비자의 입장이 되어 오인성이 있는지 여부를 체크하여야 한다.
- 부당 표시·광고사건은 우리 주위에서 항상 제기될 수 있으며, 사소한 부주의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한다.
- 사업장 등의 게시물 및 간판도 표시에 해당함을 숙지하여야 한다(상품 사용설명서, 사업장 간판).
- 대규모 광고메일발송도 광고에 해당되며, 표시·광고의 방식(수단)은 중요하지 않고, PC출력자료도 다른 소비자에게 전파가능성이 있으면 광고에 해당한다.
- 표시·광고내용이 사실에 부합(진실성)하여야 하며, 소비자오인성이 없어야 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어야 한다.
- 비교 표시·광고는 그 비교대상 및 비교기준이 명확하여야 하며 비교내용 및 비교방법이 적정하여야 한다.
- 비교 표시·광고는 법령에 의한 시험·조사기관이나 사업자와 독립적으로 경영되는 시험·조사기관에서 학술적 또는 산업계 등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방법 등 객관적이고 타당한 방법으로 실시한 시험·조사 결과에 의하여 실증된 사실에 근거하여야 한다.
- 비교대상과 관련하여 동일 시장에서 주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의 상품으로서 자기의 상품과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상품을 자기의 상품과 비교하여야 한다.
- 비교기준과 관련하여 가격, 성능, 품질, 판매량, 서비스 내용 등의 비교기준이 자기의 상품과 다른 사업자의 상품간에 동일하며, 비교기준이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Don't



- 비교 표시·광고는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특성을 비교하여야 하며 객관적으로 측정이 불가능한 주관적 판단, 경험, 체험, 평가 등을 근거로 다른 사업자 또는 다른 사업자의 상품과 비교하는 표시·광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 비교사항의 내용상 차이가 객관적으로 의미가 없거나 아주 근소하여 성능이나 품질 등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데도 불구하고 그 차이가 성능이나 품질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상품을 실제 이상으로 열등한 것처럼 표시·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 비교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상품·용역을 다른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사업자등")나 다른 사업자의 상품 등과 비교하여 우량 또는 유리하고 표시·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 동일 시장에서 자기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다른 사업자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인지도, 시장점유율 등이 미미한 사업자의 상품과 비교하는 등 소비자의 선택에 있어서 정보로서 가치가 없는 사업자의 상품과 비교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다른 사업자등 또는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 등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표시·광고하여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광고하여 비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부동산의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4.1. 심사지침의 목적

- 이 심사지침은 표시광고법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의 내용)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표시·광고를 심사함에 있어서 부동산과 관련된 표시·광고에 관한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4.2. 심사지침의 적용범위

- 이 심사지침은 사업자(사업자단체 포함)가 주택, 토지, 상가, 사무실, 오피스텔, 콘도미니엄 등 부동산의 분양(임대 포함)과 관련된 표시·광고에 대하여 적용한다.

4.3. 용어의 정의

- “주택”
 -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 “토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호의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제4호의 토지분할(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5호 가목의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말한다.
- “상가 등”
 - 「건축법」 제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5 별표 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및 업무시설 등과 「주택법」 제2조 제14호에 의한 복리시설 등을 말한다.
- “시행자”
 - 주택, 토지 또는 상가 등의 소유권을 갖게 되는 사업주체를 말한다.
- “시공자”
 - 자신이 직접 상가 등을 건축·시공하는 시행자, 또는 시행자와 당해 상가 등의 건설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축·시공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 “분양자”
 - 주택, 토지 또는 상가 등을 매수 또는 임차하고자 하는 자(이하 “피분양자”라 한다)와 체결하는 계약(이하 “분양계약”이라 한다)의 일방 당사자인 시행자 또는 분양대행자(분양계약의 전부나 일부, 또는 피분양자 모집업무를 대행하기로 분양자와 약정한 자) 등의 자를 말한다.

4.4. 일반원칙

- 부동산의 분양과 관련된 표시·광고의 부당성(소비자의 오인성)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문구의 명료성, 글자 및 도안의 상대적인 위치와 크기 또는 색상, 표시·광고 내용과 표현이 사실에 근거하는지 여부와 명시적·묵시적으로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부당한 표시·광고유형은 주택, 토지 또는 상가 등의 분양 표시·광고에 있어서 발생하기 쉬운 유형을 예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않았다고 하여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또한 특정 행위가 이 심사지침에서 제시된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에 해당되더라도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없거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

4.5. 세부심사지침

4.5.1. 상가 등의 명칭

- 분양표시·광고에 나타나는 상가 등의 명칭은 유통산업발전법 등 관련법규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관련법규에 의하여 개설허가를 받은 시장 등의 명칭 외에 다른 명칭을 사용하여 표시·광고하는 경우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한다. 개설허가를 받기 전 또는 개설허가를 받지 않고 분양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허가신청에 사용했거나 사용할 예정인 명칭 또는 분양 후 실제로 사용할 명칭을 사용하고 '가칭' 또는 '미확정' 등의 문구를 명기해야 한다.

예 시

- 일반상가를 분양하면서 ○○백화점, ○○쇼핑, 대형마트 등의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다만, 안경백화점, 가구백화점 등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백화점 등이 아님을 일반 소비자들이 쉽게 알 수 있는 경우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되지 않음)
- 분양형 호텔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특급 등의 등급이 부여될 수 없음에도 마치 특급호텔인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표현하는 경우

4.5.2. 시행자, 시공자, 분양자

- 분양자가 누구인지를 명시하지 아니하여 마치 시행자, 시공자 등 다른 자가 분양자인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 시공자의 상호나 상징마크 등을 상가 등의 명칭에 포함하여 마치 시공자가 주택이나 상가 등의 분양 또는 운영 등에 관여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였으나, 실제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 1) 시공자가 주택이나 상가 등 건축물의 건축·시공 외에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경우
 - 2) 분양자가 시공자와 분양 표시·광고에 시공자의 상호 등을 사용하기로 계약한 사실이 없는 경우
- 분양 표시·광고에 분양자보다 시공자의 명칭을 크기, 색상 등의 면에서 현저히 눈에 더 잘 띄게 표기함으로써 사실과 달리 시공자가 주택이나 상가 등의 분양 또는 운영 등에 관여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예 시

- 분양 표시·광고에 분양자의 명칭은 표기하지 않고, ①시행자나 시공자만을 표기하거나, ②분양자가 속한 계열그룹만 표기하거나, ③분양자나 분양대행자, 또는 모델하우스의 전화번호만 표기하는 경우
- 원래 분양자인 A사로부터 상가를 매수한 실제 분양자가 마치 원래 분양자가 분양하는 것처럼 “A상가” 등으로 표시·광고하는 경우
- A건설회사(주)는 상가건물의 시공만 맡고 운영은 B회사가 하는 경우인데도, 상가명칭을 A소핑, A종합상가라고 하거나 또는 명칭에 A회사의 로고를 넣어 분양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 시공자인 C건설회사와 상가명칭에 상호와 상징마크를 사용하기로 계약하고 C건설회사의 상호와 상징마크가 포함된 상가명으로 표시·광고하였으나, 시장개설허가 또는 사업자등록에서는 C건설회사의 상호가 없는 다른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
- 시공자인 OO건설이 상가의 품질이나 영업전망 등에 관하여 추천 또는 권장한 사실이 없는데도 OO건설에서 자신있게 권장하는 상가라고 표시·광고하는 경우

4.5.3. 분양업종, 분양방법, 분양현황, 공사현황 등

- 상가 등을 분양 광고하면서 특정 업종에 대해서만 입점을 허용할 것으로 표시·광고한 뒤, 실제로는 이와 다르게 분양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 피분양자의 자격 또는 수, 피분양자를 결정하는 방법 등에 대하여 실제보다 유리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 분양 표시·광고시 점포의 분양 현황에 대한 표현이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특히 사실과 달리 은행, 극장, 볼링장 등의 체육시설 등, 상가 등에 고객을 유인하는 효과가 큰 대중이용시설의 입점이 확정된 것처럼 표시·광고할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 건물의 공사진행상황이나 입점예정일을 사실과 다르게 표현하여 실제보다 유리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 “지정업종은 분양실적 등의 이유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등의 단서없이 불링장, 실내수영장, 극장 등을 지정업종으로 표시·광고하고 사후에 다른 업종으로 분양하여 입점시킨 경우
- 사실과 다르게 “특정지역(경기도) 거주자에게는 우선권을 부여합니다”라고 표현하는 경우
- 단순히 “선착순 분양”이라고 표시·광고하고 실제로는 일부 또는 모든 점포를 입찰 등 선착순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분양하는 경우(이 경우 선착순으로 분양하는 점포수를 명시하면 부당한 표시·광고가 되지 않음)
- 실제 분양실적이 저조한데도 “95% 분양완료!” “빨리 신청해야 가능합니다” 등으로 표시·광고하는 경우
- 사실과 다르게 “○차분 ○개 점포 100% 분양”, “평균 경쟁률 15 : 1”, “최고경쟁률 18 : 1”, “전국 지하상가 최고의 경쟁률” 등으로 표현하는 경우
- 은행지점의 입점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은행지점 입점확정” 등으로 표현하는 경우

4.5.4. 상권, 입지조건, 생활여건, 접근성

- 주택, 토지 또는 상가 등의 주소나 위치를 정확하게 표시하지 않아 실제 입지보다 우량 또는 유리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 상권에 관해 객관적·구체적 근거없이 최상급 또는 확정적 표현을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제보다 우량 또는 유리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 주택의 소재지에 대하여 기준지점이나 교통수단을 명시하지 않고 표시·광고함으로써 실제보다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는 것으로 표시·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 교통수단에 의한 소요시간을 「통상시간대」의 정상속도가 아닌 「새벽」이나 「한밤중」의 속도 등을 기준으로 하여 표시·광고함으로써 주택소재지가 실제보다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는 것으로 표시·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 현재 이용할 수 없는 교통수단이나 도로에 대하여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함으로써 교통여건이 실제보다 유리한 것으로 표시·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 주택소재지 여건에 대하여 계획단계의 비전이나 막연한 추측상의 내용을 확정된 사실처럼 표시·광고함으로써 실제보다 유리한 것으로 표시·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 공익시설이나 편의시설 등이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가까이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함으로써 생활여건이 실제보다 유리한 것으로 표시·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 현재 이용할 수 없는 학교, 공원, 백화점, 수영장 등 공익시설이나 편의시설 등에 대하여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함으로써 생활여건이 실제보다 유리한 것으로 표시·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예 시

- 토지를 분할하여 판매하면서 실제 공급할 토지의 일부가 도로에 인접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도로에 인접한 토지의 지번만을 표기하는 경우
 - 실제 상가가 교차로와 접하는 곳에 위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가 분양광고상에는 교차로에 접하여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경우
- 객관적·구체적 근거없이 “어떤 업종이라도 확실한 성공이 보장되는 천연상권”, “주변점포 전세금이 분양가격을 상회하는 상권” 등으로 표현하는 경우
- 토지개발공사의 사업결정이나 장기계획 확정 등의 근거 없이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단지 개발예정!”이라고 표현하는 경우
- “대규모 아파트단지 및 주택밀집지역 유일한 상가”라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인근에 연금매장 등 실질적인 상가가 있는 경우
- 새벽에는 20분, 통상적인 출근시간대에는 50분이 소요됨에도 “자가용으로 아파트에서 영등포까지 20여분 출근거리” 등으로 표현하는 경우
- 사업계획만 확정된 전철에 대하여 이용가능시기, 완공예정시기, “계획”이나 “예정” 등의 단서를 명시하지 않은 채 약도 등에 기재하거나 “○○전철역이 도보로 5분거리에 위치” 등으로 표현하는 경우
- 객관적인 근거없이 “강남지역에 마지막 남은 주택단지!”라고 광고하거나, “서울시민이 청약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광고하는 경우
- 실제 주택으로부터 도보로 쉽게 갈 수 없는 거리(1km 이상인 경우)에 있음에도 “○○학교가 바로 앞”이라고 광고하는 경우
- 분양안내서의 배치도에 40평형세대가 아파트단지의 가장자리에 위치한 것으로 표기하면서 전망이 좋고 교통편이 편리하다는 등의 내용으로 광고하였으나 실제로 전망이 차단되고 교통도 불편한 아파트단지의 중앙에 위치하는 경우
 - 분양형 호텔을 광고하면서 객관적 근거없이 분양 대상인 호텔이 소재한 지역의 객실 가동률이 전국 1위라고 광고하거나, 분양 대상 호텔의 주변에 다른 숙박시설이 다수 존재함에도 호텔 주변지역 관광객의 숙박 수요를 자신의 호텔이 독점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4.5.5. 재산가치, 수익성

- 주택, 토지 또는 상가 등의 미래의 재산가치에 대해 객관적·구체적 근거없이 최상급 표현을 사용하거나 막연히 높은 가치가 보장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 객관적·구체적 근거없이 확정적 투자수익이 가능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 개발가능성이 없거나 있더라도 확정·확인되지 않는 개발계획을 확정된 것처럼 내세워 토지의 개발이나 가격상승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예 시

- 객관적·구체적 근거없이 “지가(地價)가 전국 최고수준으로 급상승할 전망”, “절대우위의 재산가치 입증”, “입점과 동시에 엄청난 투자증식 효과가 확실히 보장되는 상가” 등으로 표현하는 경우
- 객관적 근거없이 단순히 개발계획 등으로 지가가 상승될 것이라는 기대만 갖고서 “○○원 투자시 2년내 200%의 수익을 돌려주겠다”고 표현하는 경우
- 토지를 분할하여 분양하면서 해당 토지와 인접한 도로 개통이 확정되거나 도로 개통 계획이 어느 정도 결정되어 있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도로 개통 예정”이라고 표현하는 경우
- 지방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개발지역으로 선정되지 않은 주변임야를 분양하면서 산업단지와 연계하여 곧 개발될 것이라고 표현하는 경우
- 분양업체가 수분양자에게 확정 수익을 보장하는 기간은 1~5년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수익보장 기간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거나 “평생 임대료”, “연금처럼 꼬박꼬박”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장기간 수익금을 확정 지급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경우
- 분양형 호텔의 수분양자들은 「지방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분양금액의 4.6%에 해당하는 금액을 취득세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함에도 수분양자가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를 수익률 산출 시 반영하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수익률을 부풀려 표현하는 경우

4.5.6. 부동산의 가격

- 주택, 토지 또는 상가 등의 분양가격에 부가가치세 포함여부를 명시하지 않거나, 주택, 토지 또는 상가 등의 분양가격이나 권리금 등을 막연하게 표기하거나, 사실과 달리 표기하여 실제보다 우량 또는 유리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 분양가격, 권리금, 임대차계약 등의 지불조건 또는 지불방법 등에 대하여 막연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표기하여 실제보다 우량 또는 유리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예 시

- 분양가 3천만 원, 부가가치세 3백만 원인 상가에 대하여 단순히 “분양가 3천만 원!”이라고 표시·광고하는 경우
- 현재 주변상가의 권리금은 2천만 원(10평기준)정도인데 “분양(입점)후 권리금이 2천만 원 ~ 4천만원선 확실”이라고 표시·광고하는 경우
- 사실과 다르게 “인근 타상가의 2배에 해당되는 높은 임대료 보장”이라고 표현하는 경우
- 분양금 분할납부시 상당한 이자가 부담되는데도 “무이자 3회 분할납부 가능”이라고 표시·광고하는 경우
- 일부 세대만 평당 900만원 대에 공급됨에도 마치 전 세대가 해당되는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4.5.7. 부동산의 면적

- 상가 등의 분양면적을 점포별 또는 매장별로 표기하여 분양 표시·광고하는 경우, 전용면적을 표기하지 않음으로써 전용면적이 실제보다 넓은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 주택의 등기면적에 대하여 전용면적 이외에 공용면적이나 서비스면적 등을 포함하여 표시·광고함으로써 실제보다 넓은 것으로 표시·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 공동주택의 공급면적에 대하여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합한 면적 이외에 서비스면적이나 기타 공용면적까지 포함하여 “분양면적”, “공급면적”, “총면적”, “--평형”등으로 표시·광고함으로써 실제보다 넓은 것으로 표시·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 단독주택의 경우, 공급면적에 대하여 바닥면적, 대지면적에 대하여 수평투영면적을 기준으로 표시·광고하지 않음으로써 실제보다 넓은 것으로 표시·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예 시

- 점포별 공용면적 5평, 전용면적 5평인 점포를 분양하면서 단순히 “점포당 10평의 넓은 매장”이라고 기재하고 표시·광고하는 경우
- (o) 전용면적 = 등기면적
(x) 전용면적 + 공용면적 = 등기면적

- (o) 분양면적(공급면적) = 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 (o) —평형 = 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 (x) 분양면적 = 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 초과지하면적, 주차장면적 또는 발코니 등 서비스 면적
- (x) 총 면 적 = 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 서비스면적
(서비스면적의 내역을 표기하더라도 총면적에 계상불가)

4.5.8. 부동산의 특징(재료·제품, 품질, 부대시설, 별도계약품목 등)

- 주택, 상가 등의 건축물 또는 점포의 구조, 재료, 부속, 인테리어 등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함으로써 실제보다 우량 또는 유리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 급·배수, 가스, 전기, 무인경비 등의 부대시설이나 별도 계약품목의 품질에 대하여, 혹은 그 설비나 공사에 필요로 하는 비용부담조건 등에 대하여 막연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표기함으로써 실제보다 우량 또는 유리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 건축물의 부대시설에 대하여 막연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표기함으로써 실제보다 우량 또는 유리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예 시

- 카탈로그에는 점포 바닥마감재를 고급 대리석으로 쓰는 것처럼 그림으로 나타내고 실제는 값싼 자재(일반목재, 타일 등)를 쓰는 경우
- 거실 앞 전면 유리창에 대하여 “채광·방음이 뛰어난 페어그라스 사용”으로 광고하였으나 실제로는 일반유리를 사용하는 경우
- 편의시설의 공사 등에 상당한 비용이 추가됨에도 “모든 편의시설 제공”이라고 표현하여 무료로 시설해주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 피분양자가 분양가 외에 추가비용을 지불해야 설치하여 주는 무인경비설비에 대하여 단순히 “완벽한 무인경비시스템!”이라고 표시·광고하는 경우
- 상가입점자만 사용할 수 있는 규모의 주차장을 설치하고도 고객을 위한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한 것처럼 표현하는 경우

- 아파트 등 주거용 집합건물을 분양광고하면서 다른 아파트의 녹지율보다 높지 않음에도 “최고의 녹지율”이라고 광고하고, 사실과 달리 아파트 단지 내에 단지를 순환하는 수로가 조성되는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 현실적으로 복층시공이 불가능함에도 마치 가능한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4.5.9. 용자·전세금 등

- 용자금액에 대하여 용자기관 또는 용자금액, 이자율, 용자기간, 상환기간 등 용자내용 및 조건을 명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함으로써 실제보다 유리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 전세금에 대하여 전세가액을 인근 동일조건의 것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함으로써 실제보다 유리한 것으로 표시·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예 시

- 용자기관과 사전협이나 약정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고 3,000만 원 용자, 연 11%” 등 확정된 사실인 것처럼 표현하였으나 실제 용자신청시 용자금액이 작아지거나 금리가 인상되는 경우
- 중도금 용자에 대하여 “A은행을 통하여 소유권이전 전에는 연13.5%, 소유권이전 후에는 실세금리를 적용한 용자가능”이라고 광고하였으나 사실과 다르게 소유권이전 전에 대출금리를 연 17.5%로 인상하는 경우
- “용자관련 제반비용 부담없음(당사부담)”이라고 광고하였으나 실제로는 아파트 구입자들에게 보증수수료 및 인지도 등 용자와 관련된 부대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
- 용자의 조건으로 특정 보험회사에 화재보험을 가입하도록 하면서 단순히 “금융기관 용자실시”, “별도담보없이 용자가능” 등으로 표현하는 경우
- 화재보험가입을 조건으로 하는 보험회사용자임을 명시하지 않고 단순히 “2,300만 원짜리 집을 800만 원으로 입주 가능! 용자 1,500만 원”으로 표현하는 경우
- 인근 동일조건 주택의 전세가액이 6,000만 원 이하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1억 원 주택을 2,000만 원으로 구입 가능! -주택은행장기용자1,000+전세 7,000-”이라고 광고하는 경우

4.5.10. 건축허가 등 인·허가에 관한 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토지의 분할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분할허가를 받을지 여부가 불분명함에도 분할이 가능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 관계기관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상가분양광고를 하면서 건축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히지 아니한 채 건축허가를 받은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예 시

- 토지 분할 허가를 받지 않아 공유지분으로 공급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분할된 것처럼 그려진 도면을 표시·광고에 포함시킨 경우
- 상가를 분양하면서 건축물대상에 지하1층이 존재하지 않고 건물·토지 전체에 대한 공유지분등기방식으로 상가 점포를 분양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밝히지 아니한 채 마치 수분양자가 분양받는 지하1층이 특정 호수에 대하여 구분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허가 여부를 밝히지 아니한 채 상가의 평면도, 조감도 등을 통하여 분양상가의 층별 분양 업종을 지정·표시하여 분양광고하는 경우
(※ 이 경우 “토지매입을 ○○%완료하였음”, “토지매입 후 건축심의단계임” 또는 “건축허가 신청단계임” 또는 “건축허가가 완료되었음” 등이라고 표시하면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되지 아니함)

4.5.11. 조감도 등

- 토지 또는 상가 등의 분양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시설이나 자연환경의 유무, 위치, 거리, 교통편 등을 조감도, 카탈로그, 팸플렛, 약도 등에 표시할 때, 일반 소비자가 현재 이용할 수 없는 시설을 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제보다 우량 또는 유리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장래에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에 확실한 근거가 있는 경우 그 예정시기를 명시하거나 “계획” 또는 “예정” 등의 단서를 명기하여 표현하는 것은 무방하다.

예 시

- 건립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공공기관이나 복지시설 등을 “○○기관(회사)에서 건립계획” 등의 단서를 붙여 조감도에 그리는 경우
- 표시·광고시점에서 건설계획만 확정된 지하철노선의 역위치를 완공시기를 표기하지 않거나 “계획” 또는 “예정” 등의 단서를 달지 않고 약도에 기재하는 경우

4.5.12. 건물인증 등에 관한 사항

- 건물인증(정식인증, 예비인증 포함)표현과 관련하여 하위등급을 받았음에도 상위등급을 받은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 건물인증(정식인증, 예비인증 포함) 표현과 관련하여 인증을 받지 않았음에도 에너지효율 인증마크를 사용하는 등 인증을 받은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예 시

- 산업자원부로부터 ‘에너지효율 2등급 건물인증(본인증, 예비인증 포함)’을 받았음에도 1등급인증을 받았다고 표시·광고하는 경우
-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 예비인증을 받았으면서 정식인증을 받은 것처럼 인증마크 등에 “예비인증”을 표시하지 아니한 채 표시·광고하는 경우와 예비인증조차 받지 않았음에도 정식인증을 받은 것처럼 인증마크 등을 사용하여 표시·광고하는 경우

4.5.13. 견본주택(모델하우스)

- 견본주택을 설치하면서 주택이나 상가 등에 실제 사용될 재료나 제품보다 우량한 것을 사용하거나 우량한 구조로 설치하여 당해 주택이나 상가 등이 실제보다 우량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 견본주택에 사용된 재료 또는 구조가 사정상 변경될 수 있다고 명기하고 설치한 경우에도 실제의 것과 차이가 현저한 경우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 건본주택의 인테리어를 실제 상가 또는 주택보다 고급으로 사용하는 경우
- 건본주택에는 대리석 욕조를 설치하고 “시공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라고 표기한 후 대리석 욕조의 품질이나 입주자들의 동의 등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플라스틱 욕조를 설치하는 경우
- 모델하우스에는 A사가 제작한 벽장을 설치하였으나 공급이 부족하여 실제로는 같은 규격, 품질의 B사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되지 않음

4.5.14. 콘도미니엄의 표시·광고

- 일정기간 동안 콘도미니엄(이하 “콘도”라 한다)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모집에 불과함에도 공유의 형식으로 소유권이 보장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 객실의 공유와 이용지분에 따라 연간이용가능일수 및 성수기이용가능성이 제한됨에도 성수기 예약이 보장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 연계 체인망 콘도 등을 직영콘도인 것처럼 표현하거나 아직 완공이 되지 않아 콘도시설을 이용할 수 없음에도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 실제로는 일정금액의 보증금만 내고 일정기간 동안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보장에 불과하면서 소유가 가능한 회원권분양이라고 표시·광고하는 경우
- 콘도이용 회원모집임에도 ‘소유하십시오’ 등 “소유”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표시·광고하는 경우
- 콘도사업자가 분양계약 1개 구좌당 분양계약자 수를 감안하여 볼 때 성수기 100%예약은 처음부터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성수기 예약이 확실히 보장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 전국적인 체인망 또는 해외 체인망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면서 갖추고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거나 연계체인망에 불과한 콘도를 직영콘도라고 표시·광고하는 경우
- 아직 공사착공조차 되지 않았거나 완공이 되지 아니한 콘도시설을 즉시 이용 가능한 콘도인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4.5.15. 기타 거래조건




- 피분양자가 취득할 권리에 대하여 별도의 추가혜택이 있다고 표기하는 등 실제보다 우량 또는 유리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 상가 등의 소유권, 임차권 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등기 등 분양절차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실제보다 우량 또는 유리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예 시

- 분양된 상가의 임차인을 단순히 소개하는데 불과한데도 “높은 가격으로 100% 재임대 보장!”이라고 표현하는 경우
- 사실과 다르게 “인근 창고시설 무료이용”이라고 표시·광고하는 경우
- 사실과 다르게 “분양당첨시 상가소유에 필요한 등기절차 등 일체의 법적조치 무상 대행”이라고 표현하는 경우

4.5.16. 부당한 표시·광고의 예시

구분	세부내용
<p>① 주택 (아파트 포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허가 내용과 상이하면 허위광고 - 확정되지 않은 지하철노선 및 지하철역을 개통예정인 것처럼 광고 - “도심으로부터 10분 거리”라고만 표시·광고하고 그것이 출근시간 기준인지 아니면 조용한 밤 시간 기준인지를 밝히지 않거나, 버스 기준인지 택시 기준인지 등을 밝히지 않는 광고 - 사실과 다르게 공원이 조성되는 것처럼 광고 - 바로 인접한 지역에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설 예정임에도 지역 최고의 조망권이 확보되는 것처럼 광고 - 객관적인 근거 없이 분양 후 1억원 이상의 엄청난 프리미엄이 형성되는 것처럼 광고 - 복도의 일부분인 공용 공간을 마치 개별 세대가 다용도로 사용 가능한 공간인 것처럼 광고 - 실제로 테마도시에서 직선거리로 2.79km 이상, 테마파크에서 직선거리로 5.90km 이상 떨어져 입주자가 도보로 쉽게 접근할 거리가 아님에도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다고 광고

<p>② 상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기관이 시행사 대신하여 분양대금을 관리하는 것처럼 광고 - 분양물(쇼핑몰)에 대한 점포임대수익 지급을 약정한 기간이 1년에 불과함에도 마치 임대수익을 장기간 지속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 - 객관적 근거 없는 사례를 게재하여 높은 투자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광고 - 분양률이 저조함에도 마감이 임박한 것처럼 광고 - 미래에 대한 단순 예상 수익률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보장하는 것처럼 광고 (연수익률 15% 보장) - 특정한 시기에 상가개점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 - 사실과 다르게 주변 점포의 권리금이 높게 형성된 것처럼 광고 - 허가 검토 중임에도 지하상가의 출입구가 인근 주변상가와 직접 연결되는 것처럼 광고 - 사실과 다르게 주변상권에서 독점적 이익을 누리는 것처럼 광고 - 단순히 임금계좌를 개설한 것에 불과함에도 자금관리기관인 것처럼 광고 - 상가의 분양계약 체결과 동시에 임대차계약 체결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 - 브랜드 입점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국내외 100여개 유명 브랜드 입점이 확정된 것처럼 광고 -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입점순간부터 1억 원 이상의 엄청난 프리미엄이 형성되는 것처럼 광고
<p>③ 오피스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객관적 근거 없이 안정적인 투자수익이 보장되는 것처럼 광고 - 최저의 관리비를 부담하는 것처럼 광고 - 업무시설에 해당하는 부분을 아파트와 유사하게 침실, 주방, 드레스룸, 거실 등으로 칸을 구획함으로써 업무시설인 분양물이 마치 공동주택인 것처럼 광고 - 사실과 다르게 복층형 구조의 오피스텔 건축이 적법절차에 따라 가능한 것처럼 광고 오피스텔임에도 주변 아파트 시세와 분양가를 비교하여 아파트인 것처럼 광고
<p>④ 수익형 부동산 관련 범위반 유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익률을 부풀리거나 확정수익 보장기간을 밝히지 않고 광고하는 행위 - 분양가가 저렴하거나 적은 비용만으로 투자가 가능한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 -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임대수요를 확보하고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공실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는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 - 건축물 용도를 허가 받은 용도와 다르게 거짓으로 광고하는 행위 - 고객 유인효과가 큰 명품브랜드나 유명 패밀리레스토랑의 입점이 확정된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하는 행위 - 객관적인 근거 없이 최상급 표현을 사용하거나 막연히 높은 가치가 보장되는 것처럼 분양물의 가치를 부풀려 광고하는 행위

5. 표시광고시 유의 사항

- 표시광고법은 사업자가 표시나 광고를 하지 않을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 부당 표시·광고는 고의 또는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범위반에 해당될 수 있음에 유의한다.
- 사후 규제가 원칙이고, 다만, 중요정보 고시해당 업종의 예외(지정된 표시·광고 사항을 필수적으로 표기하여야 함)
- 사전 표시·광고 의무 규정을 갖고 있는 개별법의 경우 표기하지 않으면 범위반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안전인증 표시, 원산지/지리적 표시, 식품(용량, 영양성분, 첨가물 등), 의약품(제조사, 유효기간, 사용기한, 일일 섭취량 등), 사용상 주의 표시 등
-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선별하여 표기하면 된다. 다만,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객관적인 근거자료에 맞게 표시나 광고를 하여야 한다.
- 자신의 사업이 관할 받는 개별법을 먼저 확인한 후, 표시광고법상 문제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 부동산 분양 관련 부당광고행위의 책임은 1차적으로 시행사(시공사)에 있다. 시행사가 분양광고 업무를 시공사에게 위탁한 경우, 시공사도 책임이 있음에 유의한다.
- 비교 표시·광고는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특성을 비교하여야 하며 객관적으로 측정이 불가능한 주관적 판단, 경험, 체험, 평가 등을 근거로 다른 사업자 또는 다른 사업자의 상품과 비교하는 표시·광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 경쟁사업자의 것보다 현저히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나타내기 위하여 “최대”, “최고”, “최초”, “제일”, “유일” 등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의 용어를 사용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다른 사업자등 또는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 등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표시·광고하여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광고하여 비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표시광고법상의 실효성 확보

6.1 중요정보 공개제도(법 제4조 제1항)

-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필수적인 정보를 사업자의 표시·광고시에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규율(강제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 부동산 분양업종의 사례(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 건축허가 취득여부
 - 대지소유권 확보여부

- 신탁계약 체결여부 등 분양대금 관리방법
- 시행사, 시공업체명
- 분양물의 용도·규모·지번
- 광고에 수익금액 또는 수익률을 포함하는 경우, 수익(률)의 산출방법(광고내용이 해당 수익을 보장한다는 취지인 때에는 보장 기간 및 방법을 포함해야 함)

- 벌칙

- 1억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며(법인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또는 종업원 기타 이해관계인이 위의 사항을 위반할 때에는 1천만원 이하), 부당 표시·광고로 제재를 받게 될 수 있다(기만적인 표시·광고).

6.2 임시중지 명령제도(법 제8조)

- 개요

정식 심결이 있을 때까지의 부당표시·광고 행위를 일시 중지시키는 긴급조치

- 요건

- ① 부당한 표시·광고로 명백히 의심될 것
- ② 소비자 또는 경쟁사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경우

- 임시중지명령 요청기관

소비자단체,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등

6.3 광고실증제도(법 제5조)

- 의의

- 사업자등은 자기가 행한 표시·광고 중 “사실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실증할 수 있어야 함(학술적 또는 산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방법 등 객관적이고 타당한 방법).
- 실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사업자에게 실증자료의 제출을 요청 (15일 이내에 실증자료 제출), 미제출시 광고중지 명령

- 벌칙

- 1억 원이하의 과태료, 미실증은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로 제재

6.4 제제조치

- 시정조치(법 제7조)
 - 당해 행위 위반행위의 중지 또는 향후 금지(시정명령)
 -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공표명령)
 - 정정광고 등 범위외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 과징금(법 제9조)
 - 관련 매출액의 2% 이내에서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을 곱한 금액
- 고발(법 제16조 제3항, 제17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의 벌금
 - ※ 범위외의 정도에 따라 위에 나열된 개별 제재조치를 함께 부과하는 것도 가능
- 과태료(법 제20조)
 - 사업자는 1억 원 이하, 임원 및 종업원의 경우 1천만 원 이하
 - 중요정보고시 위반, 실증자료 미제출, 임시중지명령 불응, 조사거부, 허위자료 제출

6.5 동의의결 제도(법 제7조의2)

- 공정위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소비자 피해보상, 광고내용 수정등의 시정방안을 제시하여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타당성 인정하는 경우 위법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
- 부당한 표시·광고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신고하고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함이다.
- 동의의결 대상
 - 형사처벌이 필요한 중대·명백한 위반행위를 제외한 모든 표시·광고법 위반행위
 - 정당한 이유없이 동의 의결 미이행의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1일 200만 원 이하)

7. 관련 사례

우평건설(주)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의결 제2021-20호)

[사실관계]

피심인은 동탄 우평라비엔파크 오피스텔 분양이 진행 중이던 2017. 12. 6. 천지에게 임대관리 업무를 위탁하였다. 이에 2020. 12. 30. 기준으로 천지와 오피스텔 임대관리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 중 102개실의 수분양자는 자기관리형 임대관리계약을, 13개실의 수분양자는 위탁관리형 임대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다. 피심인은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을 진행하면서 2018년 4월부터 10월까지의 기간 동안 분양홍보관 내 현수막, 홍보용 전단지 등에 “주택도시보증공사 10년 임대보장” 또는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10년 임대보장 증서발행”이라고 광고하였다.

[공정위 판단]

피심인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대수익을 보장한다고 광고하였다. 임대관리회사가 수분양자의 임대수익을 보장해주는 형태의 계약은 자기관리형 임대관리계약이다. 따라서, 이 사건 광고에 따르면 임대관리회사는 자기관리형 임대관리계약을 체결한 모든 수분양자에게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서울보증보험과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이 제공하는 임대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임대관리회사는 자기관리형 임대관리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 중 일부에게만 서울보증보험의 임대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하였고, 나머지 수분양자에 대해서는 임대관리회사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임대보장 수익증서를 발급하였다. 10년간 임대수익 보장을 약속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 등의 임대보증보험증권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에서 임대관리회사로부터 발급된 임대보장 수익증서는 임대보장 약속기간이 1년이었고 상호협의를 통해 1년 주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 확정적으로 10년간 임대수익을 보장받는 것이 아니므로 거짓·과정성이 인정된다.

(주)대우건설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의결 제2014-252호)

[사실관계]

피심인은 2007. 5. 7.부터 2010. 8. 4.까지 대구시 달서구 감삼동 소재 「대우 월드마크 웨스트엔드」아파트 분양광고를 하면서, 분양 카탈로그 등을 통해 “현관전실-모던한 디자인과 세련된 인테리어가 돋보이는 현관전실이 첫인상부터 사는 분의 품위를 높여드립니다. 가족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다양도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수납공간 극대화” 라고 표현하여 광고한 사실이 있다. 또한 견본주택에 각 분양 평형별로 4 ~ 18㎡ 면적의 전실을 설치하고 내부에 수납가구를 배치하여 전시한 사실이 있다.

[공정위 판단]

피심인은 이 사건 광고를 행할 당시 설계도상에는 전실 부분이 복도의 일부분인 공용공간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견본주택 전실 내부에 수납가구를 배치하고, 카탈로그 등을 통해 전실을 다양도로 사용이 가능한 공간으로 표현하여 광고함으로써, 공용면적에 해당되어 수분양자가 다양도로 사용할 수 없는 전실이 개별세대가 수납공간을 형성하여 다양도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인 것처럼 광고하였다.

카탈로그 등 분양홍보물에 전실이 표시되어 있고, 견본 주택에 전실이 설치되어 그 내부에 수납장 등의 가구까지 배치되어 있으며, 더욱이 카탈로그 등 분양홍보물에 이러한 전실이 개별세대가 다양도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안내되어 있다면,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들은 공용면적에 해당되어 개별세대가 다양도로 사용할 수 없는 전실이 개별세대가 수납공간을 형성하여 다양도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인 것처럼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

주거공용면적에 해당되는 전실을 수납공간을 형성하여 다양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한 위 광고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공정위는 피심인의 경우 아파트 등 주거용 집합건물을 분양 광고하면서 공용면적인 전실을 마치 개별세대가 수납공간을 형성하여 다양도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인 것처럼 광고함으로써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 광고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사실관계]

피심인은 2007년 9월 인천 논현 힐스테이트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분양카탈로그에 '탁트인 전망', '양면의 창으로 와이드한 전망이 펼쳐지는 2면 개방형 거실'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하고, 약 1mm의 크기의 글씨로 "입면디자인으로 인하여 일부 세대의 창문 상하부 장식에 의한 간섭이 일부 발생할 수 있습니다."라고 광고한 사실이 있다. 또한, 피심인은 2009년 9월 모델하우스의 거실 창문 등에 가로20cm×세로12cm의 크기의 안내표지판(내용: 입면디자인에 의해 창 상하부에 장식물이 일부 보이는 세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을 부착하고 중앙 홀에는 입면장식이 반영된 아파트 모형을 설치한 사실이 있다.

[공정위 판단]

공정위는 피심인이 아파트 분양광고를 하면서 아파트 거실의 창문 구조가 일부 막혀 있어 거실에서 창을 통해 밖을 잘 내다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에 대해 소비자가 잘 인식하지 못하도록 지나치게 작은 글씨로 표기하거나 "입면장식 디자인에 의해 창 상하부에 장식물이 일부 보이는 세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입면디자인으로 인하여 일부 세대의 창문 상하부 장식에 의한 간섭이 일부 발생할 수 있습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사실에 부합하게 인식하기 어렵게 표시·광고를 함으로써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주)경동건설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사실관계]

피심인은 2013. 3. 9. ~ 2013. 7. 4.의 기간 동안 중앙일간지를 통하여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광고택지개발지구에 소재 '경동 해피리움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을 분양광고 하면서 "광고 최초! 임대수익보장!!(연 720만원)", "1년 720만원 보장으로 10.5% 수익률(15형 기준)", "12만여명의 임대수요 확보"라고 광고한 사실이 있다.

[공정위 판단]

공정위는 단지 1년간의 임대료 상당액을 분양금액에서 감액해 줄 뿐임에도 이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아니한 채 장기간에 걸쳐 연 720만원의 임대수익을 보장하는 것처럼 광고하며 임의로 산출한 수익률을 내세워 수익률을 부풀려 광고하는 행위 및 주변 시설의 고용인구나 유동인구만을 산술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이 12만여명의 임대수요를 확보하고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판단하였다.

8. 체크리스트



항목	구분(법조항)	점검사항
수익형 부동산 관련 부당 광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익률을 부풀리거나 확정 수익 보장 기간을 밝히지 않고 광고를 하고 있는가? -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임대 수요를 확보하고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는가? - 고객 유인효과 큰 명품브랜드나 유명 패밀리레스토랑의 입점이 확정된 것처럼 광고하는가?
상가등의 명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상가를 분양하면서 00백화점, 00쇼핑, 대형마트 등의 용어를 사용하였는가? - 특급 등의 등급이 법에 의해 등급이 부여될 수 없음에도 마치 특급호텔인 것처럼 광고하였는가?
시행자, 시공사, 분양자	표시광고법 제3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시·광고에 분양자가 누구인지 명시하였는가? - 원래 분양자인 A사로부터 상가를 매수한 실제 분양자가 마치 원래 분양자가 분양하는 것처럼 "A상가" 등으로 표시·광고하였는가? - A건설회사(주)는 상가건물의 시공만 맡고 운영은 B회사가 하는 경우인데도, 상가명칭을 A쇼핑, A종합상가라고 하거나 또는 명칭에 A회사의 로고를 넣어 분양 표시·광고를 하였는가?
분양업종, 분양방법, 분양현황, 공사 현황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가 등을 분양 광고하면서 특정 업종에 대해서만 입점을 허용할 것으로 표시·광고한 뒤, 실제로는 이와 다르게 분양하고 있는가? - "선착순 분양"이라고 표시·광고하고 실제로는 일부 또는 모든 점포를 입찰 등 선착순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분양하고 있는가? - 피분양자의 자격 또는 수, 피분양자를 결정하는 방법 등에 대하여 실제보다 유리한 것처럼 표시·광고하고 있는가? - 점포의 분양 현황에 대한 표현이 사실과 다른 경우가 있는가? - 사실과 달리 은행, 극장, 볼링장 등의 체육시설 등, 상가 등에 고객을 유인하는 효과가 큰 대중이용시설의 입점이 확정된 것처럼 표시·광고를 하는가? - 건물의 공사진행상황이나 입점예정일을 사실과 다르게 표현하여 실제보다 유리한 것처럼 표시·광고하였는가? - 실제 분양실적이 저조한데도 "95% 분양완료!", "빨리 신청해야 가능합니다" 등으로 표시·광고하고 있는가? - ○○은행지점의 입점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은행지점 입점확정" 등으로 표현하고 있는가?

입지조건,
생활여건,
접근성

표시광고법
제3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등)

- 주택, 토지 또는 상가 등의 주소나 위치를 정확하게 표시하지 않아 실제 입지보다 우량 또는 유리한 것처럼 표시·광고하였는가?
- 상권에 관해 객관적·구체적 근거없이 최상급 또는 확정적 표현을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제보다 우량 또는 유리한 것처럼 표시·광고하였는가?
- 주택의 소재지에 대하여 기준지점이나 교통수단을 명시하지 않고 표시·광고함으로써 실제보다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는 것으로 표시·광고하였는가?
- 교통수단에 의한 소요시간을 「통상시간대」의 정상속도가 아닌 「새벽」이나 「한밤중」의 속도 등을 기준으로 하여 표시·광고함으로써 주택소재지가 실제보다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는 것으로 표시·광고하였는가?
- 현재 이용할 수 없는 교통수단이나 도로에 대하여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함으로써 교통여건이 실제보다 유리한 것으로 표시·광고하였는가?
- 주택소재지 여건에 대하여 계획단계의 비전이나 막연한 추측상의 내용을 확정된 사실처럼 표시·광고함으로써 실제보다 유리한 것으로 표시·광고하였는가?
- 공익시설이나 편의시설 등이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가까이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함으로써 생활여건이 실제보다 유리한 것으로 표시·광고하였는가?
- 현재 이용할 수 없는 학교, 공원, 백화점, 수영장 등 공익시설이나 편의시설 등에 대하여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함으로써 생활여건이 실제보다 유리한 것으로 표시·광고하였는가?

재산가치,
수익성

- 주택, 토지 또는 상가 등의 미래의 재산가치에 대해 객관적·구체적 근거없이 최상급 표현을 사용하거나 막연히 높은 가치가 보장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였는가?
- 객관적·구체적 근거없이 확정적 투자수익이 가능한 것처럼 표시·광고하였는가?
- 개발가능성이 없거나 있더라도 확정·확인되지 않는 개발계획을 확정된 것처럼 내세워 토지의 개발이나 가격상승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였는가?

항목	구분(법조항)	점검사항
부동산의 가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 토지 또는 상가 등의 분양가격에 부가가치세 포함여부를 명시하지 않거나, 주택, 토지 또는 상가 등의 분양가격이나 권리금 등을 막연하게 표기하거나, 사실과 달리 표기하여 실제보다 우량 또는 유리한 것처럼 표시·광고하였는가? - 분양가격, 권리금, 임대차가액 등의 지불조건 또는 지불방법 등에 대하여 막연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표기하여 실제보다 우량 또는 유리한 것처럼 표시·광고하였는가?
부동산의 면적	표시광고법 제3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가 등의 분양면적을 점포별 또는 매장별로 표기하여 분양 표시·광고하는 경우, 전용면적을 표기하지 않음으로써 전용면적이 실제보다 넓은 것처럼 표시·광고하였는가? - 주택의 등기면적에 대하여 전용면적 이외에 공용면적이나 서비스면적 등을 포함하여 표시·광고함으로써 실제보다 넓은 것으로 표시·광고하였는가? - 공동주택의 공급면적에 대하여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합한 면적 이외에 서비스면적이나 기타 공용면적까지 포함하여 “분양면적”, “공급면적”, “총면적”, “--평형” 등으로 표시·광고함으로써 실제보다 넓은 것으로 표시·광고하였는가? - 단독주택의 경우, 공급면적에 대하여 바닥면적을, 대지면적에 대하여 수평투영면적을 기준으로 표시·광고하지 않음으로써 실제보다 넓은 것으로 표시·광고하였는가?
부동산의 특징 (재료·제품, 품질, 부대시설, 별도 계약품목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 상가 등의 건축물 또는 점포의 구조, 재료, 부속, 인테리어 등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함으로써 실제보다 우량 또는 유리한 것처럼 표시·광고하였는가? - 급·배수, 가스, 전기, 무인경비 등의 부대시설이나 별도 계약품목의 품질에 대하여, 혹은 그 설비나 공사에 필요로 하는 비용부담조건 등에 대하여 막연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표기함으로써 실제보다 우량 또는 유리한 것처럼 표시·광고하였는가? - 건축물의 부대시설에 대하여 막연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표기함으로써 실제보다 우량 또는 유리한 것처럼 표시·광고하였는가?

항목	구분(법조항)	점검사항
용자· 전세금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자금액에 대하여 용자기관 또는 용자금액, 이자율, 용자기간, 상환기간 등 용자내용 및 조건을 명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함으로써 실제보다 유리한 것처럼 표시·광고하였는가? - 전세금에 대하여 전세가액을 인근 동일조건의 것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함으로써 실제보다 유리한 것으로 표시·광고하였는가?
인·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토지의 분할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분할허가를 받을지 여부가 불분명함에도 분할이 가능한 것처럼 표시·광고하였는가? - 관계기관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상가분양광고를 하면서 건축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히지 아니한 채 건축허가를 받은 것처럼 표시·광고하였는가?
표시광고법 제3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 또는 상가 등의 분양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시설이나 자연환경의 유무, 위치, 거리, 교통편 등을 조감도, 카탈로그, 팸플릿, 약도 등에 표시할 때, 일반 소비자가 현재 이용할 수 없는 시설을 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제보다 우량 또는 유리한 것처럼 표시·광고하였는가? - 건립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공공기관이나 복지시설 등을 “○○기관(회사)에서 건립계획” 등의 단서를 붙여 조감도에 그리는 경우가 있는가? - 표시·광고시점에서 건설계획만 확정된 지하철노선의 역위치를 완공시기를 표기하지 않거나 “계획” 또는 “예정” 등의 단서를 달지 않고 약도에 기재하는 경우가 있는가?
건물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인증(정식인증, 예비인증 포함)표현과 관련하여 하위등급을 받았음에도 상위등급을 받은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였는가? - 건물인증(정식인증, 예비인증 포함) 표현과 관련하여 인증을 받지 않았음에도 에너지효율인증마크를 사용하는 등 인증을 받은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였는가?

항목	구분(법조항)	점검사항
<p>건분주택 (모델 하우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분주택을 설치하면서 주택이나 상가 등에 실제 사용될 재료나 제품보다 우량한 것을 사용하거나 우량한 구조로 설치하여 당해 주택이나 상가 등이 실제보다 우량한 것처럼 표시·광고하였는가? - 건분주택에 사용된 재료 또는 구조가 사정상 변경될 수 있다고 명기하고 설치한 경우에도 실제의 것과의 차이가 현저한가?
<p>콘도 미니엄</p>	<p>표시광고법 제3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기간 동안 콘도미니엄(이하 “콘도”라 한다)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모집에 불과함에도 공유의 형식으로 소유권이 보장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였는가? - 객실의 공유와 이용지분에 따라 연간 이용가능 일수 및 성수기 이용가능성이 제한됨에도 성수기 예약이 보장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였는가? - 연계 체인망 콘도 등을 직영콘도인 것처럼 표현하거나 아직 완공이 되지 않아 콘도시설을 이용할 수 없음에도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였는가?
<p>기타 거래 조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분양자가 취득할 권리에 대하여 별도의 추가혜택이 있다고 표기하는 등 실제보다 우량 또는 유리한 것처럼 표시·광고하였는가? - 상가 등의 소유권, 임차권 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등기 등 분양절차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실제보다 우량 또는 유리한 것처럼 표시·광고하였는가?



제3절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공정위 사건 처리 절차



I.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의 처리 절차	264
II. 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제도	273

제3절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공정위 사건 처리 절차

I.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의 처리 절차

1. 개요

-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등 위반사건에 대해 심판기능을 수행하는 준사법적 기관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위원들의 합의로 운영되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심결을 위해 위원 전원(9명)으로 구성되는 전원회의와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한 위원 3인으로 구성되는 소회의를 운영하고 있다.

1.1 심판기능으로서의 공정위

	전원회의	소회의
의장	위원장	상임위원
의결정족수 (공정거래법 제64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
소관사항 (공정거래법 제5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 정책 및 업무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공정위 소관 법규 등의 제·개정- 이의신청의 재결- 소회의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중요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사건- 승인·인정·인가사항- 집행정지의 결정- 과태료- 관계기관에 협조의뢰 사항 (고발,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영업정지요청, 약관법상 시정요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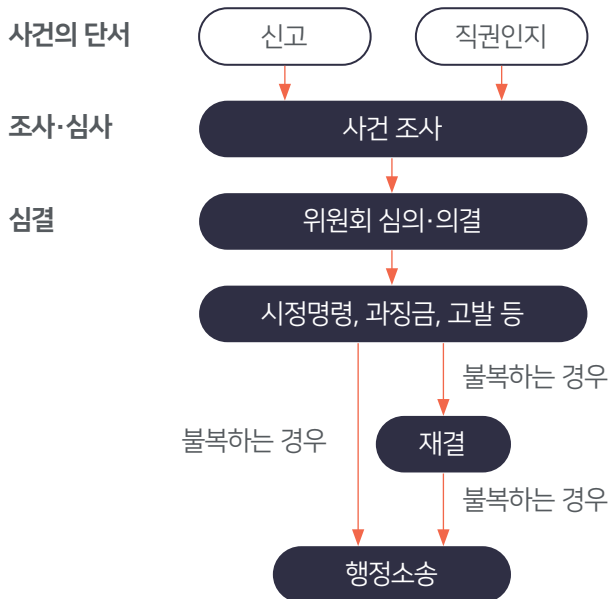
● 심의과정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

- 심결
 -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위반 사건에 대해 심의하고 의결하는 일련의 심판과정을 일컫는다.

- 심사관
 - 신고 또는 직권으로 인지된 내용에 대해 조사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한 후에 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당해 인지내용이 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 이러한 심사관은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4급 이상인 직원 중에서 사무처장이 지정하는 직원이 되고, 일반적으로 국장과 지방사무소장이 심사관이 된다.
 - 물론 법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행하게 된다.
- 피심인
 - 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서 당해 행위가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 사업자를 말한다.
- 이의신청인
 -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을 받은 피심인이 당해 처분에 불복하고 당해 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는 자를 말한다.

1.2 공정위 사건처리 절차

● 사건절차 흐름도



1.2.1 인지단계

- 법규정 위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권 또는 신고에 의한 조사 가능(법 제80조)
- 위반혐의는 직권인지가 원칙이고, 신고주의를 보충적으로 채택
- 신고 접수시 예비조사 실시 후 사건화 여부를 결정

1.2.2 조사·심사 단계

- 사건심사 착수보고(사건번호, 사건명부여) 후 조사권을 발동하여 본조사를 실시
- 조사내용이 법에 위반되는 경우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상정하고 시정명령, 과징금 납부명령 등의 조치의견을 제시
- 사건처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받은 후, 위원회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에 상정

1.2.3 심의·의결 단계

- 사건심사 착수보고(사건번호, 사건명부여) 후 조사권을 발동하여 본조사를 실시
- 심의는 위원회가 피심인과 심사관을 회의에 출석하도록 하여 대심 구조하에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피심인 등에 대한 본인확인, 심사관의 심사보고, 피심인의 의견진술, 심사관의 의견진술, 위원들 질문 및 사실관계 확인, 참고인 등의 심의참가, 심사관의 조치의견 발표, 피심인의 최후진술 등의 순으로 진행
- 합의는 심의가 종료된 후 위원들만 참석하여 비공개로 위법여부, 조치내용 등에 대해 논의·합의하는 과정

1.2.4 의결 결과 통지

- 합의 결과에 대해 의결서를 작성하여 당해 심사관이 의결서 정본을 피심인에게 송달하는 절차로 이로써 피심인의 의무가 발생하거나 권리행사가 제한

1.2.5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 유형

- 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조치할 수 있는 유형으로 재심사명령, 심의절차종료, 무혐의, 종결처리, 조사 등 중지, 경고, 시정권고, 시정명령, 고발 등이 있다.

1.3. 공정한 심결을 위한 주요 제도

1.3.1 심의준비 절차제도(의견청취절차)

- 정식심의에 앞서 심사관과 피심인간에 상대방의 주장과 증거에 대해 서면 등으로 충분히 탄핵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사실관계와 쟁점을 명확하게 정리하기 위한 제도
-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쟁점이 많은 안건의 경우 등을 대상으로 정식심의에 앞서 주심위원 또는 소회의 의장의 진행 하에 주요 쟁점에 대한 피심인과 심사관의 의견을 청취하는 제도를 말한다.

- 개정 사건절차규칙(「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서는 피심인과 심사관을 분리하거나 어느 한 쪽만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의견청취절차의 분리운영을 도입하였다

1.3.2 심의 속개제

- 심의를 신중하게 하고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심의를 한 번에 끝내지 않고 다음 기일에 심의를 속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1.3.3 심의 분리제

- 공동행위와 같은 위반행위 건에 대한 심의시 특정 피심인이 다른 피심인과 별도로 심의를 받고자 신청하는 경우, 공정위가 기업의 영업상 비밀이 경쟁사에 공개될 우려가 있거나 공정위 조사에 협조한 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심의를 분리하여 진행하는 제도

1.3.4 출석 시차제

- 해당 안건의 심의시작 시간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회의시작 시간까지 출석하도록 하여 피심인들이 오랫동안 기다리는 불편 등을 감수하지 않도록, 해당 안건의 심의시간을 예측하여 그 시간에 맞도록 출석하도록 하여 피심인들의 편의를 보장하려는 제도
- 기타 사건처리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심사보고서 첨부자료 공개, 프리젠테이션 시설의 설치·운영, 외국인들의 심의 참가시 편의제공을 위한 통역부스 설치 허용 등 다양한 심결절차 응용

1.4 불복절차

1.4.1 이의신청 및 집행정지

- 공정위의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제기가 가능하고, 이에 대해 공정위는 60일 이내에 재결을 하고 30일 내에서 기간 연장이 가능(법 제96조)
- 시정조치 명령을 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집행정지가 가능(법 제97조)

1.4.2 행정소송

- 공정위의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법 제99조, 제100조)
-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

1.5 사전심사 청구제도

- 사전심사 청구제도는 사업자가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공정거래관계법에 위반되는지에 관한 심사를 청구하면 공정위가 이를 심사하여 그 적법 여부를 30일 이내에 회답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여부 사전심사청구에 관한 운영지침」).
- 회답은 공정위의 공식의견이므로 적법하다고 인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에 법적 조치를 할 수 없게 되는 확약의 효력이 발생한다.
- 다만, 구체성이 없는 경우 자료부족으로 법 위반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청구인이 앞으로 실시하기로 확정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행위에 대해서만 심사가 가능하다.

1.6 동의를결제도

- 동의를결제도란 공정거래 관련 사건에서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그 시정방안의 타당성을 인정하면, 위법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를 말한다(법 제89조).
- 기업은 법 위반 판정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시정 방안을 마련해 신속하게 사건을 해결함으로써 사업상 불확실성을 조기에 제거하고 불공정기업 판정으로 인한 이미지 훼손을 막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 공정위 역시 법 집행을 통상적인 절차와 거의 동일하게 구현하면서도 피규제자의 동의를 얻어냄으로써 법 집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으며, 위법성 판단과 관련된 쟁송 등에 소요되는 행정 비용을 상당 부분 절감할 수 있다.
- 소비자 등 피해자의 입장에서든 사안에 따라서는 통상의 시정조치에는 포함되기 어려운 가격 인하, 손해보상 등 보다 직접적이고 다양한 시정 수단을 통해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다.

2. 공정위 조사 절차

2.1 조사 주체

- 사무처 소속의 사건조사업무를 담당하는 6개 국(경쟁정책국/시장감시국/카르텔조사국/소비자정책국/기업집단감시국/기업거래결합심사국)과 5개 지방사무소(서울/부산/광주/대전/대구)

2.2 조사 단서

- 사건의 조사는 '신고' 또는 조사관의 '직권발동'에 의해 개시되며,
- 직권발동은 주로 '중점감시업종에 대한 조사',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등과 같이 연초에 조사계획을 세우는 경우에 이뤄진다.

2.3 배당과 사전심사

- 신고 또는 직권발동에 의해 개시된 개별사건은 담당과정에 의해 개별 조사공무원 (통상 사무관)에게 배당되며, 배당받은 조사공무원은 당해 사건이 공정거래법의 적용대상인지를 사전심사한다.
- 사전심사결과 ① '피조사인이 사업자 요건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② '적용제외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③ '처분시효가 완료된 경우'에는 "심사불개시결정"을 내리며, 사전심사 결과 위와 같은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사건착수보고"를 하게 된다.

2.4 사건번호·사건명 부여와 조사의 실시

- 사건착수보고가 이뤄지면, 심판관리관실에서 '사건번호'와 '사건명'(예: 2008공동12000에 대한 건)을 부여함으로써 정식으로 하나의 조사사건이 되며,
- 이후 조사공무원은 조사권을 발동하여 관련 사실관계를 조사·확인한 후, 이러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관련 법령을 적용하여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다.
- 공정위 조사의 유형으로는 크게 ① 현장조사, ② 진술조사, ③ 자료제출명령이 있다.
 - ① 현장조사는 조사관이 직접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 및 경영상황, 장부·서류, 전산자료, 음성녹음자료, 화상자료 등의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 ② 진술조사는 사무소 혹은 사업장과 공정위 출석요구서에 지정된 장소에서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을 듣는 것을 말한다.
 - ③ 자료제출명령이란 공정위가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기타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하는 것을 말한다. 현장 및 진술조사를 하는 조사관은 증거인멸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조사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서면상으로 명령하는 것이 원칙).
- 현장조사의 경우 구체적으로, ① 조사실 세팅 ② 조직도/사업계획서/전산매뉴얼 요구 ③ 증거수집(자료확보/자료제출명령/포렌식) ④ 진술조사(인터뷰) ⑤ 마무리(확인서 징구 등)의 과정으로 구성된다.

2.5 조사와 피조사인의 절차적 권리

- 2023년 공정위 법집행 시스템 개선방안에 따라 피조사인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조사절차규칙(「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사건절차규칙을 개정하고

이의제기업무지침(「현장조사 수집·제출자료에 대한 이의제기 업무지침」)을 새로 제정하였다.

- 조사권의 내용과 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현장조사 공문에 범위반협의(기간, 분야, 유형)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조사절차규칙 제10조 제2항) 준법지원부서를 우선적으로 조사하는 행위를 금지하며(조사절차규칙 제11조 제2항) 조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연장하는 사유까지 기재하도록 하였다(조사절차규칙 제12조 제2항).
- 현장조사시 조사목적과 관련이 없는 자료가 수집된 경우의 공식적인 반환절차를 마련하고, 조사공무원이 현장조사 자료를 재검토하여 관련이 없는 자료를 반환, 폐기할 수 있게 하였다(이의제기업무지침 제3조).
- 조사단계에서 예비의견취절차를 신설하여 담당 국,과장과 공식적 대면회의를 개최하여 피조사인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였다(조사절차규칙 제22조의2).

조사방해에 대한 벌칙

① 조사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폭언·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행위자 외 법인도 벌금형 부과)
- 자료의 은닉·폐기, 접근거부 또는 위조·변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행위자 외 법인도 벌금형 부과)

② 요구자료 미제출 또는 허위제출

- 요구자료 미제출 또는 허위제출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행위자 외 법인도 벌금형 부과)
- 요구자료 미제출 시
→ 자료 등이 법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출 재명령 가능
→ 명령을 다시 불이행한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가능
→ 1일 평균매출액의 1000분의 3 범위 내/매출액 부재 혹은 산정 곤란 시 1일 당 200만원 범위 내

2.6 심사보고서 작성 후 심사관의 조치

- 약식절차 회부

- 당해 조사사건이 소회의 소관사항인 경우, 심사관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피심인(피조사인)에게 심사보고서에 기재된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심사관조치의견을 수락하는지 여부를 물어 피심인이 이를 수락하면 “약식절차”에 회부하며,

- 약식절차에 회부된 사건은 위원회의 심의 없이 위원들의 서면결의로 처분이 결정되나,
 - ① '심사관조치의견에 고발이나 과징금납부명령이 포함된 경우' 또는 ② '피심인이 심사관조치의견을 수락하지 않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약식절차 대상에서 제외된다.
- 위원회 상정
 - 시정조치·과징금납부명령·공표명령 등의 처분이나 형사고발조치 등 위원회 의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관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사무처장에게 제출하며 사무처장은 자신의 명의로 조사사건을 위원회에 상정하며, 이 때 중요한 사안은 '전원회의'에 경미한 사안은 '소회의'에 각각 상정한다.
- 심사보고서의 송부 및 의견서 제출 고지
 - 조사사건이 위원회에 상정됨과 동시에, 심사관은 피심인(피조사인)에게 심사보고서를 송부하면서, 이에 대한 의견서를 원칙적으로 2주 이내에 문서로 제출할 것을 고지하며,
 - 실무상으로는 심사관이 사전에 심판관리관과 협의하여 위원회 심의일자를 잠정적으로 정한 후 그 일자의 약 3~4주 이전에 조사사건을 위원회에 상정함과 동시에 심사보고서를 송부하고 있다.

이 때, 피심인에게는 심사보고서 중 "심사관조치의견"을 뺀 나머지 자료(즉 ① 표지, ② 제안이유, ③ 행위사실, ④ 위법성 판단, ⑤ 적용법조, ⑥ 첨부자료)만이 송부된다.

 - 피심인은 정해진 기간 내에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3. 공정위 심판절차

3.1. 심판 주체

- 심판의 주체는 위원회이며, 안건에 따라 중요한 사안은 "전원회의"가 경미한 사안은 "소회의"가 담당한다.
- 전원회의는 5인의 상임위원(위원장·부위원장 포함)과 4인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되며, 비상임위원 4인은 3인의 대학교수와 1인의 변호사로 구성된다.
- 의장의 직은 위원장이 수행하며, 위원장 유고 시 부위원장이 수행한다.
- 소회의는 총 3개이며, 각 소회의는 1인의 상임위원과 2인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되며, 의장의 직은 상임위원이 수행한다.

3.2. 주심위원 지정과 심결보좌

- 주심위원은 법원의 주심법관에 대응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심결보좌기구의 보좌를 받으며, 전원회의 사건에서는 위원장이 임의로 주심위원을 지정한다.
- 심결보좌는 심판관리관실이 담당하며, 심판관리관실의 3개 담당관(경쟁심판/협력심판/소비자거래심판)은 상임위원 3인과 일대일 대응관계로 심결보좌업무를 수행하고, 심사관의 심사보고서와 피심인의 의견서를 검토하여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작성·보고한다.

3.3 심의기일 및 장소의 지정

- 심의기일은 의장이 지정하며, 피심인에게는 지정된 일자의 10일전까지 통지한다.
- 통상 전원회의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로, 소회의는 매주 금요일 오후 2시로 지정되며, 피심인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심의기일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의장은 주심위원의 의견을 들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 심리장소는 위 심판정으로 지정된다(단, 지방사무소에서의 순회심판은 예외).

3.4 합의

- 합의는 비공개로 이뤄지며, 원칙적으로 심의가 종료된 당일에 종료된다.
- “위법성 인정”에 대한 합의 후, ‘시정조치’·‘과징금부과’·‘법위반사실 공표명령’·‘형사고발’ 등의 “제재수단의 종류와 수준”에 대한 합의를 하며, 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소회의는 3인의 만장일치로 의결한다(소회의의 경우 만장일치가 되지 않을 때에는 전원회의에 회부된다).

3.5 의결서 작성

- 의결서는 심판관리관실에서 작성하며, 원칙적으로 합의된 날로부터 35일 이내에 작성한다.

II. 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제도

1. 개요

- 공정거래조정원은 공정거래, 가맹사업거래, 하도급 거래, 대규모유통업법 거래, 약관분쟁, 대리점 분쟁등의 조정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분쟁조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2. 주요 분쟁조정 안내

2.1 공정거래 분쟁조정

2.1.1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설치 이유

-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는 불공정거래행위로 발생한 사업자간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공정거래조정원은 2008년부터 이를 운영하고 있다.

2.1.2 공정거래분쟁조정협회의위원회의 구성

-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는 교수, 법조인 등 공정거래 분야의 전문가로서 공정위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2.1.3 조정의 대상

- 사업자 간에 발생한 분쟁 중 공정거래법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로서, 부당지원행위를 제외한 모든 불공정거래행위가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된다.

2.2 약관 분쟁조정

2.2.1 약관분쟁조정협의회 설치 이유

- 약관 분쟁조정협의회는 불공정약관으로 발생한 사업자와 고객(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 제외)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2012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2.2.2 약관분쟁조정협회의 구성

- 약관 분쟁조정협의회는 교수, 법조인 등 약관규제 및 소비자 분야의 전문가로서 공정위 위원장이 위촉하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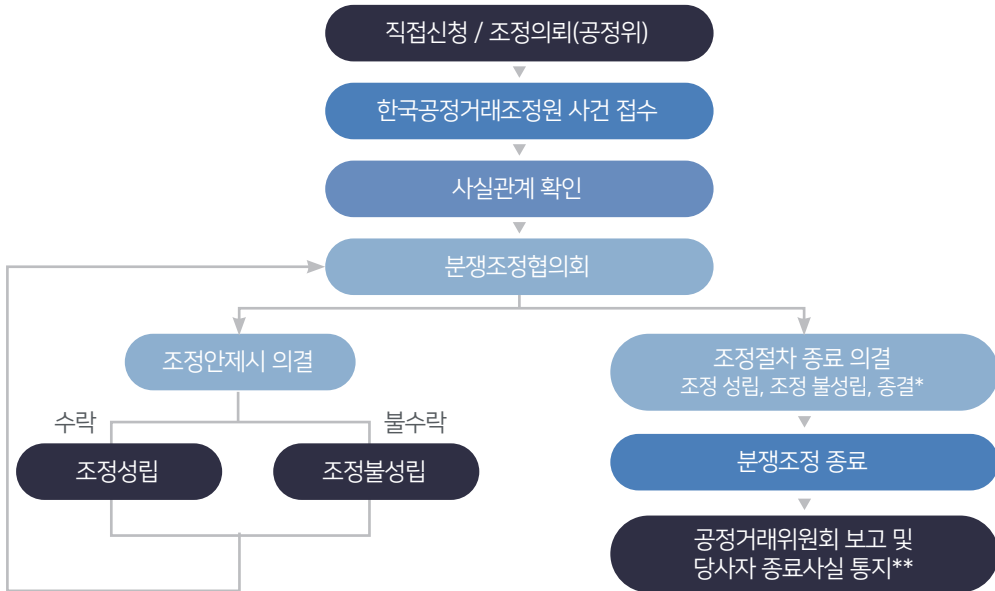
2.2.3 조정의 대상

- 고객의 해제권을 배제·제한하는 등 약관의 내용이 「약관규제법」 제17조를 위반한 약관 또는 이와 법률상 쟁점에 있어 공통되는 약관으로 인한 분쟁이다.
- 조정신청 제외 대상
 - 조정신청이 있기 전에 공정위가 조사 중인 사건
 - 조정신청의 내용이 약관의 해석이나 그 이행을 요구하는 사건
 - 약관의 무효판정을 요구하는 사건
 -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사건
 - 분쟁해결이나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사건
 - 「중재법」에 따라 중재가 진행 중이거나 신청된 사건
 - 불공정 약관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이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인 사건

2.2.4 집단분쟁조정

-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피해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한 고객(「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는 제외)의 수가 20명 이상일 경우, 협의회는 효과적인 피해구제를 위하여 집단분쟁조정을 실시할 수 있다.

3. 분쟁조정 절차



* 취하, 소제기, 각하, 조정안 미제시 등 법령 등에 의하여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

**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피신청인의 관련 법률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싶은 신청인은 조정원의 통지 공문 내용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 제출

- 온라인 분쟁조정시스템을 통해 조정신청 접수가 가능하며, 사건 접수 후 담당 조사관이 등기우편으로 양 당사자에게 접수사실 및 자료 요청을 공문으로 통지한다. 접수과정에서 조정원의 조정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조정절차가 종료될 수 있다.
- 양 당사자는 기한 내에 분쟁 관련 자료(보완서, 답변서, 일반 현황표)를 제출해야 하며, 당사자가 2회 이상 자료제출 요청에 불응하면 분쟁조정 절차가 불성립 될 수 있다(일반 현황표는 양 당사자의 거래관계 및 분쟁조정 대상 여부검토에 활용).
- 양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들의 검토를 거쳐 본격적인 조정절차가 진행된다. 필요한 경우 당사자들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조정절차 중 당사자가 직접 합의하여 조정이 종료될 수 있다. 반면 자료제출 또는 출석요구 등 조사과정에 2회 이상 참여하지 않는 경우 조정절차가 불성립 될 수 있다.
- 사실관계 조사 등을 거친 모든 분쟁사건은 분쟁조정협의회에 상정되어 심의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당사자가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경우도 있으며, 분쟁조정협의회의 심의를 통해 조정절차 종료 등 여부를 최종 의결하면 사실상 조정절차가 종료된다.
- 조정원은 조정결과를 공정위에 보고하며, 조정 불성립으로 보고된 경우 공정위에서 조사가 실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문구의 의미에 대하여 꼼꼼히 따져보고 서명날인 등을 한다.

2025년 자율준수관리자 임명현황

롯데건설 자율준수관리자 “준법경영부문장 조도희 상무”

- 임명일: 2025.01.15.

자율준수관리자는?

롯데건설의 컴플라이언스 운영을 총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대표이사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회의 의결을 통해 선임되며, 컴플라이언스사무국을 운영하며 CP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 평가 및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롯데건설 임직원의 책임과 권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규정: 임직원의 책임과 권한 명시]

1. 대표이사

권한	자율준수관리자의 임명 및 직무 승인
	임직원 교육 계획의 승인
	위반자에 대한 징계, 인사 조치
	CP프로그램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점검 및 결과 승인
책임	컴플라이언스 자율준수 의지 선언
	위법부당행위가 확대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 지시

2. 자율준수관리자

권한	자율준수 실태에 대한 점검 조사
	공정거래 관련 법령 및 사규 위반 행위자 조사 및 보고 요청
	공정거래 관련 법령 및 사규 위반 사항에 대한 공고 및 시정조치
	컴플라이언스사무국 운영 및 추진
책임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계획 수립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관리
	공정거래 관련 법령 및 자율준수와 관련된 교육관리
	자율준수실태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공정거래 관련 법령 및 사규 위반여부에 대한 자문, 분석, 개선
	컴플라이언스사무국 운영 등

3. 임직원

의무	공정거래 관련 법령 및 사규 준수
	공정거래 관련 법령 및 사규 위반 또는 위반 가능성 발생시 자율준수담당자 자문



롯데건설